

釜山史料叢書Ⅳ

국역왜인구청등록(Ⅳ)

國譯 鄭景柱

監修 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7

일 러 두 기

- 이 책은 왜인구청등록 전 8책(인조 15년, 1657년 ~ 경종 4년, 1724년)중 제4책(1677. 1 ~ 1678. 12) 제5책(1677. 1 ~ 1687. 10) 제6책(1688. 1 ~ 1692. 10)을 국역한 것이다.
- 이 책은 조선후기 동래부의 왜관을 중심으로 한 대일외교 및 무역과 관계 공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국역문은 가능한 한 원문의 취지에 가깝게 직역을 하되, 외교 및 무역관례상 관습적으로 굳어진 용어는 가급적 그대로 사용하였다.
- 이 책은 조선시대 공용문서를 발췌한 것이므로 이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개 이두의 본 뜻을 살려 국역하였으나, 간혹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문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간에 끊어 고친 곳이 있다.
- 원문의 어휘 중에 간혹 지금의 관용 표기와 다른 경우는, 재래의 관습을 중시하여 대개 원문대로 살렸다. 다만 필사 과정의 실수로 인한 오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밝히고 고쳤다.
- 일본 인명(人名) 및 지명(地名)에 사용된 한자는 일본 측의 표음(表音)이 분명한 경우에는 풀어썼으나, 조선 측의 한자음이 관용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 측의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부터는 국역 왜인구청등록(Ⅰ)과 (Ⅱ)에서 사용된 이두, 인명, 용어 등이 특별하게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각주’ 처리는 하지 않았다.
- 제4책은 1678년 ~ 1678년 만의 내용으로 제5책과 일부 중복되나, 원본에 충실하고자 원본의 순서대로 수록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

(1677. 1~1692. 10)

차 례

□ 일러두기

□ 차 례

□ 국역 왜인구청등록(IV) 해제 17

제 4 책

□ 丁巳(1677年, 肅宗 3年)

- 1월 4일 館守倭가胡桃 柏子 等 5種의 求貨物에 대한 許貨 要請 71
 - 倭人이 新館造成으로 年例送使의 出送停止를 通報함
 - 胡桃는 減數許貨하고 나머지 4種은 準數許貨할 것
- 25일 館守倭가 江戸 求貨物 尾扇의 許貨 要請 75
 - 倭人 要求대로 尾扇을 全羅道에서 急速措備 下送할 것
- 6월 19일 館守倭가 島主之子 承襲次 江戸行에 필요한 求貨物 9種의 許貨 76
 - 紗羅綾緞은 防塞하고 나머지 8種은 減數 許貨할 것
- 8월 23일 館守倭가 島主子の 江戸行 所用之物을 制作할 鍮器匠 螺鈿匠 招致 要請 78
 - 螺鈿匠은 防塞하고 鍮器匠은 許給해 給價造器케 할 것

- 10월 9일 館守倭가 島主子の 江戸行에 필요한 赤犬皮 300令의 許貿 要請 ··· 79
 - 減數하여 100令만 許貿할 것
- 10월 26일 館守倭가 前日 防塞당한 螺鈿匠의 起送을 다시 要請 ······ 81
 - 慶尙道에서 螺鈿匠 所在處에 分付하여 起送할 것

□ 戊午(1678年, 肅宗 4年)

- 1월 17일 館守倭가 島主切用品 虎舌 虎脛骨 四書의 許貿 要請 ······ 82
 - 虎舌은 半減 許貿하고 虎脛骨 四書는 許貿할 것
- 1월 28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求貿物 柏子 등 3種 許貿 要請 ······ 83
 - 柏子大口魚는 減定分에서 半減하고 나머지는 定分 대로 許貿할 것
- 2월 4일 慶尙監司가 倭人求請 論語 孟子 中庸의 印出不可로 他道 印出 要請 ······ 85
 - 3種의 책 2秩을 全羅道에서 印給하도록 指示
- 2월 22일 全羅監司의 論語 및 中庸의 印出不可 報告를 校書館에 印出 指示 ······ 85
- 윤 3월 23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所用物 人蔘 등 5種의 許貿 要請 ······ 86
 - 柏子 大口魚는 防塞할 것
 - 綠末 胡桃는 減定分 대로 許貿하고 人蔘은 減定分에서 더 減算 許貿할 것
- 윤 3월 28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求貿物 兒馬의 許貿 要請 ······ 88
 - 減數許貿하되 慶尙道 近邑兒馬를 私貿케 할 것
- 6월 5일 倭人이 前日 求請人蔘 入給을 催促함 ······ 89
 - 戶曹에서 準備하여 이미 下送하였음을 동래부사에게 통보
- 7월 1일 館守倭가 江戸執政禮單에 필요한 19種의 求貿物 및 公木의 許貿 要請 ······ 90

- 倭人이 前日 求貿한 兒馬의 擇送 催促
- 靑黍皮 等 7種은 防塞하고 大口魚 等 4종은 或減하여 産出 後 許貿할 것
- 白苧布 等 6종은 減數許貿하고 生苧布 雨傘紙는 依數許貿할 것
- 公木은 동래부에서 降品減數할 것
- 前日 許貿한 兒馬는 急速擇送할 것
- 7월 15일 館守倭가 島主求請으로 亭子閣의 撤毀運入을 要請 94
 - 前例없는 求請으로 前日 許貿한 兒馬는 急速擇送할 것
- 8월 17일 館守倭가 前日 求貿兒馬의 入送催促 및 體大駿馬의 許貿 요청 97
 - 體大駿馬를 減數하여 該曹에서 急速貿送할 것
- 問慰譯官護行差倭 橘成蔭 出來 98
 - 差倭가 島主奉行 등의 身病治療次 醫員 朴尙文의 派遣 要請
 - 朴尙文의 파견을 허락함
- 9월 5일 島主求請駿馬의 預差馬 2匹을 別定養馬에게 給馬하여 領送케 할 것 100
- 9월 6일 戶曹에서 預差馬 1필의 減數 요청에 따라 減匹 指示 100
- 11월 19일 入給한 求請馬의 倭人 退送에 동래부에서 求請馬形을 詳細報告 .. 101
- 12월 11일 倭人求請馬는 割鼻與否를 勿論하고 體大月羅馬라고 동래 부사가 보고 함 103
 - 體大月羅馬 1필을 急速廣求하여 別定理馬에게 給馬領送할 것
- 12월 25일 島主求請月羅馬 1필과 預差馬 1필을 下送할 것
- 12월 30일 館守倭가 對馬島에 체류 중인 의원 박상문의 隨島主人往江戸事 를 통보 104
 - 館守倭가 島主入往江戸時 執政所用物 9種의 許貿 요청
 - 太平簫 等 2종은 防塞, 貂皮 等 4종은 減數, 羊皮 等 3종은 依數 許貿할 것
 - 의원 박상문의 隨島主人往江戸事는 招辭防塞할 것

제 5 책

□ 丁巳(1677年, 肅宗 3年)

- 1월 2일 頭倭가 求貿雜物 중 未收物件의 入給 催促 107
 - 동래부사가 未收雜物을 該邑에 督促함을 보고
- 4일 館守倭가 前日 求貿物 入給 催促 및 江戶求貿物 5종의 허무 요청 108
 - 柏子 東醫寶鑑 등 4종은 依數許貿하고 胡桃는 減數許貿할 것
- 25일 館守倭가 江戶求貿物 着油尾扇의 허무 요청 110
 - 尾扇 求請을 허무하되 전라도에서 措備 輸送할 것
- 3월 27일 代官倭가 島主入往江戶所用物로 黃鶯의 許貿 요청 111
 - 黃鶯 求請을 依數許貿하되 경상도에서 隨便覓給할 것
- 6월 19일 館守倭가 島主子の 江戶 進謝에 필요한 9종의 求貿物 허무 요청 .. 113
 - 紗羅綾緞은 防塞하고 白苧布 등 8종은 減數許貿할 것
- 8월 23일 館守倭가 島主子の 江戶行 所用器物을 製作할 鍮器匠 螺鈿匠 招致 요청 115
 - 螺鈿匠은 防塞하고 鍮器匠은 許給해 給價造器케 할 것
- 10월 9일 館守倭가 島主子の 江戶行에 필요한 赤大皮 300令의 허무 요청 .. 114
 - 減數하여 100令만 허무할 것
- 10월 26일 館守倭가 前日 防塞당한 螺鈿匠의 起送을 다시 요청 118
 - 경상도에서 나전장 所在處에 分付하여 起送할 것

□ 戊午(1678年, 肅宗 4年)

- 1월 17일 館守倭가 島主 切用物 虎舌 虎脛骨 四書의 허무 요청 119
 - 虎舌은 半減許貿하고 虎脛骨 四書는 依數許貿할 것
- 1월 28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貿物 柏子 등 3종의 허무 요청 121
 - 柏子 大口魚는 減定分에서 半減하고 그 외는 減定分 대로 허무할 것

- 慶尙監司가 倭人求請 四書 중 論語 孟子 中庸의 印出不可로 他道 印送 요청 122
 - 論語 및 中庸 각 2秩을 전라도에서 印給하도록 지시
- 2월 22일 全羅監司의 논어 및 증용의 印出不可 보고로 校書館에 印送 지시 123
- 윤3월 23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貨物 兒馬 7匹의 구무 요청 124
 - 5필로 減數 허무하되 경상도 近邑의 兒馬를 私貿케 할 것
- 6월 5일 倭人이 前日 求請한 인삼의 入給 催促 128
 - 戶曹에서 어렵게 준비하여 이미 下送하였음을 동래부사에게 통보
- 7월 1일 倭人이 前日 구무한 兒馬의 擇送 요청 129
 - 靑黍皮 등 7종은 防塞하고 大口魚 등 4종은 或減하여 産出後 허무할 것
 - 白苧布 등 6종은 減數허무하고 生苧布 雨傘紙는 依數허무할 것
 - 公木목은 동래부에서 降品減數할 것
 - 前日 허무한 兒馬는 急速 擇送할 것
- 7월 15일 館守倭가 島主 求請으로 亭子閣의 撤毀運人을 요청 133
 - 전례없는 구청으로 엄히 防塞할 것
- 8월 17일 館守倭가 前日 求請한 兒馬의 入給 催促 및 體大駿馬의 허무 요청 136
 - 체대준마를 減數하여 該曹에서 急速 貿送할 것
- 8월 22일 관수왜가 羊皮 등 3종과 兒馬의 入給 催促 및 沙器燔造 各色上 구청 138
 - 羊皮 등 3종은 이미 하송하였으며 兒馬는 경상도에서 급속 허무할 것
 - 求請各色上の 奉行書契가 違規이므로 不許하고 書契를 遷送할 것

□ 己未(1679年, 肅宗 5年)

- 2월 2일 問慰譯官護行差倭 橘成陳이 出來하여 大君求請物 獐馬의 허무를

통보	140
- 獐馬求請事는 匹數와 毛色을 적은 書契를 기다린 후 결정할 것	
○ 5월 6일 橘成陳이 醫員 朴尙文의 入往江戶를 不許한 朝廷의 回答書契 改撰 요구	141
- 差倭 橘成陳이 前日 구무한 獐馬의 圖形과 匹數를 통보함	
- 語勢緊重으로 還送된 朴尙文 入往江戶 不許書契를 改撰 下送할 것	
- 獐馬求請事는 전례없는 구청으로 譯官에게 嚴辭防塞토록 할 것	
○ 7월 10일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貿物 書冊 등 5종의 허무 요청	144
- 儀禮經傳續通解 鴛鴦 野鶴은 準數覓送하고 李退溪集 東文選은 防塞할 것	
○ 7월 28일 慶尙監司가 野鶴과 儀禮經傳續通解의 他道 移定를 요청	145
- 야학은 충청도에서 의례경전통해는 전라도에서 印送할 것	
- 館守倭가 江戶執政求貿物 靑驢 麝香生獐의 허무 요청	
- 모두 방색하되 사항생장은 계속 구청하면 경상도에서 覓給할 것	
○ 8월 16일 對馬島에 往診갔던 의원 박상문이 還來하여 滯留 事情을 보고	147
○ 24일 倭人의 사항생장 구청으로 동래부사가 경상감사에게 卜定 覓給을 보고	148

□ 庚申(1680年, 肅宗 6年)

○ 3월 21일 頭倭 橘成陳이 防塞당한 靑驢의 허무 및 執政處送物 7종의 허무 요청	149
○ 4월 4일 柏子 등 5종은 依數許貿, 兩色苧布는 減數許貿, 靑驢는 防塞할 것	151
○ 4월 27일 관수왜가 求貿書冊 儀禮經傳續通解의 入給 催促 및 靑驢의 허무 요청	152
- 儀禮經傳續通解는 전라도에서 印送토록하고 靑驢求貿 요청은 防塞할 것	

- 6월 14일 관수왜가 島中구무물 4종의 허무 요청 153
 - 虎脛骨은 依數許貿하고 黃毛筆 東醫寶鑑 琥乙骨은 減數許貿할 것
- 11월 16일 館守倭가 島主의 關白前에단 5종의 허무 및 구청응자 미급분 입급
최촉 154
 - 양피는 반감허무하고 나머지는 의수허무할 것
- 12월 12일 관수왜가 新關白求請物 駿馬 3필과 活白兔 2口の 허무 요청 .. 155
 - 홀토는 依數許貿 駿馬는 減數許貿하되 預差馬 1필을병송할 것
- 12월 27일 館守倭가 江戸求貿物 虎豹皮와 靑黍皮의 러무 요청 157
 - 虎豹皮는 減數許貿하고 靑黍皮는 依數許貿할 것

□ 辛酉(1681年, 肅宗 7年)

- 1월 22일 前日 求貿한 駿馬 入給時 倭人이 還送 改備 요청 158
 - 倭人 求請元數대로 입급하되 改備分 加給分 모두 경상도에서
擇送할 것
- 2월 21일 관수왜가 島主求請物 黃鶯 虎骨 咨筆의 허무 요청 160
 - 黃鶯 虎骨은 경상도에서 覓給하고 咨筆은 該曹에서
下送할 것
- 3월 2일 倭人이 江戸所用 沙器燔造次 所入各色上 및 沙器匠의 定給 요청 161
 - 沙器燔造 要請하는 對馬島主의 書契
 - 回答草稿를 承文院에서 措辭選出 下送토록 지시
- 3월 9일 沙器燔造所用 白土는 減數許給하고 沙器匠은 2명으로
定級 할 것 162
- 4월 29일 前日 入給한 駿馬 중 白馬를 對馬島에서 還送하고 月羅馬로
改備 요청 163
 - 倭人의 駿馬 改備 요청을 허락하고 호조에서 월라마 1필을 極 擇下送
할 것
- 5월 27일 別定頭倭가 出來하여 江戸所用雜物 6종의 허무 요청 164
 - 모두 減數하여 허무할 것

- 7월 7일 頭倭가 前日求貿雜物의 入給을 催促 165
 - 苧布 등 3종은 이미 措備 하송함
- 12월 19일 관수왜가 강호구무물 馬鞍 등 8종의 허무 요청 166
 - 馬鞍 등 4종은 該曹에서 胡桃 등 4종은 경상도에서 題給할 것

□ 壬戌(1682年, 肅宗 8年)

- 1월 15일 관수왜가 信使時 所用物 7종의 허무 요청 167
 - 苧布 등 5종은 依數許貿하고 豹皮는 減數許貿할 것
- 2월 7일 頭倭가 前日 구무 요청한 雜物의 허무 催促 169
 - 황해도 卜定分 大節眞墨이 造來하는 대로 催促 雜物을 一時 下送할 것

□ 癸亥(1683年, 肅宗 9年)

- 2월 8일 頭倭가 島主 江戶所用物 胡桃 柏子の 구무 요청 170
 - 各各 依數許貿할 것
- 윤 6월 23일 관수왜가 도주 時急 소용물 尾扇의 구무 요청 171
 - 準數許貿하되 전라도에서 措備 入給할 것
- 9월 5일 관수왜가 江戶所用求貿雜物 9종의 허무 요청 172
 - 馬省 등 5종은 防塞하고 柏子 등 4종은 減數許貿할 것
- 10월 29일 島主求貿物 各色紙 等 6종에 대한 措備 輸送을 경상감사에게 지시 173
- 12월 17일 관수왜가 島主入往江戶時 所用雜物 蓁末 乾大口魚 柏子の 허무 요청 173
 - 各各 半減許貿할 것
 - 관수왜가 島主切用物 各色紙 房柏子 등 6종의 허무 요청

□ 甲子(1684年, 肅宗 10年)

- 1월 12일 倭人求買物 6종에 대해 不爲回啓하고 허무를 直爲舉行
토록 지시 175
- 1월 16일 관수왜가 江戸所用藥材 虎舌의 허무 요청 175
- 減數許買할 것
- 8월 6일 館守倭가 江戸執政求請物인 驢馬 菘末 各色紙의 구무 요청 176
- 녹말은 防塞하고 그 외는 依數許買할 것
- 9월 4일 倭人求請 驢馬를 該司에서 買得하여 下送함 180
- 9월 23일 代官倭가 島主江戸所用切用物 木防己 乾大口魚의 허무 요청 .. 180
- 各各 依數許買할 것
- 10월 2일 관수왜가 前日 求請한 各色紙의 未收分에 대한 入給 催促 181

□ 乙丑(1685年, 肅宗 11年)

- 1월 5일 代官倭가 島主求買物 柏子の 허무 요청 182
- 왜인과의 減定대로 半減허무할 것
- 7월 27일 沙器燔造次 監役頭倭가 出來하여 各色土와 沙器匠의 定給 요청 .. 183
- 辛酉年例대로 分定入給할 것
- 沙器燔造次 各色土와 沙器匠의 定給을 요청하는 對馬島主 書契
- 이에 대한 回答草稿를 承文院에서 攢出下送할 것
- 관수왜가 도주절용물 柏子 房柏子の 허무 요청
- 各各 依數許買할 것
- 9월 24일 館守倭가 도주절용물 乾大口魚 生栗의 허무 요청
- 各各 準數許買할 것
- 10월 6일 관수왜가 江戸執政求買物 月羅馬 柏子の 허무 요청 186
- 백자는 半減許買하고 月羅馬는 依數許買하되 預差馬를 并送 할 것
- 10월 23일 왜인구무 월라마 및 예차마를 허무하여 하송함 187

□ 丙寅(1686年, 肅宗 12年)

- 1월 15일 관수왜가 島主在江戶所用物 貂皮 乾大口魚 柏子の 허무 요청 … 187
 - 각각 準數許貿할 것
- 2월 4일 입급한 求貿馬 중 왜인의 退送分을 該司에서 求得 허무할 것 … 188
- 2월 8일 관수왜가 도주강호소용물 虎皮 咨筆 黃毛筆의 허무 요청 …… 188
 - 각각 依數許貿하되 해사에서 措備下送할 것
- 2월 23일 관수왜가 江戶執政求貿物 6종의 허무 요청 …………… 189
 - 각각 허무하되 해사와 경상도에서 措備 入給할 것
- 6월 27일 관수왜가 島主往江戶時 切用物 6종의 허무 요청 …………… 187
 - 각각 依數許貿하되 物種에 따 該曹 및 下三道에서 措備下送 할 것
- 11월 8일 代官倭가 島主求貿物 柏子 胡桃 乾大口魚의 허무 요청 ……… 190
 - 각각 依數許貿할 것
- 12월 24일 대관왜가 강호집정구무 馬鞍의 허무 요청것 …………… 192
 - 該曹에서 措備下送할

□ 丁卯(1687年, 肅宗 13年)

- 1월 6일 관수왜가 도주의 江戶進奉之物로 官蓼의 허무 요청 …………… 193
 - 조선의 人蓼防塞令을 이유로 譯官에게 措辭防塞토록 지시
- 2월 21일 관수왜가 강호진봉을 이유로 官蓼의 구무를 거듭 요청함 …… 195
 - 譯官에게 嚴辭防塞토록 지시
- 3월 11일 관수왜의 純色大紗 구무요청을 東萊府에서 防塞함 …………… 197
- 5월 5일 관수왜가 구무인삼의 再請 및 江戶執政求貿物 8종의 허무 요청 …… 198
 - 官蓼은 防塞하고 柏子 胡桃는 半減許貿 나머지는 依數許 貿할 것
- 6월 7일 대관왜가 강호집정구무물 尾扇 적만호의 허무 요청 …………… 200
 - 적만호는 방색하고 미선은 의수허무하되 전라도에서 措備 入給 지시
- 7월 2일 沙器燔造頭倭가 出來하여 사기번조용 각색토 및 사기장의 定給 요청 ……………201

- 대관왜가 島中求貿物인 咨筆 翰林총월묵의 허무 요청
- 沙器燔造時 各色土 沙器匠 및 求貿物 2종을 依數許貿할 것
- 사기번조에 필요한 각색토와 사기장의 許給을 요청하는 對馬 島主書契
- 이에 관한 回答草稿를 承文院에서 攢出하송할 것
- 7월 21일 관수왜가 前日 허무요청한 인삼의 허무 거듭 요청함 204
 - 人蔘求貿事는 譯官에게 嚴辭峻斥토록 할 것
 - 倭船 問情을 잘못 보고한 假別差 朴世亮을 從重決棍토록 할 것
- 10월 3일 관수왜가 도주절용물 호도 백자 대구어의 허무 요청 205

제 6 책

□ 戊辰(1688年, 肅宗 14年)

- 1월 16일 관수왜가 강호집정소용물 14종의 허무 요청 207
 - 大緞 등 6종은 防塞하고 나머지 8종은 依數許貿할 것
- 2월 11일 관수왜가 왜인구무잡물의 入給 催促 208
- 7월 15일 代官倭가 江戸執政求貿물 12종의 허무 요청 209
 - 大紗 등 3종은 防塞하고 나머지는 依數許貿 할 것
- 11월 8일 대관왜가 강호집정구무물 7종의 허무 및 沙器燔造 白土의 入給 요청 212
 - 紅氈 沙器燔造 白土는 防塞하고 나머지 筆墨 羊皮 등은 依數許貿할 것

□ 己巳(1689年, 肅宗 15年)

- 3월 5일 관수왜가 사기번조 소용 白土 燒木 및 柏子の 구무 요청 213
 - 각각 依數許副할 것
- 6월 25일 관수왜가 島主 分付로 人蔘和賣 요청 215

- 10월 20일 왜인의 人蔘和賣요청 書契에 回答書契를 攢出下送할 것 217
- 22일 人蔘通貨防塞事에 대해 도주에게 보내는 別幅回禮物件을 下送할 것 218
 - 別單回禮物目

□ 庚午(1690年, 肅宗 16年)

- 1월 2일 代官倭가 島主入往江戸 所用物 20종의 허무 요청 219
 - 貂皮 등 3종은 減數하고 色大緞 色大紗는 防塞하고 나머지는 허무할 것
- 2월 8일 代官倭가 前日 구무 강호소용잡물의 入給을 催促 221
 - 구무잡물은 이미 하송함
- 5월 26일 대관왜가 沙器燔造 白土의 入給 및 江戸執政求貿駿馬의 허무 요청 224
 - 사기번조용 白土事는 다음 단계를 기다려 처리
 - 倭人求貿駿馬는 허무하되 預差馬도 준비하여 하송할 것
- 7월 5일 入給한 倭人求貿駿馬의 倭人點退로 改備馬를 경상도에서 擇給토록 할 것 224
 - 慶尙監司가 道內에 改備可給馬가 없음을 보고
- 9월 7일 관수왜가 강호집정구무물 10종의 허무 요청 226
 - 貂皮 등 3종은 商賈輩에게서 從便買去토록 하고 나머지는 허무할 것
- 10월 9일 관수왜가 前日 구무 駿馬의 入給 催促 229
 - 東萊府使가 1匹은 入給하고 나머지 1匹의 求覓을 경상감사에게 요청
- 11월 16일 동래부사가 왜인구무 書冊 중 孟子集註 庸學集註의 入給을 防塞 요청 230

□ 辛未(1691年, 顯宗 17年)

- 3월 8일 代官倭가 渡海중 致蒐한 준마의 代給 및 서책 13종의 허무 요청 232
 - 준마 1필은 경상도에서 廣求許貿할 것

- 서책 중 板本이 없는 3종은 防塞하고 나머지는 海州에서 給價買送할 것
- 7월 1일 관수왜가 강호집정구무잡물과 서책 등 18종의 허무 요청 235
 - 緋緞 등 5종은 防塞, 紅氈 등 6종은 減數, 서책 7종은 依數許買할 것
- 윤 7월 27일 왜인구청서책 중 四書大全은 印出下送하고 周張全書는 防塞함 .. 237
 - 緋緞 등 5종은 防塞, 紅氈 등 6종은 減數, 서책 7종은 依數許買할 것
- 10월 13일 代官倭가 도주입왕강호 소용물 15종의 허무 요청 238
 - 唐貨 3종은 防塞하고 나머지는 準數허무할 것
- 22일 관수왜가 兒馬 15匹과 雨傘紙의 허무 요청 240
 - 우산지는 準數許買하고 兒馬는 減數하여 구무허무할 것
- 12월 3일 왜인구무 兒馬를 동래부에서 거둬 減定하여 7匹만 허무하기로 함 242

□ 壬申(1692年, 顯宗 18年)

- 1월 3일 頭倭가 前日 허무한 구무잡물 13종의 入給 催促 243
 - 乾大口魚 雨傘紙는 경상도에서 各郡에 輸送을 催促함
 - 나머지 11종은 이미 예조에서 하송함
- 3월 4일 대관왜가 강호구청물 13종의 허무 요청 244
 - 각각 依數許買할 것
- 10월 7일 관수왜가 沙器燔造次 各色土 및 島主]遞易時 所用物 9종의 허무 요청 246
- 沙器燔造次 各色土 求請하는 島主奉行의 書契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第4冊 251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第5冊 293

□ 影印本 倭人求請謄錄 第6冊 391

□ 찾아보기 441

국역 왜인구청등록(I)~(IV) 해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사대(事大)와 교린(交隣) 등 여러 가지 통교(通交)관계가 존재하였다. 조선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수평적인 대등한 교린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대마번(대마도)과는 조공적 기미관계를 맺고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교환된 외교문서는 각각의 통교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조선과 일본간에는 국서(國書)와 서계(書契)라는 두 종류의 교린문서가 교환되었다. 국서는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장군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이고, 서계는 조선의 예조·동래부·부산진과 일본의 대마번 등 실무부서 사이에 교환된 문서이다. 이 국서와 서계에는 별폭(別幅)이라는 문서가 달려 있었다. 별폭은 예물(禮物)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물품목록이다.

이 외에도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외교와 무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여러 형태의 물품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 진상(進上)과 회사(回賜)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간의 국교는 1609년 5월에 기유약조(己酉約條)를 체결함으로써 재개되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사이의 무역은 기유약조가 체결된 지 2년후인 1611년 9월 대마도에서 최초의 세건(歲遣) 제1선을 파견하면서 시작되었다.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는 모두 사절이 탄 사선(使船), 사송선(使送船)이었다. 따라서 왜관의 입항에서 출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의례가 이루어졌다. 왜관에 도착한 사절 일행은 부산진의 연향대청(宴享大廳)에서 동래 부사와 부산진첨사에게 바다를 건너온 인사를 하였다. 이것을 ‘다례의(茶禮儀)’라고 불렀다. 일본의 대마도주가 조선의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가 여기서 전달되었다. 이 서계에는 대마도주가 조선국왕에게 헌상하는 물품 목록인 별폭이 붙어 있었다. 일정한 예식(例式)에 따라 진헌(進獻)의 의식이 행해졌다. 이것을 진상(進上 : 후에는 封進으로 바뀜)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으로부터 서계와 함께 회사(回賜)라는 답례 물품이 내려졌다.

사절이 탄 사선(使船) 1척마다 물품의 접수와 교역이 이루어졌다. 의례적인 물품을 주고 받는 '진상과 회사'가 기본이었다. 사선에는 공무역, 개사무역[사무역]을 위한 무역품도 있었다. 즉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건너오는 1척의 사선에는 진상·공무역·개사무역[사무역] 3종류의 물품이 실려 있었다.

2. 구청(求請)과 구무(求貿)

예조에서 편찬한 외교자료집인 『춘관지(春官志)』 연례송사(年例送使)조에서는 공무역·회례·구청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춘관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국에서 헌납하는 것에는 '진상'이란 것이 있고, '공무역'이란 것이 있다. 진상이란 것은 후추, 백반, 단목, 주홍, 화연갑, 동반(銅盤), 금병풍, 구리거울 등이다. 서계 안에 별폭을 마름질해 넣고 진상 물품을 나열하여 적기 때문에 별폭진상이라 한다. 공무역이란 것은 구리, 납 두 물건 및 단목, 흑각이다. 이 물건을 헌납하고서 대가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회례(回禮)가 있고, 공무가목(公貿價木)이 있고, 구청조(求請條)가 있다. 회례란 별폭진상에 답례하는 것으로 인삼, 호피, 표피, 백명주, 흑명주, 매, 돛자리, 붓, 먹 등이다. 모든 물건의 양쪽 끝에는 모두 예조의 조인(照印)을 찍는다. 회례를 주고 또 그 진상 물품에 따라 값을 쳐서 무명베를 주는 것을 진상가목(進上價木)이라 한다. 공무가목이란 구리, 납, 흑각의 값을 쳐서 무명베로 주었던 것이다.

구청이란 왜인들의 구걸로 인하여 주는 것이다. 인삼·매·다리미·마성·종이·붓·대추·밤·울무 등속인데, 왜국에서 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증물(贈物)이라고도 한다(求請者 因倭人求乞而賜給者也 人參鷹火熨斗馬省紙筆棗栗薏苡之屬 倭地所不產之物 或謂之贈物)。

『춘관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 헌납하는 것으로는 진상과 공무역, 조선에서 지급하는 것으로는 회례, 공무가목, 구청이 있다.

구청이란 일본측에서 자국에서 잘 생산되지 않는 물건을 구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를 사급(賜給)·증여(贈與)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은 증물(贈物), 증급(贈給)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구청은 서계·별폭 등의 외교적

의식을 띠지 않고, 특별히 요청한 물건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진상과 회사와 구분된다. 또한 물품 요구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하므로 ‘거래’ 의미의 공무역과도 구분된다.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을 조선측이 무상(無償)으로 지급하는 ‘좁은 의미의 구청’ 외에, 유상(有償)으로 지급하는 ‘넓은 의미의 구청’이 있다. 이 ‘넓은 의미의 구청’을 흔히 구무(求買)라고 부른다. 즉 구청에는 구무(求買)하기를 요청한다는 의미의 구청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측에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조선측에서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구무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구무에 해당된다. 역으로 유상으로 구입할 것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했다면, 이것은 요청 자체는 구무이지만 결과는 구청인 것이다.

따라서 구청은 일본측의 요청·요구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에 대해 조선측이 어떤 형태로 지급했느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춘관지』에서도 구청을 조선에서 지급하는 항목으로 분류하였던 것이다. ‘좁은 의미의 구청’이 회사의 성격에 가깝다면, ‘넓은 의미의 구청’은 공무역의 성격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춘관지』에는 연례송사조에 구청 항목이 있는 것 외에, ‘구청’조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구청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왜인이 구청하는 것은 그 지방에서 나지 않는 물건이나 희귀한 것으로서, 중세 이래로부터 그들의 구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을 증급(贈給)이라 부르고 혹은 구청이라고도 부른다. 이 외에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춘관지』 구청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지급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구청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구무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청이란 대마도주가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에도(江戸)막부의 요청에 의해 조선측에 수시로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 조선측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지급하는 행위로 특별한 형식이나 규정은 없었다. 구청, 구무, 청구, 증급, 증물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편찬된 여러 외교 자료집에도 구청은 다양한 명칭으로 정리되어 있다. 『춘관지』에서는 구청(求請), 『동문회고』에서는 청구(請求), 『변례집요』에서는 구무(求買)조로 각각 편성되어 있다.

3. 『왜인구청등록』 개관

『왜인구청등록』은 예조(禮曹)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한 책으로 모두 8책이다. 원본은 필사본(筆寫本)으로 책 크기는 41×26.6cm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奎 12955)에 소장되어 있다. 1637년(인조 15) 3월부터 1724년(경종 4) 4월 사이에 연례송사 및 각종 차왜 등 일본인의 각종 구청에 관련하여, 동래부사·경상감사 등이 올린 각종 장계와 이에 대한 호조 및 비변사의 회계(回啓)를 예조 전객사에서 등록한 원본이다.

전객사는 예조의 속사(屬司)이다. 1405년(태종 5) 육조 속사제가 정립될 때 예조의 속사로 설치되었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조에 속한 관청으로는 계제사(稽制司)·전향사(典享司)·전객사의 세 속사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전객사는 중국·일본·야인 등 사신의 접대와 조공, 외국인에 대한 왕의 하사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다. 즉 조선시대 대외관계의 실무를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였다. 고종 때 편찬된 『대전회통』에도 ‘야인에 대한 영접은 지금은 폐지되었다’는 조항이 붙어 있을 뿐, 나머지는 『경국대전』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전객사의 기능은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왜인구청등록』의 수록 시기를 원본의 책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책 : 1637년(인조 15) 3월 ~ 1653년(효종 4) 2월.
- 제2책 : 1653년(효종 4) 3월 ~ 1664년(현종 5) 12월.
- 제3책 : 1665년(현종 6) 1월 ~ 1676년(숙종 2) 11월.
- 제4책 : 1677년(숙종 3) 1월 ~ 1678년(숙종 4) 12월.
- 제5책 : 1677년(숙종 3) 1월 ~ 1687년(숙종 13) 10월.
- 제6책 : 1688년(숙종 14) 1월 ~ 1692년(숙종 18) 10월.
- 제7책 : 1693년(숙종 19) 4월 ~ 1704년(숙종 30) 11월.

제8책 : 1717년(숙종 43) 7월 ~ 1724년(경종 4) 4월.

대체로 한 달에 두세 건이 기록되어 있으나, 뒤쪽에는 서너 달에 한 번, 또는 1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된 곳도 있다. 1677·1678년분은 제4·5책에 날짜와 내용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1704년 12월부터 1717년 6월까지의 기록은 없다. 간혹 날짜가 뒤바뀐 기사가 수록되는 등 편집상의 착오가 보이기도 한다.

『왜인구청등록』은 1992년 12월 서울대 규장각에서 「규장각자료총서 금호시리즈 대외관계편」이란 이름 아래 3권으로 영인 출간되었다. 영인본 제1권에는 원본 1~2책, 제2권에는 원본 3~5책, 제3권에는 원본 6~8책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 영인본에는 원본의 내용을 날짜별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을 목차에 실고 있어서, 『왜인구청등록』 내용의 윤곽을 파악하기에 대단히 편리하다. 그리고 영인본에는 김윤제(金允濟)의 상세한 해제가 실려 있어서, 필자가 이를 참고·인용하면서 국역본의 해제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일본인의 각종 구청과 관련하여 동래부사나 경상감사 등이 올린 장계와 이에 대한 예조와 비변사의 논의 및 처리과정에 대한 각종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구청물목, 동래부에서의 구청사실 및 감정(減定) 협상보고, 예조 및 비변사의 논의과정과 처리지침, 구청물품의 각도 및 해사(該司)에 대한 조치와 분정(分定)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대 규장각에는 조선후기 대일관계에 관한 각종 등록류가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류를 상세하게 분석한 한문중(韓文鍾)의 연구에 따르면,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는 30여종에 이른다. 참고로 그 제목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각양차왜등록목록(各樣差倭騰錄目錄)』, 『고부차왜등록(告訃差倭騰錄)』, 『공작미등록(公作米騰錄)』, 『도주고환차왜등록(島主告還差倭騰錄)』, 『고환등록(告還騰錄)』, 『도중실화등록(島中失火騰錄)』, 『동래부접대등록(東萊府接待騰錄)』, 『동래부접왜장계등록가고사목록초책(東萊府接倭狀啓騰錄可考事目錄抄冊)』, 『논상사미등록(論賞賜米騰錄)』, 『별차왜등록(別差倭騰錄)』, 『서계위식등록(書契違式騰錄)』, 『세선응련등록(歲船鷹連騰錄)』, 『세선정탈등록(歲船定奪騰錄)』, 『세선항식출래등록(歲船恒式出來騰錄)』, 『역관상언등록(譯

官上言謄錄』, 『왜관수리등록(倭館修理謄錄)』, 『왜관이건등록(倭館移建謄錄)』, 『왜인구청등록(倭人求請謄錄)』, 『왜인작나등록(倭人作拏謄錄)』, 『재판차왜등록(裁判差倭謄錄)』, 『전객사별등록(典客司別謄錄)』, 『조위차왜등록(弔慰差倭謄錄)』, 『진하차왜등록(陳賀差倭謄錄)』, 『징채등록(徵債謄錄)』, 『치하(차왜)등록(致賀(差倭)謄錄)』,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通信使往還時廣州府板橋站舉行謄錄)』, 『통신사초등록(通信使草謄錄)』, 『표왜입송등록(漂倭入送謄錄)』, 『표왜입송회사등록(漂倭入送回謝謄錄)』,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謄錄)』, 『표인영래차왜등록(漂人領來差倭謄錄)』, 『회사차왜등록(回謝差倭謄錄)』

30여 종의 등록 가운데 동래부에서 편찬한 『동래부접대등록』, 『동래부접왜장계등록』과 광주부에서 편찬한 『통신사왕환시광주부판교참거행등록』을 제외한 나머지는 예조나 예조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예조에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록류도 실제로는 대부분 예조 속사인 전객사에서 편찬한 것이다.

등록이란 이전의 전례(前例)를 적어 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그 집무사항을 적은 관아문서와, 관아 사이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사수록(謄寫收錄)한 책자를 작성하여 해당 사안의 ‘등록(謄錄)’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등록 작업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중요문서로서 영구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에 한하여 행해졌다. 등록에는 문서를 연월일순으로 나열하였는데, 그 사이에 설명이나 고설(考說)을 붙이지 않은 가장 일차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조정에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때 등록을 참고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춘관지』 구청조에 보면, 「또 특별히 구청이 있으면, 혹은 조정에서 사급(賜給)하기도 하고, 혹은 민간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그것은 본조 등록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지금은 오직 그 조목만 들어서 후일의 상고(相考)에 대비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조 등록’이 바로 『왜인구청등록』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춘관지를 편찬하는데 『왜인구청등록』이 일차 사료로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춘관지』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외교자료집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변례

집요』(예조 전객사 편), 『동문회고』(예조 승문원 편), 『통문관지』(김지남·김경문 편), 『증정교린지』(김건서 편) 등을 편찬하는데도 『왜인구청등록』을 비롯한 대일관계 등록류가 일차 사료로 이용되었다.

4. 구청 물품

일본은 대마도에서 사용되는 물품이나, 에도(江戶)막부에서 요청한 각종 구청 물품을 연례송사나 각종 차왜가 파견될 때 조선측에 요구하였다. 『변례집요』 구무조에 따르면, 1609년 5월에 일본 사신이 구하는 황납(黃蠟) 200근을 강원도와 경상도에 분정(分定)하고, 준마(駿馬) 4필 가운데 3필은 평시서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여 내려 보내고, 1필은 경상도에서 구입하여 주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일본측에서 황납 200근과 준마 4필을 구청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동년 6월에는 일본 사신에 요구하는 우황 4냥, 청심원(淸心元) 30환(丸), 금박(金箔) 600장, 서각(犀角) 1냥, 석웅황(石雄黃) 4돈, 육종용 1근 10냥, 천궁(川芎) 1근 1냥, 인삼 13근, 웅담 1부(部), 황단(黃丹) 5냥, 매화연(梅花硯) 3부, 황모필(黃毛筆) 90병(柄), 궁궁(芎穹) 10냥, 우황 1부, 황기(黃芪) 10냥, 현호색(玄胡索) 5냥 등을 내려 보내라는 예조의 관문(關文)이 있었다.

『변례집요』 구무조를 보면, 기유약조 체결 후 최초로 파견된 1611년 9월에 도항한 세건제1선은 조선측에 노루[獐子], 사냥개[獵犬], 원정[蚊蜻], 모직물[遼東帽段], 무림목박백지[無簾目薄白紙], 매[俊鷹] 등을 구무(求質)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노루·사냥개·원정은 훈도에게 명하여 상인에게서 구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3 종류와 새로 구청한 웅담은 구하기 어려워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1609년 국교가 재개되면서 일본인들의 구청 요구는 지속되었다. 구청 물품은 『왜인구청등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문종의 연구에는 『왜인구청등록』에 나와 있는 구청 물품을 다음의 10종류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한문종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인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서적류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주자절요(朱子節要), 사기평림(史記評林), 논어, 맹자, 중용, 춘추,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맹자집주(孟子集註), 융학집주(庸學集註), 언해무경칠서(諺解武經七書), 칠서직해(七書直解),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대장경, 문한통고(文韓通考), 속문한통고,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동문선(東文選), 퇴계집, 성재집(誠齋集), 동과집(東坡集), 전등신화(剪燈新話), 호전집해(胡典集解), 이문집람(吏文輯覽), 마의서언해본(馬醫書諺解本), 의학입문, 의학정전(醫學正傳), 의림촬요(醫林撮要), 동의보감, 두진원론(痘疹源論), 비급초본(備急草本), 화제국방(和劑局方), 응골방(鷹鷲方), 참동계(參同契), 십이율(十二律), 대명령(大明令), 예기(禮記), 진간재시집(陳簡齋詩集), 왕형공시집(王荊公詩集), 육상산문집(陸象山文集), 문장변체(文章辨體), 산곡내외별집(山谷內外別集), 이백시집(李白詩集), 두자미시집(杜子美詩集), 영규율수(瀛奎律髓), 조선지도

② 약재류

인삼, 사삼(沙蔘), 오미자, 결명자, 우황, 웅담, 호담(虎膽), 호두골(虎頭骨), 구미(九味)청심원, 숙지황, 백출(白朮), 창출(蒼朮), 황금(黃芩), 황기(黃芪), 상기생(桑寄生), 생호간(生虎肝), 육종용(肉蓯蓉), 목방기(木防己), 지모(知母), 시호(柴胡), 전호(前胡), 마황(麻黃), 상산(常山), 하수오(何首烏), 백림(白蘘), 천문동(天門冬), 승마(升馬), 천마(天麻), 백두옹(白頭翁), 창이(蒼耳), 소계(小薊), 관중(貫中), 호본(蒿本), 누로(漏蘆), 백미(白薇), 호황련(胡黃連), 의이(薏苡), 원지(遠志), 위령선(葳靈仙), 백선피(白蘚皮), 진교(秦艽), 상륙(商陸), 목단, 속단(續斷), 여로(藜蘆), 대계(大薊), 보골지(補骨脂), 목숙(苜蓿)

③ 금수류

응자(鷹子), 양마(良馬), 월라준마(月羅駿馬), 마상재마(馬上才馬), 체대마(體大馬), 나자(驪子), 황앵(黃鶯), 생장(生獐), 생조(生雕), 백양(白羊), 금조(禽鳥), 혈연(穴燕), 전옹(鷓鴣), 야학(野鶴), 활위(活蝟)

④ 모피류

호피, 표피, 양피, 유모웅피(有毛熊皮), 황구피, 적견피(赤犬皮), 당초피(唐貂皮), 어피, 산서피(山鼠皮), 황광피(黃獾皮), 청서피

⑤ 다기·제기류

다완, 등롱(燈籠), 목욕탕기, 종경(鍾磬), 유기, 향로, 촉대, 화병

⑥ 문방구류

진묵(眞墨), 대모필(玳瑁筆), 황모필(黃毛筆), 자필(咨筆), 화룡필(畫龍筆), 오죽필(烏竹筆), 홍당죽필(紅唐竹筆), 화병대필(畫柄大筆), 백죽필(白竹筆), 용편필(龍鞭筆), 도화지, 소유지(小油紙), 색납지(色蠟紙), 색지, 주지(紬紙), 우산지, 금묵(琴墨)

⑦ 직물류

백조포(白照布), 백저포, 세저포, 홍전(紅氈), 잠사(蠶絲), 대금백(大金錦), 생조포(生照布), 대선단(大線段), 대사(大紗)

⑧ 어패류

건대구어, 황대구어, 이어(鯉魚), 문어, 부어(鮒魚), 석린(石鱗), 자안패(子安貝)

⑨ 과일류

호도, 송자(松子), 백자(栝子), 조속(棗栗), 진자(榛子)

⑩ 기타

갑주, 목궁(木弓), 예복, 심의, 원선자(圓扇子), 미선(尾扇), 향선추(香扇墜), 마성(馬省), 석대성(石帶星), 옥대구(玉帶鉤), 금수(錦綉), 영롱당철(玲瓏唐鐵), 지포(紙砲), 당화(唐貨), 백합피갑(白蛤皮甲), 척축(躑躅), 적죽(笛竹), 오죽, 악기, 녹두말(菘豆末), 황납(黃蠟), 자석영(紫石英), 산호, 황옥석

(黃玉石), 백양석(白羊石), 흑양석, 부후석(浮厚石)

이와 같이 왜인이 구정한 물건은 서적, 약재, 금수, 모피, 다기·제기, 문방구, 식물, 해산물, 과일 등 다양하였다. 그 중에서 매와 말 등의 금수류는 주로 대마도주가 막부장군에게 바치는 진상품이었다. 다기·제기류는 막부장군 등 최고 지배층의 구청에 의한 것이 많았다. 특히 제기류는 동조권현궁(東照權現宮; 德川家康), 대유원(大猷院; 德川家光), 엄유원(嚴猷院; 德川家綱) 등의 제사에 사용하는 물품이었다.

서적류는 유교경전이 많으며, 의학 서적, 문집, 대장경, 조선지도 등도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의보감, 의학입문, 의학정전, 의림촬요, 두진원론, 비급초본, 화제국방, 마의서언해 등 의서(醫書)를 많이 구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사기 번조(燔造)에 필요한 각종 흙이나, 별당·정자각 등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구청은 물품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나전장, 유기장, 사기장, 안자장(鞍子匠), 주동장(鑄銅匠) 등 기술자나, 일본인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원, 화원까지도 요청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에 물품을 구청하였다. 대마도의 소[牛] 등 가축류와 칼(刀劍)·유황등 무기나 화약 원료를 구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예조 승문원(承文院)에서 편찬한 『동문회고』(附編 권22) 「청구(請求) 1」에서는 ‘아국인(我國人)’, 「청구(請求) 2」에서는 ‘일본국인(日本國人)’이라 하여, 우리가 구청한 내용은 ‘아국인’ 항목을 설정하여 별도로 정리하였다.

5.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왜인구청등록』에 나오는 일본측의 첫 구청은 정축(인조 15, 1637) 3월 13일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조에서 입계(入啓)하기를, “이제 예조에 계하(啓下)한 이문(移文)을 보니 대마도의 특송선(特送船)과 세견선(歲遣船) 등의 선박에 대하여 도주(島主) 이하 각왜(各倭) 등의 구청 잡물 및 결과(結裹)에 들어갈 잡물이 매우 많습니다. 백저포(白苧布), 백면주(白綿紬), 흑마포(黑麻布), 황모필(黃毛筆), 인삼 등의 물건은 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보내고, 호표피(虎豹皮), 백목(白木), 초주지(草注紙), 초석(草席), 유사(柳筍),

줄바[條所], 유둔(油菴), 유지(油紙), 협판(挾板), 백지 등의 물자는 본도(本道)에서 공물(貢物)의 남은 포목으로 값을 제하고 내어주거나, 혹은 금번의 은가(銀價)로 계감(計減)하여 공무역(公貿易)으로 지급하며, 홍주보(紅紬布)는 본도에서 단목(丹木)을 사들여서 붉게 물들이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백포보(白布布)도 또한 갖추어 지급하면 일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화를 입은 일은 저쪽에서 반드시 모르지는 않을 터인데,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전과 같이 홍희남(洪喜男)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지급하게 함에 마땅하겠기에 감히 입계(入啓)하나이다” 하였다. 전교(傳敎)에 “입계대로 하라”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의 구청에 대한 조선의 처리 방식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백저포·백면주·흑마포·황모필·인삼 등은 호조에서 구입하여 내려 보냈다. 둘째, 호표피·백목·초주지·초석·유사·줄바·유둔·유지·협판·백지 등은 일본에 지급할 공목(公木) 값에서 제하고 주었다. 공목 값이란 대개 공무역으로 일본에서 구입한 물품 값이다. 또는 은 값에서 제하고 주기도 하였다. 은 값이란 일본에서 수입된 은에 대해서 조선측이 지급해야 하는 물품 값을 뜻한다. 셋째, 홍주보·백포보는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다.

구청에 대한 처리 방식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대개 그 요구를 허용하였다. 수량이 많은 물품은 수량을 줄여 허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물품이나 구하기 어려운 물품은 구청을 거절하거나, 왜관 개시일에 상인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였다. 개시무역[사무역]으로 교역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정을 거쳐, 호조·동래부·경상감영 등 해당 관청을 통해 조달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값을 별도로 상계하는 등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청을 허락한 전례가 없는 물품은 엄하게 배척하였다. 이미 허락한 전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구청을 허락하였다. 이러한 구청에 대한 처리과정은 『왜인구청등록』을 이용하여 구청관행과 결제방식 등을 분석한 정경주(鄭景柱)의 연구에서 상세히 언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청의 처리 유형을 ㉠ 해조비급(該曹備給; 호조나 예조 등 물품과 관련된 관청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부비급(本府備給; 동래부에서 마련하여 지급), ㉢ 본도떡급(本道覓給;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 경상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은 다른 도에서 구

하여 지급), ㉞ 자상매매(自相賣買: 왜관에서 상인이 사무역으로 매매)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구청에 대한 거래 결제의 유형은 ㉠ 공목제제(公木計除: 공무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공목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 ㉡ 물화피집(物貨被執: 왜관에 물품을 먼저 반입하고 대금을 뒤에 결제받는 방식)과 은화피집(銀貨被執: 피집물화의 대금을 은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6. 『국역 왜인구청등록(I)』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I)』은 1637년(丁丑, 인조 15) 3월 13일에서 1653년(癸巳, 효종 4) 2월 10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1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一』의 1~342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대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1645
항목수	13	4	13	14	3	3	1	5	3
연 대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합계)
항목수	5	12	7	5	12	3	13	4	120

위의 표에 보면, 국역본(I)에 수록된 기사 건수는 모두 120건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이 시작되는 초기인 1637년에서 1640년까지는 항목 수가 많다가, 1641년에서 1646년까지는 다른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왜인구청등록』도 1637년부터 시작되지만, 앞서 언급한 30여종의 규장각

소장의 대일관계 등록류 가운데 『각양차왜등록목록』, 『공작미등록』, 『논상사미등록』, 『별차왜등록』, 『서계위식등록』, 『세션응련등록』, 『세션정탈등록』, 『역관상언등록』, 『징채등록』, 『치하(차왜)등록』, 『표왜입송등록』, 『회사차왜등록』이 1637년부터 기사가 시작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며, 등록류를 파악하는데도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이처럼 등록의 수록 시기가 1637년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문종이 주목한 바 있다. 한문종은 그 중요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정묘·병자호란(1627·1636년) 등 전란으로 인한 공문서의 소실이다. 전란으로 등록 편찬에 필요한 공문서가 거의 소실되어, 현존하는 등록의 대부분이 병자호란 이후부터 수록하고 있다.

둘째, 병자호란 이후 대청관계의 변화에 따라, 대일관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야나가와[柳川]사건’으로 불리는 국서개정(國書改作)사건을 계기로 도쿠가와[德川]막부는 교토[京都] 오산(五山)의 승려를 대마도 이정암(以酏庵)에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637년부터는 도항하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형식과 교역방법을 간소화하는 겸대제(兼帶制)가 실시되었다. 이처럼 통교체제의 변화에 따라 조선에서도 대일외교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정리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국역본(I)의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청물품과 절차 및 교섭과정 등을 일반적으로 적은 기록과 함께, 목록과 같은 형식으로 구청의 내용을 정리한 항목이 들어 있다. 내용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표기한 것도 있고, 이름 없이 후록의 형식으로 나열한 것도 있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묘(1639) 8월 16일조 역관등수본등서(譯官等手本謄書), 차왜 등지승(藤智繩) 별구청 약재목록, 갑물구청병원매(并願買), 경진(1640) 5월 30일조 후록(後錄), 경진 9월 21일조 후록, 경진 10월 21일조 후록 용약(用藥), 신사(1641) 8월 13일조 후록, 임오(1642) 2월 21일조 왜소지(倭小紙), 후록, 임오 3월 6일조 후록 등지승(藤智繩) 구청약재, 임오 12월 4일조 후록, 갑신(1644) 3월 25일조 서적목록, 을유(1645) 3월 20일조 후록 구청약재류, 구청갑물, 을유 6월 9일조 후록, 정해(1647) 9월 16일조 후록, 정해 12월 3

일조 왜인구무별단(別單), 기축(1649) 7월 20일조 후록 구청물목(物目), 기축 8월 14일조 구무물목, 경인(1650) 10월 21일조 구청물목, 임진(1652) 9월 26일조 구청물목, 임진 11월 19일조 구무물목, 임진 11월 23일조 차왜 굴성정(橘成正) 구청물목 감록(減錄), 계사(1653) 2월 8일조 구청물건 등이다.

이러한 별구청물록, 구청물목, 구청물건, 구무물목, 구무별단, 수본 등 후록 내용들은 기사의 말미에 구청의 물목 내용과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이다.

을유(1645) 6월 9일조 후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도주(島主)	말	본도에 명하여 인근 읍의 말이 있는 곳에 알려 무역을 허락
	피꼬리	본도에서 이미 분정하여 들여줌.
	노루, 다람쥐, 토끼	본도에서 먹급(覓給)
정관(正官)	마서(1부), 문갑, 금은전(金銀箭)	방색(防塞)
	주역(周易) 1부, 화연(花硯), 호육(虎肉), 호안(虎眼), 호간(虎肝), 호담(虎膽), 마성(馬省), 준웅(俊鷹) 1연, 우황(牛黃), 웅담(熊膽),	본도에서 제급(題給)
부사(副使)	『황화집(皇華集)』 1부	방색(防塞)
	진묵(眞墨), 대화연(大花硯), 산수유(山茱萸), 산약(山藥), 우황(牛黃), 택사(澤瀉)	본도에서 제급(題給)
	신발	지급
	상인삼(上人蔘)	가져온 예단 가운데서 털어내어 줌
	황모필(黃毛筆) 30자루	해사(該司)에서 내려 보냄
	숙지황(熟地黃) 2근, 석린(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구청자	구 청 물 품	구청에 대한 조선측 대응
등지승 (藤智繩)	『의림촬요(醫林撮要)』 1부	해사에서 급가하여 의사(醫司)에서 사서 보냄
	호경골(虎脛骨), 호두골(虎頭骨), 호간(虎肝), 호육(虎肉), 황기(黃芪), 당귀(當歸), 대황(大黃), 천궁(川芎), 백출(白朮), 황금(黃芩), 방풍(防風)	본도에서 제급
	지모(知母) 2근, 백렴(白蘘) 2근, 대석린(大石鱗) 10근	황해도에서 제급
	매 1연	강원도에서 제급
	자석영(紫石榮)	방색
봉진압물 (封進押物)	황모필(黃毛筆) 20자루	해사에서 내려보냄
	진묵(眞墨), 백지(白紙), 마성(馬省), 백작약(白芍藥)	본도에서 제급
	숙지황(熟地黃) 2근	황해도에서 제급
	준응(俊鷹)	방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청물품을 도주(島主), 정관(正官), 부사(副使), 등지승(藤智繩), 봉진압물(封進押物) 등 구청자별로 나눈 후, 각 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청물품 가운데는 서적류, 약재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약재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 **경진(1640) 10월 18일조**

정관이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서 섬으로 돌아오는 날 대군이 도주에게 이르기를, 남만(南蠻)의 상선이 이미 끊어져 약재를 얻어 쓸 방도가 없으니 조선의 약재를 널리 무역하라 하거늘, 도주가 어렵지 않다고 대답하였더니, 대군이 크게 기뻐하여 즉시 약사(藥肆)를 예도와 왜경(倭京), 오사카[大坂] 등지에 설치하고, 그 때 이름을 조선약사(朝鮮藥肆)라 하여 내걸었는데, 제가 관(館)에 와서 보니 약을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도주가 대군에게 실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겠다’고 하거늘, 답하기를 ‘전일에 등차(藤差)도 이 일을 말하였

으므로, 동래부사가 이미 상사에게 보고하여 얻기 어려운 것 외에는 아마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였더니, 정관이 말하기를 '전에 이미 보고하였다 하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니, 바라건대 다시 보고하여 재촉해주시도록.

㉔ 경진(1640) 11월 20일조

약재는 대군(大君)이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여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으로, 26종 내에 10종은 각기 1,000근, 16종은 각기 500근을 해마다 팔도록 허락하여 계속 대군 앞으로 납입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산출되는 곳에서 와서 팔도록 해주면 매우 좋겠다. 전일에 약재를 잡종과 혼동하여 내려보냈기에 당연히 사들이지 않을 것이로되 단지 죽은 말의 뼈를 사듯이 당약(唐藥)으로 서로 교환하였으니 또한 양쪽이 편한 일이다.

1640년 당시 도쿠가와막부의 대군은 3대 장군인 도쿠가와 이에미쓰(德川家光)이다. 이 두 기사를 보면, 남만무역이 중단되어 약재를 구하기 어렵게 되자 조선무역에 주력하여, 대군이 에도(江戸), 교토(京都), 오사카(大坂)에 '조선약사(朝鮮藥肆)'를 창건하고 약재를 구청(구무)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 세 곳에 '조선약사(朝鮮藥肆)'가 창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와 관련해서는 타시로 카즈이(田代和生)가 대마번(대마도)의 인삼좌(人蔘座)에 대해 주목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조선인삼을 파는 인삼좌는 에도, 교토, 오사카 등지에 설치되었다. 에도 인삼좌는 1674년에 설치되었다. 따라서 이보다 이미 30여년 전에 이에미쓰에 의해 약재를 파는 조선약사가 창설되었다는 것은, 구청(구무)에 의해 수입된 조선약재가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조선약사와 인삼좌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지금까지 '조선약사'는 기존 연구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다.

7. 『국역 왜인구청등록(II)』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II)』는 1653년(癸巳, 효종 4) 3월 5일부터 1664년(甲辰, 현종 5) 12월 25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2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一』의 345~640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대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항목수	2	6	6	1	15	11	1
연대	1660	1661	1662	1663	1664		(합계)
항목수	18	7	7	15	30		11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56년과 1659년은 각각 1건, 1653년은 2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1664년은 3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1664년은 건수뿐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의 첫 기록은 계사(癸巳, 효종 4, 1653) 3월 5일 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와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가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은 왜인이 구청한 등롱(燈籠)을 왜관에 납입하였더니, 왜인들이 극구 칭찬하였다는 내용, 왜인이 구청한 갑주(甲冑)는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왜인이 간청해 마지않으면 들어주자는 방안, 훈도 김근행(金謹行)은 중병이므로 차도가 있으면 올려 보내려고 하고, 역관 이형남을 그대로 머물게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은 변방의 일은 방편에 따라 선처함이 마땅하므로 장계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의 각 날짜별 기사는 3월 5일조에서 본 것처럼, 동

래부사의 장계, 또는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啓目)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朝廷)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에 기록된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을미(1655) 5월 18일조 소구물목(所求物目), 병신(1656) 8월 26일조 변마수소구유기주성물목(幡摩守所求鎡器鑄成物目), 정유(1657) 1월 26일조 구무별단(求貿別單), 5월 20일조 후록(後錄), 무술(1658) 1월 2일조 구청물목(求請物目),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騰書), 4월 13일조 구무물건별단(求貿物件別單), 9월 22일조 구무별지등서(求貿別紙騰書), 경자(1660) 4월 20일조 물목(物目), 5월 7일조 소구잡물건기(所求雜物件記), 10월 5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신축(1661) 5월 15일조 도주구무물목(島主求貿物目), 임인(1662) 2월 25일조 소구건기(所求件記), 2월 25일조 왜인구무물목별단(倭人求貿物目別單), 3월 13일조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貿見樣別單), 7월 19일조 도주구무물목등서단자(島主求貿物目騰書單子), 계묘(1663) 1월 20일조 후록(後錄; 도주구무물목중허무물종(島主求貿物目中許貿物種), 5월 21일조 후록(後錄), 8월 20일조 도주구무잡물문서(島主求貿雜物文書), 11월 3일조 후록(後錄), 갑진(1664) 1월 5일조 구무잡물건기(求貿雜物件記), 윤6월 3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및 후록(後錄), 12월 21일조 잡물구무건기(雜物求貿件記), 12월 25일조 후록(後錄) 등이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 구무물건등서(求貿物件騰書)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무술(효종 9, 1658) 3월 29일조에 기록된 구무물건(求買物件)

구무물품	수량	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상상인삼(上上人蔘)	100근	해조(該曹)에서 참작, 찾아 줄 것	
상상황금(上上黃金)	5·60냥		
상상 각색 대단(大段)	30필		
상상 금선(錦線)	20필		
상상 선단(線段)	20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백릉기주(白綾其紬)	10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대화용촉(大畫龍燭)	2쌍	본부(本府) 기술자[匠人]들에게 주조하게 하여 지급	
유기 대접[鎡大貼]	3죽(竹)		
유기 보시기[鎡甫兒]	5죽		
백면주(白綿紬)	200필	장사꾼[商賈]들에게 전례대로 매매하게 할 것	
미선(尾扇)	300자루		
녹두가루[菘豆末]	100근	일공(日供)의 지급물자 중에서 끌어다 줄 것	
청밀(淸蜜)	30근		
화석(花席)	30장		
곡수화유지(曲水畫油紙)	30장	본부(本府)에서 편의대로 지급할 것	
후지(厚紙)	50권(卷)	별무(別買)할 필요가 없다는 뜻 전달	상수(喪需) 구청때 많이 지급했음
채전(彩氈)	5·6장	역관(譯官)이 이미 방색(防塞)	서울에서도 구하기 어려움
산호수(珊瑚樹)	1쌍		
옥패(玉佩)	4·50개		
안장(鞍裝)	2부(部)	역관들이 이미 방색	사사로이 무역을 요구할 일이 아님.
대화로(大火爐)	2쌍	역관들이 이미 방색	서울 기술자주조 가능. 육로운송 불가능
대초둔(大草苴)	50번(番)	연례 지급물자로 끌어다 지급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무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물품은 역관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함을 알렸다. 동래부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인들로 하여금 매매를 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룽(燈籠) 구청 문제이다.

등룽에 관한 기사는 1653, 1654, 1655년에 집중되어 있다. 1653년의 2건 중 1건은 등룽에 관한 내용이다. 등룽은 일본측에서 마련한 구리와 납으로 주조하였다. 기술자는 경상도에 분정하였다. 등룽은 큰 석탑(石塔) 형상으로 각 모서리마다 물상을 조각하였다. 왜관에 납입하자, 정밀하게 만들어져 왜관의 왜인들이 매우 만족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654년의 6건 기사는 모두 등룽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등룽의 견본은 에도(江戸)에서 만든 것이었다. 일본측은 등룽을 통신사가 가지고 가서 일광산(日光山)에 두면 광채가 날 것이라고 하였다. 등룽을 주조할 때 일을 감독할 감동(監董) 역관 1인이 서울에서 차출되었다. 일의 중요성 때문에 부산첨사가 전례대로 차사원(差使員)이 되었다.

1653년에 주조한 등룽은 대마도주가 기술자를 빌어와서 주조한 것이어서 형체가 높고 크지 않았다. 1654년의 높이 2자, 너비 3자를 더 요구하였다. 내년엔 갈 통신사행이 등룽을 가지고서 일광산(日光山)에 올려서 계미년(1643) 통신사 때 준 중·향로 등과 함께 두기를 바라며, 특히 등룽에다 명(銘)을 새겨 주기를 원하였다. 등룽명(燈籠銘)에 대해서도 대마도주는 “명 가운데 ‘선귀대군(先貴大君)’ 네 글자를 ‘대유원전(大猷院殿)’으로 고치고, ‘동조(東照)’ 및 ‘대유원(大猷院)’의 두 줄을 한 자쯤 조금 높이 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을미(1655) 1월 6일 기록에는 일광산등룽명병서(日光山燈籠銘并序)가 기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에 일광산 산중에 동조대권현(東照大權現)을 위하여 도량을 넓게 베

풀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법중(法鍾)을 주조하여 보내어 효성을 현창하였거니와, 이제 또 대유원전진(大猷院殿眞)을 아울러 설치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등롱을 주조하여 영산(靈山)에 보내어 숭봉(崇奉)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돕고, 인하여 영모(永慕)하는 뜻을 찬양하여 명을 짓노라. 공덕을 크게 세워 제천(諸天)에 아울러 참여하고, 도량을 이미 열어 지혜의 등불 바야흐로 걸었는데, 구리를 녹여 등롱을 만들어 신광(神光)을 호위하고, 이에 법연(法筵)에 두어서 휘황하게 불꽃을 토하니, 한없이 효성스런 생각으로 명복을 올리나니, 보방(寶坊)을 길이 밝히고, 금륜(金輪)을 영구히 굴리도록. 을미년 월 일.”

이 등롱명(燈籠銘)은 행사직(行司直) 오준(吳竣)이 쓴 것이다(을미 9월 16일조). 1655년에 통신사가 파견될 것을 예견하고, 일본측에서는 1654년 일광산에 둘 등롱을 주조하여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등롱 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통신사를 비롯한 외교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둘째, 화원(畫員) 김명국(金明國)의 회화(繪畫) 구청 문제이다.

김명국의 그림을 요구하는 내용은 임인(1662) 2월 25일, 3월 13일조에 보인다. 막부(幕府) 대군(大君)이 김명국의 그림을 원하므로, 그를 부산 왜관(倭館)에 직접 불러서 수십 폭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싶다고 하였다. 김명국은 전에 통신사를 따라 두 번 일본에 갔는데 그림을 잘 그린다고 칭송을 받아서, 그의 그림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김명국이 그림 그리는데 쓸 화초(畫絢) 2필의 구입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김명국이 연로하고 병들어서, 그림 그리기 위해 천리길을 왕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서울에서 그려 보내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김명국이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왔을 때도 목전에서 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시켜 대신 그리게 할 뿐 아니라, 간혹 술에 취해 붓 놀리는데 힘을 다하지 않은 적이 있으므로, 만약 서울에서 그리면 같은 폐단이 있을 것이므로, 반드시 왜관에 와서 보는 데서 그럴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화초(畵綃), 들어가는 채색 값, 그림 공가(工價), 오고가는 사이의 양식과 말의 비용 등 물자는 일본측에서 부담한다고 하였다. 조정에서는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특히 3월 13일조에는 그림의 견본 내용을 적은 도주구무견양별단(島主求貿見樣別單)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된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초(白綃) 26폭 내 10폭은 길이 2자, 진채색(眞彩色)의 채녀(採女) 그림. 8폭은 길이 3자의 담채색(淡彩色)의 팔선인(八仙人) 그림. 이른바 팔선인은 곧 음중팔선(飲中八仙)을 말함이다. 그린 뒤에 백색 단자(段子)를 잘라 소첩(小籤)을 만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 팔선(八仙)의 호칭을 쓰게 하여 각기 그 화폭 위에 붙이게 하고, 또 하나의 소첩을 만들어 모년 모월 모일 조선국인 김명국이 그렸다고 쓰고, 또 그 도장을 그린 사람 이름 아래에 찍어서 8폭 가운데 마지막 폭의 아래에 붙이며, 8폭은 길이 3자에 진채색으로 춘하추동 네 계절의 큰 산수 경치 및 인물화를 그리고, 모모 풍경이라 써서 각기 소첩을 붙여, 무역하기를 요구하며, 화초 2필이 만약 이 척수에 모자라면 혹 더 사들여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등본을 보냈음.

이 별단 내용을 보면, 요구하는 그림은 채녀화(採女畵)와 팔선인화(八仙人畵), 산수화, 인물화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의 크기, 채색, 화기(畵記), 낙관 등 그림 전반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양국의 회화사, 회화교류사에 대한 문헌 기록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화가 김명국 개인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회화교류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셋째, 서적 구청 문제이다.

서적에 대한 구청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중요한 서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논어, 대학, 맹자, 시경, 서경,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 칠서직해(七書直解),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

子語類),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의례경전(儀禮經傳), 의례경전통해집전(儀禮經傳通解集傳), 성리군서구해(性理群書句解), 사서집석장도(四書輯釋章圖), 사기평림(史記評林), 동의보감, 의림촬요(醫林撮要), 만병회춘(萬病回春), 마의방(馬醫方), 이퇴계전집(李退溪全集),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고사촬요(攷事撮要)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의 종류는 다양하며, 시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 서적은 대마도주나 에도[江戶]의 집권층이 주로 요구하였다. 중국의 유교 경전류가 중심이었다. 그 외에 우리 나라의 의서, 역사, 지리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적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이나 시기에 따라 달랐다. 동래부나 경상도에서 쉽게 구할 수 없을 경우, 책판(冊版)이 지방에 있으면, 그 도에서 인출하여 장정을 하여 동래부로 보내고, 책판이 없으면 해당 관청에서 구하여 보내도록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백급(白給, 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목(公買木)으로 계제(計除)하는 경우에는 편의대로 무역하여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특히 구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책일 경우에는 방색(防塞), 즉 요청을 거절하였다.

예를 들어 계묘(1663) 8월 20일조에 보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 각 1질을 구무(求買)하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서대전 2질, 오경대전 1질은 경상감사, 전라감사에게 명하여 도내에 책판이 있는 곳에서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지급하고, 성리대전, 사기평림, 주자어류는 현재 간행하는 곳이 없다는 뜻으로 방색하도록 하였다. 갑진(1664) 윤6월 3일조에 보면, 이퇴계집(李退溪集) 2권, 고사촬요(攷事撮要) 3권의 구무에 대해, 판본이 산실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넷째, 호피(虎皮) 구청 문제이다.

호피에 대한 구청도 시기에 따라 달랐다. 특히 정유년(1657)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1657년의 기사 15건 중 8건이 호피와 관련된 내용이다.

1655년에는 통신사가 갈 때, 에도에 가서 여러 집정 등에게 보낼 예단예 쓸 명목으로 상호호피(上好虎皮)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을미 5월 18일, 23

일). 1657년에는 체구가 크고 털이 좋은 호피 70장의 구무를 요청하였다(정유 5월 3일). 에도에 화재가 났을 때 대군(大君)의 피물(皮物)로 된 여러 도구들이 모두 타 없어져서 이를 개조하는데 쓸 목적으로 요구한 것이다(정유 6월 11일). 이에 대해 호피가 조선에서 나는 것이지만 해당 관청에 비축한 것이 없고, 나라에서도 쓸 곳이 있으면 각 지방에 분부하여 겨우 수합하여 쓰는 형편이므로, 70장 중 40장만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부족분의 일부는 상인들로 하여금 왜관에서 매매하도록 하였다(정유 6월 8일).

1664년에는 관백(關白)이 호피 60령(令)을 구하므로, 값의 고하는 따지지 말고 좋은 품질의 호피를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60령 중 30령만 무역을 허락하되, 나머지 부족분은 정유년(1657) 사례에 따라 호피 15령은 장사꾼의 사장(私藏) 호피를 내려보내 환무(換貿)하도록 하였다(갑진 2월 5일).

8. 『국역 왜인구청등록(Ⅲ)』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은 1665년(乙巳, 현종 6) 1월 13일부터 1676년(丙辰, 숙종 2) 11월 8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3책,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二』의 3~303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실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연대별 기사항목 수

연 대	1665	1666	1667	1668	1669	1670	1671
항목수	14	7	11	13	7	13	11
연 대	1672	1673	1674	1675	1676		(합계)
항목수	20	9	3	4	8		12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가 상당히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74년과 1675년은 각 3건, 4건으로 가장 적다. 1674년은 건수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다. 이에 비해 1672년은 20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건수뿐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후술하는 것처럼 의원 파견 요청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첫 기록은 을사(乙巳, 현종 6, 1665) 1월 13일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안진(安縝, 1664. 윤6~1666. 9)이 1월 7일에 성첩(成貼)한 장계 내용>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啓目)>의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안진이 성첩한 장계 내용>은 대관왜(代官倭)가 전일 求質한 물건을 내려보내 줄 것을 재촉하는 것에 대해서, ㉠ 이미 무역을 허락한 물건은 빨리 내려보내 주시고, ㉡ 유모웅피(有毛熊皮, 털이 있는 곰가죽)는 전량(全量)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선 확보한 5·6령(令)이라도 내려 보내 주시고, ㉢ 공문 전달을 잘못된 발장(撥將)을 엄하게 조사하여 중한 죄로 다스리라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유모웅피(有毛熊皮) 5·6령은 해조에 명하여 각종의 물종과 함께 일시에 내려보내되, 특별히 금군(禁軍)을 정하여 속히 출발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하며, 공문 전달을 잘못된 해당 발장은 엄하게 조사하여 중한 죄로 다스린 뒤, 후일 이런 폐단이 없도록 3도 감사에게 알림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각 날짜별 기사는 1월 5일조에서 본 것첨럼, 동래부사의 장계, 또는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

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啓目)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朝廷)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後’라고 하여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에 기록된 후록으로는 병오(1666) 5월 10일조 후록(後錄), 정미(1667) 2월 28일조 후록(後錄), 정미(1667) 5월 16일조 후록(後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병오(현종 7, 1666) 5월 10일조 의 후록(後錄)으로 정리된 13종의 구무 내용과 조선측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병오(현종 7, 1666) 5월 10일조 후록(後錄)에 기록된 구무 물품			
구무 물품	구무 수량	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각색 극품(極品) 비단[大段]	100필(匹)	다시 타일러 방색(防塞)하고 절대 허락 하지 않음	
영룡철안(玲瓏鐵鞍)	2부(部)		
극품 엽금(葉金)	100냥[兩]		
이퇴계집(李退溪集)		목 관산 실(散失). 역 관 등이 이미 방색	
상품 약삼(藥參)	100근(斤)	해조에서 마련하여 보내어 무역을 허락할 것	30근 허락
백저포(白苧布)	70필(匹)		30필 허락
각종 쇠금진묵[洒金眞墨]	20동(同)		
녹말가루[菘末]	300근(斤)	본도에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	100근 허락
울무[薏苡]	20말[斗]		10말 허락
대추[大棗]	5섬[石]		3섬 허락
황밀(黃蜜)	100斤		30근 허락
호두[胡桃]	20섬[石]		7섬 허락
잣[栢字]	20섬[石]		7섬 허락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구무물품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다양

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물품은 역관들을 통해 지급하지 못함을 알렸다. 각종 극상품 비단 등 3종은 다시 한번더 거절하면서, 정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상도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의 해당 관청에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에서 보면 허락하는 경우에도 원래 구무 수량의 1/3~1/2 정도선을 허락하고 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식 건물을 짓기 위해 목재, 목수, 화원, 단청 연료 등 구청

이 내용은 을사년(1665) 1월 16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주가 조선의 가옥 제도를 구경하고 싶으나 볼 길이 없어서, 조선의 재목과 목수를 사들여서 왜관에다 기교를 부려 별당(別堂)을 짓고 단청을 화려하게 하였다가, 다시 철거하여 대마도로 운반하여 제도대로 세워서 구경거리로 삼고 싶어 했다. 이에 별당 5칸에 들어가는 목재, 솜씨 좋은 목수 15명, 화원(畫員) 2인, 단청에 들어갈 주홍(朱紅), 황단(黃丹), 백분(白粉) 외에 기타 조선에서 생산되는 각종의 채색(彩色)을 모두 값을 주고 사들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상세히 동래부사에게 고해 달라고 하였다.

관수(館守) 및 대관왜가 이러한 대마도주의 뜻을 훈도 변승업(下承業)에게 전달하자, 변승업은 ‘이런 일은 비록 값을 주고 사서 쓴다 하더라도 그 사이 폐단을 말로 다할 수 없으니 결코 동래부사에게 입을 열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였다. 그러자 관수 등은 대마도주가 나이가 젊어 날마다 경치 구경을 일삼는데, 마음을 먹고 말한 것이어서 중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서 구청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래부사 안진(安縝)이 이러한 내용을 장계하자, 예조에서 에도(江戸)막부에서 청하는 일도 아니며, 새로운 간청이 있을 때마다 청을 따라주면은 후일 무궁한 폐단이 생길 것이므로, 장계에 진술한 것처럼 엄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뜻을 경상도 감사에게도 공문을 보내자는 계목(啓目)을 올려 왕의 허락을 받았다.

기사 내용이 1건에 불과하지만, 대마도주 조선 건물에 대한 관심,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인원, 단청에 필요한 재료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건축관련 자료이다.

둘째. 나전장(螺鈿匠), 유기장(鑰器匠) 구청

나전장에 관한 내용은 을사년(1665) 4월 25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왜관의 대관왜(代官倭)가 ‘전에 나전(螺鈿)을 만들 적에 미진(未盡)한 일이 있으므로, 그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금번에 가지고 왔으니, 전에 작업을 했던 나전장(螺鈿匠)을 이전 인원 수 대로 급히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는 ‘지난번 나전장을 요청하였을 때, 경상도에 보고한 후 경상도에서 통영(統營)으로 공문을 보내어 전례(前例)대로 불러 주어 일을 마쳤는데, 이제 또 불러달라고 청하니 매번 불러주기가 지루하지만, 나전으로 만든 물건을 가져왔다 하니, 전에 불러주었던 장인(匠人)을 이제 와서 거절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도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처럼, ‘다시 불러주기를 허락하는 것이 무방한 듯하므로, 동 나전장을 이전의 인원 수대로 정하여 보내는 뜻’으로 경상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자는 계목(啓目)을 올려 왕의 허락을 받았다.

기사 내용이 1건에 불과하여, 나전으로 만든 물건의 내용과 나전장의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대마도의 조선 나전에 대한 관심도를 알 수 있으며, 특히 통영(統營)의 나전장이 부산 왜관에 직접 와서 대마도측이 요구하는 나전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산을 제외한 경상도 다른 지역과 왜관과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기장에 관한 내용은 경술년(1670) 윤2월 22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에서 사용할 종(鍾)·경(磬), 바라[鉢羅] 등의 물건을 주조하기 위해, 철물(鐵物)을 준비해 주고, 솜씨 좋은 장인 몇 명을 며칠 내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동래부에서는 이 요구에 따라 경내의 유기장(鑰器匠) 몇 명을 왜관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하였다. 대마도가 종 등 불교 관련 물건을 구청하고, 이를 위해 동래부의 유기장이 왜관에 직접 가서 이들 물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공업과 관련된 왜관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셋째, 심의(深衣), 치포관(縹布冠) 등 구청

이 내용은 정미(1667) 2월 28일, 4월 15일, 6월 19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에 문위역관(問慰譯官)으로 갔다온 김근행(金謹行), 최유립(崔裕立) 등의 수본(手本)에 의하면, 대마도주가 심의(深衣), 치포관(縹布冠), 대대(大帶), 복건(幅巾), 신발[履] 등의 구무(求貿)를 요청하였다. 동래부사는 이를 예조에 보고하였다. 예조에서는 무역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왕에게 올려 윤허를 받았다. 심의(深衣) 등 물건은 4월 12일 역관(譯官)편으로 동래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6월 19일 기사에 보면, 왜관에 지급한 심의, 치포관, 대대, 복건, 신발, 혁대(革帶), 오색(五色) 소대(小帶) 등 물건이 왜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그래서 왜관에서는 다시 만들어 내려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예조에서는 이들 물건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또한 일본측의 요청이 간절하니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올려 왕의 윤허를 받았다.

심의는 고결한 선비들이 입던 소매가 넓고 검은 비단으로 가를 두른 흰 베로 만든 옷옷이다. 치포관은 유자(儒者)들이 평상시 쓰던 검은 관이다. 조선의 유자들이 착용하던 옷, 관, 허리띠, 신발 등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넷째. 이정암(以厔菴) 암주(菴主)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관(醫官) 파견 구청

대마도 부중(府中, 嚴原 이즈하라)에 있는 이정암(以厔菴) 암주(菴主)가 병에 걸려 위독하므로, 의술에 정통한 의관을 보내달라는 요청이다. 의관 파견 구청 기사는 임자년 6월 29일, 7월 2일, 7월 5일, 7월 11일에 집중적으로 보인다. <표>의 1672년 20건 가운데 9건이 의관 구청 기사다.

이정암은 외교문서를 관장하기 위하여 에도(江戶)막부에서 대마도에 파견한 승려가 거처하는 암자이다. 1597년에 경철 현소(景轍玄蘇)가 대마도 이즈하라(嚴原)에 세운 암자다. 현소가 태어난 해가 정유(丁酉)년이라서 암자 이름

을 이정암(以酌菴)이라 불렀다. 1635년에 국서개작 폭로사건이 일어난 후 교토〔京都〕 5산의 승려가 윤번으로 파견되어 외교문서를 감찰하였다. 이를 이정암윤번제라고 한다.

1672년(임자) 6월 29일자 내용을 보면, 이정암 암주(菴主)가 병에 걸려 위급하지만 대마도 의원의 의술로는 살릴 수가 없으므로, 의술에 정통한 의관을 꼭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서계(書契)도 함께 보냈다. 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명(署名). 아득히 생각하면 귀국의 돈독한 교화가 평소 그대로이듯, 본방(本邦)도 같습니다. 이제 이정암주(以酌菴主)가 병에 걸린 지 여러 날, 여러 가지 치료가 효험이 없는데, 귀국의 좋은 의원의 진찰을 받게 하면 신기한 효험을 얻겠다고 생각하니, 바라건대 한 사람의 좋은 의원을 가려 불일간에 바다 건너 오기를, 이렇게 바랄 뿐입니다. 나머지는 소개(小价)가 구두로 진술하는데 부치고, 펴지 못합니다. 선문(宣文) 12년 임자 6월 일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계사년(1653)에 이시찬(李時燦)을 보낸 전례가 있고, 서계 내용이 간절하므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염병(染病)에 걸려 중태이므로 의원이 대마도에 도착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니, 예조에서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겠으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시며, 서계에 대한 회답은 승문원(承文院)에도 분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계목을 올려 왕의 윤허를 받았다. 비변사에서도 의관을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전의감(典醫監)에서는 전 전의감정(正) 정신민(鄭信敏)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7월 2일 기사에 보면 정신민을 파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조에서는 전의감과 혜민서(惠民署)에 분부하여 의관을 추천하고, 또 각각 장무관(掌務官)이 와서 대기하여 한 사람을 상세히 물어 가릴 수 있게 하라고 하였다. 전의감은 빨리 추천하였으나, 혜민서는 늦게 추천하였다. 그리고 장무관은 두 곳 모두 오지 않아 선발이 늦어졌다. 그래서 두 곳 장무관을 엄중

하게 징계하라고 하여 완의 윤험을 받았다.

그런데 비변사에서는 정신민의 의술이 저명하지 못하며, 또한 전 동래부사의 군관(軍官)으로 오랫동안 동래에 있다가 이제 갓 서울로 돌아왔기에, 일본인들이 그 얼굴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그의 파견은 부당하고 혜민서 의관 정유각(鄭維覺)과 함득일(咸得一) 중에서 사고가 없는 자를 파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예조에서는 두 사람 중 함득일이 사고가 없고 의술이 조금 낫다고 하므로 함득일을 추천하여 왕의 윤험을 받았다. 이리하여 정신민에서 함득일로 의관이 바뀌게 되었다.

7월 5일 기사를 보면 대마도에서는 비선(飛船)을 보내, 이정암주의 병세가 급하여 조정에서 보내는 의원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므로, 동래부사가 데려온 군관 중에 의술이 있는 자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는 군관 이상후(李尙厚)가 의술을 대략 알고 있지만, 대마도측이 서울 의관을 청하고 또 동래 군관을 청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외람된 일이며, 조정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보낼 수 없으므로 조정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장계를 올렸다. 이에 대해 예조에서는 서울에서 파견한 의관이 곧 도착할 것이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왕의 윤험을 받았다.

그런데 7월 11일 기사를 보면, 대마도측에서는 이정암주가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대마도주가 이정암주의 병환 때문에 밤낮 분주하게 지내다가 병을 얻어 여러 날 앓아누워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서울 의관이 부산에 당도하면 그대로 대마도에 들여보내 한편으로는 이정암주를 위해 들여보냈다는 뜻을 에도막부에 보여주시고, 한편으로는 도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다.

동래부사가 이 내용을 장계하자, 예조에서는 대마도주에게 병환이 있어서 의원을 청하는 것은 이정암주와 비교하면 더욱 간절하고 긴급하므로, 함득일(咸得一)을 그대로 파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동래부에 하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계하여 왕의 윤험을 받았다.

이정암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조선의 의관을 요청한 문제는 병세가 위독하여 조선에서 파견한 의관이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나 조선 조정에서는 대마도의 요청에 따라 대마도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파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당시 조선 의술의 수준에 대한 대마도의 인식과 의관 파견 구청 문제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 양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차왜(差倭)가 거처할 공간 구청

이 내용은 임자년(1672) 7월 11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 제1봉행(奉行)인 삼촌채녀(杉村采女) 평성령(平成令)이 에도의 분부를 받고 곧 왜관에 올 것인데, 왜관에서 실화(失火)한 이후 차왜(差倭)가 들어가 거처할 곳이 없으므로, 부산객사(釜山客舍), 사정(射亭), 영가대(永嘉臺)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훈도(訓導) 김진하(金振夏)는 김근행(金謹行)과 의논한 후 ‘차왜가 나오기도 전에 무리한 말을 발설하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며, 만약 거처할 곳이 없다고 염려되면 여러 차왜와 여러 송사(送使)들이 기한이 차지 않았더라도 속히 돌아가고, 그 방을 비워서 대접함이 마땅하니 무리한 말을 다시 입에서 내지 말라’고 강력하게 거절하였다.

동래부사에 이에 대한 장계를 올리자, 예조에서는 평성령(平成令)이 오는 것은 주간할 일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관사(館舍)를 미리 정돈하면 되고, 부산객사(釜山客舍) 등처를 빌려서 들어가겠다는 것은 매우 무리하므로, 이 뜻을 동래부사에게 하달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왕의 받았다.

왜관에 화재가 난 후이고, 차왜가 대마도 제1봉행이라는 예외적인 특수 상황이지만, 대마도에서 부산객사, 영가대, 사정 등지를 차왜가 머물 공간으로 요청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는 자료이다.

여섯째. 서적 구청

서적에 대한 구청은 특정한 시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구청한 주요 서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의학정전(醫學正傳), 화제국방(和濟局方), 비급본초(備急本草), 의학입문(醫學入門), 두진원론(痘疹原論), 퇴계집(退溪集), 동도사략(東都史略), 문체명변(文體明辨), 사서장도(四書章

圖), 문헌통고(文獻通考), 속문헌통고(續文獻通考), 춘추대전(春秋大全), 춘추호전집해(春秋胡傳集解), 해우진철주(海虞陳哲註), 오경대전(五經大全), 오경찬소(五經纂疏), 십삼경주설(十三經註說),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계몽익전(啓蒙翼傳),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演義), 주자절요(朱子節要), 동국시격품(東國詩格品), 동래독서기(東萊讀書記), 사마온공전가집(司馬溫公傳家集), 진씨악서(陳氏樂書), 오경찬소(五經纂疏), 호운봉역통해(胡雲峰易通解), 춘추찬서(春秋纂書), 호방정찬서(胡芳庭纂書)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은 의서, 사서, 경전, 문집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우리나라 서적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서적이었다. 서적은 에도의 집권층이 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적 구청에 대한 조선측의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랐다. 구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서적은 방색(防塞), 즉 요청을 거절하였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의림촬요(醫林撮要), 의학정전(醫學正傳), 의학입문(醫學入門),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演義) 등 비교적 구하기 쉬운 책은 일본측의 구청 요구를 수용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퇴계집(退溪集)은 요청할 때마다 거절하였다.

일곱째, 고급 비단과 모피(毛皮) 구청

고급 비단과 모피의 구청은 매년 계속되었다. 구청한 고급 모피의 종류와 그 수량을 대략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털 있는 곰가죽[有毛熊皮], 웅피(熊皮) 10~20장[령], 꼬리 있는 담비 가죽[有尾貂皮] 50령, 초피(貂皮) 50~100장[령], 당초피(唐貂皮) 20장, 상초피(常貂皮) 100장, 황구피(黃狗皮) 60~150장[령], 적견피(赤犬皮) 50~300령, 황광피(黃獐皮) 150~500령, 서피(鼠皮) 500령, 청서피(靑鼠皮) 20~100령, 산서피(山鼠皮) 150~300령, 양피(羊皮) 50~200령, 아양피(兒羊皮) 200령, 중앙피(中羊皮) 100~500령, 표범가죽[豹皮] 20령, 호피(虎皮) 15장, 홍전(紅氈) 20~500냥(立), 대홍전(大紅氈) 50냥

초피나 양피처럼, 같은 종류 내에서도 다른 품질의 물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털이 있는 곰가죽, 꼬리 있는 담비 가죽, 체구가 크고 꼬리가 두터운 호피,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텁고 네 발이 흠이 없는 상초피(常貂皮) 등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초피[唐貂皮]는 대개 구청을 거절하였다. 꼬리가 있고 체구가 크고 털이 두텁고 네 발이 흠이 없는 상초피(常貂皮)의 구청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널리 구하였으지만, 발과 발톱이 모두 온전한 것은 전혀 없고, 우리나라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초피는 발톱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구하기 어려우므로, 발톱은 없지만 좋은 품질의 초피를 특별히 골라 구청에 응하였다. 이처럼 거절하거나, 수량을 줄이거나, 구하기 어려우면 비슷한 것을 지급하거나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을 하였다.

각종 비단류의 종류와 그 수량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우사(走于紗) 1동(同), 경광초(輕光綃) 30필, 능지초(綾之綃) 100필, 화사주(花絲紬) 100필, 각색 소사(小紗) 20필, 능(綾) 2필, 초(綃) 19필, 주주(走紬) 100필, 각색 극품(極品) 대단(大緞) 100필, 50필, 백릉(白綾) 50필, 능지주(綾只紬) 50필, 잡색대단(雜色大緞) 10필, 대선단(大線緞) 10필, 소선단(小線緞) 27필, 소금선(小金線) 20필, 각색 능(綾) 100필, 각색 사(紗) 100필, 백방사주(白方絲紬) 100필, 백릉(白綾) 50필, 백화사주(白花絲紬) 100필, 각색 대사(大紗) 30필, 대금선(大金線) 20필, 선단(線緞) 10필, 주사(注紗) 100필

고급 비단류는 대개 중국산이다. 따라서 일본의 구청에 대해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개 거절하였다. 모피나 고급은 대개 에도[江戸]에서 요구한 물품이었다. 에도의 장군을 비롯한 집권층의 중국산 모피나 고급 비단에 대한 수요와 이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9. 『국역 왜인구청등록(IV)』 개관

『국역 왜인구청등록(IV)』는 1677년(丁巳, 숙종 3) 1월 4일부터 1692년(壬申, 숙종 18) 10월 7일까지의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 원본의 제3책~제6책, 즉 규장각 영인본 『倭人求請謄錄 二』의 305~580쪽과 『倭人求請謄錄 三』의 1~94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규장각 영인본에서는 날짜별로 내용을 요약한 요약문을 목차에 신고 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수록된 기사라도 원본에서 문두(文頭)에 ‘一’로 구분하여 시작되는 기사는 독립된 기사로 처리하여 별도의 목차를 달고 있다.

원본에 있는 날짜별로 기사항목을 한 건으로 보고, 연도별 기사항목의 건수(件數)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단 동일한 날이라도 따로 명기되어 있으면, 규장각 영인본에서 정리한 것처럼 다른 건으로 처리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의 연도별 기사항목 수

연 대	1677	1678	1679	1680	1681	1682	1683	1684	1685
항목수	14	28	7	7	9	2	5	6	7
연 대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합계)
항목수	7	9	4	4	8	5	4		126

표에서 보듯이 각 연도별로 항목 수에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82년이 2건으로 가장 적다. 1682년은 건수도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원문의 기록도 양적인 면에서 가장 적은 분량이다. 이에 비해 1678년은 28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인다. 특히 1677년과 1678년이 각각 14건, 28건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원본의 제4책은 이 두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1677년과 1678년의 건수가 특히 많은 것은 기사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즉 원본의 제4책에 1677년이 6건, 1678년이 17건인데, 원본 제5책에 다시 1677년이 8건, 1678년이 11건이다. 영인본 『왜인구청등록』의 해제에서도 이미 밝힌 것처럼, 제4책과 제5책의 기사는 일부 중복되어 있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4책(1677년)	1.25	6.19	8.23	10.9	10.26				
------------	------	------	------	------	-------	--	--	--	--

)									
제5책(1678년)	1.25	6.19	8.23	10.9	10.26				
제4책(1677년)	1. 17	1.28	2.22	윤3.23	윤3.28	6.5	7.1	7.15	8.17
제5책(1678년)	1. 17	1.28	2.22	윤3.23	윤3.28	6.5	7.1	7.15	8.17

표에서 보듯이 원본의 제4책과 제5책에 동일 날자가 중복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의 동일 기사조에서도 이미 서술한 것처럼, 기사도 거의 같은 내용이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의 첫 기록은 정사(丁巳, 숙종 3, 1677) 1월 4일 조이다. 기사의 내용은 <동래부사 이복(李馥, 1676. 7~1679. 2)의 장계>와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첨부한 계목(啓目)>,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는 왜관의 관수왜(館守倭)가 필묵(筆墨), 개가죽, 호두와 잣, 대구어(大口魚), 흰말꼬리, 석린(石鱗), 『동의보감』 등을 무역하기를 요구하고, 또한 왜관의 신관을 조성하는 기간에는 연례송사(年例送使)를 보내는 것을 정지한다고 통고한 것에 대해서, 호두 등 다섯 종류의 요청은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변방의 신하가 함부로 막기 어려워서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은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의 수량이 많으나 그들의 간청에 부응함이 마땅하므로, 예조에 명하여 복계(覆啓)하도록 조치함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은 근래 대마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이 끊이지 않아 부응하기가 어렵지만, 이번에는 연례송사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고,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막기가 불가하므로, 잣 10섬, 흰말꼬리와 말갈기 절반 30근, 석린 5근, 『동의보감』 2질은 허락함이 마땅하고, 호두는 풍기(豊基)와 영천(榮川) 등 몇 읍 사이에서만 생산되어 15섬을 갑자기 얻기 어려우니 10섬만 허락함이 마땅하며, 호두와 잣과 흰말꼬리 갈기는 경상도에 명하여 지급하며, 석린은 해서(海西)에 명하여 올려보내도록 하며,

동의보감은 해당 관청에 명하여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분부함이 좋겠다는 내용이다. 그대로 시행하라는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의 각 날짜별 기사는 1677년 1월 4일조에서 본 것처럼, 동래부사의 장계, 예조나 승정원 등 해당 부서의 입계(入啓), 예조나 비변사 등 해당 부서의 계목 등으로 대개 구성되어 있다. 기사는 왜인들이 요구하는 구청물품, 구청물품에 대한 교섭·조정과정, 동래부사의 보고, 조정의 논의와 결정 등이 기본 내용이다. 구청물품은 본문의 내용 속에도 들어있지만, 별단(別單), 물목(物目)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된 것도 있다. 구체적인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 ‘後’라고 하여 후록(後錄)으로 정리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에 기록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오(1678) 7월 1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신유(1681) 3월 9일조 왜건기(倭件記), 5월 27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임술(1682) 1월 15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무진(1688) 7월 15일조 구무별록(求貿別錄), 경오(1690) 9월 27일조 구청구무건기(求請求貿件記), 임신(1692) 10월 7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 등이다.

이러한 구청이나 구무의 물목, 별단, 등서, 건기, 별록, 단자, 문서, 후록 등은 일본측이 요구하는 물품의 내용과 이에 대한 조선측의 처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어, 구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무오(숙종 4, 1678) 7월 1일조 구무건기(求貿件記)와 예조의 계목을 중심으로, 20종의 구청·구무 내용과 조선측의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무오(숙종 4, 1678) 7월 1일조에 기록된 구청·구무 물품과 조선측의 대응			
구청·구무 물품	수량	구청·구무에 대한 조선측 대응	비고
상상품 흰모시베[白苧布]	30필(匹)	10필을 감함	
상품 생모시베[生苧布]	20필(匹)	무역을 허락	
청서피(靑黍皮)	50령(令)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막음[防塞]	대관왜(代官倭)가 상고에게 무역을 요구
담비가죽[貂皮]	50령(令)		
녹두가루[菘末]	500근(斤)	300근을 감함	
황모필(黃毛筆)	300자루[柄]	100자루를 감함	
대절진묵(大節眞墨)	50동(同)	20동을 감함	
흰양가죽[白羊皮]	100령(令)	50령을 감함	
잣[栲子]	20섬[石]	10섬을 감함	
호두[胡桃]	30섬[石]	15섬을 감함	
대추[大棗]	3섬[石]	산출되기를 기다려 무역을 허락	
큰 대구어[大大口魚]	1500마리[尾]	700마리를 감함	
각색 대사(大紗)	30필(匹)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막음	대관왜가 상고에게 무역을 요구
홍전(紅氈)	500립(立)		
우산지(雨傘紙)	25권(卷)	무역을 허락	
검은 말갈기로 옷을 입힌 마성(馬省)	500개(箇)	200개를 감함	
각색 대단(大段)	2·3필(匹)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막음	대관왜가 상고에게 무역을 요구
각색 금선(金線)	2·3필(匹)		
각색 선단(縑段)	2·3필(匹)		
상품 공목(公木)	200동(同)	품질을 감하고, 필 수를 줄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종의 구청·구무물품에 대해서 조선측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대응 처리하였다. 첫째, 청서피와 담비가죽 등 피물(皮物), 각색 대사, 홍전, 각색 대단, 금선, 선단 등 직물의 7종은 일본측이 요구하였을 때, 역관들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막았다. 따라서 일본측은 대관왜(代官倭)가 상고(商賈)에게서 직접 구하려고 하였다. 둘째, 상상품 흰모시베, 녹두가루, 황모필, 대절진묵, 흰 양가죽, 잣, 호두, 큰 대구어, 검은 말갈기, 상품 공목 등 10종은 요구한 수량을 줄여서 허락하였다. 셋째, 상품 생모시베, 대추, 우산

지 3종은 요구한대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측의 대응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는 1677년 1월 4일~1692년 10월 7일의 내용이다. 이 시기에는 1678년에 왜관이 이전되고, 1682년에 통신사가 파견되는 등 양국간의 관계에서 주요한 사안이 일어났다. 따라서 『국역 왜인구청등록(IV)』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수록되어 있다. 정사년(1677) 1월 4일 기사를 보면, 신관(新館)의 큰 역사로 온갖 폐단이 생겨 도내 백성의 재력이 거의 고갈되는 것이 염려되며, 줄 지어 오는 송사(送使)를 접대할 가건물을 수리하는 공사, 연향과 접대 등 각종 수응(酬應)의 폐단도 적지 않으므로, 신관을 조성하는 기간에는 송사(送使)를 파견하지 말아서 조금이라도 병폐를 덜도록 하였다. 무오년(1678) 7월 15일 기사에는 대마도주가 이 건한 객관(客館)의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묘하면서 화려하다는 소문을 듣고 조선측에 정자각의 구청을 요구한 내용과, 8월 17일 기사에는 관사(館舍) 건물이 신속히 완성된 것에 대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대마도주가 별도의 서계를 보내 치하한다는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V)』에 보이는 구청·구무 관련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점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전장, 유기장의 구청

나전장, 유기장에 관한 내용은 정사년(1677) 8월 23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대마도주의 봉행(奉行)이 사서(私書)를 보내어 나전장, 유기장의 파견을 청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도주의 아들이 에도[江戸]로 들어갈 때 쓸 약간의 유기(鑰器) 및 나전(螺鈿) 연갑(硯匣) 등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이 물건들은 모두 특이한 형태라서 지시하여 만들어야 하므로, 유기장(鑰器匠) 1인과 나전장(螺鈿匠) 1인을 불러와 주면 왜관에서 지시하여 값을 주고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즉 유기와 나전을 만들기 위해 유기장과 나전장 1명씩을 왜관에 파견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래부사는 유기장은 일본에 없다고 하므로 보내는 것이 무방하

지만, 나전장은 일본에도 많을 뿐 아니라 솜씨와 품질이 정교한데 청하는 것은 매우 수상하며, 유기장은 동래부에도 솜씨 좋은 자가 있어서 응하기 어렵지 않으나, 나전장은 동래부에 기술자가 없고, 통영(統營)의 기술자를 부르는 것 또한 폐단이 많으므로, 유기장만 파견하고 나전장은 파견하지 않기를 청하였다. 예조도 동래부사의 장계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나전장을 파견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일본측은 명분을 내세워 다시 나전장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 내용은 정사년(1677) 10월 26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에서는 일본에 나전장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가사키[長崎]나 오사카[大坂]에 있는 것이고 대마도에는 없으며, 조선의 나전이 비록 매우 거칠고 조잡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모두 진귀한 보배로 여기므로, 나전 연층함(硯層函) 서너 가지를 만들기 위해 한 두 기술자를 열흘 정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요청이 있자, 예조는 나전장 한 두 명을 한 달 정도 파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경상도에 명하여 나전장이 있는 곳에 분부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유기장과 나전장의 구청 문제에 대해서는 『국역 왜인구청등록(Ⅲ)』의 해제에서도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있다. 당시 일본측의 조선 유기와 나전에 대한 관심과 구청, 그리고 유기장은 동래부, 나전장은 통영 소속의 장인이 왜관에 파견되어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등 수공업과 관련된 동래부, 경상도와 왜관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정자각의 구청

이 내용은 무오년(1678) 7월 15일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가옥(家屋) 제도가 정밀하고 좋다는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한 지 오래되어 볼 만한 몇 칸 정자각(亭子閣)을 무역할 것을 요구하였다. 즉 영가대(永嘉臺)와 같은 정자각 가운데 지은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가옥을 헐어서 철거하여 주되, 기둥과 들보, 도리와 서까래에 날날이 표를 하여 대마도로 들여보내어 고쳐 지을 때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먼저 왜학역관들은 조선의 가옥 제도에는 교묘한 장식

이 없고, 영가대와 같은 정자는 매우 드물며, 이미 지은 집을 헐어 철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옮길 때 손상되거나 착오가 생기는 염려가 생기며, 표를 해도 옮긴 뒤에는 단청 모양이 원래대로 될 수 없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집을 철거하는 폐단이 있지만 가격대로 값을 주어 고쳐 짓게 하면 손상되는 바가 없으며, 운송 비용도 지급하겠으니, 단청의 유무는 헤아리지 말고 서너 칸 정자각의 목재와 기와와 창호 판자에까지 하나하나 표를 하여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이것은 초량왜관 공사를 완공한 뒤로 대마도주가 조선에서 이긴한 객관(客館)의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교하고 화려하다는 소문을 상세히 듣고, 이전부터 보고 싶어 하던 마음을 막을 수 없어 간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동래부사는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전후에 없었던 일이어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조정의 처분을 기다리는 입장을 취하였다. 예조에서도 동래부사의 의견에 따라 그들의 요청에 따라 줌으로써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줄 필요가 없으니, 타당한 사유를 들어서 거절하라고 하였다.

『국역 왜인구청등록(III)』의 해제에서도 을사년(1665) 1월 16일조에서 대마도주가 조선식 건물을 짓기 위해 목재, 목수, 화원, 단청 원료 등을 구청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다. 1678년 7월 15일 기사에서는 정자각을 요구하면서, 그 기준으로 영가대를 들고 있다. 영가대의 건물 구조와 관련, 정자각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특히 1678년에 초량왜관으로 왜관이 이전된 후, 대마도주의 왜관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자각을 구입하려고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셋째, 도자기를 굽기 위한 흙, 땀감 및 장인(匠人)의 구청

이 내용은 무오년(1678) 8월 22일, 신유년(1681) 3월 2일, 3월 9일, 을축년(1685) 7월 27일, 정묘년(1687) 7월 2일, 무진년(1688) 11월 8일, 기사년(1689) 3월 5일, 경오년(1690) 5월 26일, 임신년(1692) 10월 7일 조에 수록되어 있다. 1678년부터 1692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구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78년에 일본측에서는 사기(沙器)를 구워 만들 때 들어갈 각종 물자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경상도에 명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1681년 3월 2일 기사를 보면, 사기를 굽기 위해 대마도에서 감역왜(監役倭) 2인, 공장왜(工匠倭) 2인, 화공왜(畫工倭) 2인, 조각왜(彫刻倭) 2인 등이 파견되었다. 에도막부의 새 관백이 청하는 사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때에는 대마도주 평의진(平義眞)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내는 서제도 함께 왔다. 이에 의하면 관백이 요구하는 도자기 수량이 많으므로, 솜씨 좋은 조선의 도공(陶工), 백토(白土)와 약토(藥土) 등 흙, 송토목(松土木) 등 장작 등을 왜관에 보내주기를 청하였다. 조선측에서는 전례를 들어서 이를 허용하였다. 3월 9일 기사를 보면, 당시 약토 70섬, 백토 610섬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백토는 610섬 가운데 110섬을 줄였다. 그런데 이 수량은 5말[斗]을 1섬[石]으로 계산한 것이다. 조선측 도량형을 기준으로 15말을 1섬으로 계산하면 약토와 백토 아울러 190섬 정도였다. 당시 양국간에 도량형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1685년 7월 27일 기사를 보면, 다완(茶碗)을 만들기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된 감역왜 3인, 공장왜 2인, 차지(次知) 금도왜(禁徒倭) 3인 등이 서계를 가지고 초량왜관에 왔다. 일본측에서는 이들이 거쳐하는 임시 가옥을 전례대로 만들어 주고, 백토와 약토, 토목, 공장은 신유년(1681)의 전례에 따를 것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신유년 사례에 따라, 백토 166섬 10말, 약토 23섬 5말을 지급하고 장인 2명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당시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는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 이에 도기를 만들기 위하여 도공(陶工) 몇을 차출하여 보내오니, 바라건대 전례에 따라 귀국의 도공과 흙과 장작 및 임시 가옥과 여러 도구 등의 물자를 소용되는 대로 왜관에 들여주시면 매우 다행이옵기에 간절히 바라오며, 양찰해 주시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정형(貞亨) 2년 을축(1685) 5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진 서계.”

1687년 7월 2일 기사를 보면, 사기를 만들기 위해 송토목 30짐[法], 임시 가옥을 수리할 재목 및 울타리, 양산의 사기장 1명, 기장의 사기장 1명을 왜관으로 들여보내고, 경주, 진주, 곤양, 하동의 백토 각 45섬, 김해의 적감토(赤紺土) 90섬, 울산의 약토 90섬도 전례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에도 대마도주 평의진이 보낸 서계가 왔으며, 서계의 내용이 7월 2일조 기사에 수록되어 있다.

1690년 5월 26일 기사를 보면,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하여 곤양의 백토 22섬, 하동의 백토 13섬, 진주의 백토 22섬, 김해의 옹기흙[甕土] 15섬, 감색 흙[柿色土] 62섬, 경주의 백토 44섬, 울산의 약백토 55섬과 땀감을 요청하였다.

1692년 10월 7일 기사를 보면,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흙을 구청하는 대마도 봉행 등의 서계가 수록되어 있다. 일본측에서는 경주의 백토 100섬, 울산의 약토 100섬, 김해의 적감색(赤紺色) 흙 120섬, 하동의 백토 40섬, 진주의 백토 40섬, 김해의 옹기흙 30섬, 곤양의 백토 40섬을 구청하였다. 대마도주의 가신 평진행(平眞幸) 등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낸 서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 대마주 가신 등은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대인 합하게 서찰을 받들어 올리며 정회(情懷)를 펴니다. 아득히 생각하건대 귀국이 태평하여 위안되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본방(本邦) 또한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수가 지난해부터 간절하게 구하였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는바, 도기를 만들기 위하여 기술자 몇 명을 차출하여 관소(館所)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좋은 흙이 적고 계속하여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기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기술자들은 빈손으로 관사에 머물러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는 바는 흙과 땀감을 장애 없이 왜관으로 들여보내도록 지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에 철에 맞추어 보충하시기 바라오며, 숙배하고 다 펼치지 못합니다. 원록 5년 임신(1692) 4월 일 대마주 가신 평진행(平眞幸) 평성정(平成政) 평진현(平眞賢) 등. 도서(圖書).”

1639년부터 1743년까지 약 100년간 두모포왜관과 초량왜관에는 대마변이 운영하는 도자기 가마가 있었다. 이것을 일본측 자료에서는 부산요(釜山窯)라고 부른다. 초량왜관 때의 가마는 용두산 공원 남쪽, 즉 일제시기 부산부립병원이 있던 부근에 있었다.

도자기 조성을 위해 조선측 도공을 왜관에 파견해 달라는 구청에 대해서는 동래나 양산, 기장의 도공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자기의 원료인 흙은 경주, 진주, 곤양, 하동, 김해, 울산 지역의 백토, 적감토, 약토, 옹토 등이 지급되었다. 당시 초량왜관 부산요의 도자기 구성과 관련된 부산, 경남지역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다. 특히 장인, 흙, 맬감 등을 요청하는 대마도주 및 그 가신의 서계는 서계의 양식을 비롯한 양국 교류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넷째, 서적의 구청

이 내용은 정사년(1677) 1월 4일, 무오(1678) 1월 17일, 2월 4일, 22일, 기미년(1679) 7월 10일, 28일, 경신년(1680) 4월 27일, 6월 14일, 신유년(1681) 12월 19일, 경오년(1690) 9월 27일, 11월 16일, 12월 4일, 신미년(1691) 3월 8일, 7월 1일, 윤7월 27일, 임신년(1692) 3월 4일, 10월 7일조 등에 수록되어 있다. 1677년부터 1692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쳐 구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77년 1월 일본측에서는 『동의보감』 2질을 구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관청에 명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1678년 1월에는 사서(四書) 2부의 무역을 요청하였다. 2월 4일 기사를 보면, 사서 중 『대학』은 판본(板本)이 안동부에 있으므로, 안동에 명하여 인출(印出)하고 장정을 하여 보낼 계획이고, 『논어』와 『맹자』는 판본이 경주부, 『중용』은 성주목에 있는데 판각한 지 오래되어 인출할 수 없으므로, 『논어』, 『맹자』, 『중용』은 전라도에서 2질씩 인출하고 장정하여 동래부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2월 22일 기사를 보면, 전라도에 있는 판본도 해가 오래되어 인출하여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래서 새로 판각한 책판이 모두 성균관에 있으니 호조에서 종이를 마련, 교서관(校書館)에 지급하여 빨리 정밀하게 인출하여 일본측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1679년 7월 10일 기사를 보면,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이퇴계집』, 『동문선』 1질씩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이퇴계문집』과 『동문선』은 판본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의례경전속통해』는 1667년에 1질을 지급한 예가 있고, 3건 모두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경상도에 명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7월 28일 기사를 보면, 『의례경전통해』의 판본은 경상도에 있으나, 『의례경전속통해』의 판본은 전라도 전주부에 있으므로, 전라도에서 1질을 인쇄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1680년 4월 27일 기사를 보면, 전라도에서 아직 보내지 않아서 이를 독촉하고 있다.

1681년 12월 19일조 기사를 보면, 『동의보감』 5질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수량이 과다하지만, 통신사(通信使)가 갈 때 사용할 것이고, 얻기 어려운 것도 아니어서 허락하였다. 1690년 9월 27일 기사를 보면, 『사서집주』, 『사서대전』 2부씩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은 『사서대전』과 『논어집주』는 장정을 하고 있지만, 『중용집주』, 『대학집주』, 『맹자집주』는 판본이 없어 인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1690년 11월 16일조).

1690년 12월 4일 기사를 보면, 관백의 내의소(內醫所)에서 구하는 『동의보감』 3부, 『찬도(纂圖)』 3부의 무역을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값을 주어 사서 보내도록 하였다. 1691년 3월 8일 기사를 보면, 에도의 집정(執政)이 구하는 『주역』, 『춘추』, 『모시(毛詩)』, 『상서(尙書)』, 『예기』, 『효경』, 『논어』, 『맹자』, 『주례』, 『의례(儀禮)』,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이아(爾雅)』 등 함께 13책을 각 1부씩 구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에도의 집정의 아들로서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공양전』, 『곡량전』, 『이아』는 판본이 없어서 허락하지 않고, 나머지 10종의 책은 해당 관청에 값을 주어 사 보내도록 하였다.

1691년 7월 1일 기사를 보면, 『사서대전』 2부, 『오경대전』, 『성리대전』, 『이정전서(二程全書)』, 『주장전서(周張全書)』,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자어류(朱子語類)』 각 1부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에서는 『주장전서』는 우리나라에 없는 책이므로 허락하지 말고, 나머지 책은 허락하도록 하였다. 다만, 『사서대전』은 책의 길이를 줄이도록 하였

다.(1691년 윤7월 27일조). 1692년에는 『동의보감』을 각각 2부, 3부씩 구청한 적이 있었다. 조선에서는 그대로 허락하였다.(1692년 3월 4일, 10월 7일조).

『동의보감』은 관백의 내의소 등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 많았다. 일본측이 구청한 서적은 의서, 사서, 경전, 성리학서, 문집 등 종류가 다양하였다. 조선에서는 구청한 서적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대응을 보였다. 이들 기사는 당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던 판본의 현황은 물론,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의 서적 교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다섯째, 마른 대구[乾大口魚]의 구청

일본측의 구청, 구무 물품 가운데 어물(魚物)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른 대구이다. 이 내용은 정사년(1677) 1월 4일, 무오년(1678) 1월 28일, 윤3월 23일, 6월 5일, 7월 1일, 12월 30일, 경신년(1680) 3월 21일, 4월 4일, 11월 16일, 신유년(1681) 5월 27일, 12월 19일, 계해년(1683) 9월 5일, 12월 17일, 갑자년(1684) 9월 23일, 을축년(1685) 7월 27일, 병인년(1686) 1월 15일, 11월 8일, 정묘년(1687) 10월 3일, 무진년(1688) 7월 15일, 신미년(1691) 10월 13일, 임신년(1692) 1월 3일, 10월 7일조 등에 수록되어 있다. 1677년부터 169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번에 요청하는 대구어 수는 최하 300마리에서 최고 4,000마리였다. 보통 1,500마리, 2,000마리를 요청하였다. 대마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때, 즉 참근교대(參勤交代) 때 여러 곳에 사용하기 위한 것, 도주가 새 관백에게 예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도주가 에도에 있으면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 통신사가 갈 때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의 구입을 요청하였다.

대구는 원래 개시(開市)에서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며(1683년 9월 5일), 장사꾼 등에게서 사더라도 모두 몸이 적어 에도에서 사용하기에 맞지 않다는(1684년 9월 23일) 등 이유로, 몸집이 큰 마른 대구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4,000마리는 수량이 너무 많으므로 절반으로 줄이거나

(1678 1월 28일조 등), 아니면 대개 그 요구대로 들어주었다. 마른 대구 등 어물의 구청, 구무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류사는 물론, 당시 어업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여섯째, 말[馬]의 구청

일본측의 구청, 구무 물품 가운데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말[馬]의 요청이 많다는 점이다. 이 내용은 무오년(1678) 윤3월 28일, 8월 17일, 9월 5일, 6일, 11월 19일, 12월 11일, 기미년(1679) 2월 2일, 5월 6일, 7월 28일, 경신년(1680) 12월 12일, 신유(1681) 1월 22일, 신유년(1681) 4월 29일, 을축년(1685) 10월 6일, 23일, 병인년(1686) 2월 4일, 경오년(1690) 5월 26일, 7월 5일, 10월 9일, 신미년(1691) 3월 8일, 10월 22일, 12월 3일조 등에 수록되어 있다. 1678년부터 169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구청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요구한 말의 종류는 다양하였다. 어린 숫말, 체구가 큰 준마, 얼룩말[月羅馬] 중에서 코를 가르지 아니한 것, 달마(獐馬), 나이 여섯에서 일곱 여덟이 되는 얼룩말[駮馬]과 흑마(黑馬) 등이었다. 말은 대개 예도의 대군,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조선에서는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도리라는 명분 때문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량을 줄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예비로 1~2 마리를 보냈다. 이마(理馬) 1인과 양마(養馬) 1인을 정하여 말을 데리고 가게 하였다. 그런데 말을 구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말을 구입하는 가격이 시중 가격에 비해 너무 비싼 문제이다. 1678년 9월 6일 기사를 보면, 요구하는 말의 크기와 채질과 품격이 칙사(勅使)의 예단마(禮單馬) 정도로 시중 가격이 30여 냥에 지나지 않는데도 60여 냥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특히 1663년 연간에 값을 너무 많이 주어서, 지금 말 주인들이 바라는 바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말 주인들은 값을 말하지 않고 다만 '예전의 등록(騰錄)이 호조에 있다'고만 하여, 그 등록을 불사르는 일가지 일어났다. 그리고 낡은 버릇을 답습하는 자는 양반, 상놈을 막론하고 처벌하도

록 하였다.

둘째, 조선에서 지급하는 말이 요구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하는 점퇴(點退) 문제이다. 1678년 11월 19일 기사를 보면, 말의 체구가 작다고 하여 받지 아니하고, 대신 체구가 큰 얼룩말(月羅馬)로서 코를 가르지 아니한 말을 요구하였다. 점퇴 문제는 관백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더욱 빈번하였다.

1680년 12월 12일 기사를 보면, 관백이 체구가 크고 극히 좋은 준마 즉, 나이 여섯에서 일곱 여덟이 되는 얼룩말(駮馬)과 흑마(黑馬)의 무역을 요청하였다. 이런 말을 구하기 어려우면 구랑마(仇郎馬)나 청가라(靑加羅)라도 무방하며, 재능과 품격은 잘 견거나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구가 얼룩말이거나 흑색이면 잘 달리거나 견지 못해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얼룩말은 월라(月羅), 도화(桃花)의 종류이고, 흑마는 가라마(加羅馬)였다. 조선에서는 어렵게 구하여 보냈으나, 1681년 1월 22일을 보면, 요구한 말 3필을 보냈더니 왜관에서 말이 모두 노둔하다고 바꾸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1690년 5월 26일을 보면, 고리눈얼룩말(月羅環眼馬) 1필, 순색의 고리눈말(環眼馬) 1필 중 너댓 살 되는 준마를 요청하였다. 1690년 7월 5일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색의 환목마(環目馬; 고리눈의 말)의 실차마(實差馬: 실제로 팔기 위한 말)와 예차마(預差馬: 예비용 말) 모두 4필을 이마 민계현(閔繼賢)과 양마 이백형(李白亨) 등에게 주어 내려 보냈다. 이번에는 말에 있는 선모(旋毛: 가마)가 문제가 되었다.

일본측은 오류월라(烏騮月羅) 1필과 순백마 1필에 대해 이마 등에게 ‘이 말 두 필은 모두 선모가 없는가?’ 물었다. 이마가 ‘없다’고 하였지만, 이마왜(理馬倭)가 말 목덜미 아래에 있는 가마를 지적하였다. 목덜미 아래 명문(命門)의 가마는 『마의방(馬醫方)』에서 가장 꺼리므로 일본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하여 타지 않는다고 하자, 이마는 ‘우리나라에서는 두 귀 뒤쪽 양편 뺨 위의 가마 밖에 기타는 해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받지 않았다. 이와 같은 말의 구청, 구무는 조선과 일본과의 교류사는 물론, 당시 말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나 관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일곱째, 통신사와 관련된 물품의 구청

통신사가 파견될 때, 이를 계기로 다양한 물품을 요구하였다. 이 내용은 신유년(1681) 12월 19일, 임술년(1682) 1월 15일, 2월 7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1682년(숙종 8)에 파견된 통신사행(정사 윤지완)과 관련된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유년(1681) 12월 19일 기사를 보면, 정품(精品) 말안장 삼거리(三巨里)를 갖춘 것 2부, 자필(咨筆) 200자루, 『동의보감』 5질, 대구어 2,000마리, 호두 30섬, 10섬, 녹두가루 300근, 한림풍월 대절진묵 20동 등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특히 통신사가 올 때 사용할 것이라서 평상와는 크게 다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측에서는 수량이 비록 과다하지만 통신사가 갈 때 사용할 것이고,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라서 말 안장과 자필, 한림풍월 대절진묵, 동의보감 등은 해당 관청에, 대구어와 호두, 잣, 녹두가루 등은 경상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임술년(1682) 1월 15일 기사를 보면, 통신사가 올 때 사용할 곳이 허다하여, 다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표범가죽[豹皮] 30령, 생모시베[生苧布] 70필, 흰모시베[白苧布] 10필, 꼬리를 갖춘 향초피(鄉貂皮) 100령, 양가죽[羊皮] 150령, 대추 3섬, 죽은 범 전체 1마리 등의 무역을 요구하였다. 조선측에서는 사행 때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해당 관청, 경상도, 강원도에서 마련하여 지급하되, 표범가죽은 10령을 줄이도록 하였다.

이처럼 에도에서는 통신사가 올 때 사용할 것이라든 하면서 표범가죽, 향초피, 양가죽, 죽은 범 등 피물, 모시 등 직물 등 다양한 물품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통신사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명분 때문에 대개는 요구대로 허락하였다. 이 내용은 통신사의 접대와 관련하여 일본측에서 요구하는 구청, 구무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왜인구청등록』은 등록이라는 자료의 특수성 때문에 구청[구무]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공목계제(公木計除), 물화피집(物貨被執)·은화피집(銀貨被執)은 공무역의 대금 결제와 맞물려 있어,

공무역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구청의 처리 유형의 하나인 자상매매(自相賣買; 私相賣買)는 개시무역[사무역]의 실태를 아는 데도 유용하다.

그러므로 『변례집요』 · 『동문회고』 · 『춘관지』 · 『증정교린지』 · 『통문관지』 등 대일 외교관계의 기본 자료집, 『전객사별등록』 · 『논상사미등록』 · 『공작미등록』 · 『세선응련등록』 · 『세선정탈등록』 · 『각양차왜등록 목록』 등 등록류, 그리고 대마도 종가문서(宗家文書)의 관련 기록 등과 서로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선후기 조선과 일본과의 교역에 관해서는 최근 많은 연구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교역사에 관한 연구는 공무역, 개시무역[사무역], 밀무역에 관한 연구가 중심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진상과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경주의 연구가 유일하다. 구청(구무)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증여와 유상으로 지급되는 무역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독특한 물품 교류이다. 외교와 무역이 미분리된 채 이루어지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의 경제교류의 독특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이번 국역본의 간행을 계기로 구청(구무)을 비롯한 조선과 일본과의 외교·무역교류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해제는 다음 참고문헌의 성과를 참고하여, 상당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 金文濟, 「倭人求請謄錄 해제」 『倭人求請謄錄 一』, 서울대 규장각, 199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제 V 집, 史部 2), 서울대도서관, 1982, 188쪽 「倭人求請謄錄」 항목.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I)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4.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II)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II)』, 부산시사편찬위원회, 2005.

- 김동철, 「국역 왜인구청등록(III) 해제」 『국역 왜인구청등록(III)』, 부산시 사편찬위원회, 2006.
- 金東哲, 「通信使 隨行 馬上才의 構成과 活動」 『조선통신사연구』 3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 梁興淑, 「17~18세기 譯官의 對日貿易」 『지역과 역사』 5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
- 鄭景柱, 「仁祖-肅宗朝의 倭人 求請慣行과 決濟方式-朝鮮後期 對日貿易 事例 紹介-」 『貿易評論』 창간호, 경성대 무역연구소, 1994.
- 韓文鍾,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 연구-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국사관 논총』 8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9.
- 李俊杰, 『朝鮮時代 日本과 書籍交流研究』, 홍익재, 1986.
- 張舜順, 『朝鮮時代 倭館變遷史 研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1.
- 鄭成一, 『朝鮮後期 對日貿易』, 신서원, 2000.
- 정성일 옮김, 『왜관』(田代和生 지음), 논형, 2005.
- 洪性德, 『十七世紀 朝·日 外交使行 研究』, 전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
- 山本博文, 『對馬藩江戸家老』, 講談社, 1995.
-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 泉澄一, 『釜山窯の史的研究』, 關西大學出版部, 1986.
- 淺川伯教, 『釜山窯と對州窯』, 彩壺會, 1930.
- 『국역 춘관지』, 법제처, 1976.
-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국역 통문관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 『邊例集要』(활자본), 국사편찬위원회, 1970.
- 『同文集考』(영인본), 국사편찬위원회, 1978.
- 하우봉, 「증정교린지 해제」 『국역 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회, 1998.
- 하우봉, 「변례집요 해제」 『국역 변례집요 1』, 민족문화추진회, 2000.

왜인구청등록 제4책

정사(1677) 정월 초4일

동래부사(東萊府使)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釜山僉使)의 치통(馳通)¹⁾ 내 용에, 왜선(倭船)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訓導)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알아보 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飛船)²⁾에는 두왜(頭倭)³⁾ 각 1인과 격왜(格倭)⁴⁾ 각 9명이 각기 노인(路引)⁵⁾을 가지고 나왔거늘, 탐문하기를 ‘무슨 사고가 있어 특송세견선(特送歲遣船)⁶⁾ 일행 두 척이 일시에 나왔느냐?’ 하였더니, 동 두왜 등이 대답하기를, ‘도주(島主)⁷⁾가 에도[江戶]에 행차 하는 시일이 올 봄으로 박두하였기에, 예전에 무역 요구하였던 저쪽에서 사 용할 물건을 아직 들여보내지 않은 일로, 일이 긴박하여 한 척은 재촉하여 가 지고 가려고 지난 스무날 뒤에 부중(府中)⁸⁾에서 출발하였으며, 한 척은 에도 에서 무역 요구하는 물건은 반드시 도주의 행차에 맞추도록 하게 할 뿐 아니 라 또 고할 일이 있기로 이 달 초6일에 부중에서 출발하여 바람을 기다렸는 데, 서풍이 너무 세게 불어 즉시 배를 띄우지 못하여 이틀을 허비하였으니 또 한 매우 민망하고 긴박하거니와, 노인과 말한 뜻 및 관수(館守)⁹⁾에게 보내는 사신(私信)을 가져다 보면 그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함께 관수왜(館守倭)가 있는 곳에 가서 두 가지를 살펴보니, 노인

- 1) 치통(馳通): 역마를 달려 급하게 통보함. 여기서는 왜선의 출입을 감독하는 부산진첨절제사(釜山鎭僉節制使)가 왜관무역을 담당하는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사정을 알린 것을 말한다.
- 2) 비선(飛船): 대마도와 부산 왜관 사이에 급한 연락이 있을 적에 오가는 작은 배. 두왜(頭倭) 1인과 격왜(格倭) 예닐곱 명이 타고 왕래하였다.
- 3) 두왜(頭倭): 일행의 우두머리가 되는 왜인.
- 4) 격왜(格倭): 격군 노릇을 하는 왜인. 격군(格軍)은 ‘결꾼’으로 배의 운항을 위해 뱃사공을 돕는보조인원을 가리킨다.
- 5) 노인(路引): 관청에서 병졸이나 장사꾼에게 내어준 여행권인데, 여기서는 왜관에 출입하는 배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마도에서 발급한 문서를 가리킨다.
- 6) 특송세견선(特送歲遣船): 조선정부에서 왜관무역(倭館貿易)을 위하여 공식으로 인정해 준 무역선 선단. 해마다 세견선(歲遣船) 17척과 특송선(特送船) 3척 등 20척의 입항을 허락 하였다.
- 7) 도주(島主): 일본(日本) 대마주(對馬州)의 수령을 일컫는 말.
- 8) 부중(府中): 대마도의 부중.
- 9) 관수(館守): 부산 왜관(倭館) 관리를 위해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인. 관수왜(館守倭)

에는 대략 ‘제가 장차 긴요하게 쓰려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이른바 사신(私信) 한 장에는, 이전에 요구한 필묵(筆墨)과 개가죽[狗皮], 호두와 잣, 대구어(大口魚) 등을 재촉하였으며, 또 한 장에는, 이전에 요구한 호두와 잣이 그 수량이 부족하기로 호두 15섬과 잣 10섬, 파리채(蠅鞭)를 만들기 위한 흰말꼬리 30근, 석린(石鱗)¹⁰⁾ 5근, 『동의보감(東醫寶鑑)』 2질 등을 급속히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종이 가득 장황하게 극히 간절하였고, 관수왜 등도 또한 간절히 요구하였음. 소인 등이 답하기를, ‘전에 요구한 호두와 잣, 대구어는 수일 전에 들여 준 것이 이미 그 반을 넘었고, 필묵과 개가죽은 무역을 허락하기로 말을 하였지만, 아무리 극도로 재촉하여도 아직 율령이 아니거니와, 근래에 무역 요구가 실로 빈번하고 잦아서 번거롭고 시끄러운 일이기도, 지난번에 무역을 요구할 때도 막지 못하였다고 역관들이 거의 중죄를 받을 뻔하였다가, 조정에서 특별히 도주와 예도에서의 용도가 긴급 절박하다고 애써 부응하라는 뜻으로 용서하였다고 전에 이미 정녕하게 언급하였거늘, 전에 요구한 물건도 아직 수량에 맞춰 받지 못했는데, 새로 청하는 수량이 또 이렇게 번다하니, 일의 형편을 헤아려보건대 결코 고하기가 어렵겠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빈번한 요구가 외람된 줄 굳이 알지만, 상국(上國)에 찾아가면서 예물을 가져가는 예가 없어서는 안 되겠고,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으니, 귀국에서 생산되는 물건 중 지극히 흔한 물건이면 염려해 주시는 터에 시중 굳이 아낄 이유가 없을 것이니, 바라건대 중간에서 막지 말고 모름지기 잘 고하여 급급하게 무역을 허락해 주시되, 흰말꼬리를 참으로 얻기 어려우면 말갈기[鬃鬣]와 서로 반씩 섞어도 또한 무방할 듯하다고 하며, 도중(島中)의 여러 봉행(奉行) 및 굴성진(橘成陳)이 소인 등에게 서찰을 보내어 말하기를, 지난 가을 김동지(金同知)가 이곳에 있을 적에 신관(新館)의 큰 역사로 온갖 폐단이 생겨 온 도내 백성의 재력이 거의 고갈되는 것이 극도로 염려될 뿐 아니라, 줄 지어 오는 송사(送使)를 접대할 가건물을 수리하는 공사와 연향(宴享)¹¹⁾과 접대 등 각종 수응(酬應)의 폐단 또한 적지 아니하여 실로 지탱하기 어려운데, 신

10) 석린(石鱗): 돌비늘. 운모(雲母).

11) 연향(宴享): 조선측에서 일본측의 정기 사절(使節)을 접대하는 절차. 다례(茶禮), 하선연(下船宴), 상선연(上船宴) 등의 절차가 있었다.

관의 역사는 굳이 폐할 수 없으나, 송사(送使)는 해마다 나와도 다른 볼 일이 없으니, 신관을 조성하는 기간에는 짐짓 송사를 내보내지 말아서 조금이라도 병폐를 덜어주면 다행이겠다는 뜻을 누누히 저와 곽성진에게 언급하였기로, 곽성진이 들어갈 때 저가 정녕 부탁하여 도주(島主)에게 갖추어 진술하도록 하였고, 저 역시 봉행에게 서찰을 보내어 곁에서 좋게 말해주도록 분명히 서찰을 보내었는데, 이제 회답 서찰을 보니 도주는 듣는 즉시 알아듣고는 명년 조의 여러 송사는 모두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겠다고 하였으니, 이제 이번 봉서(封書)에도 생각컨대 곡절을 다 말했을 것이다'고 하였음. 소인 등에게 보내는 서찰을 열어보니, 이르기를 '저번에 김동지(金同知)가 간절히 말한 바로 인하여, 연례 송사를 짐짓 정지하는 일로 말을 만들어 도주에게 품의하였더니, 송사가 오가는 일은 중대한 일이고 조선에 폐를 끼치는 것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단지 겸대선(兼帶船)의 사례와 같이 서계(書契)만 보내는 것으로 조정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5일 잡물(雜物)¹²⁾ 및 연향(宴享)의 음식과 구청(求請)¹³⁾의 각 항목에 지급해야 할 물자는 전례와 꼭 같이 대관왜(代館倭)¹⁴⁾에게 계산하여 지급하되, 근래 잡물의 매우 품질이 열악하니 반드시 정하게 마련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른바 잡물은 본 물건이 어려울 것 같으면 가목(價木)¹⁵⁾으로 대신하는 것도 또한 무방하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제 송사(送使)를 짐짓 정지하지만 구관(舊館)의 동서편에 있는 가건물은 만약 수리하지 않으면 무너질 염려는 반드시 이를 형편이고, 만약 부득이한 차사(差使)가 있으면 그때 궁색할 것 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동 임시건물 몇 곳은 전 대로 수리하여 무너지는 우환이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함. 또한 말하기를 "근래에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 실상 번거로우나, 기왕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았음에도 조정에서는 오히려 애써 부응하여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바야흐로 미처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이 무려 태반이거늘, 이제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요청은 또한 뜻밖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바 지루

12) 5일 잡물(雜物): 왜관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일상 생활 용품을 조달하기 위해 매달 상순과 중순 하순 3일과 8일에 5일 마다 열렸던 왜관(倭館) 개시(開市)에서 거래되는 여러가지 물자.

13) 구청(求請): 무역 요청.

14) 대관왜(代官倭): 대마도주가 부산 왜관에 파견하여 공사 무역을 관장하게 한 왜인.

15) 가목(價木): 가격에 해당하는 포목의 양.

하기 이미 심한데다 비용이 적지 아니한지라, 변방의 신하가 스스로 함부로 막기에 어려움이 있기로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오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하여 시행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첨부한 계목(啓目) 내용**. 이 동래부사의 이복(李馥)¹⁶⁾의 장계를 보니,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이 비록 수량이 많다고는 하나 저들이 이미 우리에게 폐를 제거하였으니 우리로서도 또한 굽혀서 그들의 간청에 부응함이 마땅하겠으니, 해조(該曹)¹⁷⁾에 명하여 복계(覆啓)¹⁸⁾하도록 조처함이 어떠할지. 강희(康熙) 15년(1676) 25일 동부승지(同副承旨) 신 목(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첨부한 계목을 계하(啓下)함**. 근래 도주(島主)가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아니하여 참으로 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저들이 연례송사(年例送使)를 보내지 않는다고 이미 폐단을 제거하겠다고 하였기에, 그들의 요구하는 바를 또한 막기가 불가하니, 잣 10섬, 흰말꼬리와 말갈기 절반 30근, 석린 5근, 『동의보감』 2질은 그대로 허락함이 마땅하고, 그 중 호도는 풍기(豊基)와 영천(榮川) 등 몇 읍 사이에서만 생산되어 15섬의 수량을 갑자기 찾아 얻기 어려우니, 3분의 1인 10섬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며, 호두와 잣과 흰말꼬리 갈기는 본도에 명하여 속히 찾아 지급하라 하시며, 석린은 전례에 의거하여 해서(海西)에 명하여 때 맞추어 올려보내어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오며, 동의보감은 해조(該曹) 및 의사(醫司)¹⁹⁾에 명하여 찾아서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777) 정월 초4일 우부승지 신 목(睦)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6) 이복(李馥, 1626-?): 효종 갑오(甲午, 1654)에 문과에 급제하여 병진(丙辰, 1676) 7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기미(1679) 2월까지 재임하였고, 승지를 역임하였다.

17) 해조(該曹): 해당 관청. 대일 외교 문제는 예조(禮曹)에서 담당하였다.

18) 복계(覆啓): 주무관청에서 의견을 달아 국왕에게 다시 올리는 일.

19) 의사(醫司): 의료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서. 조선시대에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를 삼의사(三醫司)라 하였다.

정사(1677) 정월 25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실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및 응사왜(鷹師倭)²⁰⁾ 2인과 교대하기 위해 나온 금도왜(禁徒倭) 2인 등이 전례대로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섬 안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고, 관수 및 대관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말 뜻을 물었더니, 관수왜가 말하기를 ‘도주가 정월 안에 에도로 들어갈 계획인데 여행 준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무역을 요구한 잡물 또한 지연되어 다음 달 초순 사이로 물려 정하는 것을 면치 못하겠기에,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였으며, 또한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름을 먹인 미선(尾扇)²¹⁾ 100 자루를 간절히 구해주시기를 요청하였는데, 도주가 들어갈 때 미치지 못할 형편이나, 한편 그 미선은 곧 더운 철에 사용할 것이므로 3월이나 4월에 미쳐 들여달라고 하였다’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앞서 무역 요구가 이미 극히 지루한데, 이제 또 부채를 청하는 것은 매우 불가한 일이며, 이른바 전에 요구했다는 것은 거의 다 들여주었으니 이제 미수(未收)²²⁾가 극히 적어서 특별히 다시 재촉하는 폐단이 없이 도착하는 대로 들여주겠다고 운운’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극히 빈번하여 미안한 줄은 잘 알지만 도주가 들어갈 때 쓰는 전례가 많아서 청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제 이 미선은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잘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전에 무역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들여보냈다는 것은 과연 판사(判事)가 말한 바와 같은데, 들여보낸 것이 아직 미쳐 대마도 부중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재촉하는 폐단이 있었거니와, 이른바 미수는 비록 약간이라도 오는 즉시 들여달라’고 하였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돌아와 말하였기에,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며, 연유를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기에, 동 노인 한

20) 응사왜(鷹師倭): 사냥용의 매를 길들이는 일을 맡은 왜인.

21) 미선(尾扇): 대오리를 잘라 엮고 종이를 붙여 만든 둥근 부채.

22) 미수(未收): 아직 수납되지 않은 부분.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미선의 무역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李馥)의 장계를 보니, 비선이 나와서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기름먹인 미선 100자루의 무역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바, 무역을 요구한 물건이 극도로 지루하여 마땅히 막아야 하는데, 동 미선은 이미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또한 그냥 지급하는 일도 아니니, 이번에는 짐짓 그 청에 부응하여 전례대로 전라도에서 급속히 마련하여 동래부로 보내라고 명하시며, 이후에는 종종 번거로운 청을 일체 막으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정월 27일 동부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정사(1677) 6월 19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한 척에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사연을 물었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긴급하게 무역 요구할 일이 있어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 안의 내용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왜가 말한 내용에 ‘도중(島中)에는 특별히 다른 일은 없거니와, 도주(島主)의 첩자(妾子)가 이미 승습(承襲)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에도에서 들어오라고 명하였기로 오래지 않아 가야 하는데, 일행의 여러 가지 차림과 각 처로 보낼 예단(禮單)을 정하게 준비하지 않을 수 없겠기로, 각색 사라능단(紗羅綾緞) 300필, 극히 가는 흰모시베〔白苧布〕²³⁾ 50필, 말안장 3부, 화룡필(畫龍筆)²⁴⁾과 홍당필(紅糖筆)²⁵⁾과 반죽필(斑竹筆)²⁶⁾과 용편필(龍鞭筆) 각 100자루, 황모필(黃毛筆)²⁷⁾ 500자루, 극상품 큰 진묵(眞墨)²⁸⁾ 50동

23) 흰모시베(白苧布): 빛깔이 희게 마전한 모시베.

24) 화룡필(畫龍筆): 붓대롱에 용을 그려 넣은 붓.

25) 홍당필(紅糖筆): 붓대롱을 홍당죽으로 만든 붓.

26) 반죽필(斑竹筆): 붓대롱을 접이 박힌 대나무로 만든 붓.

27) 황모필(黃毛筆): 노란 죽제비의 털로 맨 붓.

28) 진묵(眞墨): 참먹, 상품의 먹. 진현(眞玄).

(同)을 간절하게 무역 요청하니 속히 들여보내달라고, 특별히 직급이 높은 두왜를 정하여 왔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여러 해 동안 무역 요구가 극히 빈번하여 지루한 일일 뿐 아니라, 종종 허락한 무역도 또한 감당하기 어렵기로 다시는 번거롭게 품신하지 말라는 뜻으로 방금 중한 책망을 받았기에 이제 진달하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사라능단은 마땅히 대관(代館)에게 명하여 모쪼록 장사꾼에게 거두어 모으게 하겠거니와, 저포(苧布)와 말안장과 필묵 등의 물건은 귀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한 얻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다가, 이제 이번 청하는 것은 임시로 여러 곳의 요구에 응하여 범연히 무역을 요구한 것과는 크게 같지 아니하며, 더구나 한 편으로 소주(少主)가 진알(進謁)하는 행차는 온 섬에서 가장 큰 경사인데, 만약 끝내 저지되면 첫머리의 마장(魔障)이 아니겠는가? 모름지기 막지 말고 바라건대 잘 고하여 기어코 수량대로 허락하시되, 말안장은 밀치끈과 재갈의 장식 및 등자(鎧子)를 모두 순은으로 입사(入絲)하며, 화려한 안장과 청색 장니(障泥)²⁹⁾를 아울러 정밀하게 만들어 달라고 누누히 말하여 마치 아니하였다'고 하며 노인을 가져와 드린다"고 돌아와 말하였음. 동 노인 한 통을 받아 올리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기에, 동 노인 한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동 왜선이 나올 때 본부의 황령산(荒嶺山)과 간비오산(干飛鳥山) 두 곳의 봉군이 모두 관측을 잘못함을 면치 못하였기로, 잡아 와서 중하게 곤장을 쳤음. 이제 이번 무역 요구 중에 사라능단은 비록 역관 등이 타일러서 그들이 스스로 사사로이 무역한다 하였지만, 그 나머지 저포와 말안장과 필묵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각종의 빈번한 요청을 일체 막으라고 계하한 분부는 이제 겨우 거둬 밝혔었으니, 변방 신하의 도리로는 마땅히 막아서 허락하지 않아야 할 일이로되, 저들의 말 내용이 도주의 아들이 승습하는 당초에 이렇게 에도에 불러들여 진알하는 거동에 이 행차의 여러 차림은 다른 무역 요구와 다름이 있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치 아니하기로, 사유를 갖추어 품달하오니,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거나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 왜인의 구청 물건

29) 장니(障泥): 말 다래. 말에 진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우는 도구.

중 사라능단은 비록 이미 막았지만, 흰모시베와 말안장과 필묵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또한 많아서 마땅히 다시 막으라고 명할 것이로되 도주의 아들이 승습을 허락받아 새로 에도로 들어가면서 이런 무역 요구를 하였으니, 평상시의 구청과는 분별이 있는 듯하여 또한 너무 지나치게 매몰차게 하여 그들을 낙망하는 한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되겠으니, 극히 가는 저포 50필 중 20필을 감하고, 말안장 3부 중 1부를 감하고, 화룡필과 홍당필과 반죽필과 용편필 각 100자루 중 각기 50자루를 감하고, 황모필 500자루 중 200자루를 줄이며, 극상품 큰 진묵 50동 중 20동을 줄이며, 그 나머지는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6월 20일 좌승지 목(睦) 차지로 입계하여, 그 대로 윤택함.

정사(1677) 8월 23일

동래부사 이(李)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3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라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에는 두왜 1인, 격왜 15명, 제2척에는 두왜 1인, 격왜 16명, 제3척에는 두왜 1인, 격왜 9명, 소금도왜(小禁徒倭) 2명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 및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 등의 말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각기 은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거니와, 관수 및 대관왜에게로 봉행(奉行) 등이 보낸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에, ‘이제 이번 도주의 아들이 에도로 들어갈 때 쓰일 약간의 유기(鑰器) 및 나전(螺鈿) 연갑(硯匣)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여 왔는데, 이들 물건은 모두 특이한 형태라서 지시하여 만들지 않으면 모양이 되지 않으니, 이것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유기장(鑰器匠) 1인과 나전장(螺鈿匠) 1인을 불러와 주면 여기서 지시하여 값을 주고 조성하겠다’고 누누히 말하였음. 노인 3통 중 2통은 물에 젖었기로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말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하였으며, 한 통만 가져다 들인다”고 돌아와 말하였기로,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리는 일로 치통하며, 그들의 소청 중 유기장은 그 나라에 본디 없다고 하는 바, 그들의 말 대로 한 사람을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값을 주어 그릇을 만들게 함도 무방할 듯하나, 나전장은 그 나라에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그 기술자의 솜씨와 품질이 정교하기로도 평소에 다른 나라보다 으뜸이라 일컫는데, 그 나라에 가장 많고 가장 정교한 기술자를 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청하는 것은 매우 수상할 뿐 아니라, 유기장은 본부에도 또한 좋은 솜씨를 가진 자가 있어서 요구에 응하기에 어렵지 않으나, 나전장은 본부에 원래 그런 기술자가 없고, 오래된 등록을 보니 간혹 통영(統營)의 기술자를 불러온 때가 있는바, 먼 곳에서 불러다 주는 것 또한 폐단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나전장은 위의 뜻으로 말을 만들어 막고, 유기장 1인만 지급하겠다고 허락함이 어떠하올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시며, 보내온 노인 1통도 양쪽 끝이 젖어 보기에 불경스럽기로 아울러 도로 주어 고쳐 쓰게 하였고, 연유를 아울러 장계로 올리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전에 왜인이 구청한 유기장이 이미 본부에 있다면 그들의 요망 대로 부응해 주고, 나전장은 그 나라에 이미 많은 데다 본부나 그 이웃 고을에는 모두 없는 것이라면 사실에 근거하여 막음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 8월 24일 좌부승지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사(1677) 10월 초9일

동래부사 이의 장계 내용. 이 달 초2일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에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로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보았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봉행의 사서를 보니 도주의 아들이 이번 달 초2일에 배를 타고 에도로 출발하였거니와, 때가 겨울철인지라 적견피(赤犬皮:붉은개 가죽)가 쓰일 곳이 많으니 이삼백 령(鎊)을 급급히 무역 요청하여 보내면 비

선에 실어서 밤낮없이 도중에 따라 갈 계획으로 비선을 보낸다고 하여 왔으니, 판사(判事) 등은 모름지기 속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털이 두껍고 색깔이 붉은 것으로 이삼 백령을 이번 달 안으로 때 맞추어 무역 허락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른바 적견(赤犬)은 동래에서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하물며 시일이 급한데 갑자기 무역하기가 어렵고, 이제 비록 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왜인이 말하기를 '대마도가 비록 작지만 기르는 적견이 무려 수천 수백인데, 바다 가운데서 먹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절임에 불과한지라 거개가 털이 빠져 쓸모가 없기로 부득이 귀국에서 무역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거니와, 동래 부산 사이에 집집마다 기르지 않는 집이 없는 것이 곧 닭과 개이고, 그 가운데 적견이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거니와, 경상도 한 도만 하더라도 이삼 백의 개가죽은 아홉 마리 소 중에서 터럭 하나 정도일 터이니, 이렇게 조그마한 일은 조정에 고할 필요도 없이 동래에서 경내에 분부하여 잠시 거두어 모으는 것이 호령 하나에 달려 있을 터이거늘 어찌하여 중간에서 가로막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여 비록 터럭 하나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동래 영감 뿐만 아니라, 순찰사 사또 또한 감히 임의로 주고받지 못하거든, 어떻게 능히 조정에 품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이 적견피 때문에 도중에서 비선을 보낸 것은 그 의도가 있을 터이니, 동래 영감께서 어찌 잘 조치할 방도가 없겠는가? 판사 등은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말을 만들어 고하여 달라'고 끝까지 말을 낮추어 간절히 요청하여 마지않기로, 소인 등은 '비록 무역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결코 수량에 맞추기는 어려우며, 이번 달 내로도 또한 기일을 맞출 수가 없다'는 뜻으로 답하고 마치고 나왔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돌아와 말하였기로, 동 노인을 받아서 올려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한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적견피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역관이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지만, 말을 낮추어 간곡하게 누누이 애걸하여 마지않는다고 하는바, 전후의 소청을 한 번 두 번 허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미 극도로 지루하지만 허락하지 않는 것도 또한 매물찬지라 어떻게 해야만 알맞을 것인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구청한 적견피 300령의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품의 조처하게 하였는바, 적견피는 전에 비록 무역을 허락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번 구청에는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그 중에서 100령만 본도에 명하에 속히 무역을 허락하게 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10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사(1677) 10월 26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세견선(歲遣船)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대관왜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동년조 겸대세견선(兼帶歲遣船)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書契)를 전례대로 부쳐서 가져 왔다’고 하며, 관수의 말에는 ‘전일에 진달한 나전세공이 이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형편을 동래 영감의 분부대로 서찰로 도중에 통지하였더니, 방금 봉행 등이, 나전을 세공하는 사람은 나가사키[長崎]나 오사카[大坂] 성에는 과연 있지만 섬안에는 없을 뿐 아니라, 귀국의 나전이 비록 매우 거칠고 조잡하기는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모두 진귀한 보배로 알기에 번거로히 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운운하여 왔는바, 이는 수량이 많아서 만들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단지 연층함(硯層函)³⁰⁾ 서너 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는 실로 한 두 기술자가 열흘 안에 만들 물건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자세히 진달하여 낙망하는 걱정이 없도록 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중언 부언 십분 간절하게 말하였음. 서계 15통과 노인 7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였다고 치통하였는데, 동 서계 15통과 노인 7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나전장은 전일에 장계를 올릴 적에 신이 이치를 따져서 막은 것은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간청하는 것이 이리하다 하는바, 어떻게 해야 하올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30) 연층함(硯層函): 벼루를 넣은 연갑(硯匣)과 층으로 된 함 두 가지를 가리키는 뜻.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내용**. 이제 이번에 나온 선박 등에 게 회답하는 서계는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속히 지어 내어 내려보내게 하오며, 나전장은 한 두 명이 한 때 한 달 사이에 갔다 오는 것은 원래 어려운 일은 아니고, 매양 막을 필요가 없을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나전장이 있는 곳에다 분부하여 보내도록 하여 먼 곳 사람들의 소망에 부응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 10월 27일 동부승지 류(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정월 17일

동래부사 이복(李馥)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李尙全)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卞爾標)³¹와 별차 박세량(朴世亮)³²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관수 및 대관왜 등의 말에 ‘방금 봉행(奉行) 등의 사서(私書)를 보니, 도주가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 호설(虎舌:범의 혀) 2근, 호경골(虎脛骨:범의 다리뼈) 2근 및 사서(四書) 2부 등의 물건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 하였다’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 무역 요구가 이렇게 종종 있으니 매양 번거롭게 진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도주가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막지 말고 속히 들여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하였다고 치통하였는데, 봉행 등의 사서(私書) 가운데 무역을 요청한다고 한 세 가지 중, 호설 2근과 호경골 2근에 대하여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니 과연 이런 물건을 무역 요구한 때가 있었으나, 호설 몇 부(部)이고, 호경골은 몇 개(箇)라고 하였고, 본디 근(斤) 수로 무역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기로, 이러한 뜻으로 역관에게 전령(傳令)하여 상세히 곡절을 묻게 하였더니,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의 수본(手本)³³ 내용에 “전령에 근거하여 대관왜 등에게 호설과

31) 변이표(卞爾標,1623-?): 밀양 변씨로 자는 탁연(卓然)이며 효종 경인(1650)에 역과에 합격하여 왜역으로 종사하다가 자헌대부의 품계까지 받았다.

32) 박세량(朴世亮,1650-?): 밀양 박씨로 자는 명부(明夫)이며, 현종 임인(1672)의 식년 역과에 합격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다가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33) 수본(手本): 공사(公事)를 상관에게 보고하는 서류.

호경골을 부나 개라 아니하고 근 수로 무역을 청한 연유를 다시 물었더니, 답하기를 사용할 곳이 많으므로 근 수로 써 넣었는데, 전례가 이러하면 호설 20부와 호경골 10개의 무역을 청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한다”고 수분하였는 바, 전에 계하(啓下)한 관문(關文) 내용에 ‘도중(島中)에서 빈번하게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일체 막으라 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요청한 세 가지 및 사서 2부는 이미 중대하거나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며, 호설과 호경골 등은 모두 약용(藥用)으로 절박하다고 말을 하여 청하니, 일체 막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사서 2부와 호설 20부, 호경골 10개의 무역을 요구하였는 바, 비록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응하는 것이 수고롭더라도, 힘을 들여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억제하여서 먼 곳 사람이 낙망하는 한탄을 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사서와 호경골은 수량 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호설 20부는 쉬 수량에 맞추기가 어려운 듯하니 그 반을 줄여 아울러 본도에 명하여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도록 함이 마땅한데,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 정월 18일 우부 승지 신 이항(李沆)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오(1678) 정월 28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말하기를 ‘도주의 분부로 인하여 관수 등에게로 보내는 봉행 등의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 안의 내용을 탐문하였더니,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 40섬, 건대구어 4,000마리, 비마자(蓖麻子:아주까리) 4섬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비선을 보내었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 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жат과 아주까리는 이미 제 철이 아니며, 대구어는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의 말이, '저희들의 무역 요구가 빈번한 줄 모르지 않지만, 이것은 곧 도주가 에도에서 집정(執政) 등의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비선을 보내었으니, 이번에 무역 요청한 이 물건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거니와, 이미 철이 지나 어렵다면 잣 40섬 가운데 10섬과 대구어 4,000마리 가운데 2,000마리, 아주까리 4섬 가운데 2섬 등을 감하고 그 나머지는 특별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주어 도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는데, 무역을 요구한 세 가지 물건은 막아서 줄이기는 하였지만 남아 있는 것 또한 적지 아니하여, 잣 30섬, 대구어 2,000마리, 아주까리 2섬은 그대로 허락하기 어려운데, 다만 그 실정이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적에 범연히 무역을 청한 것과는 견줄 수가 없고, 에도에 있으면서 그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으로 용처가 매우 간절하여 부득이 비선을 내보냈다고 간절하게 청하였는바, 전량을 막는 것은 또한 매물찰 뿐 아니라, 그 정세를 살펴보면 설사 한 번 막는다 하더라도 필시 두 번 세 번 떠들어 마지않을 태세인지라 어떻게 조처해야만 맞을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바야흐로 에도에 있으면서 잣 30섬, 마른 대구어 2,000마리, 비마자 2섬을 그 집정 등의 요구 때문에 비선을 보내었다고 하는바, 각종 물건을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는 듯하나,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전에 허락했던 물건을 이제 막을 필요가 없는데, 대구와 잣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모두 절반으로 하며, 아주까리는 비록 모두 철이 지났지만 이미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얻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 정월 29일 우승지 신 이단석(李端錫)³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34) 이단석(李端錫: 1625-1688): 진주(全州) 이씨로, 자는 유초(有初), 호는 쌍호당(雙壺堂)이다. 현종 1년(1660)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 1673년 동부승지가 되었으며, 숙종 4년(1678)에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

무오(1678) 2월 초4일

경상감사 정박(鄭樸)³⁵의 장계 내용. 예조의 관문 내용에 운운한 일로 이관한다 하였는데, 호경골(虎脛骨)은 산군(山郡) 각 읍에 분정(分定)하여 찾아 보내라고 하였으나, 호설(虎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없기에 응당 말려 두는 일이 없어서 얻기가 쉽지 않을 듯하니 참으로 염려스러우나, 또한 각 읍에 명하여 여러 갈래로 널리 찾아서 기어코 반드시 구하라고 하였으며,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은 판본(板本)이 안동부(安東府)에 있어서 본읍에 명하여 인출(印出)하고 장정을 하여 보낼 계획이거니와,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는 판본이 경주부(慶州府)에 있고 『중용(中庸)』은 판본이 성주목(星州牧)에 있는데 판각한 지 오래되어 모두 이지러져 인출할 수가 없는 지 이미 해가 오래되었으니, 동 『논어』와 『맹자』 및 『중용』 등의 책은 다른 도의 판본이 있는 곳에서 인쇄하여 보내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복계(覆啓)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사서 등 3종을 영남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일로 복계하여 행회(行會)³⁶ 하였는데, 방금 접한 경상감사 정박의 장계에는, 사서 가운데 『논어』와 『맹자』와 『중용』의 판본이 이지러져 인출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바, 도내에 있는 판본이 이미 해가 오래되어 낡았으면 인출하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니, 『논어』와 『맹자』 및 『중용』 각 2질을 전라도에 명하여 속히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곧장 동래부로 보내라는 뜻으로 양남(兩南)의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2월 초4일 좌승지 신 이단석(李端錫)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오(1678) 2월 22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논어』와 『맹자』와 『중용』

35) 정박(鄭樸: 1611-?): 해주정씨로 자는 자문(子文)이다. 효종 3년(1652) 증광시에 급제하여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36) 행회(行會): 조정의 명령을 널리 반포함.

각 2부를 방금 경상감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입계하여 호남에 명하여 즉시 인출하여 보내는 일로 복계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방금 접한 전라감사의 이문(移文)에는 본도에 있는 판본 역시 모두 해가 오래되어 이지러져서 결코 인출하여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양남의 책판이 이렇게 이지러져 낡았으나, 새로 판각한 책판이 모두 성균관(成均館)에 있으니 들어갈 종이를 호조에서 마련하고 교서관(校書館)에 지급하여 속히 정밀하게 인출하여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희한다 하였음.

무오(1678) 윤3월 23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등이 나왔는데, 말하는 내용이 ‘무역을 요구하기 위해 관수왜에게로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등이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도주가 오는 5월 사이에 대마도로 돌아올 것인데, 예도의 여러 집정 등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인삼 80근, 녹말(藜末: 녹두가루) 700근, 호두 40섬, 잣 40섬, 대구어 1,500마리 등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할 뿐 아니라 대구어와 잣 등의 물건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또 무역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여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으며, ‘인삼과 녹말과 호두는 수량이 또한 과다한데 이런 수량은 그대로 허락할 길이 만무하다’고 온갖 방법으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판사 등의 간절한 말이 이러하니, 저희들이 비록 도중의 책망을 받더라도 수량 대로 무역을 요구할 수 없겠거니와, 각기 반으로 하여 인삼 40근, 녹말 350근, 호두 20섬 등은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주어 진작 도주가 돌아오기 전에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아니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신이 생

각컨대 근래 도중에서의 무역 요구는 실로 지루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한 수량은 또한 너무 지나쳐서 잣과 대구어는 비록 막았다고는 하나, 세 가지 물건 또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 없으니, 속히 엄준한 말로 막으라는 뜻으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였더니, 훈도의 수본(手本)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왜관에 가서 세 가지 물건을 또 절반으로 감한다는 뜻으로 온갖 방법으로 타일렀더니, 관수왜 등이 말하기를 ‘어제 사정을 물을 때 판사 등이 그 수량이 너무 많다고 극단으로 말하였기에 저희들이 부득이 반으로 줄였는데, 이제 또 반으로 감하면 그 수량이 너무 적어서 도리어 무역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떠들어 마지아니하다가, 한결같이 고집하였더니, 세 가지 가운데 호두 10섬과 녹말 50근만 간신히 줄였다”고 하였다 하는 바, 두 차례 감한 외에도 아직까지 인삼 40근과 녹말 300근, 호두 10섬이 있으니, 이 수량 또한 과다한 듯하나, 한 번 감하고 두 번 감한 뒤에 다시 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로, 부득이 사유를 갖추어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바야흐로 에도에 있으면서 비선을 보내어 집정 등에게 사용할 인삼 40근, 녹말 300근, 호두 10섬을 속히 무역할 것을 요구하라 하였다고 하는바, 왜인이 무역 요구한 물건이 비록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매우 자주 중첩하여 부응하기가 어려운 듯하나,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어서 저지할 필요는 없으니, 녹말과 호두 등은 본도에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인삼은 그 수량이 많은 듯한데다, 지금 새로 캐는 것은 생산되지 않고 예전에 캐는 것은 이미 동이나서 수량대로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원래 수량 중에서 10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를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들여 보내어 그들의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윤3월 24일 좌부승지 신 정창도(丁昌燾)³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37) 정창도(丁昌燾, 1623-?): 압해(押海) 정씨로 자는 사원(士元)이다. 효종 3년(1652)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감사(監司)에 이르렀다.

무오(1678) 윤3월 28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으라고 하였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려온 차왜 굴정현(橋政賢) 등이 나왔다고 운운하며, 관수가 말하기를 ‘봉행 등이 보낸 사서(私書)에는 도주가 예도의 집정 등의 요구에 응하려고 나이가 어린 숫말 7필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급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매우 빈번하여 결코 그대로 허락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귀국의 형편이 이러하면 비록 7필 수량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린 말 5필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진작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 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거늘, 신은 즉시 ‘근래에 이렇게 빈번한 것은 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설사 애써 장계로 알려져서 무역을 허락하는 조정의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적은 어린 말을 험악하고 먼 길에 결코 폐단 없이 도달할 이치가 없다’고 이런 뜻으로 잘 말을 만들어 기어코 막은 뒤에 수본(手本)하라고 역관 등에게 전령(傳令)하였더니,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전령의 사연을 온갖 방법으로 관수왜에게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저희 또한 빈번하게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미안한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어린 말은 전에 일찍이 범연히 구청한 물건과는 다름이 있어서, 도주가 5월 내로 대마도로 돌아오도록 확정되어 있는데 섬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도의 여러 집정 등에게 부득이하게 수용할 일이 있으므로, 저희들에게 보낸 서찰에 특별히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였으니, 판사 등이 긴급한 사정을 이해하고 말을 만들어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허락 하되, 만약 도로가 험악하여 도달하기 어렵다고 우려되면 경상도 도내의 가까운 읍에 있는 어린 말을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한다”고 수본하였는바, 이 수본 내의 사연을 보건대, 그들이 무역하기를 원하는 청이 매우 긴급하여 끝내 막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어린 말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한다면, 말 주인이 끌고 와서 들여 주고 값을 받아 돌아가는 것은 또한 무방할 듯하기로,

아울러 이렇게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고, 본도로 이문(移文)하여 인근 고을에서 사사로이 무역하게 허락함이 어떠할지 모르겠다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방금 접한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에는 관수왜의 말이 나이가 적은 숫말 7필을 도주가 예도의 집정 등의 요구에 응하여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겠다고 하였는데,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극도로 불편할 뿐 아니라 비록 장계로 알린다 하더라도 험악하고 먼 길에 어린 말을 결코 폐단 없이 도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 등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막게 하였더니, 관수왜가 도주가 서찰을 보내어 간절하게 구하니 이 긴급함을 이해하시고 비록 7필의 수량이 안 되더라도 5필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고하여 기어코 반드시 허락하되, 비록 도내의 가까운 고을에서 어린 말을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무역을 매우 간절하게 소원하는지라, 끝내 막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사사로운 말의 무역을 허락하는 또한 무방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해 달라 하였거늘,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진년(1664)에 두 가지 말 2필의 무역을 요구한 청이 있었는데, 그 때 이미 요구에 응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관서에서 보내어 폐단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도내의 부근 각 읍에 명하여 어린 말을 가진 자가 들여 주고 값을 받는 것이 과연 무방할 듯하나, 다만 무역을 원하는 것이 5필인데, 합당한 말을 숫자 대로 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말이 있는 곳을 찾아서 편의에 따라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에 이문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윤3월 29일 동부승지 신 유하익(兪夏益)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시행함.

무오(1678) 6월 초5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전일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녹말, 호두 등은 본도에서 즉시 분정하여 이제 바야흐로 들여 주었는데, 인삼이 아직도 내려오지 않았기로, 관수 이하 여러 왜인들이 매번 보내달라고 떠들어 마지않는

38) 유하익(兪夏益:1631-1699): 기계(杞溪) 유씨로 자는 사겸(士謙), 호는 백인당(百忍堂)이다. 현종 1년(166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판서,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즈음에, 이제 들어온 배의 격왜(格倭) 등의 말에 도주가 이미 이번 달 초8일에 대마도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비록 알리려고 보내온 배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미 대마도로 돌아왔다는 통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경솔하고 조급하여 참지 못하는 성품이 한 층 더하여, 인삼을 재촉하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바, 만약 당초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허락한 뒤에 벌써 석 달이나 되도록 아직도 내려 보내지 않아 도주가 이미 돌아왔으니, 저쪽 사람들이 다급하여 대드는 말 또한 무리하다 할 수 없으니, 동 인삼 30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품신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에 왜인이 구청한 인삼 30근을 겨우 그 수량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3일 금군(禁軍) 김곤(金驪)에게 주어 이미 내려 보냈는데, 그 날짜를 헤아려보면 필시 이미 저쪽에 도착하였을 터이니,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6월 초 5일 우승지 신 남천한(南天漢)³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무오(1678) 7월 초1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가별차(假別差) 박유년(朴有年)⁴⁰⁾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나왔는데, 하는 말이 ‘도주가 예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종 무역을 요구하기 위해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의 내용을 물었더니, 관수 또한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에 전례대로 여러 집정에게 위문하면서 겸하여 예단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이제 막 준비하고 있으나, 평소 토산물이 모자라고 또한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이 없어 절박하게 걱정하고 있을 즈음에,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이 또 뜻밖에 나와, 부득이 사람을 보내어 무역을 청한다’고 하면서 받기〔件

39) 남천한(南天漢: 1607-1686): 영양 남씨로, 자는 장우(章宇), 호는 고암(孤巖)이다. 1646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숙종 1년(1675)에 대사간으로 승진하고 이듬해부터 승지를 역임한 뒤 1680년 호조참의를 역임하였다.

40) 박유년(朴有年, 1641-?): 남포 박씨로 자는 자구(子久), 현종 3년(1661)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記)를 내어 보였는데, 상상품의 흰모시베〔白苧布〕 30필, 상품의 생모시베〔生苧布〕 20필, 청서피(靑黍皮)⁴¹⁾ 50령(令), 담비가죽〔貂皮〕 50령, 녹두가루 500근, 황모필(黃毛筆) 300자루, 대절진묵(大節眞墨) 50동, 흰양가죽〔白羊皮〕 100령, 잣 20섬, 호두 30섬, 대추 3섬, 큰 대구어 1,500마리, 각색 대사(大紗) 30필, 홍전(紅氈)⁴²⁾ 500립, 우산지(雨傘紙) 25권, 검은 말총으로 옷을 하여 둔 마성(馬省)⁴³⁾ 500개, 각색 대단(大段)과 금선(金線)과 선단(縵段) 각 두 세필, 상품의 공목(公木)⁴⁴⁾ 200동 등을 급속히 간절하여 구하여 보내며, 전에 구하였던 어린 말 또한 곧 가려서 보내라고 하였다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빈번한 것이 요즈음처럼 심한 때가 없으니 일이 매우 지루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물종도 또한 매우 많아서 결코 계속하여 진달할 수가 없으며, 그 중에 비록 토산(土産)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철이 지났고, 당물(唐物:중국물건)에 있어서는 더욱이 얻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관수가 답하기를 ‘일의 형편이 과연 말한 바와 같은 줄 잘 알지만, 도중의 형편 또한 매우 절박하여 부득이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지 않을 수 없거늘, 이제 만약 철이 지났다고 지극히 천한 토산물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당물(唐物)이라고 칭하면서 약간의 대단(大段)도 막는다면 끝내고 할 말이 없고, 도중에서 낙망하는 것이 이보다 긴절한 것이 없다’고 하거늘, 다시 앞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호두와 잣, 대추와 대구어는 새로 산출되는 대로 곧장 무역을 허락하며, 녹두가루는 비록 가루를 만들 때가 아니지만 정녕 사용하는 계절이니 1·2 백 근이라도 모쪼록 찾아 주며, 청서피와 담비가죽, 대사(大紗)와 홍전(紅氈), 금선(金線), 선단(縵段), 대단(大段) 등은 짐짓 대관왜 등으로 하여금 장사꾼에게 널리 구하게 하겠거니와, 그 밖의 흰모시베와 생모시베, 필묵, 양가죽, 우산지, 마성, 공목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속히 들여달라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공목(公木)만은 평소 지급하는 가운데서 가려서 지급할 수 있으나 또한 수량

41) 청서피(靑黍皮): 청서피(靑鼠皮). 하늘다람쥐의 털가죽.

42) 홍전(紅氈): 짐승의 털로 짜서 붉게 물을 들인 모직물.

43) 마성(馬省): 말을 돌보는 데 사용되는 솔. 마췌(馬刷).

44) 공목(公木): 공무목(公質木). 조선 후기 왜관의 공무역(公質易)에서 조선측의 결제 대금으로 확정해 놓은 포목(布木).

대로 허락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근래에 공목이 좋지 않으니 각별히 가려 받아 기어코 수량에 맞추어 들여달라'고 증언부언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근래에 도중에서 무역 요구가 빈번하고 많아서 이미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번에 무역 요구하는 물종이 또 이렇게 너무 많기로, 역관 등에게 말을 만들어 막게 하되, 요구한 19종 가운데 영구히 막을 것은 청서피, 담비가죽, 대사, 홍전, 금선 선단, 대단 등 7종이고, 산출될 때를 기다려 다시 청하여 무역을 허락할 것은 호두, 잣, 대추, 대구어 등 4종이고, 막을 수 없어 바야흐로 무역을 허락한 것은 녹두가루, 흰모시베, 생모시베, 황모필, 진묵, 양가죽, 우산지, 마성 등 8종이온바, 8종의 물건을 일시에 무역 허락하는 것 또한 과람하여, 신은 다시 역관으로 하여금 극력으로 다투어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도주가 새로 에도에서 와서 전례에 따라 여러 집정에게 예물을 봉해 올려야 하는 일이 있으며, 에도의 여러 집정이 또 별도로 도주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 형편이 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로, 신의 생각으로는 불시에 무단히 무역을 요청하는 것과는 간격이 있을 듯할 뿐만 아니라, 변방의 신하가 조정에 품신하지 않고 오직 줄이는 것을 능사로 삼고, 이미 그 반 정도를 줄인 뒤에도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여 기어코 또 줄이려고 한다면 혹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체면에 손상이 없지 아니하여, 짐짓 이렇게 우려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며, 이른바 공목 200동은 저들의 말이 비록 무역을 요구한 가운데 섞어 넣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연례(年例)로 지급할 물건이지 본디 무역을 허락하는 가운데는 들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운운한 것은 근래 공목의 올 수와 치수가 모두 이전만 못하기에, 교활한 무리들이 구무(求貿)라는 두 글자를 빙자하여 좋은 포목을 가려서 거두려고 하는 계책이라, 이미 속셈이 들여다 보이니 깊이 우려할 것이 아니옵고, 다만 엇드려 생각건대 금년조로 거둘 공목의 원 수량이 700동인데, 관왜 등의 응련(鷹連: 매)과 물화(物貨) 등의 가격이라고 각 사람들에게 수표(手標)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나, 호조(戶曹)에서도 물화 가격으로 계산하여 제한 것을 연속하여 올려보냈기로, 당장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이 상품이나 중품을 막론하고 그 수량에 충당할 수 없을 듯하여 염려스러우나, 신이 마땅히 모쪼록 주선하여

한편으로는 그 품질을 강등하고 한편으로는 그 수량을 줄여 크게 일이 생기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할 것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면, 도주가 구청하는 20종 중에서 청서피 50령과 담비가죽 50령, 각색 대사 30필, 홍전 500립, 각색 대단과 금선, 선단 각 두 세 필은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막아서, 짐짓 대관왜 등으로 하여금 장사꾼에게 널리 구하게 하였으며, 대구어 1,500마리, 잣 20섬, 호두 30섬, 대추 3섬도 역시 철이 지나 부응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새로 산출되는 대로 다시 청하여 무역을 허락하기로 하였으며, 상상품의 흰모시베 30필, 상상품의 생모시베 20필, 황모필 300자루, 대절 진묵 50동, 우산지 25권, 녹두가루 500근 중 1·2백 근, 흰양가죽 100령, 검은 말갈기로 옷을 입힌 마성 500개 등 8종은 막지 못하고 바야흐로 무역을 허락하도록 청한다고 하였으며, 공목 200동에 있어서는, 저들의 말로는 비록 무역 요구 중에 섞어 넣었다고 하였지만 구무두 글자를 빙자해서 좋은 포목을 가려 받으려는 계획이니, 지금 공목으로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은 상품과 중품을 막론하고 그 수량에 채울 수 없을 듯하여 이것이 걱정스러우나, 모쪼록 주선하여 한편으로 그 품질을 강등하고 한편으로 수량을 줄일 계획이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청서피 등 7종은 대관왜가 스스로 장사꾼들에게서 무역을 요구할 것이거니와, 대구어 1,500마리 중 700마리를 감하고, 잣 20섬 가운데 10섬을 감하고, 호두 30섬 가운데 15섬을 감하고, 대추 3섬은 그 요구하는 수량대로 산출이 되기를 기다려 무역을 허락하게 하며, 상상품의 흰모시베 30필 중 10필을 감하고, 황모필 300자루 가운데 100자루를 감하고, 대절 진묵 50동 가운데 20동을 감하고, 녹두가루 500근 가운데 300근을 감하고, 흰양가죽 100령 가운데 50령을 감하고, 검은 말갈기로 옷을 입힌 마성 500개 중에서 200개를 감하고, 상상품의 생모시베 20필, 우산지 25권은 그들이 요구하는 수량대로 아울러 무역을 허락하며, 공목 200동은 비록 이미 연례로 지급할 물건이지만 지금 바야흐로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이 또한 넉넉하지 않고, 근래에 올 수와 치수가 모두 예전 같지 못하니, 본부에서 힘을 붙여 주선하여, 그 포목의 품질을 감하고, 그 필 수를 줄여, 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알려

서 거행하되, 이전에 구청한 어린 말을 가려보내는 일은, 왜인들이 또한 운운하였으나 장계로 알리는 가운데는 별도로 문답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저쪽에서 이미 구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연기하여 먼 곳 사람이 필시 낙망하는 한탄이 있을 터이니, 속히 찾아 부응하라는 뜻으로 본도 및 본부에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7월 초1일 동부승지 신 이담명(李聃命)⁴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7월 15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이 치통한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가별차 박유년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3척이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 하였음. 관수왜가 소인 등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청하거늘, 소인 등이 관수에게 가 보았더니, 관수는 도주가 그에게 보낸 사서의 내용을 소인 등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일찍이 귀국의 가옥(家屋) 제도가 정밀하고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한 번 보고자 한 지 오래였다. 이제 이 사서(私書) 가운데는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불 만한 몇 칸 정자각(亭子閣)을 기어코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서찰을 보냈는 바, 우리나라에서 숭상하는 것은 오직 오래된 물건에 있는지라 영가대(永嘉臺)⁴⁶⁾와 같은 몇 칸 정자각으로서 지은 지 여러 해가 지나고 손상되지 않은 가옥을 헐어서 철거하여 주시되, 기둥과 들보, 도리와 서까래에 날날이 표를 하여 도중으로 들여보내어 고쳐 지을 즈음에 착오가 생기는 걱정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우리나라 가옥 제도에는 본디 교묘한 장식이 없고, 영가대와 같은 이른바 정자는 매우 드물게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어 놓은 집을 헐어서 철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철거하여 옮길 즈음에 부러져 손상되거나 착오가 생기는 염려는 필지의 형편이며, 비

45) 이담명(李聃命, 1646-1701): 광주(廣州) 이씨로, 자는 이로(耳老), 호는 정재(靜齋)이다. 현종 11년(167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전라도관찰사, 부제학, 이조참판, 경상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46) 영가대(永嘉臺); 부산진성(釜山鎭城) 남문 밖 바닷가에 쌓았던 대의 이름. 조선시대 관원이 부산항을 통제하던 곳이다.

록 표를 한다 하더라도, 단청 모양이 이건한 뒤에는 응당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문득 볼 만한 물건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산간이나 물굽이에 어찌 몇 칸 정자 가옥이 없겠는가? 다만 이미 지은 집을 이제 갑자기 헐어서 철거하는 것이 비록 폐단이 있을 듯하나, 그 가격 대로 값을 주어 고쳐 짓게 한다면, 필시 손상되는 바가 없을 것이고, 그 밖에 운송하는 비용 또한 맞춰 지급하겠으니, 단청의 유무는 헤아리지 말고, 서너 칸 정자각의 목재와 기와와 창호 판자까지 모두 일일이 표시를 하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간절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신은 부산진에서의 치통을 보자마자 마음으로 그 무역 요구가 이상하다고 괴이하게 생각하였는데, 가별차 박유년이 뒤따라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관수의 말이, 이제 이번에 도주가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범연하게 갑자기 발설한 일이 아니고, 제가 도중에 있을 때부터 도주가 매양 귀국의 가옥 제도가 정밀하고 좋다는데 한 번 보고싶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왜관 공사를 완공한 뒤로 도주가 귀국에서 이건한 객관(客館)의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묘하면서 화려하다는 소문을 상세히 듣고서는 전일에 보고 싶어 하던 마음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찰을 보내어 간청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것을 사정을 물어보는 예사 이야기로 간략하게 부산에 언급하고 말면 동래 영감께서도 필시 도주의 의중을 통찰하지 못하고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긴급하지 않은 일로 보게 되면, 저의 마음이 극히 절박하게 되니, 판사(判事)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동래로 달려가서 제가 고한 말을 일일이 자세히 영감 전에 진달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여 마지 아니 하였기로, 소인이 부득이하여 와서 고하오니, 관수에게는 어떻게 회답할까요?' 하거늘, 신이 별차로 하여금 돌아가서 관수를 타일러 '근래에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빈번한 것이 전보다 특별히 심하여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허락할 만한 것은 장계를 올려 허락하도록 청하고, 허락할 수 없는 것은 때때로 막아서 당초부터 장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이제 이번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전후에 없었던 일이고, 거기에 폐단이 있거나 폐단이 없거나 허락하거나 허락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따지지 않더라도, 일

이 이미 예사 일이 아닌즉 변방의 신하된 도리로는 이미 마음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는데다가 또한 앞질러 막을 수도 없으니, 오직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보내어 조정의 처분이 어떠할지를 기다릴 따름이라고 말하여 보내고,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가 도주의 요구로 말미암아 역관 변이표 등에게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도주가 귀국의 가옥 제도가 정밀하고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여 영가대와 같은 몇 칸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간절히 말하였다 하거늘, 역관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굳이 무역 요청을 간절히 청하여 마지아니하고, 가별차 박유년이 직접 와서 고하기까지 하였거늘, 근래에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것이 빈번하기가 이전보다 특별히 심할 뿐 아니라, 이제 이번 정자각의 무역 요구는 실로 전후에 없는 일인지라 변방의 신하로서 이미 마음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고 또 앞질러 막을 수도 없어서,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올려서 조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기다리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고 하였던 바, 도주가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구할 만한 물건이 아닌 데다 또한 이상한 행동이니, 동래부사로서는 마땅히 엄하게 역관들을 신칙하여 말을 만들어 막음으로써 전에 없던 폐단을 막게 해야 마땅하거늘, 이제 앞질러 먼저 막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여 보낸다고 운운한 것은 매우 심히 타당치 않으며, 예조에서 올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일찍이 을사년(1665)에 도주가 우리나라 가옥 제도를 완상하고자 차왜를 보내어 재목과 장인의 무역을 요구하여, 왜관에서 교묘하게 별당(別堂)을 만들고 단청을 찬란하게 하여 도로 헐어 철거해서는 도중으로 운송해 들어가 제도대로 고쳐 세워서 구경꺼리로 삼으려 한 일이 있었는데, 본조에서는 별당을 짓고 단청을 했다가 철거해서 운반하는 일은 이미 예도에서 청한 일이 아니고, 또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하는 데 견줄 것도 아니니 엄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쳐서 기어코 막으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고 본도와 본부에 회이하였는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사람들이 곤란한 병폐가 생길까 우려하여 비록 싫증을 낼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을 굽혀서 들어주기는 하였지만, 이렇

게 전에 없던 일은 반드시 그들의 청에 따라 줌으로써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줄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 굳이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7월 18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8월 17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이 치통 내용임, 훈도 변이표와 별차 이준한(李俊漢)⁴⁷⁾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왜가 말하기를 ‘방금 도중에서 보낸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전일에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을 급속히 재촉하여 들여보내되, 또 에도에서 요구하는 체구가 큰 준마로서 아직 코를 가르지 아니한 것 3 필을 또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동 말 3 필에다 어린 말을 일시에 무역 요구하여 속히 들여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기를, 소인 등이 말하기를 ‘전자에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도 아직 무역하여 주지 못했는데, 말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빈번하며, 이렇게 체구가 큰 준마는 또한 찾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말의 무역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하는 말은 곧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라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체구가 큰 준마 3필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어린 말의 요구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큰 말의 무역을 또 청하는 것은 일이 극히 지루하지만, 말의 수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한결같이 막는 것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가 무역 요구한 어린 말 5필을 아직 구하여 응하지 못한 때에 체구가 큰 준마 서너 필을 또 무역 요구하는 것은 과연 지루하여 따라주기 어려운 듯하나, 이미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

47) 이준한(李俊漢, 1630-?): 연곡(連谷) 이씨로 자는 수보(秀甫)이다. 현종 7년(1666) 식년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을 하니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막는 것도 불가하니, 동 큰 말 3필 중 그 1필을 줄여 해조에 명하여 속히 사서 보내어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와 본부에 아울러 알려져서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8월 18일 동부승지 신 민취도(閔就道)⁴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8월 17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임.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쳐놓았다고 초탐장이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문계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왔다고 알리는 차왜이고, 제2척은 문위역관(問慰譯官)을 호위하는 차왜 곽성진(楮成陳) 등이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차왜 등이 말하기를 ‘운운 한 바 있는데 함께 관수에게 가자’고 청하기로, 소인 등이 더불어 함께 갔더니, 관수 및 동차왜 등이 말하기를, ‘도주의 봉행 중 2인 및 가까이 모시는 왜인 3인이 혹은 괴질(怪疾)을 앓고 혹은 악창(惡瘡)을 앓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치료하였으나 효험을 얻지 못하여 장차 고질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집사들 가운데서 병을 앓는 자가 또한 많은 바, 도주가 절박한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귀국의 명의(名醫)를 얻어 그 죽어가는 목숨을 구하고자 하나, 감히 서계(書契) 가운데 번거롭게 언급하지 못하고, 저희들로 하여금 자세히 간곡하게 개진하여 기어코 청을 하여 속히 들여보내 달라고 정녕 분부하였고, 서계 말단에 입으로 진술하겠다고 한 것은 곧 이 일을 가리키는 것이니, 바라건대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자세히 조정에 알려주시되, 되돌려 헤아려보면 오류 년 전에 왜관에 있는 병든 왜인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관 박상문(朴尙文)을 청하여 와서 이에 힘입어 살아난 자가 많았기로, 도주가 이 사람의 의술이 정묘하다는 말을 익히 들어서 이 사람을 만나보기를 바라는데, 이제 들으니 위의 박상문이 일로 인하여 내려와 지금 동래 땅에 있다고 하니, 바라

48) 민취도(閔就道, 1633-1698): 여흥(驪興) 민씨로 자는 정숙(正叔)이다. 숙종 1년(1675)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쳐서 승지와 대사간을 역임하고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건대 이 사람을 속히 들여보내어 도주의 목마른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으며, 가져온 서계와 별폭은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에 따라 올리겠기로 베껴온 글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서계(書契) 등본은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신이 막 치통을 보고 아직 장계를 다듬지 아니하였을 즈음에, 훈도 변이표가 뒤따라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동 차왜 및 관수왜 등이 소인에게 말하기를 '봉행 두 사람 및 근시 왜인 세 사람이 바야흐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 도중에는 좋은 의원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여 도주가 극도로 우려하여 명의 한 사람을 청해 바다를 건너 오려고 할 즈음에, 명의 박상문이 마침 사사로운 일로 동래에 와 있다는 기별을 듣고서는 동 박상문을 간청하여 들여보내되, 위의 여러 사람의 병이 대단히 위급하니 간절히 애걸하여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 허락받아 들여보내주시게 한다면, 이번에 나와 있는 비선에 함께 타고 들여보낼 것이라'고 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일이 이렇게 급박해서는 안된다. 설사 조정에서 박상문을 들여보내게 허락한다 하더라도 문위역관이 바다를 건너 갈 때 함께 건너가야 할 듯하다'고 운운 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모두들 '문위역관의 행차가 비록 멀지 않았지만 급한 병을 구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연하여서는 이미 죽은 뒤에 후회한 들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중언부언하며 간절히 청하여 마지 않았"고 하거늘, 신이 훈도를 시켜서 '그 청하는 바는 변방의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단지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 조정에서 분부하는 뜻을 기다릴 따름'이라는 뜻으로 관수 및 굴성진 등에게 답하여 타 이르도록 하였음. 이른바 박상문이란 자는 과연 일로 인하여 지금 바야흐로 동래부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거니와, 대마도 왜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들여보내는 일은 관계가 중대한 일이기로, 신이 전일 동래부에서 올린 장계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신해년(1671)에는 봉행왜 1인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나와서 의원을 청하였는데, 반드시 의관 박군(朴顛)의 아들 상문(尙文)을 만나보고자 하였기로, 본부의 장계에 따라 즉시 동래부로 내려 보내도록 허락하였고, 임자년에는 에도에서 나왔다는 장로승(長老僧)의 병이 위중하다고 의관을 보내주기를 청하였기에 또 본부의 장계에 따라 의관을 보내주도록 허락하여 바다를 건너갔는바, 왜인에게 병이 있어서 간청하면 의원

을 보내도록 허락함에는 명백히 전례가 있는데, 다만 신해년에는 병든 왜인이 나와서 스스로 청하였고, 임자년(1672)에는 의원을 청할 즈음에 서계를 다듬어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미 나오지도 않았고, 또 서계도 없으니,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니와, 조정에서 품의하여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차왜가 나와서 청하는 것이 문위역관을 들여보내고 병을 잘 치료하는 의원을 얻고자 하는 등의 일이라고 하였거니와, 도주가 봉행 등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의원 박상문을 얻고자 하면서 서계 가운데에는 비록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 말단에 이른바 입으로 진술하겠다고 한 것이 곧 이 일을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는데, 도주의 청으로 말미암아 의원을 들여 보내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고, 박상문 또한 방금 동래에 있으니, 문위역관이 가는 것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들의 소청대로 보내도록 허락한다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7월 20일 좌부승지 신 유하익(兪夏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무오(1678) 9월 초5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가 구하는 체구가 큰 준마로서 코를 자르지 아니한 것 2필을 해당 관서에 명하여 구하게 하였으나, 저쪽에서 혹 탈을 잡는 폐단이 있으니 예비로 차출한 말이 없어서는 안되겠기에, 예비로 차출한 말 두 필을 전례대로 또한 내려 보내어 가려잡도록 하되, 해당 관서로 하여금 별도로 양마(養馬)⁴⁹⁾ 1인을 정하여 말을 주어 영솔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하였더니, 전교에 윤험한다 하였음.

무오(1678) 9월 초6일

호조(戶曹)에서 입계하기를, “대마도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말은 실제의

49) 양마(養馬): 말의 먹이를 먹여 사육하는 사람.

말과 예비로 차출한 것 모두 4필인데, 신이 엇그제 본조에서 개좌(開坐)⁵⁰할 적에 끌어와서 살펴보니, 크기와 재질과 품격이 칙사(勅使)의 예단마(禮單馬)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온 성 안에 좋은 말이 없어서이지 잘 가려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시중의 가격으로 따지면 30여 냥에 지나지 아니한데, 칙사가 올 때 값을 치르는 사례가 60여 냥에 이르니, 이 또한 지나친 것입니다. 이제 이번 무역 요구에서 말의 크기와 재질과 품격이 예단마와 대등하니, 해조(該曹)에서의 가격 지금은 마땅히 태복시(太僕寺)⁵¹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도중(島中)에서 무역하는 말은 해마다 항상 있는 예단마와 같지 아니하고, 또한 계묘년(1663) 연간에 들여보낼 때 값을 과람하게 주어서 그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열어 주었으므로, 지금 말 주인들의 바라는 바가 너무 지나쳐서 일이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또한 도주에게 보내라고 명한 말 또한 신마(神馬)나 준마(駿馬)가 아닌데도 말 주인들이 가격이 얼마인지 말하지 않고 다만 '예전의 등록(騰錄)이 지부(地部)⁵²에 있다'고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臣)은 실로 이를 미워하여 이제 해당 관리로 하여금 그 등록을 불사르게 하였고, 해당 낭관(郎官)에게 분부하여 단지 본사복시의 시중 가격에다 15냥을 더 줄 계획이며, 종전에 말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두 피폐한 무리가 아니었으므로, 해조에서 주는 가격이 제 뜻에 차지 아니하면, 마전인(馬前人)을 잡아다가 억지로 보탠 가격을 받아내기에 한량이 없었으니, 일이 무리하기로 이처럼 심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여 이런 버릇을 통렬히 금하여 마전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받는 일을 모면하게 하고, 이 뒤로도 만약 낡은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자가 있으면 양반이나 상놈을 막론하고 가두어 죄를 다스리는 일로 전교(傳教)를 받아 시행할 것이며, 이제 이번 무역 요구한 말을 예비로 차출한 것 중에 1필은 더욱이 품격이 열등합니다. 실제로 차출된 2필이 꼭 눈에 들지 않더라도 미리 차출한 1필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에 족한데 또 어찌 꼭 본 말의 수효에 준하여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품격이 열등한 말은 끝내 실제 일에는 보탬이 없이 오가는 길의 말먹이만 허비할 따름이고, 돌아오면 또 오고 간 비용을 전례에

50) 개좌(開坐): 관원이 회동하여 관계 사무를 협의하고 처리하는 모임.

51) 태복시(太僕寺): 조선시대 국왕의 거마(車馬)와 말의 조련을 관장하던 관아.

52) 지부(地部): 호조(戶曹)의 별칭.

따라 지급하는 일이 있으니, 이는 무익한 비용입니다. 어제 이 뜻으로 예조 당상(堂上)에게 말을 하였는데, 예조의 초기(抄記)가 막 입계(入啓)되었으므로 함께 품신하지 못했습니다. 예비로 차출한 말 1필의 수를 감하는 것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고 하였음.

무오(1678) 11월 19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전에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로 인하여 대마도 도주가 구청한 말 2필 및 예비로 차출한 말 1필을 이마(理馬)⁵³⁾ 구이걸(仇以傑)과 양마(養馬) 박돌학(朴芻鶴)에게 인계하여 내려보냈는데, 방금 접한 동래부사의 첩보에는 실제 차출한 말 2필과 예비로 차출한 말 1필을 역관 등을 시켜 타일러 들여주게 하였더니, 체구가 작다고 하면서 모두 받지 아니하여, 역관 등이 연일 다투어서 그 중에서 유충마(楡驄馬) 1필은 가려서 잡고, 유웅마(驪雄馬) 2필은 시종 받지 아니하여, 부득이 이마 등에게 그대로 주어 도로 올려 보내게 하였으며, 물린 말(退馬)의 대신으로는 반드시 체구가 큰 얼룩말(月羅馬)⁵⁴⁾를 사서 보내라고 하는데, 당초 장계에는 이미 반드시 코를 가르지 아니한 말을 구한다고 하였으므로, 체구가 큰 말로서 코를 가르지 아니한 말은 거의 없어 사들이기가 어려운데다 물리게 되는 폐단은 모두 여기서 비롯하는데, 이제 이마(理馬) 등의 말을 들으면, 왜인들이 구하는 것은 코를 가르든 여부는 따지지 않고 반드시 체구가 크고 색깔이 있는 말이라고 하니, 이마가 입으로 전하는 말은 비록 믿기가 어렵지만, 이제 이 보고 장계에 단지 체구가 큰 얼룩말(月羅馬)이라고 하고 코를 가르지 않았다는 한 조목은 다시 거론하지 않은 것은 또한 분명하지 않으니, 관문을 발송하여 다시 동래부에 물어서 그 상세한 내역을 장계로 올려 알리기를 기다린 뒤에, 해조 및 해당 관서에 명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사서 보냄이 어떠할지.”라고 하였는데, 전교에 입계한 대로 하라고 하였다.

53) 이마(理馬): 말을 조련하고 다듬는 사람.

54) 얼룩말[月羅馬]: 위라말. 털빛이 얼룩덜룩한 말.

무오(1678) 12월 11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예조에서 계하한 관문 내용에 운운한 일로 관문한다 하였거늘, 관문 내의 사연에 따라 즉시 역관 등을 불러서 동 무역 요구한 말의 코를 가르든 여부를 상세히 왜인들에게 물어서 속히 수본하라 분부하여 보냈더니, 방금 접한 훈도 변이표와 별차 이준한 등의 수본 내용에 “관수에게 가서 상세히 다시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전일 도중에서는 반드시 코를 가르지 아니한 말을 구하라고 하였기로 이에 의거하여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코를 가르지 아니하고 체구가 큰 말은 쉽지 아니하기로, 설사 코를 갈랐더라도 체구가 큰 월라(月羅) 준마라면 병폐 없이 들여보낼 수 있겠다’고 간절히 이야기하기에, 연유를 수본함”이라고 수본하였는데, 당초 무역을 요구할 때는 코를 가르지 아니하고 체구가 큰 말이라고만 하였지 월라(月羅)를 얻으려고 한다는 한 조목은 분명히 말한 적이 없었다가, 이제 와서는 코를 가르든 여부는 따지지 말고 반드시 월라를 구하러 한다고 하여, 전후로 청하는 바가 크게 같지 아니한 바, 왜인들의 성품이 본디 바꾸기를 잘하여 또렷이 믿을 수가 없거니와, 대개 이미 ‘코를 가르든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체구가 큰 월라(月羅)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였으니, 이로써 섹책하여도 무방할 듯하기로, 연유를 장계로 올리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앞서 왜인이 구한 바 코를 가르지 아니한 말 2필 중 1필을 물려, 그 대신으로는 장계에 의거하여 코를 가르든 여부를 따지지 말고 체구가 큰 얼룩말[月羅馬] 1필을 속히 널리 구하여 별도로 이마(理馬)를 정하여 말을 주여 영솔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해당 관서에 다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12월 11일 동부승지 신 안여석(安如石)⁵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55) 안여석(安如石, 1630-1695): 순흥(順興) 안씨로 자는 주국(柱國)이다. 현종 7년(1666)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충흥도관찰사(忠興道觀察使)와 병조참판을 역임하였다.

무오(1678) 12월 30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이준한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하기를 ‘동래와 부산 두 영감 전으로 도주가 보내는 서계(書契) 1통 및 관수에게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서계 및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서계를 가지고 온 일은 도주가 명년 2월 사이에 에도로 들어가는데, 도주의 친족 중에 질병이 있는 자가 많기에, 이번에 온 의관 박상문(朴尙文)을 데리고 에도로 가겠다는 뜻이며, 사서의 사연은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는 전례에 따라 여러 집정 등에게 쓰일 물건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전의 규례를 폐할 수가 없기로, 담비가죽 100령, 청서피(靑黍皮) 50령, 흰양가죽(白羊皮) 50령, 녹말(菘末) 300근, 흑마포(黑麻布)⁵⁶⁾ 10필, 대절쇄금진묵(大節洒金眞墨) 15동, 마른 대구어 500마리, 나팔(喇叭) 2쌍, 태평소(太平簫) 2쌍 등을 명년 정월에 맞추어 전례대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다’고 하거늘, 저희들이 답하기를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잡물들은 이미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전례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라 하였으니, 비록 막기가 불가하지만, 그 중에 나팔과 태평소 이 두 가지는 전에 무역을 요구한 때가 없었으니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막았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른바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 나팔과 태평소 두 가지는 역관 등이 이미 전례가 없다고 하여 막았다고 하거니와, 그 나머지 7종은 이미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의 사례를 들어 청하는 물건이니, 한결같이 막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오며, 의원을 데리고 에도로 가는 일은 전에 없었던 일이라, 변방 신하로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임.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친족의 질병을 위하여 의원 박상문을 얻어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데리고 가려고 한다 하였는데, 의원을 대마도로 들여보내는 것이 비록

56) 흑마포(黑麻布): 검은 빛깔의 삼베.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도주를 따라 에도로 들어가는 것은 전에 없었던 일이니 가벼이 허락하여서는 안되니, 이렇게 말을 하여 타일러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하시며,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해조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12월 28일 우부승지 신 박(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비선을 보내어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이 7종이나 되는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는바, 근래에 왜인들의 무역 요구는 날로 점차 번다하여 이제 이 담비가죽과 청서피, 녹두가루, 마른 대구어의 수량은 참으로 과람하니, 담비가죽 100령 내에 50령을 감하고, 청서피 50령 내에 20령을 감하고, 녹두가루 300근 내에서 100근을 감하고, 마른 대구어 500마리 내에서 100마리를 감하고, 그 나머지 흰양가죽, 흑마포, 대절쇄금진묵은 그들이 청하는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하며, 의원 박상문(朴尙文)이 도주를 따라 에도로 들어가는 일은 비변사에서 이미 말을 만들어 막으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택을 받았거니와, 동래와 부산 두 곳의 회답 초고를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지어내어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12월 30일 우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왜인구청등록 제5책

정사(1677) 정월 초2일

※이하 일부는 결책이 잘못된 것으로 추정됨.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이 달 23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박문서(朴文瑞)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館所)에 부쳤다는 일로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즉시 혼도 안신휘(安愼徽)⁵⁷와 별차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어제 나온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객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가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기 위해 관수와 대관(代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보았더니 대관 등이 이미 그 곳에 있으면서 그 봉행 등의 서찰을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도주의 에도 행차 기한이 이미 박두하였는데, 전후로 무역 요구한 것을 아직도 들여보내지 않아서 일이 매우 급박하게 되었다고 십분 책망하였기에, 동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서 우선 들여 준 것을 어제 바람을 기다리고 있는 배에 겨우 실어 놓았으나,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즉시 들여보내지 못하였으니, 응당 도중에서 저희의 죄를 책망할 터이나, 바람이 한결같이 이리하여 큰 배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서, 그 잡물을 이 비선에 싣고 때맞추어 들여보내어 책망을 면하려고 하거니와, 미수(未收) 물건은 급속히 재촉하여 주시라’고 중언부언 간절히 말하여 마지않았으며,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였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무역 요구한 잡물은 각 관아에 분정하여 전에 이미 수송하여 납입한 것이 무려 3분의 2이기에, 하나 하나 받아 올려 들여주어 지금 바야흐로 들여보내려고 배에 실어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며, 미수 잡물은 각 해당 고을에 바야흐로 이문(移文)하여 독촉하고 있다는 연유임.

57) 안신휘(安愼徽, 1640-?): 순흥 안씨로 자는 백륜(伯倫), 현종 3년(1612)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정사(1677) 정월 초4일

동래부사 이복이 지난 12월 15일 성첩(成貼)⁵⁸한 장계임. 부산첨사 박문서(朴文瑞)가 치보한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선 7척이 나와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기에, 즉시 훈도 안신희와 별차 박유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에는 병진조(丙辰條) 부특송사(副特送使) 1호선 정관(正官) 등설승(藤雪勝), 제2척은 2호선 2선주 굴성청(橘成淸), 제3척은 수목선(水木船)⁵⁹, 제4척은 을묘조(乙卯條) 겸대세견(兼帶歲遣) 제8선, 제5척은 동년조 제9선, 제6척과 제7척은 비선(飛船)인데,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9명씩,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무슨 일이 있어서 특송 세견선 일행과 2척의 비선이 함께 나왔는가 탐문하였더니, 동두왜 등이 답하기를 ‘도주의 에도 행차가 오는 봄으로 박두하였는데, 전에 일찍이 무역을 요구하였던 저쪽에서 사용할 물건을 아직 들여보내지 아니하여 일이 긴박하기에 1척은 재촉하여 가지고 가기 위해 지난 20일 뒤에 대마도 부중(府中)에서 출발하였으며, 1척은 에도에서 무역을 요구한 물자가 있는데, 반드시 도주의 행차에 맞추게 해야 뿐만 아니라, 또한 고향 일이 있기로 이 달 초6일에 대마도 부중에서 출발하여 바람을 기다리다가 서풍이 매우 긴박하여 즉시 배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이미 여러 날을 허비하여 심히 걱정스럽거니와, 노인(路引)의 사연 및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져다 살펴보면, 그 상세한 사정을 알 수 있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더불어 함께 관수에게 가서 두 건의 노인을 뜯어보니, 그 내용에 대략 말하기를 ‘긴요하고 긴급하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이른바 사서 1장에는 이전에 요구하였던 필묵, 구피(狗皮:개가죽), 호두, 잣, 대구어 등을 재촉하였으며, 1장에는 이전에 요구한 호두와 잣의 수량이 부족하기에 호두 15섬과 잣 10섬, 승편(蠅鞭:파리채)을 만들기 위한 흰 말꼬리 30근, 석린(石鱗) 5근, 『동의보감(東醫寶鑑)』 2질 등을 급속히 무역을 청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종이 가득 장황한 사연이 지극히 간절하였으며, 관수왜 등도 또한 간절하게 말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전에 요구한 호두와 잣, 대구어는 수일 전에 들여 준 것이 이미 반을 넘

58) 성첩(成貼): 문서에 관인을 찍어 확인함.

59) 수목선(水木船): 정선(正船)이 올 때 물, 나무, 식량 등을 공급하기 위해 따라 오던 선박.

있고, 필묵(筆墨)과 구피(狗皮:개가죽)는 무역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비록 극히 재촉하더라도 미처 오지 못할 형편이거니와, 근래에 무역을 요구할 때 막아내지 못했다고 역관 무리들이 중죄를 입고 있는데, 조정에서 특별히 그것이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긴박한 물건만 애써 부응하라는 뜻으로 전에 일찍이 정녕 언급하였거늘, 이전에 요구한 물건도 아직 미처 건지 못하였는데 새로 청한 수량이 또 이렇게 번다하니, 일의 본체로 보아 결코 고할 수가 없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굳이 빈번하여 외람된 줄 알지만 상국(上國)에 가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예가 없을 수가 없고 짐정 등이 요구하는 것도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데, 귀국에서 산출되는 가운데 지극히 흔한 물건이면 보살피 주는 처지에 시종 굳이 인색할 이치가 없을 듯하니, 바라건대 막지 말고 모름지기 잘 고하여 급급하게 무역을 하라하되, 흰 말꼬리를 참으로 얻기 어려우면 말갈기가 반씩 섞여도 또한 무방할 듯하다'고 하며, 또한 말하기를 '5일의 잡물 및 연향(宴享)의 물품과 구청의 각종 지급할 물건은 한결같이 전례대로 계산하여 대관왜에게 지급하되, 근래에 잡물이 매우 품질이 열악하니 반드시 정밀하게 마련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른바 잡물은 본색으로 하기 어려우면 가목(價木)으로 대신하여도 무방하다'고 운운하였으며, 노인 4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부특송사는 전례대로 다례(茶禮)를 베푼 뒤에 받아 올릴 계획이며, 겸대선(兼帶船) 및 비선(飛船)의 노인 4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근래에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실로 번거로와, 기왕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도 그 수량이 너무 많음에도 조정에서 애써 무역을 허락하도록 부응하였는데, 이제 방금 미처 조처하여 주지 못한 것이 무려 태반이거늘, 이제 이번 에 다섯 가지를 청하는 것도 또한 뜻밖에 나왔는 바, 지루하기 이미 심하고 흠어지는 비용이 적지 아니한데, 변방의 신하로서는 마음대로 막기가 어렵기로,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진즉 속히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근래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이 연속하여 끊이지 않으니 참으로 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연례송사를 보내지 아니하여 이미 폐단을 제거하였다고 하니 저들의 요구하는 바를 또한 막을 수가 없으나, 잣 10섬, 흰 말꼬리 말갈기와 반씩 섞여 30근,

석린 5근, 『동의보감』 2질은 마땅히 그대로 허락하고, 그 중 호두는 풍기와 영천 등 몇몇 고을에서만 산출되는데 15섬의 수량을 갑자기 찾아내기 어려우니 3분의 1을 줄여 10섬의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며, 호두와 잣과 흰 말꼬리와 갈기는 본도에서 속히 찾아 주며, 석린은 전례대로 해서에 명하여 때맞추어 올려보내어 내려보내도록 하며, 『동의보감』은 해조 및 의사(醫司)에 명하여 찾아서 내려보낸다는 뜻으로 동래부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정월 초4일 우부승지 신 목창명(睦昌明)60)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정사(1677) 정월 25일

※이 문건은 본문 75쪽(사료 257쪽)의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서 앞 부분 일부와 인명이 표시된 점이 다를 뿐임.

동래부사 이복이 정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일로 보낸 첩보에 근거하여 훈도 안신휘와 별차 박유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및 응사왜(鷹師倭) 2인, 교대하기 위해 온 금도왜(禁徒倭) 2인 등이 전례대로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거니와, 관수 및 대관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정월 내에 에도로 들어갈 계획인데 행장(行裝)이 미처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역을 요구한 잡물 역시 지연되어 다음달 초순 사이로 물려 정함을 면치 못하겠으니,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였으며, 또한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기름 먹인 미선(尾扇) 100자루를 간절히 청구하였는데, 도주가 들어가는 시기에 미치지 못할 형편이고, 또한 미선은 곧 더운 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3·4월이 되

60) 목창명(睦昌明, 1645-1695): 사천(泗川) 목씨로 자는 제세(際世)이며 호는 취원(翠園)이다. 현종 11년(167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도승지, 대사헌, 대사성, 경기도관찰사,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다.

거든 들여보내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예전에도 무역 요구가 극히 지루하였는데, 이제 또 미션을 청하는 일은 불가한 일이며, 이른바 앞서 요구한 것은 거의 다 들여 주고 지금 미수는 극히 적어서 별로 다시 재촉할 폐단은 없으니, 오직 도착하는 대로 들여주겠다'고 운운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매우 미안한 줄 알지만, 도주가 들어갈 때는 쓸 데가 많아서 부득이 신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이번 미션 역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잘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일찍이 전에 무역을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들여보낸 것은 과연 판사의 말과 같으나, 들여보낸 것이 아직 미처 부중에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재촉하는 폐가 있었거니와, 이른바 아직 못 미친 것이 비록 약간이라도 오는 즉시 들여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는데,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미선의 무역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면 비선이 나와서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기름 먹인 미션 100자루의 무역을 요구하였다고 하는 바, 무역을 요구한 바 물건이 극히 지루하여 마땅히 막아야 하지만, 동 미선은 이미 장만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또한 그냥 지급하는 것도 아니니, 이번에는 짐짓 그 청에 부응하여 전례대로 전라도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동래부로 보내도록 하며, 이 후로는 종종 빈거로운 청을 일체 막으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정월 27일 동부승지 신 권해(權階)⁶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정사(1677) 3월 27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부산참사가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5척이 나왔는데, 동 왜선 중 1척은 다대포로 향하고, 1척은 가덕도로 향해 간다고 운운하

61) 권해(權階, 1639-1704): 안동(安東) 권씨로 자는 개옥(皆玉)이고 호는 남곡(南谷)이다. 현종 6년(1665)에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대사간, 대사헌, 형조참의와 호조참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며, 3척은 우선 영솔하여 관소에 부쳐두었다고 치보하였음. 이에 근거하여 훈도 안신휘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정사조 세견 제1선이고, 제2척은 동년조 세견 제2선이고, 제3척은 동년조 세견 제3선이며, 격왜 각 40명 등이 각기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지난 달 23일에 배를 타고 바람을 기다리다가 이 달 12일에 배가 출발하여 들어갔다.”고 운운하였다 함. 20일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에 가덕도와 다대포 등에 표류한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 다음에 즉시 훈도 안신휘와 별차 박유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영솔하여온 차왜 정관 등성승(藤成繩)과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伴從) 3명, 격왜 40명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승왜(書僧倭) 1인과 종왜(從倭) 3명이 교대차로 나왔으며, 제2척은 우리나라의 표류한 사람을 신고 온 배인데 통사왜(通事倭) 1명과 사공왜(沙工倭) 1명, 격왜 4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왜가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운운하였다.” 하였기에, 동 차왜가 가지고 온 서계 등본 및 우리나라의 표류한 사람들이 타고온 왜선의 노인 1통과 금년조 세견 제1선, 2선, 3선의 서계와 별폭 각 3통과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봉행 등의 별단 1통을 아울러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또한 신이 삼가 살펴보건데 예조의 계하 관문에는 저쪽 사람들의 무역 요구가 극히 지루하니 이 후로는 종종 번거로운 청을 일체 막으라는 뜻으로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한다 하였기로, 신은 즉시 이 뜻을 엄하게 역관들에게 신칙하여 저쪽에서 구청하는 일을 일체 막았는데, 이제 이번에 새 대관(代官)이 나온 뒤에 훈도 안신휘가 와서 고한 내용에 “이번에 구청하는 물건 종류가 매우 많거늘, 소인 등이 조정에서 막는다는 뜻으로 준절한 말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니, 왜인들이 비록 매우 실망하였으나 또한 감히 다시 억지로 청하지 못하였는데, 대관의 말에 ‘허다한 물건 중에 황앵(黃鶯:피꼬리)은 계절이 되면 얻기 쉬운 물건일 뿐 아니라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사용할 곳이 매우 간절하니, 만약 7·8마리만 얻어 무역을 허락한다면 그 감사와 다행이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고, 만약 조정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동래 염감에게 고하여 모쪼록

변통하여 주시기를 만 번 애걸한다'고 하였는 바, 저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이런 대단한 병폐를 제거하는 조목을 들인 일이 있음에도, 저들로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이 날짐승 새의 미물 같은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장차 막아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 박절하고 저들에게 있어서도 언짢은 감정이 생겨날 것이며, 청한 바 물건이 원래 중대한 것이 아니고, 전례를 상고하여도 또한 해마다 찾아 지급한 일이 있으니, 황앵 일곱 여덟 마리를 특별히 무역 허락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안색을 내어 수용하는 데는 불가함이 없을 듯하나, 계하하여 분부하시기를 일체 막으라고 명한 뒤에 변방의 신하가 감히 곧바로 청하며 감히 이렇게 사유를 갖추어 품신드리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운운하기를 저쪽 사람의 무역 요구를 일체 막으라는 뜻은 전에 이미 계하하여 분부하였거니와, 허다한 물종을 이미 부응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면, 미세한 새는 두드려 막기가 어려운 듯하니, 위 항목의 황앵 7마리는 본도에 명해서 편리한 대로 찾아 줌이 마땅할 듯하오니, 이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하오며,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하여 시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3월 28일 우승지 신 목창명(睦昌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사(1677) 6월 19일

※이 문건은 본문 76쪽(사료 258쪽)의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의 내용 일부가 좀더 상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박문서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는 일. 이에 근거하여 훈도 안신희와 별차 박유년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1척에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간절하게 무역 요구할 일이 있어서 관수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 안의 사연을 탐문

하였더니, 관수왜의 말이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거니와, 도주의 첩자(妾子)가 이미 승습(承襲)하는 것을 허락받았는데, 에도에서 불러들여 오라는 명이 있었기로, 각색 사라능단(紗羅綾緞) 300필, 매우 고운 흰모시베〔白苧布〕 50필, 말안장 3부, 화룡필(畫龍筆), 홍당필(紅糖筆), 반죽필(斑竹筆), 용편필(龍鞭筆) 각 100자루, 황모필(黃毛筆) 500자루, 극상품 대절진묵(大節眞墨) 50동을 간절히 무역 요청하여 속히 들여보내라고 특별히 직급이 높은 두왜를 정하여 왔다’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올해 들어 무역 요구가 극히 번거로워 지루한 일일 뿐 아니라, 각종의 무역 허락 또한 장차 감당하기 어렵기로, 다시는 번거롭게 품신하지 말라는 뜻으로 겨우 중한 책망을 받았으니, 이제는 진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사라능단은 대관(代官)을 시켜 모조록 장사꾼들에게서 거두어 모으겠거니와, 모시베와 말안장과 필묵 등의 물건은 이미 귀국에서 산출되는 것으로서 또한 얻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다가, 이제 이번에 청하는 것은 평상시 여러 곳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범연히 무역을 요구하는 것과는 크게 같지 아니하고, 하물며 소주(少主)가 진알하는 행차는 온 섬에서 막대한 경사인지라, 만약 끝까지 저지당하면 첫머리에 마가 끼이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막지 말고 바라건대 잘 고하여 기어코 그대로 허락받되, 말안장은 안장과 재갈 장식 및 등자를 모두 순은으로 입사(入絲)하며, 화려한 안장과 청색 장니(障泥)⁶²⁾를 아울러 정밀하게 만들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고, 노인 한 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이제 이번 무역 요구 중에 사라능단은 비록 역관 등이 타일러서 저들이 스스로 사사로이 사들인다고 하였으나, 그 나머지 모시베와 말안장, 필묵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종종 번거로운 청을 일체 막으라고 계하한 분부를 겨우 이미 신명하였으니, 변방 신하의 사리와 체면으로는 마땅히 막아야 할 일이로되, 저들의 말이 도주(島主)의 아들이 승습(承襲)하는 처음에 에도에서 부르도록 명하여 진알하는 일이 있어서, 이 행차의 여러 도구는 다른 무역 요구와는 다름이 있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으므로, 사유를 갖추어 품의하오니,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

62) 장니(障泥): 말다래. 말의 배를 덮어 튀어오르는 흙을 막는 도구.

든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제 이번 왜인의 구청 물건 중 사라능단은 비록 이미 막았으나, 흰모시베와 말안장과 필묵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또한 많아서, 다시 막도록 명함이 마땅하지만, 도주의 아들이 승습을 허락 받고 새로 에도에 들어가면서 이런 무역 요구가 있으니, 평상시의 구청과는 다름이 있는 듯하여, 지나치게 매몰차게 하여 그들이 낙망하는 한탄을 하게 하여서는 안되겠으니, 매우 고운 모시베 50필 내에 20필을 감하고, 말안장 3부 내에 1부를 감하고, 화룡필과 홍당필과 반죽필과 용편필은 각기 100자루 내에서 각기 50자루를 감하고, 황모필 500자루 내에서 200자루를 감하고, 극상품의 대진묵 50동 내에 20동을 감하고, 그 나머지는 해조에 명하여 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6월 20일 좌승지 목창명(睦昌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사(1677) 8월 23일

※ 이 문건은 본문 78쪽(사료 261쪽)과 내용이 동일하며, 첫머리의 내용이 조금 상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박문서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선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는 일로 치보한다 하였기에, 훈도 안신희와 별차 박유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15명, 제2척 비선에 두왜 1인과 격왜 16명, 제3척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및 소금도왜(小禁徒倭) 2명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각기 은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거니와, 관수 및 대관왜에게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 안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이번 도주 아들이 에도로 들어갈 때 사용될 약간의 유기(鑰器) 및 나전연갑(螺鈿硯匣)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여 왔는데, 이런 물건은

모두 형태가 특이하여 지시하여 만들지 않으면 모양을 이룰 수가 없으니, 이를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유기장(鑰器匠) 1인과 나전장(螺鈿匠) 1인을 불러와 주면, 여기서 지시하여 값을 주고 조성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노인 3통은 물에 젖었기로 고쳐 써서 들이라는 뜻으로 말로 책망하고 받지 아니하였으며, 1통만 가져와 들인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그 소청 가운데 유기장은 그 나라에 본디 없다고 하는 바 그 말대로 한 사람을 지급하도록 허락하여 값을 주어 그릇을 만들게 하여도 무방할 듯하지만, 나전장은 그 나라에 가장 많고 그 장인의 솜씨와 품질이 다른 나라보다 가장 정교하다고 평소에 일컬어지는데, 제 나라에 가장 많고 가장 정밀한 장인을 버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청하는 것은 일이 매우 수상할 뿐 아니라, 유기장은 본부에도 좋은 솜씨를 가진 자가 있어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나전장은 본부에는 원래 그런 기술자가 없고, 오래된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간혹 통영(統營)의 장인을 불러온 때가 있는 바, 먼 곳에서 불러와 주는 것 또한 폐단이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나전장은 위의 뜻으로 말을 만들어 막고, 유기장 1인만 주도록 허락함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전에 왜인이 구청한 유기장이 이미 본부에 있다면 그대로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고, 나전장은 그 나라에 가장 많으며 본부와 이웃 고을에는 모두 없는 바라면 사실에 근거하여 막음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8월 24일 좌부승지 신 이원록(李元祿)⁶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사(1677) 10월 초9일

※이 문건은 본문 79쪽(사료 262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박문서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63) 이원록(李元祿, 1629-?): 경주 이씨로 자는 사흥(士興)이다. 현종 4년(166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나왔기에 즉시 훈도 안신휘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로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만나보았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봉행이 보낸 사서를 보니 도주의 아들이 이 달 초2일에 배를 타고 예도로 향하여 출발하였거니와, 때가 겨울철인지라 적견피(赤犬皮)가 사용될 곳이 많으니 2·3백 령(令)을 급하게 무역 요청하여 보내면 비선에 실어서 밤낮 없이 도중에 뒤따라 갈 계획으로 비선을 보낸다고 운운하여 왔으니, 판사 등은 모름지기 속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털이 두껍고 색깔이 붉은 2·3백 령을 이번 달 내로 때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른바 적견(赤犬)은 동래에서도 드물 뿐 아니라, 더구나 시급하여 갑자기 사들이기 어려우니, 이제 비록 고한다 하더라도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대마도가 비록 작지만 기르는 적견이 없는 곳이라도 몇 천 몇 백인데, 바다 가운데서 먹는 것이 물고기 젓갈에 불과한지라 모두 털이 빠져서 쓸 수가 없기로 귀국에 무역을 청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동래 부산 사이에 집집마다 기르고 있는 것이 닭과 개인데 그 중에 적견은 또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경상도 한 도만 하더라도 2·3백의 개 가죽은 아홉 마리 소의 털 하나에 불과할 것인데, 이렇게 조그마한 일은 조정에 고할 것도 없이 동래에서 경내에 분부하면 잠시 만에 수합하는 것은 한 번 호령하는 데 달려 있거늘, 어찌하여 중간에서 막는가?’ 하기에, 소인 등이 답하기를 ‘이게 무슨 말인가? 국법이 지극히 엄중하여 터럭 하나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동래 영감만이 아니다. 순찰사 사또 역시 감히 임의로 주고 받을 수가 없거든, 어떻게 조정에 품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하였더니, ‘이 적견피를 위하여 대마도에서 비선을 보내온 것은 그 뜻이 절로 있을 것이니, 동래 영감께서 어찌 잘 조처할 도리가 없겠는가? 판사 등은 모름지기 많은 말을 말고 말을 만들어 고하여 달라’고 시종 낮은 말로 간절하게 청하여 마지않기로, 소인 등이 답하기를 ‘비록 무역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결코 수량에 맞추기가 어렵고, 이번 달 안으로도 또한 기일에 맞출 수가 없다’는 뜻으로 마치고 나왔음. 노

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오며, 적견피의 무역을 요구하는 한 가지 일은 역관이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지만, 낮은 말로 간절히 애걸하여 누누이 마지않았다고 하는 바, 전후로 청한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닌데, 허락하더라도 이미 극히 지루하고, 허락하지 않더라도 또한 매몰찬 일이기애, 어떻게 해야만 알릴 수 있을 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구청한 적견피 300령의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적견피는 전에는 비록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지만 이제 이번 구청은 그 수량이 너무 많으니, 그 중에 100령만 본도에 명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10월 초10일 동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정사(1677) 10월 26일

※이 문건은 본문 81쪽(사료 264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박문서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선 9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안신휘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정사조(丁巳條) 이정암(以醕菴) 도서(圖書)를 받은 송사선(送使船)이고, 제2척은 동년조 세견(歲遣) 제4선이고, 제3척은 동년조 세견 제8선이고, 제4척은 동년조 겸대(兼帶) 세견(歲遣) 제9선이고, 제5척은 동년조 겸대 제10선이고, 제6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11선이고, 제7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12선이고, 제8척은 동년조 겸대 제13선이고, 제9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14선인데,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대관왜(代官倭)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고, 관수(館守)의 말이 ‘전일에 진달한 나전(螺鈿) 세공(細工)은 이곳에서는 불편하다는 형편을 한결같이 영감의 분부대로 서찰로 도중에 통기하였더니, 방금 봉행 등

이 나전 세공하는 사람은 나가사키[長崎]나 오사카[大坂] 성에는 과연 있지만 도중(島中)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귀국의 나전은 비록 초솔(草率)하다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모두 진귀한 보배로 보기 때문에 번거롭게 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 바, 이는 수량이 많거나 조성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단지 연갑(硯匣)과 층함(層函) 서너 건이 있을 뿐이니 실로 한 두 기술자가 열흘이나 달포 사이에 만들 물건이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자세히 진달하여 낙망하는 우려가 없도록 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중언부언하며 십분 지극히 간절하게 말하였음. 서계(書契) 15통과 노인(路引) 7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서계와 노인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나전장은 전일에 치계할 때 신이 이치를 따져 막은 사유를 진달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간청하는 바가 또 이러하온 바, 어떻게 해야 하올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금년조 세전 각선의 송사(送使) 회답 서계를 재촉하였으며, 요구한 바 나전장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1,2,3 특송사의 회답 서계는 이번 10월 17일에 겨우 이미 발송하였으니 아마도 저쪽에 필시 도착하였을 것이며, 이제 이번에 나온 선박의 회답은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속히 지어내게 하여 내려보내오며, 나전장은 한 두 명이 한 때 한 달 사이에 오가는 것은 본디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매양 막을 필요는 없을 듯하니, 본도에 명하여 나전장이 있는 곳에 분부하여 보내게 하여 먼 곳 사람들의 바람에 부응하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16년(1677) 10월 27일 동부승지 신 유명현(柳命賢)⁶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정월 17일

※이 문건은 본문 82쪽(사료 267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64) 유명현(柳命賢, 1643-1703): 진주 이씨로 자는 사희(士希), 호는 정재(靜齋)이다. 현종 14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형조판서와 이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왜선 4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다고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전에 사정을 물었던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데, 관수 및 대관왜 등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도주가 간절하게 약용으로 쓸 데가 있어서 호설(虎舌) 2근, 호경골(虎脛骨) 2근, 사서(四書) 2부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종종 있어서 매양 번거롭게 진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주가 절박하여 긴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막지 말고 잘 고하여 속히 들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하였기에, 동 왜선 4척은 모두 규정 밖에 나온 것이기로 급히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노인을 받지 아니했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규정 외로 나온 왜선 4척을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다시 역관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으며, 봉행 등의 사서(私書) 가운데 무역을 요구한다고 한 3종 내에 호설 2근과 호경골 2근이라 한 것은, 이전의 정식을 살펴보니 과연 이런 물건의 무역을 요구한 때가 있었으나, 호설은 몇 부(部)라 하였고 호경골은 몇 개(箇)라 하였지, 원래 근(斤) 수로 무역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기로, 이런 뜻으로 역관에게 전령하여 상세하게 곡절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전령에 근거하여 대관왜 등에게 호설과 호경골을 부라 하거나 개라 하지 아니하고, 범연히 근 수로 무역을 청한 연유를 다시 물었더니, 답하는 말이 ‘사용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근 수로 써 넣지 않았는데, 전례가 이러하면 호설 20부와 호경골 10개의 무역을 청한다’고 다시 조정하였다”고 수본하였는 바, 전에 계하한 관문 내용에는 도중에서 빈번하게 무역을 요구하는 일을 일체 막으라 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청한 3종은, 사서(四書) 2부는 이미 중대하여 마련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며, 호설과 호경골 등은 모두 약용으로 절박하다고 말을 하여 청하니 일체 막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사서 2부와 호설 2부, 호경골 10개의 무역을 요구하였다고 하였는 바,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용하는 것이 수고롭거니와, 힘으로 장만할 수 있는 물건이면 저지하여 먼 곳 사람에게 낙망하는 한탄이 있게 할 필요가 없으니, 사서와 호경골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호설 20부는 쉽사리 수량 대로 맞추기 어려운 듯하니, 그 반을 줄여 아울러 본도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찾아 줌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정월 18일 우부승지 신 이항(李沆)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오(1678) 정월 28일

※이 문건은 본문 83쪽(사료 268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할 뿐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운운하기를 왜의 작은 배 한 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로 치보하였기에 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의 분부로 말미암아 관수 등에게로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는데, 사서 안의 사연은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 40섬, 마른 대구어 4,000마리, 아주까리〔蓖麻子〕 4섬 등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비선을 보냈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와서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한 두 번이 아닐 뿐 아니라, 잣과 아주까리는 이미 철이 지났으며, 대구어는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의 말이 ‘저희들이 무역 요구가 빈번한 줄 모르지 않지만, 이는 곧 도주가 예도 집정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부득이하여 비선을 보낸 것인데, 이제 이번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겠거니와, 이미 철이 지났다고 어려워한다면 잣

40섬 중에서 10섬, 대구어 4,000마리 중에서 2,000마리, 아주까리 4섬 중에서 2섬 등을 줄인 다음에 그 나머지는 특별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주어서 도주의 간절한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음. 동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비선의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무역을 요구한 3종의 물건은 막아서 줄였다고는 하지만, 남아 있는 것이 또한 적지 아니하니, 잣 30섬, 대구어 2,000마리와 아주까리는 그대로 허락하기는 어려울 듯한데, 다만 그 실정이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 범연히 무역을 청하는 것처럼 견줄 것은 아니고, 예도에 있으면서 그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매우 박절하여 부득이 비선을 내보냈다고 간절히 요청하는 바, 전량 막는 것은 또한 매몰찰 뿐 아니라, 그 정세를 살펴보건대, 설사 한 번 막는다 하더라도 필시 재삼 시끄럽게 하여 마지않을 태세이온 바, 어떻게 조처해야만 적중할 수 있을른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마침 예도에 있으면서 잣 30섬, 마른 대구어 2,000마리, 아주까리 2섬을 그 집정 등이 요구한 것이라고 비선을 보냈다고 하는 바, 종종의 물건을 구하는 대로 곧장 허락하는 것이 어려운 듯하지만, 먼 곳의 사람을 회유하는 도리에 있어서 이전에 허락하던 물건을 이제 반드시 막을 필요는 없으니, 대구와 잣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모두 절반으로 하며, 아주까리는 비록 철이 지났으나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니 구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그들의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정월 29일 좌승지 신 이단석(李端錫)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아래 문건은 본문 85쪽(사료 270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경상감사 정박(鄭樸)의 장계 내용. 도착한 예조의 관문 내용 요약. 도주가 무역 요구한 사서 2부와 호경골 10개는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고, 호설 10부는 쉽사리 수량에 맞추기가 어려운 듯하여 그 반을 줄여서 아울러 본도

에 명하여 편리한 대로 찾아 줌이 마땅하다는 일로 계하하였으니, 동 무역 요구한 물건을 속히 마련하여 동래부로 보내라는 일로 이관한다 하였는데, 호경골(虎脛骨)은 산군(山郡) 각 읍에 분정(分定)하여 찾아 보내라고 하였으나, 호설(虎舌)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없기에 아마도 말려 두는 일이 없어서 얻기가 쉽지 않을 듯하여 참으로 염려스러우나, 또한 각 읍에 명하여 여러 갈래로 널리 찾아서 기어코 반드시 구하라고 하였으며, 사서(四書) 중 『대학(大學)』은 판본(板本)이 안동부(安東府)에 있어서 본읍에 명하여 인출(印出)하고 장정을 하여 보낼 계획이거니와,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는 판본이 경주부(慶州府)에 있고 『중용(中庸)』은 판본이 성주목(星州牧)에 있는데 판각한 지 오래되어 모두 이지러져 인출할 수 없게 된 지 이미 해가 오래되었으니, 동 『논어』와 『맹자』 및 『중용』 등의 책은 다른 도의 판본이 있는 곳에서 인쇄하여 보내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복계(覆啓)하여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사서 등 3종을 영남에서 편의대로 찾아 지급하라는 일로 복계하여 행회(行會)⁶⁵⁾ 하였는데, 방금 접한 경상감사 정박의 장계에는, 사서 가운데 『논어』와 『맹자』와 『중용』의 판본이 이지러져 인출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바, 도내에 있는 판본이 이미 해가 오래되어 낡았으면 인출하여 주기 어려운 형편이니, 『논어』와 『맹자』 및 『중용』 각 2질을 전라도에 명하여 속히 인출하고 장정을 하여 곧장 동래부로 보내라는 뜻으로 양남(兩南)의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 떠할지. 강희 17년(1678) 2월 초4일 좌승지 신 이단석(李端錫)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무오(1678) 2월 22일

※이 문건은 본문 85쪽(사료 271쪽)과 동일한 내용임.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논어』와 『맹자』와 『중용』 각

65) 행회(行會): 조정의 명령을 각 담당 부서에 전달함.

2부를 방금 경상감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입계하여 호남에 명하여 즉시 인출하여 보내는 일로 복계하여 행회하였는데, 방금 접한 전라감사의 이문(移文)에는 본도에 있는 판본 역시 모두 해가 오래되어 이지러져서 결코 인출하여 보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양남의 책판이 이렇게 이지러져 낡았으나, 새로 판각한 책판이 모두 성균관(成均館)에 있으니 들어갈 종이를 호조에서 마련하여 교서관(校書館)에 지급하여 속히 정밀하게 인출하여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도록 함이 어떠할지?” 하였는데,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무오(1678) 윤3월 23일

※이 문건은 본문 86쪽(사료 271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2척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한 척에는 신관으로 옮겨 거처할 때 바닥에 깔 것들과 기계 등의 물건을 실어가지고 나왔으며, 한 척에는 무역을 요구하기 위해 관수왜에게로 도중(島中)의 봉행(奉行) 등이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도주가 오는 5월 사이에 대마도로 돌아올 것인데, 예도의 여러 집정 등에게 사용할 것이라고 인삼 80근, 녹말 700근, 호두 40섬, 잣 40섬, 대구어 1,500마리 등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할 뿐 아니라 대구어와 잣 등의 물건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또 무역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여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으며, ‘인삼과 녹말과 호두는 수량이 또한 과다한데 이런 수량은 그대로 허락할 길이 만무하다’고 온갖 방법으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판사 등의 간절한 말이 이러하니, 저희들이 비록 도중(島中)의 책망을 받더라도 수량대로 무역을 요구할 수 없겠거니와, 각기

반으로 하여 인삼 40근, 녹말 350근, 호두 20섬 등은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주어 진작 도주가 돌아오기 전에 들여보낸다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신이 생각컨대 근래 도중에서의 무역 요구는 실로 지루할 뿐만 아니라, 이번
 에 청한 수량은 또한 너무 지나쳐서 잣과 대구어는 비록 막았다고는 하나, 세
 가지 물건 또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 없으니, 속히 엄준한 말로
 막으라는 뜻으로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분부하였더니, 훈도의 수본
 (手本) 내용에, “전령에 의거하여 즉시 왜관에 가서 세 가지 물건을 또 절반
 으로 줄인다는 뜻으로 갖가지 사단으로 타일렀더니, 관수왜 등이 말하기를
 ‘어제 사정을 물을 때 판사 등이 그 수량이 너무 많다고 극단으로 말하였기에
 저희들이 부득이 반으로 줄였는데, 이제 또 반으로 줄이면 그 수량이 너무 적
 어서 도리어 무역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떠들어 마지않다가, 한결같이 고집
 하였더니, 세 가지 가운데 호두 10섬과 녹말 50근만 간신히 줄였다”고 하는
 바, 두 차례 줄인 외에도 아직까지 인삼 40근과 녹말 300근, 호두 10섬이
 있으니, 이 수량 또한 과다한 듯하나, 한 번 줄이고 두 번 준인 뒤에 다시 줄
 이기는 어려운 형편이기로, 부득이 사유를 갖추어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바야흐로 예도에 있으면서 비선을 보내어 집정 등에게 사용할
 인삼 40근, 녹말 300근, 호두 10섬을 속히 무역 요구하라 하였다고 하는바,
 왜인이 무역 요구한 물건이 비록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매우
 자주 중첩하여 부응하기가 어려운 듯하나, 먼 곳 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에 있
 어서 저지할 필요는 없으니, 녹말과 호두 등은 본도에서 수량 대로 무역을 허
 락하며, 인삼은 그 수량이 많은 듯한데다, 지금 새로 캐는 것은 생산되지 않
 고 예전에 캐 것은 이미 동이나서 수량대로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원래
 수량 중에서 10근을 감하고 그 나머지를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들여 보
 내어 그들의 바람에 부응함이 마땅하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7
 년(1678) 윤3월 24일 좌부승지 신 정창도(丁昌燾)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윤3월 28일

※이 문건은 본문 88쪽(사료 273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 부분이 앞 문건보다 상세함.

동래부사 이복이 윤3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조선 배인지 왜 선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선박 4척이 물마루로 나온다는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으라고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영솔하여 온 차왜 굴정현(楡政賢)의 배이고, 제2척은 정사조(丁巳條) 부특송(副特送) 2호선이고, 제3척은 우리나라 사람 7명을 싣고 온 배이고, 제4척은 우리나라의 바람에 표류한 배인데 우리나라 사람 11명과 통사왜(通事倭) 1인, 사공왜(沙工倭) 1명, 격왜 9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는데, 동 차왜 굴정현의 봉진(封進)은 모두 오지 않았음. 차왜가 오지 않은 일은 지난번에 동래 영감의 분부 내용에 새 왜관의 공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바람에 표류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차왜가 오래지 않아 올 것이라고 하기에, 두 곳에 응접하는 사이에 그 폐단이 또한 적지 아니하여, 관수왜로 하여금 왜인을 차출하여 보내지 말고 다만 통사왜로 하여금 데리고 오라는 뜻으로 도중(島中)에 서찰을 통지하도록 시키거늘, 소인 등이 관수에게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과연 이런 뜻으로 도중에 서찰로 통지하였는데, 먼저 왔던 굴성정은 사서(私書)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왔거니와, 이제 이번 차왜 굴정현 및 봉진 등은 도중에서 이미 차출 확정하여 서계를 가지고 장차 출발하려고 하다가, 관수의 사서로 말미암아 차왜(差倭)를 보내지 말고 서계(書契)만 보내었는데, 관수의 말이 ‘그에게 지급할 물건은 한결같이 나온 사례대로 들여 달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봉행 등이 보낸 사서(私書)에는 도주가 예도의 집정 등의 요구에 응하려고 나이가 어린 숫말 7필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 하였는데, 급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매우 빈번하여 결코 그대로 허락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귀국의 형편이 이러하면 비록 7필 수량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어린 말 5필의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전에 진작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 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거늘,

신은 즉시 '근래에 이렇게 빈번한 것은 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설사 애써 장계로 알려져 무역을 허락하는 조정의 명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이가 적은 어린 말을 험악하고 먼 길에 결코 폐단 없이 도달할 이치가 없다'고 이런 뜻으로 잘 말을 만들어 기어코 막은 뒤에 수본(手本)하라고 역관 등에게 전령(傳令)하였더니, 방금 접한 훈도 별차 등의 수본 내용에, "전령의 사연을 온갖 방법으로 관수왜에게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저희 또한 빈번하게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미안한 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 어린 말은 전에 일찍이 범연히 구청한 물건과는 다름이 있어서, 도주가 5월 내로 대마도로 돌아오도록 확정되어 있는데 섬으로 돌아오기 전에 에도의 여러 집정 등에게 부득이하게 수용할 일이 있으므로, 저희들에게 보낸 서찰에 특별히 간절하게 구하라고 하였으니, 판사 등은 이 긴급한 사정을 이해하고 말을 만들어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허락하되, 만약 도로가 험악하여 도달하기 어렵다고 우려되면 경상도 도내의 가까운 읍에 있는 어린 말을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는다"고 수본하였는 바, 이 수본 내의 사연을 보건대, 그들이 무역하기를 원하는 청이 매우 긴급하여 끝내 막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어린 말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한다면, 말 주인이 끌고 와서 들여 주고 값을 받아 돌아가는 것은 또한 무방할 듯하겠기로, 아울러 이렇게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고, 본도로 이문(移文)하여 인근 고을에서 사사로이 무역하게 허락함이 어떠할지 모르겠다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방금 접한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에는 관수왜의 말이 나이가 적은 숫말 7필을 도주가 에도의 집정 등의 요구에 응하여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겠다고 하였는데,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극도로 불편할 뿐 아니라 비록 장계로 알린다 하더라도 험악하고 먼 길에 어린 말이 결코 폐단 없이 도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역관 등으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막게 하였더니, 관수왜가 도주가 서찰을 보내어 간절하게 구하니 이 긴급함을 이해하시고 비록 7필의 수량이 안 되더라도 5필은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고하여 기어코 반드시 허락하되, 비록 도내의 가까운 고을에서 어린 말을 사사로이 무역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무역을 매우 간절하게 소원하는지라, 끝내 막기는 어려울 듯할 뿐 아니라, 사사로운 말의 무역을 허락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해 달라 하였거늘, 본조의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갑진년(1664)에 두 가지 말 2필의 무역을 요구한 청이 있었는데, 그 때 이미 요구에 응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관서에서 보내어 폐단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도내의 부근 각 읍에 명하여 어린 말을 가진 자가 들여 주고 값을 받는 것이 과연 무방한 듯하나, 다만 무역을 원하는 것이 5필인데, 합당한 말을 숫자 대로 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말이 있는 곳을 찾아서 편의에 따라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에 이문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윤3월 29일 동부승지 신 유하익(兪夏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6월 초5일

※이 문건은 본문 89쪽(사료 275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이 나왔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왜 박세량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에 운운하여, 상황의 왜인 등은 모두 규정 밖에 나왔으니 급속히 책망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분부하고 연유를 아울러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은 전례에 따라 물리쳤을 뿐 아니라 역관 등을 엄하게 신칙하여 준절한 말로 그 태만한 버릇을 책망하게 한 다음, 그대로 한 시각도 머무르지 말고 속히 들여보내라고 하였으며, 일찍이 윤3월 18일에 도주가 예도에서 내어보낸 비선이 무역을 요구한 것이 인삼 80근과 녹말 700근, 호두 40섬, 잣 40섬, 대구어 1,500마리 등이거늘, 대구어와 잣 등의 물건은 역관 등에게 명하여 전량 막게 하였고, 인삼과 녹두가루, 호두는 막지 못하고 재삼 다투어서 그 수량을 줄여, 인삼 40근, 녹두가루 300근, 호두 10섬만으로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였다가, 동월 24일 성첩한 예조의 회계관문 내용에, 녹말과 호두는 본도에서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인삼은 원

수량 내에서 10근을 줄이고, 그 나머지는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고 사들여서 보내어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라 하였기에, 녹두가루와 호두는 본도에서 즉시 나누어 보내어 이제 막 들여 주고 있으나, 인삼은 아직도 내려오지 않기로 관수 이하 여러 왜인들이 매양 말을 하며 떠들어 마지않을 즈음에, 이제 들어온 배의 격왜(格倭) 등의 말에 도주가 이미 이번 달 초8일에 대마도로 돌아왔다고 하기에, 비록 알리려고 보내온 배는 아니지만, 그들이 이미 대마도로 돌아왔다는 통지를 듣고서는, 그들의 경솔하고 조급하여 참지 못하는 성품이 더욱 한 층 더하여, 인삼을 재촉하는 말이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바, 만약 당초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허락한 뒤에 벌써 석 달이나 되도록 아직도 내려 보내지 않아 도주가 이미 돌아왔으니, 저쪽 사람들이 다 급하여 대드는 말 또한 무리하다 할 수 없겠으니, 동 인삼 30근을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품신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전에 왜인이 구청한 인삼 30근을 겨우 그 수량을 마련하여 지난 5월 23일 금군(禁軍) 김곤(金璣)에게 주어 이미 내려 보냈는데, 그 날짜를 헤아려보면 필시 이미 저쪽에 도착하였을 터이니, 이런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찌할지. 강희 17년(1678) 6월 초 5일 우승지 신 남천택(南天澤)⁶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입술⁶⁷⁾ 7월 초1일

※이 문건은 본문 90쪽(사료 276쪽)의 무오(1678) 7월 초1일 문건과 내용이 동일한데,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전후 사정을 보면 아마 연도 기재의 착오로 보임.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가별차(假別差) 박유년(朴有年)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66) 남천택(南天澤, 1619-?): 영양 남씨로 자는 소우(蘇宇), 인조 26년(164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승지를 역임한 인물. 천한(天漢)의 아우. 그런데 앞에 나온 같은 날자의 문서에 우승지 남천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남천택으로 되어 있으니, 한쪽의 착오가 있는 듯하다.

67) 이 입술은 무오(1678)의 착오로 보인다.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가 하는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거니와, 다만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각종 무역을 요구하기 위해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의 내용을 물었더니, 관수 또한 말하기를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에 전례대로 여러 집정에게 위문하면서 겸하여 예단을 보내는 일이 있는데, 이제 막 준비하고 있으나, 평소 토산물이 모자라고 또한 다른 나라의 진기한 물건이 없어 절박하게 걱정하고 있을 즈음에, 집정 등이 요구하는 것이 또 뜻밖에 나와, 부득이 사람을 보내어 무역을 청한다’고 하면서 받기(件記)를 내어 보였는데, 상상품의 흰모시베(白苧布) 30필, 상품의 생모시베(生苧布) 20필, 청서피(靑黍皮) 50령(令), 담비가죽 50령, 녹두가루 500근, 황모필(黃毛筆) 300자루, 대절진묵(大節眞墨) 50동, 흰양가죽(白羊皮) 100령, 잣 20섬, 호두 30섬, 대추 3섬, 큰 대구어 1,500마리, 각색 대사(大紗) 30필, 홍전(紅氈) 500립, 우산지(雨傘紙) 25권, 검은 말총으로 옷을 하여 둔 마성(馬省) 500개, 각색 대단(大段)과 금선(金線)과 선단(縵段) 각 두 세필, 상상품의 공목(公木) 200동 등을 급속히 간절하여 구하여 보내며, 전에 구하였던 어린 말 또한 즉시 택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빈번한 것이 요즈음처럼 심한 때가 없으니 일이 매우 지루할 뿐 아니라, 이제 이 물종도 또한 매우 많아서 결코 계속하여 진달할 수가 없으며, 그 중에 비록 토산(土產)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철이 지났고, 당물(唐物)에 있어서는 더욱이 얻기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타일렀더니, 관수가 답하기를 ‘일의 형편이 과연 말한 바와 같은 줄 잘 알지만, 도중(島中)의 형편 또한 매우 절박하여 부득이 사람을 보내어 간청하지 않을 수 없거늘, 이제 만약 철이 지났다고 지극히 천한 토산물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또 당물(唐物)이라고 칭하면서 약간의 대단(大段)도 막는다면 끝내 고할 말이 없고, 도중에서 낙망하는 것이 이보다 긴절한 것이 없다’고 하거늘, 다시 앞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호두와 잣, 대추와 대구어는 새로 산출되는 대로 곧장 무역을 허락하며, 녹두가루는 비록 가루를 만들 때가 아니지만 정녕 사용하는 계절이니 일이 100근이라도 모쪼록 찾아 주며, 청서피와 담비가죽, 대사(大紗)와 홍전(紅氈), 금선(金線), 선단(縵段), 대단

(大段) 등은 짐짓 대관왜 등으로 하여금 장사꾼에게 널리 구하게 하겠거니와, 그 밖의 흰모시베와 생모시베, 필묵, 양가죽, 우산지, 마성, 공목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속히 들여달라는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공목(公木)만은 평소 지급하는 가운데서 가려서 지급할 수 있으나 또한 수량대로 허락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근래에 공목이 좋지 않으니 각별히 가려 받아 기어코 수량에 맞추어 들여달라'고 중언부언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근래에 도중에서 무역 요구가 빈번하고 많아서 이미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데, 이번에 무역 요구하는 물종이 또 이렇게 너무 많기로, 역관 등에게 말을 만들어 막게 하되, 요구한 19종 가운데 영구히 막을 것은 청서피, 담비가죽, 대사, 홍전, 금선 선단, 대단 등 7종이고, 산출될 때를 기다려 다시 청하여 무역을 허락할 것은 호두, 잣, 대추, 대구어 등 4종이고, 막을 수 없어 바야흐로 무역을 허락한 것은 녹두가루, 흰모시베, 생모시베, 황모필, 진묵, 양가죽, 우산지, 마성 등 8종이온 바, 8종의 물건을 일시에 무역 허락하는 것 또한 과람하여, 신은 다시 역관에게 명하여 극력으로 다투어 줄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도주가 새로 에도에서 와서 전례에 따라 여러 집정에게 예물을 봉해 올려야 하는 일이 있으며, 에도의 여러 집정이 또 별도로 도주에게 요청하는 일이 있어서, 형편이 무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로, 신의 생각으로는 불시에 무단히 무역을 요청하는 것과는 간격이 있을 듯할 뿐만 아니라, 변방의 신하가 조정에 품신하지 않고 오직 줄이는 것을 능사로 삼고, 이미 그 반 정도를 줄인 뒤에도 한결같이 굳게 고집하여 기어코 또 줄이려고 한다면 혹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체면에 손상이 없지 아니하여, 짐짓 이렇게 우러러 품신하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며, 이른바 공목 200동은 저들의 말이 비록 무역을 요구한 가운데 섞어 넣었다고 하지만, 이른바 연례(年例)로 지급할 물건이지 본디 무역을 허락하는 가운데는 들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운운한 것은 근래 공목의 울수와 치수가 모두 이전만 못하기에, 교활한 무리들이 구무(求貿)라는 두 글자를 빙자하여 좋은 포목을 가려서 거두려고 하는 계획이니, 이미 속셈이 들여다보이니 깊이 우려할 것이 아니옵고, 다만 엿드려 생각컨대 금년조로 거

둘 공목의 원 수량이 700동인데, 관왜 등의 응련(鷹連)과 물화(物貨) 등의 가격이라고 각 사람들에게 수표(手標)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나, 호조(戶曹)에서도 물화 가격으로 계산하여 제한 것을 연속하여 올려보냈기로, 당장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이 상품이나 중품을 막론하고 그 수량에 충당할 수 없을 듯하여 염려스러우나, 신이 마땅히 모쪼록 주선하여 한편으로 그 품질을 강등하고 한편으로는 그 수량을 줄여서 크게 일이 생기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도록 할 것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면, 도주가 구청하는 20종 중에서 청서피 50령과 담비가죽 50령, 각색 대사 30필, 홍전 500립, 각색 대단과 금선, 선단 각 두 세 필은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막아서, 짐짓 대관왜 등으로 하여금 장사꾼에게 널리 구하게 하였으며, 대구어 1,500마리, 잣 20섬, 호두 30섬, 대추 3섬도 역시 철이 지나 부응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타일렀더니, 새로 산출되는 대로 다시 청하여 무역을 허락하기로 하였으며, 상상품의 흰모시베 30필, 상상품의 생모시베 20필, 황모필 300자루, 대절 진묵 50동, 우산지 25권, 녹두가루 500근 중 1·2백 근, 흰양가죽 100령, 검은 말갈기로 옷을 입힌 마성 500개 등 8종은 막지 못하고 바야흐로 무역을 허락하도록 청한다고 하였으며, 공목 200동에 있어서는, 저들의 말로는 비록 무역 요구 중에 섞어 넣었다고 하였지만 구무(求貿) 두 글자를 빙자하여 좋은 포목을 가려 받으려는 계획이니, 지금 공목(公木)으로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은 상품과 중품을 막론하고 그 수량에 채울 수 없을 듯하여 이것이 걱정스러우나, 모쪼록 주선하여 한편으로 그 품질을 강등하고 한편으로 수량을 줄일 계획이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청서피 등 7종은 대관왜가 스스로 장사꾼들에게서 무역을 요구할 것이거니와, 대구어 1,500마리 중 700마리를 줄이고, 잣 20섬 가운데 10섬을 줄이고, 호두 30섬 가운데 15섬을 줄이고, 대추 3섬은 그 요구하는 수량대로 산출이 되기를 기다려 무역을 허락하게 하며, 상상품의 흰모시베 30필 중 10필을 줄이고, 황모필 300자루 가운데 100자루를 감하고, 대절 진묵 50동 가운데 20동을 줄이고, 녹두가루 500근 가운데 300근을 줄이고, 백양가죽 100령 가운데 50령을 줄이고, 검은 말갈기로 옷을 입

흰 마성 500개 중에서 200개를 줄이고, 상상품의 흰모시베 20필, 우산지 25권은 그들이 요구하는 수량대로 아울러 무역을 허락하며, 공목 200동은 비록 이미 연례로 지급할 물건이지만 지금 바야흐로 창고에 남아 있는 수량이 또한 넉넉하지 않고, 근래에 올 수와 치수가 모두 예전 같지 못하니, 본부에서 힘을 붙여 주선하여, 그 포목의 품질을 줄이고, 그 필 수를 줄여서, 일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알려져서 거행하되, 이전에 구청한 어린 말을 가려보내는 일은, 왜인들이 또한 운운하였으나 장계로 알리는 가운데는 별도로 문답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 연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저쪽에서 이미 구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연기하여 먼 곳 사람이 필시 낙망하는 한탄이 있을 터이니, 속히 찾아 부응하라는 뜻으로 본도 및 본부에 아울러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7월 초1일 동부승지 신 이담명(李聃命)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7월 15일

※이 문건은 본문 94쪽(사료 281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이 치통한 내용 운운. 왜의 작은 배 3척이 나와서 영술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치보에 의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가별차 박유년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동 선박 3척은 모두 비선인데 각기 노인을 가지고 은화(銀貨)를 실어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 하였음. 관수왜가 소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보기를 청하거늘, 소인 등이 관수에게 가 보았더니, 관수는 도주가 그에게 보낸 사서의 내용을 소인 등에게 말하기를 ‘도주가 일찍이 귀국의 가옥(家屋) 제도가 정밀하고 좋다는 소문을 듣고 한 번 보고자 한 지 오래인데, 이제 이 사서 가운데는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볼만한 몇 칸 정자각(亭子閣)을 기어코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사연을 갖추어 서찰을 보냈는 바, 우리나라에서 숭상하는 것은 오직 오래된 물건에 있는지라 영가대(永嘉臺)와 같은 몇 칸 정자각으로서 지은 지 여러 해

가 지나고 손상되지 않은 가옥을 헐어서 철거하여 주시되, 기둥과 들보, 도리와 서까래에 낱알이 표를 하여 도중으로 들여보내어 고쳐 지을 때 착오가 생기는 걱정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거늘, 소인들이 답하기를 '우리나라 가옥 제도에는 본디 교묘한 장식이 없고, 영가대와 같은 이른바 정자는 매우 드물게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지어 놓은 집을 헐어서 철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철거하여 옮길 때 부러져 손상되거나 착오가 생기는 염려는 필지의 형편이며, 비록 표를 한다 하더라도, 단청 모양이 옮겨 세운 뒤에는 응당 그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서, 곧장 볼 만한 물건이 아니게 된다'라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산간이나 물 굽이에 어찌 몇 칸 정자 가옥이 없겠는가? 다만 이미 지은 집을 이제 갑자기 헐어서 철거하는 것이 비록 폐단이 있을 듯하나, 그 가격 대로 값을 주어 고쳐 짓게 한다면, 필시 손상되는 바가 없을 것이고, 그 밖에 운송하는 비용 또한 맞춰 지급하겠으니, 단청의 유무는 헤아리지 말고, 서너 칸 정자각의 목재와 기와와 창호 판자에까지 모두 일일이 표를 하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간절히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아니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신은 부산진에서의 치통을 보자마자 마음으로 그 무역 요구가 이상하다고 괴이하게 생각하였는데, 가별차 박유년이 뒤따라 와서 신에게 고하기를 '관수의 말이, 이제 이번에 도주가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범연하게 갑자기 발설한 일이 아니고, 제가 도중에 있을 때부터 도주가 매양 귀국의 가옥 제도가 정밀하고 좋다는데 한 번 보고싶다고 말을 하였는데, 이제 와서 왜관 공사를 완공한 뒤로 도주가 귀국에서 이건한 객관(客館)의 규모와 제도가 매우 정묘하면서 화려하다는 소문을 상세히 듣고서는 전일에 보고 싶어 하던 마음을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서찰을 보내어 간청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것을 사정을 물어보는 예사 이야기로 간략하게 부산에 언급하고 말면 동래 영감께서도 필시 도주의 의중을 통찰하지 못하고 대단한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긴요하지 않은 일로 보게 되면, 저의 마음이 극히 절박하게 되니, 판사(判事)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동래로 달려가서 제가 고한 말을 일일이 자세히 영감 전에 진달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여 마지 아니 하였기로, 소인이 부득이하여 와서 고하오니, 관수에게는 어떻게

회답할까요?’하거늘, 신이 별차로 하여금 돌아가서 관수를 타일러 ‘근래에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빈번한 것이 전보다 특별히 심하여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허락할 만한 것은 장계를 올려 허락하도록 청하고, 허락할 수 없는 것은 때때로 막아서 당초부터 장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거니와, 이제 이번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실로 전후에 없었던 일이고, 거기에 폐단이 있거나 폐단이 없거나 허락할 만 하거나 허락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따지지 않더라도, 일이 이미 예사 일이 아닌즉 변방의 신하된 도리로는 이미 마음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는데다가 또한 앞질러 막을 수도 없으니, 오직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올려보내어 조정의 처분이 어떠할지를 기다릴 따름이라고 말하여 보내고, 사유를 갖추어 장계를 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가 도주의 요구로 말미암아 역관 변이표 등에게 말을 전달하여 말하기를 도주가 귀국의 가옥 제도가 정밀하고 좋은 것을 보고 싶어 하여 영가대와 같은 몇 칸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간절히 말하였다 하거늘, 역관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이 굳이 무역 요청을 간절히 청하여 마지아니하고, 가별차 박유년이 직접 와서 고하기까지 하였거늘, 근래에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것이 빈번하기가 이전보다 특별히 심할 뿐 아니라, 이제 이번 정자각의 무역 요구는 실로 전후에 없는 일인지라 변방의 신하로서 이미 마음대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고 또 앞질러 막을 수도 없어서, 사유를 갖추어 장계로 올려서 조정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기다리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고 하였는 바, 도주가 정자각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미 구할 만한 물건이 아닌 데다 또한 이상한 거동이니, 동래부사로서는 마땅히 엄하게 역관들을 신칙하여 말을 만들어 막음으로써 전에 없던 폐단을 막게 해야 마땅하거늘, 이제 앞질러 먼저 막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을 하여 보낸다고 운운한 것은 매우 심히 타당치 않으며, 예조에서 올린 등록을 가져다 살펴보니, 일찍이 을사년(1665)에 도주가 우리나라 가옥 제도를 완상하고자 차왜를 보내어 재목과 장인의 무역을 요구하여, 왜관에서 교묘하게 별당(別堂)을 만들고 단청을 찬

란하게 하여 도로 헐어 철거해서는 도중으로 운송해 들어가 제도대로 고쳐 세워서 구경거리로 삼으려 한 일이 있었는데, 본조에서는 별당을 짓고 단청을 했다가 철거해서 운반하는 일은 이미 예도에서 청한 일이 아니고, 또 전례에 따라 무역을 요구하는 데 견줄 것도 아니니 엄한 말로 준절하게 물리쳐서 기어코 막으라는 뜻으로 복계하여 윤허를 받았고 본도와 본부에 회이하였는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저쪽 사람들이 곤란한 병폐가 생길까 우려하여 비록 싫증을 낼 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을 굽혀서 들어주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전에 없던 일은 반드시 그들의 청에 따라 줌으로써 후일의 무궁한 폐단을 열어줄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말을 만들어 굳이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1678) 17년 7월 18일 우승지 신 권(權)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무오(1678) 8월 17일

※이 문건은 본문 97쪽(사료 284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첫머리가 조금 자세함.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이 치통 내용에 왜선 3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와 별차 이준한(李俊漢)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왜관을 옮기는 것을 사례하는 차왜 정관(正官) 평진현(平眞顯)과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중(伴從) 20명, 격왜 60명이고, 제2척은 도선주(都船主) 평행신(平行信)과 반중 5명, 격왜 40명이고, 제3척은 급수소선(汲水小船)으로 격왜 15명 등이 예조참판과 참의에게 보내는 서계 별폭 각 1통과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가지고 왔으며, 또한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별폭을 각기 1통도 또한 가져 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동래 부산으로 전례에 따라 보내는 서계 이외에 또 별도의 서계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탐문하였더니, 동 차왜가 답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이제 이번에 동래 부산 두 영감 전에 별도로 서계를 한 것은 다른 연고가 아니라 관사(館舍) 건물이 신속히 완성된 것은 온전히

두 영감이 잘 지휘하여 힘을 써 준 덕택인지라 그러므로 도주가 감격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별도의 서계로 치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음. 관수가 또 말하기를 '방금 도중에서 보낸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전일에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을 급속히 재촉하여 들여보내되, 또 에도에서 요구하는 체구가 큰 준마로서 아직 코를 가르지 아니한 것 3 필을 또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동 말 3필에다 어린 말을 일시에 무역 요구하여 속히 들여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거늘, 소인 등이 말하기를 '전자에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도 아직 무역하여 주지 못했는데, 말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빈번하며, 이렇게 체구가 큰 준마는 또한 찾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말의 무역 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하는 말은 곧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라 무역을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되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체구가 큰 준마 3필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어린 말의 요구에도 응하지 못했는데 큰 말의 무역을 또 청하는 것은 일이 극히 지루하지만, 말의 수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한결 같이 막는 것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도주가 무역 요구한 어린 말 5 필을 아직 구하여 응하지 못한 때에, 체구가 큰 준마 서너 필의 무역을 또 요구하는 것은 과연 지루하여 따라주기 어려운 듯하나, 이미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니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도리에 있어서 또한 막는 것도 불가하니, 동 큰 말 3필 중 그 1필을 줄여 해조에 명하여 속히 사서 보내어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와 본부에 아울러 알려져서 거행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8월 18일 동부승지 신 민취도(閔就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오(1678) 8월 22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변이표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 등과 응사왜(鷹師倭) 2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잡물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며, 제2척도 비선인데 사기(沙器)를 구워만들기 위해 감역왜(監役倭) 2인 등이 동래와 부산으로 봉행 등이 보내는 서찰 1통을 가지고 왔음. 관수 및 대관 등의 말이 ‘금년에는 예도의 여러 집정 등이 무역을 요구하는 사기의 수량이 매우 많을 뿐 아니라, 도중에서 사용할 곳이 전에 비해 배나 되어 특별히 많이 만들어야 계속 쓸 수 있겠는 바, 각양 색토(色土) 등은 전례대로 먼저 분정(分定)하라는 뜻으로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거늘, 소인이 답하기를 ‘이전에는 도주가 서계와 노인을 만들어 보내는 이외에 평소 봉행 등의 서찰을 가져오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봉행 등의 서찰은 규정 외에 관계된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받지 아니하였더니, 관수왜가 말을 늘어놓으며 간절히 답하기를 ‘이전에 구워 만들 적에는 흙의 품질이 정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가(假家)를 짓고 흙을 운반하고 나무를 운반할 때에 절로 지연이 되었기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밀하게 만들고 속히 완성하려고 하므로 이렇게 간절한 서찰을 드릴 뿐 다른 의도는 없으니, 받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봉행 등의 사서에는 전일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 및 잡물 중에 긴요하게 쓸 곳이 있다고 생모시베(生苧布)와 양가죽(羊皮), 대절진묵(大節眞墨) 등의 물건을 속히 들여보내달라고 하였는 바,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기로, 위 항목의 노인 1통과 봉행 등의 서신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거늘, 신은 그 봉행 등이 사사로이 동래와 부산에 서계를 보내는 일이 궤이하여, 본부에 있는 전일의 등록을 상고하였더니, 만약 긴급하게 통보할 일이 있는데 도주가 마침 예도에 있는 날이면 혹 봉행이 대신 쓰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도주가 대마도에 있는 날에는 전후로 그런 규정이 없거늘, 지금 온 봉

행 등의 서계 가운데 날짜를 살펴보니, 이는 곧 6월에 나온 것이고,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이 5월 초8일이니, 이 서찰을 만들어 보낼 때는 도주가 대마도에 있을 때임이 의심할 것 없이 명백한데, 전례로 헤아려보건대 사체에 크게 어긋나기로, 이런 뜻으로 역관 등에게 전령하여 그 서계를 돌려보내고 책망하여 타일러 받지 아니하였으며, 노인은 역시 젖은 곳이 많기에 고쳐 써서 바치게 하기 위해 일체 되돌려 보냈는데, 이른바 봉행 등이 사사로이 보낸 서계 가운데 하는 말은 모두 사기를 구워 만들 때 들어갈 각색 물자를 속히 마련하여 넉넉하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고, 별로 다른 의도는 없는데, 사기를 구워 만들겠다는 청을 어떻게 응해야 하며, 재촉하는 어린 말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이제 막 본도에서 이웃 각 고을에 분부하여 날마다 구하고 있으나, 말의 품질이 좋지 않다고 연속하여 점퇴(點退)⁶⁸하며 물건을 잡으려 들지 않는 바, 매우 염려스러워 타일러 조정하면 거의 큰 소란은 없을 듯하며, 생모시베와 양가죽과 대절진목은 아직 내려오지 않을 즈음에 이렇게 배를 보내와서 재촉하는 바, 위 항목의 양가죽 등 3종은 모두 이미 허락한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갖추어 보내어 날마다 재촉받는 폐단이 없게 하시며,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은, 또한 품의 조처하여 지휘하여서 때 맞추어 거행하게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비선 2척을 보냈는데, 하나는 전일에 무역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는 일이고, 하나는 사기를 구워 만드는 각색 흙을 청하는 일인데, 봉행 등이 사사로이 동래 부산으로 서계를 보내었기로 동래부에 있는 등록을 상고해 보니, 도주가 마침 예조에 있을 때에는 간혹 봉행 등이 대신 쓰는 때가 있기는 하였지만, 도주가 대마도에 있는 날에는 전후로 그런 규정이 없거늘, 이제 온 봉행의 서계 날짜를 살펴보니, 도주가 방금 도중에 있을 때인지라 서계를 받지 아니하였거니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여 달라고 하였는 바, 전일에 무역을 요구한 것은 서울에서 갖추어 보냈고, 양가죽 등 3종은 이 달 초7일에 역관 한 천석(韓天錫)⁶⁹에게 인계하여 모두 이미 내려보냈거니와, 본도에서 사들인

68) 점퇴(點退): 점검하여 물림.

69) 한천석(韓天錫, 1653-?): 청주 한씨로 자는 성초(聖初)이다. 숙종 1년(1775)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어린 말 5필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거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바, 일이 극히 타당치 않으니, 본도에 명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다시 분부하시며, 사기 흠을 구청하는 일로 도주가 바야흐로 도중에 있는 날에 봉행 등이 사사로이 동래 부산으로 서계를 보내는 일은 전례로 헤아려 보건대 크게 사체(事體)에 어긋날 뿐 아니라, 또한 뒷날의 폐단과 관계되어 들어줄 수 없으니, 역관 등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관수 및 나온 두왜 등에게 책망하여 타일러 서계를 받지 말고 되돌려 보내라는 뜻으로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17년(1678) 8월 23일 동부승지 신 민취도(閔就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기미(1679) 2월 초2일

동래부사 이복의 장계.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⁷⁰과 별차 오윤문(吳允文)⁷¹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제1척과 제2척은 문위역관 김근행(金謹行) 등이 탄 배로 일을 마치고 돌아옴이며, 제3척은 문위역관 호위 차왜 굴성진(橋成陳) 등이 탄 배라 운운하였음. 비직(卑職)이 왜관에서 나올 때 차왜 굴성진이 만나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제가 나올 때 도주가 분부하기를 예도의 집정 등의 서찰을 보니 대군께서 달마(獐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기로, 이런 뜻을 이미 김지사(金知事) 전에 말하였거니와, 말의 색깔 및 마리 수는 추후에 서찰로 보낼 계획이니, 이 뜻을 먼저 역관 등에게 통지하여 동래 영감 전에 전하게 하여 달라고 하거늘, 분부를 듣고 나왔으니, 이 뜻을 미리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돌아와 말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달마(獐馬)를 무역 요구하는 일은 털의 색깔 및 마리 수는 추후에 서찰로 보낼 계획이라 하였으니, 오래지 않아 반드시 무역을 청하는 일이 있을 터이니 지금 진달할 필요가

70) 박재흥(朴再興, 1645-?): 무안 박씨로 자는 중기(仲起)이다. 현종 4년(1663)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71) 오윤문(吳允文, 1646-?): 해주 오씨로 자는 자화(子華)이다. 현종 13년(1672)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없고, 달마를 요청하는 것은 전에 없던 일일 뿐 아니나, 사정을 묻는 가운데 이미 이렇게 간청하였기로 아울러 품의드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해조에 명하여 미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에** 운운. 달마(獠馬)를 요청하는 것은 전에 없었던 것으로 쉽사리 들어주기 어려울 듯한데, 그 마리 수와 털 색깔을 글로 써서 보내기를 기다려 다시 복계하여 품의 조처함이 어떠할지. 강희 18년(1679) 2월 초8일 우승지 신 민취도(閔就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기미(1679) 5월 초6일

동래부사 이서우(李瑞雨)72)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말하기를 “비선에는 전일에 들어간 차왜 굴성진(橋成陳)이 되 돌아 왔거늘, 그 갔다가 돌아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안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전일에 귀국의 의관 박상문(朴尙文)이 도주의 친족 질병으로 인하여 예도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서계를 다듬어 간청하였고, 조정에서 윤허하지 않는다고 회답한 서계를 얼마 전에 도중으로 들여보냈는데, 동 회답 서계 가운데 「이웃나라 사람이 귀국 경내로 밀고 들어가는 것은 사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좌우의 도리에 있어서도 또한 바깥 사람을 끼고 금법을 거둬 무너뜨리는 것도 불가하다」고 한 것은 실로 합당하지 않다. 도주는 두 나라 사이의 일을 보는 사람으로서 귀국에서 의원을 청하여 예도로 데리고 가는 것이 금법에는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고 여겨서 이렇게 서찰을 지었는 바, 무릇 오가는 서계는 예도의 장로가 바뀌어 돌아갈 때 모두 베껴서 갔으니, 예도에서 보기에 장애가 있을 듯하기로, 동 회답 서계를 도로 가지고 나왔으니, 가져다 동래 영감 전에 들여서, 좋은 모양

72) 이서우(李瑞雨, 1633~?): 우계(羽溪) 이씨로 자는 윤보(潤甫), 호는 송곡(松谷)이다. 현종 1년(1660)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기미(1679) 2월에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경신(1680) 6월 까지 재직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함경도관찰사, 예문관제학,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으로 고쳐 써 달라'고 운운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서계 가운데 사연은 조금도 도주에게 장애되는 바가 없는데,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것은 실로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의로 되돌려 들일 수 없으니, 장차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겠다' 하고 받지 아니하고 왔음. 인하여 박상문은 어찌하여 동시에 나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답하기를 '당시 봉행의 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뚜렷한 효험을 얻지 못해 짐짓 서계를 고치는 것을 기다려들어간 뒤 병이 장차 차도를 보인 뒤에 뒤미처 나오더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제가 지난번에 나올 적에 무역을 요구한 달마(獐馬)는 모양과 색깔을 그림으로 그려서 추가로 고하겠다는 뜻을 전에 문위역관 김지사 등을 시켜 동래 영감 전에 고하게 하였는데, 동 달마는 곧 대군(大君)이 청하는 것으로 가려서 무역하지 않을 수 없기로, 그 형상을 그려서 왔다'고 하면서 동 도형을 내어주었으며, 마리 수는 원하는 것은 2필이지만 만약 2필이 불가하면 1필이라도 좋은 말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거늘, 비직이 답하기를 '달마의 무역을 요구하는 뜻은 이미 해조에 진달하였으나, 다른 나라에서 돌아가며 무역하는 물건이요 전례에 없는 일인지라 필시 청을 이룰 수 없을 것이거니와, 짐짓 이 뜻과 도형을 동래 영감에게 고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돌아와 말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회답 서계를 되돌려 보낸 것은 이른바 밀고들어간다(攔入)느니, 사정을 둔다(挾私)느니, 거둬 무너뜨린다(重壤)느니, 금방(禁防)이라느니 하는 등 서로 경계하는 말일 뿐이요 저들에게는 전혀 해될 것이 없거늘, 예도에서 보기에 장애가 된다고 칭하면서 고쳐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또한 근거가 없거니와, 다만 왜인이 평범한 문자에도 또한 이해하지 못하여 단지 사협(私挾), 중괴(重壤) 등의 어세가 긴급하고 무거운 것만 보고서는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렇게 되돌려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도 상관없는 처지에 떠들며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을 듯하니, 위의 서계에 간략히 몇 마디 말을 고쳐 보내거나, 혹은 별도의 서찰로 타일러 고치는 것이 부당하다는 뜻으로 하거나,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며, 달마(獐馬)를 무역 요구한 일은 전에 없었던 청과 관련되는지라 쉽사리 들어주기는 참으로 어렵거니와, 전 부사 신 이복이 장계를 올려 예조에서 회계한 관문 내용에는 그 마

리 수와 모양과 색깔을 서서 보내어 다시 품의 조처할 일이라고 이관하였는데, 들여온 도형을 해조로 올려보내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이서우의 장계를 보니, 차왜 굴성진이 간여하는 것이 셋인데, 그중 하나는 권현당(權現堂)을 허락할지 허락 안할 지 간에 속히 회보하라는 일이요, 그중 하나는 의관 박상문을 들여보낼 수 없다는 회답 서계를 고쳐 짓는 일이요, 그중 하나는 달마를 무역 요구하는 일인데, 권현당의 일은 조정에서 이미 김근행에게 명하여 사사로이 회보하여 그 답을 보고서 조처하기로 하였으며, 회답서계 가운데 사사로이 바깥 사람을 끼고 금령을 거듭 무너뜨린다고 한 것은 특별히 장애될 것이 없는 일인데, 저쪽에서 이미 이렇게 말을 잡으니 시끄럽게 서로 대립할 필요 없이 승문원에 명하여 고쳐 지어 내려 보내며, 마필의 무역 요구는 본디 항상 있는 일이지만, 달마를 보내는 것은 전에 없었으니, 처음으로 열어주어서는 불가하고, 또한 저희 예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변사에 명하여 품의하여 지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18년 5월 초9일 행도승지(行都承旨) 신 민암(閔黯)⁷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이 일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대마도의 왜인이 무역 요구한 마필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달마를 구청한 데 대하여는 전에 없었던 일이거늘, 역관 무리들이 즉시 견고하게 막지 아니하고, 본부에서는 장계로 알리기까지 하였는 바, 아주 매우 부당하오니, 역관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8년(1679) 5월 14일 우부승지 신 이집(李鑣)⁷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73) 민암(閔黯, 1636-1694): 자는 장유(長孺), 호는 차호(叉湖), 본관은 여흥(驪興)이다. 현종 6년(166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대제학, 병조판서, 우의정에 이르렀고, 갑술옥사에 남인의 영수로 지목되어 사사되었다.

74) 이집(李鑣, 1625-1691): 본관은 전주(全州). 효종 8년(1657)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을 거쳐, 현종 14년(1673) 함경도병마절도사와 황해도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으며, 경신대출척에 유배되었다가, 기사환국에 유배에서 풀려나 훈련대장이 되었다가 승지를 지내고 공조판서에 특진되어 재직하다 죽었다.

기미(1679) 7월 초10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이 노인(路引)을 가지고 나왔는데, 말하기를 ‘관수 및 대관왜 등에게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 안의 사연을 물었더니, 관수와 대관왜 등이 같이 앉아서 말하기를 ‘방금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서 봉행 등에게 보낸 서찰 내용에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1질, 『이퇴계집(李退溪集)』 1질, 『동문선(東文選)』 1질, 원앙(鴛鴦) 3쌍, 두루미[野鶴] 2쌍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서찰을 만들어 비선에 맡겨 보냈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운운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부응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세 가지 서적에 있어서는 모두가 얻기 어려운 물건이며, 원앙과 두루미도 또한 잡는 철이 아니어서, 모두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만들어 막았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이번 무역 요구한 물건은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인데, 동지(同知)가 중간에서 막는 말을 가지고 도중(島中)에 회보(回報)할 수 없으며, 원앙과 두루미는 비록 잡는 계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로잡아 도주가 돌아오기 전에 미치기만 한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이런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서책 3건 중 『이퇴계문집』은 전에도 무역을 요구한 때가 있었는데, 매양 판본(板本)이 이지러지고 낡은 지 이미 오래되어 인출해 낼 수가 없다고 말을 하여 막아서 허락하지 않았으며, 『동문선』은 이번에 처음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무역 허락이 불가한 것은 또한 『퇴계문집』과 같기로 동 책의 판본 역시 이지러지고 낡은 지 이미 오래되어서 인출해 낼 수 없다고 훈도들로 하여금 다시 굳은 말로 막았거니와, 『의례경전속통해』는 이전의 정미년(1667)에 거듭된 무역 요청으로 말미암아 각기 1질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도 3건의 서책 가운데 두 건은 무역을 허락할 수 없는데 『의례』 1질을 또 막는다면 저들이 필시 낙망하는 한탄이 있을 것이로되, 변방 신하로서는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짐짓 이 책의 판본 역시 필시 이지러지고 낡아서 인출해 내기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훈도 등을 시켜 말을 만들어 막았으며, 원앙 3쌍과 두루미 2쌍은, 이전에도 이런 새짐승의 무역을 요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매양 찾아 주었다가 이번에는 훈도 등이 짐짓 잡을 때가 아니라고 막았지만, 왜인 등이 또 그 이르고 늦은 시기를 헤아리지 말고 반드시 구하여서 도주가 돌아오기 전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바, 이미 끝까지 막을 수 없다면 전례대로 산출되는 지방관에 분정하여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줌이 어떠할는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제목 내용**. 이전에 대마도의 왜인이 요구하는 물건이 5종이나 되는데, 이것이 예조의 집정이 구하는 것이라면 한결같이 모두 막는 것은 불가하니, 그 중에 『의례경전속통해』 및 원앙과 두루미 등은 본도에 명하여 전례대로 수량에 맞추어 찾아 보내며, 『이퇴계집』은 이전부터 허락하지 아니한 데는 의도가 있고, 『동문선』의 무역 허락이 불가한 것 또한 『퇴계집』과 다름이 없으니, 아울러 역관들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견고하게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8년(1679) 7월 12일 우부승지 신 안여석(安如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미(1679) 7월 28일

경상감사 박신규(朴信圭)75의 장계. 도착한 예조 관문 내용을 요약하면 동 무역 요구한 『의례경전속통해(儀禮經傳續通解)』 1질과 원앙 3쌍, 두루미 2쌍 등의 물건을 편의대로 찾아 보내라는 일로 이관하였는데, 원앙 3쌍은 이미 본도의 영덕(盈德)과 영해(寧海), 청하(淸河) 등의 지방에 각기 한 쌍씩 분정하여 찾아 보내도록 하였거니와, 그 중 두루미는 본도 해변에는 원래 이런 물건이 없기로 이전부터 저쪽 사람이 무역을 요구할 때면 다소를 막론하여 매양 양호(兩湖)에 분정하였으며, 『의례경전통해』는 판본이 본도에 있으나 『속통해(續通解)』의 판본은 전라도 전주부에 있는데, 해조에서 잘못 본도

75) 박신규(朴信圭, 1631-1687): 밀양 박씨로 자는 봉경(奉卿), 호는 죽촌(竹村)이다. 현종 1년(166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5년(1679) 경상도관찰사로 나갔으며, 형조판서와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에 분부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오니, 동 두루미 2쌍을 찾아 보내는 일 및 『의례경전속통해』 1질을 인출하여 보내는 일로 충청도 및 전라도로 급히 분부하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복계하여 시행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요구하는 두루미는 본도 소산이 아니라고 동 두루미 2쌍은 충청도에 명하여 급히 찾아서 동래부로 보내게 하며, 『의례경전속통해』 판본은 과연 전라도에 있으니 또한 전라도에 명하여 동 『속통해』 1질을 속히 인쇄하여 동래로 보내는 일로 이문하여 알림이 어떠할지. 강희 18년(1679) 7월 29일 좌부승지 신민취도(閔就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 이상전의 치통 내용에 왜선이 나왔기에 혼도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두왜 1인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으나, 관수 및 대관왜 등에게로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 안의 사연을 물었더니, 관수와 대관왜 등이 같이 앉아서 말하기를 ‘도주가 예도에서 봉행 등에게 보낸 서찰 가운데 청나귀〔靑驢〕 1필, 살아 있는 사향노루〔麝香生獐〕 1마리를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라고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간절이 언급하였기로, 비선을 보내었는바, 이는 실로 그만 들 수 없는 일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반드시 사들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할 뿐 아니라 그 중에 청나귀는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비록 혹시 동래 영감 전에 진달한다 하더라도 필시 무역을 허락할 리가 없다’고 말을 하여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연전에 김지사(金知事)가 바다 건너 왔을 때와 굴성진이 나왔을 때 달마(獐馬)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을 도주가 간절히 말을 하여 보냈는데, 끝내 허락을 받지 못하였기로, 그 때 즉시 도주에게 회보하였더니, 도주가 예도에 빛을 낼 수 없게 된 것이 이미 극히 괴이하거늘, 이제 이 한 필의 나귀 또한 무역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도주를 염려해 주시는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동지(同知) 등은 모름지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특별하게 허락하여 부응하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돌아와 말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두 건의 물건은 이 달 초에 비선이 나올 때에 서책 3건 및 두루미와 원앙 등의 물건을 겨우 이미 무역 요구하였는데, 이제 이번에는 오래 되지도 않아서 또 무역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서 수응하는 사이에 번거로움을 견디지 못할 뿐 아니라, 청나귀는 전에 무역을 요구한 사례가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기로 역관으로 하여금 다시 견고하게 막으라 하였으며, 살아 있는 사향노루도 종류가 매우 적어서 산채로 잡기가 매우 어려워 갑자기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또한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일찍이 기유년(1669)에 또한 무역을 요구하여 찾아 준 일이 있었는데, 왜인 등이 끝까지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는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왜인의 무역 요구가 극히 번거로와 일일이 들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더구나 청려는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으니,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견고하게 막아 다시 청하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며, 살아 있는 사향노루에 있어서는 일찍이 무역을 요구하여 찾아 준 때가 있었으나, 또한 가벼이 무역을 허락하여 마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여서는 불가하니, 역관 등에게 명하여 원래 드물고 산채로 잡기도 또한 어렵다는 뜻으로 타일러 막되, 만약 끝까지 요구한다면 살아 있는 사향노루 한 마리를 본도에 명하여 찾아주게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8년(1679) 7월 29일 좌부승지 신 민취도(閔就道)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기미(1679) 8월 16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우도(右道)의 천성진(天城鎭)⁷⁶⁾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에 사정을 묻기 위해 별차 오윤문(吳允文)을 정하여 보내었더니, 방금 동 별차가 사정을 묻고 돌아와 하는 말이 “왜선 1척에는 전일에 대마도로 들어가 있었던 우리나라 의원 박상문(朴尙文)

76) 천성진(天城鎭):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에 있었던 경상우도 수군 진(鎭)의 하나.

및 따라갔던 정신흥(丁信興) 등이 함께 타고서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회답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서계는 가져다 들인다”고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서계 1통을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의원 박상문이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지난해 10월에 도중으로 들어간 뒤로 일본 사정 및 중원의 오병(吳兵) 소식을 탐지하는 데 생각을 두고, 무릇 병을 물으러 오는 사람을 만나면 몰래 찾아다녔는데, 소식은 도주의 근시왜(近侍倭)와 좌위문(左衛門)이라 호칭하는 자가 병을 치료하여 효험을 얻었으므로 마땅히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가, 나가사키〔長崎〕 섬의 당선(唐船)을 통하여 오병 사건의 전후 서찰 무릇 3통을 얻어서 서산(西山)을 지키는 왜승(倭僧)을 시켜 서찰을 전하여 주었거늘, 이미 금 5월에 인편을 통하여 수본(手本)으로 올렸거니와, 일본 사정은 저쪽에서는 금법이 매우 엄하기로 혹 들은 바가 있어도 모두들 머리를 흔들면서 모른다고 칭하기로 대소 사정을 하나도 탐지할 형편이 아니었으며, 소인은 당초 도주의 청으로 가서 오로지 봉행 손사랑(孫四郎)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전념하였는데, 들어간 뒤로 도중의 병든 왜인 등이 물으러 온 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치료되었기로,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그 친족의 병환을 위하여 그대로 끼고 가려고 하였다가, 이미 청을 이루지 못하자 또 서계(書契)의 문자에 탈을 잡아 고쳐 보내게 하였던 것은 모두 소인을 만류해 두고자 하는 계책이었고, 대접과 음식 등의 일은 십분 은근하였으며, 나올 적에 도주의 분부라고 이른바 구설은(狗舌銀) 100매, 데리고 간 하인 수종 1명, 소통사(小通事) 1명에게는 각기 은 4매, 소동(小童) 1명과 식척(食尺) 1명과 노자(奴子) 1명에게는 각기 은 1매를 내어 주었으며, 병을 치료하여 효험을 얻은 왜인이 사례한다고 혹 약간 주는 물건이 있거늘 전례대로 받아 왔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기미(1679) 8월 24일

동래부사의 장계. 지난 달 초9일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표류한 왜선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친다는 초탐장(哨探將)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과 제2척, 제6척은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6척의 노인은 나올 때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젖었거늘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이야기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했으며,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우도(右道)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은 연전에 바다를 건너간 의관 박상문(朴尙文) 등이 타고온 배라” 운운하였기에, 노인 1통을 받아 보내거니와,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한 배의 사정을 물어보기 위해 별차 오운문(吳允文)을 정하여 보냈으며, 우도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던 의관 박상문 등이 탄 배 1척은 관소(館所)에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렸다가 상세히 사정을 물어서 추가로 장계하여 알릴 계획이거니와, 방금 도착한 예조의 계하 회관(回關) 내용을 요약하면 왜인 구청 가운데 살아있는 사향노루 1마리는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막게 하되, 시종 괴롭게 요구하면 본도에 명하여 찾아줌이 마땅하다는 일로 분부하였기로, 훈도 등을 시켜 다시 막았는데, 관수왜 등이 끝내 듣지 아니한다 하기로, 살아 있는 사향노루 1마리를 정하여 찾아주라는 일로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였으며, 연유를 치계(馳啓)하는 일임.

경신(1680) 3월 21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 내용에, 방금 접한 기장현(機張縣) 삼공형(三公兄)⁷⁷⁾의 문장(文狀) 내용에 “어제 술시(戌時)⁷⁸⁾ 가랑에 왜선 1척이 표류하여 기장현 경내의 무지포(武知浦)에 도착하였다”고 하며, 초탐장 이홍원(李弘遠)의 치보 내용에 “동 왜선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송유양(宋裕養)⁷⁹⁾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두왜 굴성진(橋成陳)과 격왜 40명 및 교대차 나온 서승왜(書僧倭) 1인과 금도왜 7인이 함께 타

77) 삼공형(三公兄):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 등 세 관속.

78) 술시(戌時):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사이의 시간.

79) 송유양(宋裕養, 1649-?): 죽산 송씨로 자는 성헌(聖獻)이다. 숙종 1년(1676)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거니와, 작년 7월분 예도의 요구로 말미암아 청나귀 1필의 무역을 청한 바 있는데, 귀국에서 들어주지 않았다고 대군의 마음이 매우 무료하여, 당초에 힘써 청하지 않았기에 막게 되었다고 하여 다시 간청할 뿐 아니라,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뒤에 전례에 따라 약간의 인정으로 물건을 여러 집정 등에게 보내기 때문에, 대절진묵 30동, 잣 5섬, 대추 2섬, 회고 고운 모시베 30필, 생모시베 30필, 녹두가루 200근, 대구어 500마리 등의 물건 별지를 배로 보내니, 속히 다시 무역을 청하고, 이 몇 가지 일을 겸하여 부득이 나왔으니, 침지 등은 모름지기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기어코 수량에 맞게 무역을 허락하되, 청나귀에 있어서는 더욱 긴요하니 1필의 암나귀로 무역을 허락하여 광채가 나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이른바 청나귀는 이미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또한 북경에서 평상시에 무역을 허락하는 물건도 아니어서 종전부터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실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이번 사절 행차가 돌아오면 반드시 무역하여 오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바라건대 중간에서 막지 말고 급급히 잘 고하여 기어코 반드시 구하여 달라'고 다시 간절하게 말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4·5일 뒤면 곧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바, 전례로 말하자면 서계를 가져오거나 물건의 무역을 요구하거나 두왜 한 사람만 나왔거늘, 이번에 굴성진을 보내온 일은 괴이한 일이라고 여러 가지로 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에 앞서 특송선의 서계를 이제 다 고쳐 썼는데 관수가 필시 전일의 책임을 염려하여 마음에 불안해 할 것이므로 겸하여 위로하러 왔다'고 운운"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청나귀는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일이 없었으니 이제 갑자기 허락하기는 어려우며, 두 가지 모시베[苧布]도 필 수가 또한 많아서 타일러 수량을 줄이라는 뜻으로 훈도 등에게 분부하였거니와, 역관의 말을 들으니, 굴성진이 친히 나온 것은 그 의도가 반드시 얻으려는 데 있으니, 앞서서 비록 입을 눌러 막더라도 필시 되돌려 들을 이치가 없다고 하기에, 짐짓 역관이 확정하기를 기다린 뒤에 다시 치계할 계획임.

경신(1680) 4월 초4일

동래부사의 장계 내용. 엇그제 나온 두왜 굴성진(橘成陳)이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두 가지 모시베[苧布]의 필 수가 너무 많으며, 청나귀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서 길을 열어서는 불가하겠기에, 모시베의 수량을 줄이고 청나귀 무역을 막는 일로 엄하게 훈도 박유년(朴有年)에게 신칙하여 극력으로 타이르도록 하였더니, 박유년이 와서 고하기를 “굴성진이 말하기를 ‘등한 무역 요구이면 예사로 오는 배에 전할 것이나, 제가 불시에 나온 것은 오로지 청나귀를 위해서이니, 1필의 나귀는 원래 긴요하지 아니한데, 양국이 정성으로 신뢰하는 사이에 어찌하여 이렇게 아껴서 도주로 하여금 동무(東武)에 한 번 광채를 내지 못하게 하는가? 모시베는 혹 대 여섯 필이나 혹 10필씩이나 귀국에서 재량하여 줄이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거니와, 청나귀는 기어코 반드시 얻어 돌아갈 것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속히 고하여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여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하는바, 청나귀의 청은 이전부터 누차 밝혔으나 그대로 허락한 적이 없으니, 이제 길을 여는 것은 불가하겠거니와, 굴성진의 의도는 반드시 얻겠다는데 있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서우(李瑞雨)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섬으로 돌아온 뒤 여러 집정에게 보낼 대절진목 등 7종 및 에도에서 구하는 청나귀 1필을 굴왜(橘倭)를 보내어 무역을 청하였는 바,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비록 그냥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래에 매우 빈번하여 부응하기가 어려운 듯한데, 그 중에 대절진목과 잣, 대추, 녹두가루, 대구어 등은 이미 얻기 어려운 게 아니고, 수량 또한 많지 않아서 그 청대로 부응하더라도 불가할 것은 아니며, 희고 고운 모시베와 생모시베는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각기 10필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아울러 해조와 해도에 분부하며, 청나귀에 있어서는 비록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소산이 아닐 뿐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던 일을 이제 그 청에 굽혀 따라 후일의 폐단을 여는 것은 불가하니, 다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역관들에게 신칙하여 기어코 굳게 막으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4월 초8일 우승지 신 정재희(鄭載禧)⁸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경신(1680) 4월 27일

동래부사 이서우(李瑞雨)가 4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7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배 4척이 나오기에 즉시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송유양(宋裕養)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바람에 표류한 부산 사람 및 전라도 순천 사람 등을 데리고 오는 차왜 정관 굴성시(橘成時)와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등이 서계 별폭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왜(正官倭)의 말이 ‘이제 이번 두 곳에서 표류한 사람들은 두 호송사(護送使)를 차출해야 하지만 폐를 끼칠까 염려되어 검하여 데리고 왔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관수에게 무역 요구를 재촉하는 봉행 등의 사서를 가지고 왔다’하기에, 더불어 함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를 내어보이는데, 대략 말하기를 ‘에도에서 요구하는 물건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가는 즉시 가져다 보내어야 하니, 지난 날에 굴성진을 보내어 무역을 청하였던 청나귀 등의 물건과 종전에 무역을 허락하였던 『의례경전』을 아울러 재촉하여 무역하여 보내달라’고 하였기로, 관수왜가 말하기를 ‘바라건대 이 뜻을 자세히 갖추어 동래영감 전에 고하여 기어코 속히 무역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운운 하였음. 왜인이 전후에 무역을 요구하였던 『의례경전속통해』 1질과 청나귀 1마리를 이제 또 거듭 청하여 재촉하였는바, 『의례경전속통해』는 조정에서 이미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해조에서 속히 인출하여 내려보냈으나, 청나귀는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이 없어서 처음으로 열어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에 앞서 두 번 치계(馳啓)하였는데, 회하(回下)가 아직 내려오지 아니하였거니와, 왜인이 거듭 이렇게 청하는 것은 의도가 반드시 얻으려는 데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의례경전속통해』는 속히 인쇄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작년 7월에 전라도로 행회(行會)하였는데, 아직까지 보내지

80) 정재희(鄭載禧, 1631-1711): 동래 정씨로 자는 자순(子純), 호는 양촌(陽村)이며, 이조판서 광경(廣敬)의 손자로서 좌의정 지화(知和)의 계후자가 되었다. 현종 1년(1660)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674년에는 동부승지가 되고, 대사헌, 도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아니하여 이렇게 거듭 청하게 되었으니, 해당 도에서 하는 일이 매우 극히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인쇄하여 보내는 일로 다시 알릴 것이며, 청나귀는 일찍이 전에 없는 일이라 이제 처음으로 열어주는 것은 불가하겠기로, 겨우 이런 뜻으로 회하(回下)하시되, 그 의도가 비록 반드시 얻으려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이전 대로 계하(啓下)하여 기어코 굳게 막으라 하며, 그 나머지 무역을 허락한 물건은 재촉하여 내려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회이(回移)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4월 27일 우부승지 신 남이성(南二星)⁸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신(1680) 6월 14일

동래부사 조세환(趙世煥)⁸²⁾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비선이 나와서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무역 요구할 것이 있어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기로, 관수에게 가서 그 사연과 도중(島中)의 사정을 물었더니 관수왜의 말이, ‘지금 온 사서에는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호을골(虎乙骨) 10매, 상품의 황모필(黃毛筆) 300자루, 호경골(虎脛骨) 2매, 『동의보감(東醫寶鑑)』 3질 등의 물건을 간절히 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운운하였거늘,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 하였다.”고 돌아와 말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도중에서 무역 요구하였다는 호을골과 호경골, 황모필, 동의보감 등의 물건을 무역 허가하는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하는 바 호을골 10매, 호경골 2매,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동의보감』 3질 등의 물

81) 남이성(南二星, 1625-1683): 의령 남씨로 자는 중휘(仲輝), 호는 의拙(宜拙)이다. 현종 3년(1662)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680년 좌부승지와 대사성을 역임하였으며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82) 조세환(趙世煥, 1615-1683): 임천(林川) 조씨로 자는 의망(嶷望), 호는 수촌(樹村)이다. 효종 8년(165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친 뒤 경신(1680) 6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고, 이듬해 2월 전라도관찰사로 옮겨갔으며, 그뒤 병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건을 간절히 구한다고 하였거니와,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참으로 일일이 부응하기가 어려운데, 또한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니, 상품의 황모필 300자루 내에 200자루, 『동의보감』 3질 내에 2질을 해조와 의사(醫司)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게 하며, 호경골 2매는 본도에서 찾아 보내게 하되, 호을골은 이전부터 얻기 어려운 물건으로 그대로 허락하기에는 어려운 듯하니, 10매 내에서 4매를 무역 허락하여 전례대로 본도 및 강원도에 각 2매씩 찾아 내려보내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6월 14일 우승지 신취일(崔逸)⁸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신(1680) 11월 16일

동래부사 조세환(趙世煥)의 장계. 지난 10월 30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 내용에 운운.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 1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 송유양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비선 11척에는 두왜 각 1인, 격왜 각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은화를 싣고 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갔더니 동 왜인이 그 도중에서 온 사서를 내어 보이는데, ‘도주가 다음 해 봄에 예도로 들어갈 때 여러 곳에 전례대로 사용하는 것과 새 관백(關白) 전에 예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가죽[虎皮]과 표범가죽[豹皮] 각 5장, 발과 발톱이 모두 있고 가죽과 털에 흠이 없으며, 장단과 폭이 들쭉 날쭉하지 않은 것, 마른 대구어 1,000마리, 잣 5섬, 대추 2섬, 양가죽[羊皮] 100령 등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며, 구청한 응자(鷹子)의 해마다 미수(未收)된 것과 금년에 지급할 것을 함께 재촉하여 겨울이 되기 전에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관백 전에 바칠 물건이니, 양가죽과 물고기는 그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무역을 허락하며, 범가죽과 표범가죽은 각 5장씩 반드시 종류가 같은 것으로 무역을 허락하거나, 연례(年例) 별폭(別幅)으로 증명하

83) 최일(崔逸, 1615-1686): 화순(和順) 최씨로 자는 일지(逸之), 호는 석헌(石軒)이다. 인조 24년(1646)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승지와 형조참의를 거쳐 병조와 호조의 참관을 역임하였다.

는 것 중에서 바꾸어 주거나 편한 대로 택하여 주되, 모두 다음 달 열흘에서 보름 사이에 들여 주어야 기일에 맞추어 들여보낼 수 있다'고 간절히 이야기 하였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왜인이 무역 요구한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고, 미수의 구청 응자는 도신(道臣)에게 알려서 하여금 재촉하게 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조세환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 요구하는 것이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5장, 잣 5섬, 대추 2섬, 양가죽 100령, 마른 대구어 1,000마리라 하였는바, 그 중 양가죽 100령은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수량 대로 하기는 어려우니 반으로 줄여 무역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물건은 모두 수량 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11월 16일 좌승지 신 안진(安縝)⁸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신(1680) 12월 12일

동래부사 조세환(趙世煥)의 장계. 이 달 초3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박유년과 별차 송유양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 왜 1인,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관수 및 차왜 등성구(藤成久)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갔더니 등왜(藤倭) 역시 와서 같이 앉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도중(島中)에서 온 사서를 보니 관백(關白)의 분부 내용에 조선에서 체구가 크고 극히 좋은 준마, 나이 여섯에서 일곱 여덟이 되는 얼룩말(駮馬)과 흑마(黑馬) 3필 및 살아 있는 흰 토끼 암수 각 한 마리를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기로, 도주가 비선을 보내었는데, 이는 범연한 무역 요구와는 다르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바라건대 수량을 감하지 말고 기어코 그대로 허락하라는 일로 즉시 진달하여 모름지기 도주가 떠나기

84) 안진(安縝, 1617-1685): 죽산 박씨로 자는 율보(栗浦), 호는 학촌(鶴村)이다. 효종 2년(1652)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5년(1664)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전, 반드시 명년 정월 열흘 사이에 들여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체구가 큰 준마라고 하면서 얼룩덜룩한 것과 흑색(黑色)인 것은 이미 극히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흰 토끼에 있어서는 나라 안에 전혀 없어서 더욱이 찾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극히 걱정하여 간절히 말하여 마지않았으며, 또 말하기를 '살아 있는 토끼면 비록 흰 색이 아니라도 흑 색책할 수 있겠으나, 준마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색깔 중에서 구하여야 하는데, 만약 그대로 얻기 어려우면 비록 구랑마(仇郎馬)나 흑청가라(靑加羅)라도 무방하며, 재능과 품격은 흑 걸음을 잘 걷거나 흑는 잘 달리는 것이 실로 큰 바람인데, 그 체구가 이미 크고 색깔이 얼룩말이거나 흑색이면 비록 잘 달리거나 잘 걷지 못하더라도 또한 무방하거니와, 구하는 3필 가운데 얼룩말 2필과 흑마 1필이거나, 그 밖에 각색을 아울러 1필이거나 편한 대로 무역을 허락하면 값의 다소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무역하여 보내겠다'고 누누이 간절하게 애걸하였는데, 이른바 얼룩말은 곧 월라(月羅)도화(桃花)의 종류이고, 이른바 흑마는 곧 가라마(加羅馬)임. 지닌 노인은 짝은 도서(圖書)의 주홍 즙이 젖어 오염되었기로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했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번 왜인이 무역 요구하는 곧 새 관백이 구하는 것이니 평소에 무역을 요구할 때와는 달라서 그들이 간절하게 애걸하는 뜻을 볼 수 있겠거니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근래 왜인의 구청이 번다하여 참으로 일일이 부응하기 어렵거니와,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새 관백이 구하는 것과 관계되니 평상시 무역 요구 때와는 다르다고 하는바, 전연 막는 것은 불가능한 듯한데, 구하는바 살아 있는 토끼 암수 각 한 마리는 본도에 명하여 찾아주게 하며, 월라(月羅) 가라마(加羅馬) 세 필 내에 그 1필을 줄이고, 두 가지 색의 말 각 1필은 해조에 명하여 급히 가려 사들여 내려보내어 먼 곳 사람의 바람에 부응하되, 저쪽에서 흑 탈을 잡는 폐단이 있으면 예비로 차출한 말이 없어서는 안되니, 예비로 차출하는 말 1필 또한 전례 대로 내려보내어 가려 잡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관서에 명하여 별도로 양마(養馬)와 이마(理馬) 각 1인을 정하여 말을 주어 영술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

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12월 12일 동부승지 신 정시성(鄭始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경신(1680) 12월 27일

동래부사 조세환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박유년과 별차 송유양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에도에서 사용할 피물(皮物) 등의 무역을 요구하기 위하여 관수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에도에서 구하는 것으로 범가죽[虎皮]과 표범가죽[豹皮] 각 30장, 청서피(靑黍皮) 50령을 급급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어야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가지고 간다고 하였거늘, 동 범가죽과 표범가죽은 안팎으로 흠이 없고 발과 발톱이 모두 있는 것이며, 청서피는 색깔이 좋은 것으로 속히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고하여 시행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할 뿐 아니라,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5장의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준 것이 금방인데, 또 이렇게 다수의 무역을 요구하니, 결코 고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재삼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빈번하게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한 줄 참으로 알지만 일이 평상시와 다름이 있어서 번거롭게 진달하지 않을 수가 없다’하며 간절하게 말하여 마지않거늘, 여러 가지로 다투어서 단연코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기색을 보여주었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범가죽과 표범가죽은 각 20장, 청서피는 수량 대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중언부언하였으며,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번다하고, 준마와 살아 있는 토끼의 요청은 일찍이 거의 허락하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이런 범가죽과 표범가죽, 청서피를 구하니, 무역하는 물건이야 비록 그냥 주는 것과는 다르지만 그 정상이 극히 미운데, 또한 구설(口舌)로 막기는 어렵기에 장계로 알리오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조세환의 장계를 살펴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20장과 청서피 50령의 무역을 원한다고 하였는바,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5장을 지난 달에 겨우 이미 무역하여 갔는데, 또 이렇게 다수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부응하기 어려운 형편이로되, 먼 곳 사람이 간절하게 구하는 뜻을 또한 전연 낙망하게 하여서는 안되겠기로, 이전의 등록을 상고해 보니, 또한 범가죽 40장의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으니, 또한 이제 여기에 의거하여 범가죽과 표범가죽 각 15장씩 무역을 허락하면, 지난 달에 무역을 허락한 10장과 통틀어 40장의 수에 준하며, 청서피 50령은 그들의 소청대로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해조 및 동래부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19년(1680) 12월 27일 동부승지 신 정시성(鄭始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정월 22일

동래부사 조세환이 이 달 1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도착한 예조의 관문 내용 요약. 관백이 무역 요구한 말 3필을 내려 보내니, 2필을 가려 잡은 뒤에 첩보하라고 이관하였기로, 동 말 3필 내에 2필을 가려 주라는 뜻으로 훈도 별차 등에게 분부하여 내려 보냈더니, 역관 등의 수본 내에 “분부대로 관수왜에게 들여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려 잡게 하였더니, 새 관수와 구 관수가 회동하여 품격을 보고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도 준마가 없지 않으나, 관백이 귀국의 말을 얻고자 하는 데는 그 뜻이 우연이 아니거늘, 이제 이 말은 거개가 체구가 적고 또 재능이 없어서 일이 매우 낭패이거니와, 멀리 온 나머지 혹 노곤함이 없지 아니하니, 4·5일 먹인 다음에 다시 들여보내 달라’고 운운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무릇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마다 억지로 수량을 감하게 하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지만, 감히 다시 수량 대로 청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말에 있어서는 새 관백의 처음 요청인바, 다시 그대로 허락하도록 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결코 번거롭게 진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지금 막 타일렀다.”고 하였으며, 추가로 도착한 역관 등의 수본 내용에 “무역을 요구한 말 3필을 다시 들여 보냈더니, 관수왜의 말이 ‘3필

의 말이 모두 노둔하니 곧장 바꿀 것이로되, 도주가 예도에 들어가는 것이 다음 달 초순 사이에 있는지라, 혹 조금 늦추면 장차 기일을 놓칠 형편이라 극히 걱정스러울 뿐만 아니라, 관백의 청은 다른 집정들이 요구하는 것과는 경중이 각기 다른데, 이제 이 말은 특별한 예로 그대로 허락하여 도주의 목마른 듯한 바람에 부응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며 여러 날 서로 버티며 시종 간절히 말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한다 하였음. 되돌려 보내고 고쳐 마련하는 데는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설령 다른 말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잡히게 될지⁸⁵⁾는 또한 반드시 기약할 수 없기로, 신이 경내와 인근 각읍에 알려져 기어코 찾아 줄 계획이거니와, 종전에 무역 요구의 수량을 줄인 것이 과연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일찍이 요청대로 한 적이 없었다가, 말을 구하는 데 이르러서는 시종 간절하였는 바, 관백의 청이 간절한 줄 알겠으니, 이미 2필을 허락하였다면 3필을 맞추어 허락하는 것도 큰 이해는 없어서, 허락하는 것이 옳지만, 신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조세환의 장계를 보니, 관백이 무역 요구한 말 3필을 관왜에게 들여다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가려서 2필을 잡게 하였더니, 관왜 등의 말이 '이제 이번 말은 모두가 체구가 적고 또한 재능이 없으니 즉시 바꾸어주기를 바란다. 관백의 청은 다른 집정이 요구하는 것과 다름이 있는데, 이제 이 말들은 특별히 그대로 허락하여 도주의 목마른 듯한 바람에 부응해 달라'고 하여 이렇게 치계하였는 바, 관백의 첫 청이라 도주가 반드시 그 뜻에 부응하여 광채를 내려고 하는데, 말 2·3필 사이에 굳이 다투어 수량을 줄여 그 바람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이웃나라와 사귀면서 우호를 두텁게 하는 도리가 아니니, 1필을 그대로 허락함이 마땅할 듯하고, 또한 다시 가려 보내지 않을 수가 없으나, 당초 서울에서 사들일 때 준마가 있는 곳이 매우 드물어서 10여일 뒤져 찾은 뒤에 겨우 약간의 마필을 얻어 보냈으니, 이제 와서 도주가 예도로 들어갈 기일이 다음 달 초순간으로 박두하여 있다 하니, 서울에서 다시 사들이는 것은 형편이 기일에 미치지 못하고, 동래부사가 이미 이 형편을 헤아려서 경내와 인근 각 읍에 알려져 기어

85) 잡히게 될지[被執]: 물건을 골라 잡음. 교역 물품으로 확정한다는 의미이다.

코 바꾸어 마련하여 찾아 주겠으며, 또한 3필을 맞추도록 허락하라고 청하였는데, 서울에서 사 보낸 말 2필을 바꾸어 마련하는 것과, 말 1필을 더 지급하는 것을 본도에 명하여 그 청하는 모양과 색깔대로 기일에 맞추어 가려 보내는 일로 본도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정월 22일 우승지 신 윤지선(尹趾善)⁸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2월 21일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⁸⁷이 2월 14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哨探將) 김시정(金始靖)의 치보에 의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한천석(韓天錫)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동 작은 배 3척은 모두 비선인데,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은화(銀貨)를 실어 나왔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사람을 보내어 보기를 요청하기에 관수에게 갔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노랑피꼬리〔黃鶯〕 4마리, 범의 뼈〔虎骨〕 10근, 자필(咨筆) 200자루를 간절히 무역 요청하여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노인 3통을 가져와 들인다.”고 돌아와 말하였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3통을 받아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상항의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잡물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청하는 노랑피꼬리 4마리, 범의 뼈 10근, 자필 200자루의 무역을 허락하라 하였는바, 근래 왜인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참으로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우나, 이제 이번에 요구하는 세 가지는 이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86) 윤지선(尹趾善, 1627-1704): 파평 윤씨로 자는 중린(仲麟), 호는 두포(杜浦)이다. 현종 3년(1662)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좌의정에 이르렀다.

87) 남익훈(南益熏, 1640-1693): 의령 남씨로 자는 훈중(熏中), 호는 파은(坡隱)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신유(1681) 2월 밀양부사에서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계해(1683) 4월까지 재직하였으며, 경상도관찰사와 함경도관찰사에 이르렀다.

또한 그렇게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노랑찌꼬리와 범의 뼈는 전례대로 본도에 명하여 찾아 주게 하며, 자필 200자루는 또한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2월 21일 도승지 신 홍만용(洪萬容)⁸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3월 초2일

동래부사 남(南)의 장계 내용. 이 달 27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이만철(李萬徹)의 치통에, 왜선 4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혼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한천석(韓天錫)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고하는 말이 “제1척은 신유조 세건 제1선에 송사 정관 평중차(平重次), 제4척은 동년조 세건 제3선 정관 등성지(藤成之) 등이 각기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동년조 결대 제5선에서 제17선까지의 서계 역시 가지고 나왔으며, 동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에 따라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음.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감역왜(監役倭) 2인, 공장왜(工匠倭) 2인, 화공왜(畫工倭) 2인, 조각왜(彫刻倭) 2인 등이 함께 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예도에서 사용할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왔거니와, 이번에는 새 관백(關白)이 청하는 사기로 그 수량이 허다하고 들어갈 백토(白土)와 약토(藥土) 및 송토목(松土木) 등을 전보다 넉넉하게 분정하여 들여주며, 조선 사기장(沙器匠)은 솜씨 좋은 자로 이전 대로 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서계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사기를 만들겠다고 청하는 서계 1통을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사기를 구워 만드는 것은 일찍이 그 사례가 있어서 이제 막기가 어렵고, 그 구워 만드는데 들어가는 색토(色土)와 약토(藥土) 등의 물건 정수(定數)를 마련한 뒤에 추가로 치계할 것이라 운운한 일.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이 올리는 서

88) 홍만용(洪萬容, 1631-1692): 풍산 홍씨로 자는 백함(伯涵), 호는 금화(金華)이다. 현종 3년(1662)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숙종 때 대사간,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헌과 판서를 역임하고 우참찬에 이르렀다.

찰.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 이에 도기(陶器) 조성을 위하여 도공(陶工) 몇을 차출하여 보내오니, 바라는 바는 귀국의 도장(陶匠)과 흙과 장작 등의 물건을 화관(和館)⁸⁹⁾에 넣어주시기를. 모두 양찰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한 서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사기를 구워만드는 일로 나왔던 왜인이 가지고 온 동래 부산 두 곳으로 보낸 서계의 회답 초고를 전례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내려 보냄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3월 초6일 동부승지 신 정시성(鄭始成)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유(1681) 3월 초9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이 달 초3일 성첩한 장계.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공장왜(工匠倭) 등이 나온 연유 및 구워 만드는 데 들어갈 각색 흙을 마련하여 추가로 장계하여 알릴 계획이라는 뜻으로 일찍이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 등이 사기 흙을 마련하는 왜인의 발기(件記)를 가져와 들었는데, 약토(藥土) 70섬, 백토(白土) 610섬, 모두 5말[斗]을 1섬[石]으로 하였는바, 이전에 구워만들 때와 비교하면 섬 수가 자못 감소되었으나, 그들의 소청을 일일이 굽혀 따라주는 것은 부당하겠기로, 다시 역관 등에게 기어코 수량을 줄이라는 뜻으로 신칙하여 분부하였더니, 역관 등의 수본 내용 요약, “관수 및 감조왜(監造倭) 등에게 사기 흙을 줄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여러 날 다투어서 재삼 수량을 줄여 백토 원 수량 610섬 내에서 110섬을 줄였으며, 사기장 2명을 정하여 주는 일을 아울러 조정하였다.”고 수본한다 하였으니, 15말을 1섬으로 계산하면 약토와 백토 아울러 190섬이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南益薰)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청한 각색 흙 및 사기장(沙器匠)을 정해 주는 일을 품의 조치하라 하였는바, 장인을 정하여 구워 만드는 일을 허락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

89) 화관(和館): 부산 왜관(倭館)의 일본측 호칭.

때할지. 강희 20년(1681) 3월 초9일 좌승지 신 안진(安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4월 29일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배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서상검(徐尙儉)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신유조 3특송 수목선(水木船)이고, 제2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기로, 관수에게 가서 사서 안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중전에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낸 말 3필이 모두 체구가 극히 작고 모양과 색깔이 바라는 바가 아닌데다, 그 중 흰말[白馬]은 더욱이 맞지 않아 추가로 되돌려 보낼 계획이기에 우선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모쪼록 체구가 큰 얼룩말[月羅馬]을 구하여 속히 들여 보내주시되, 당초에 정밀하게 가리지 아니하여 시일을 늦추게 되었다고 책망이 엄중하여 극히 민망하고, 상황의 흰말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인데, 동 얼룩색[月羅色]의 체구가 큰 말 1필을 진작 무역 허락하여 이 걱정을 풀어주시기를 천만 간청한다’고 말하였음. 노인 2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말에 대한 일은 당초 요구한 색마(色馬) 3필 가운데 2필은 그들이 구하는 바대로 찾아 준 뒤 그 중 얼룩말[月羅馬] 1필은 본도에서 관문을 발송하여 알려져서 여러 갈래로 널리 찾았으나 끝내 합당한 말을 찾지 못하여 시일을 연기하며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때에, 그들이 같은 색의 말을 얻기 어려운 형편을 알고는 다시 색마(色馬)가 아니라도 반드시 체구가 큰 준마로 속히 찾아 달라고 간절히 애걸하였다고 역관 등이 수본하였거늘, 마침 체구가 큰 흰말을 얻어 들여주었는데, 이제 이번 부산진의 치통 내용에는 동 흰말이 매우 맞지 아니한다고 도중에서 장차 되돌려 보내고, 당초 요구한 색마(色馬)의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바,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간절하니 동

얼룩말을 그들의 말대로 찾아 주어야 하겠기로, 한편으로 도신에게 따져서 보고하여 널리 구하게 하였거니와, 서울에서도 또한 널리 구하여 내려보내는 일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의 장계를 보면 관백이 구하는 말 3필 가운데 그 중에 흰말은 더욱이 매우 맞지 않아서 도중에서 장차 되들려 보내니 그들의 말대로 찾아 줌이 합당하겠기로 한편으로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널리 구하게 하였고, 서울에서도 구하여 내려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동 마필(馬匹)을 이미 무역하여 보낸 뒤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 또 바꾸어 줄 것을 간청하니, 이웃나라와 사귀는 도리에 있어서 허락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본도에서 좋은 말을 구하는 것도 반드시 기약할 수는 없으니, 얼룩말(月羅馬) 1필을 호조(戶曹)에 명하여 극도로 가려서 찾아 전례대로 양마(養馬)와 이마(理馬) 각 1인을 별도로 정하여 말을 주어 영솔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4월 29일 좌승지 신 최일(崔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5월 27일

동래부사 남익훈(南益熏)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2척이 나와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정전(鄭銓)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신유조 겸대 세건 제6선에 격왜 30명, 제2척은 동년도 겸대세건 제7선에 격왜 30명 등이 전례대로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에도에서 사용할 잡물의 무역을 요구하기 위하여 별도로 두왜 한 사람을 정하여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거늘, 더불어 함께 관수에게 가서 그 발기〔件記〕를 열어보니, ‘상품의 고운 모시베〔細苧布〕 30필, 고운 생모시베〔生細苧布〕 30필, 대진묵(大眞墨) 20동, 대구어(大口魚) 1,500마리, 잣 15섬, 양가죽〔羊皮〕 200령을 속히 무역 요청하여 보내달라’고 관수에게 사서를 보냈는데,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극히 많아서 일이 매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대구어와 잣은 근래에 매우 희귀하고 이제 또 철이 지났으며, 모시베와 참묵〔眞墨〕은 전에 요구한 것을 방금

이어서 진달하였는데 일이 매우 외람스러워 결코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으로 십분 따져 힐난하며 재삼 타일렀더니, 관수의 말이 '지루하여 불가한 줄 모르지는 않으나, 예도에서 사용할 곳이 또한 지극히 절박하거니와, 물고기와 과일 철이 지나 희귀한 것은 형편이 혹 그럴 수도 있으나, 대구어는 원 수량에서 3·4백 마리, 잣은 1·2섬이나마 먼저 들여주며, 그 나머지는 새로 산출되는 대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아니하거늘, 다시 타일러 동 흰 모시베 30필에서 10필을 줄이고, 생모시베 30필에서 10필을 줄이고, 대구어 1,500마리에서 500마리를 줄이고, 양가죽 200령에서 100령을 줄이고, 잣 15섬에서 7섬을 줄였음. 노인 2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2통을 받아 올려보내거니와, 왜인이 무역 요구한 물종을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것을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니, 예도에서 무역 요구한 흰모시베와 생모시베 각 20필, 대구어 1,000마리, 양가죽 100령, 잣 8섬이라 하는바, 그 중 대구어 1,000마리, 양가죽 100령, 잣 8섬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도 수량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반으로 줄여 무역을 허락하며, 잣 8섬에서 3섬을 줄이고 그 나머지 모시베는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되, 대진목 20동은 수량이 이미 적지 아니하여 갑자기 갖추어 보내기 어려우니, 반으로 줄여 추가로 보낸다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5월 27일 우부승지 신 이인환(李寅煥)⁹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신유(1681) 7월 초7일

동래부사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에게 명하여 사정을 문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 1척에는 두왜 1인,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

90) 이인환(李寅煥, 1633-1699): 경주이씨로 자는 문백(文伯), 호는 생곡(生谷)이다. 현종 6년(1665)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대사성, 도승지를 역임하고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늘,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즉시 에도로 들여보내기 위해 전일에 무역을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는 일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두왜가 전한 말과 같은데,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간절히 재촉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올려보냄. 전일 왜인이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서 이렇게 재촉한다 하였는바, 본도에 분정한 미수 잡물은 도신(道臣)에게 보고하고 재촉하여 들여줄 계획이거니와, 모시베와 양가죽과 참덕 등은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운운 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 요구한 흰모시베 등의 물건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거니와, 동 모시베 및 참덕 등은 모두 준비하여 지난 6월 28일에 이미 금군(禁軍)에게 명하여 가지고 내려 보냈으니,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7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이유(李濡)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유(1681) 12월 19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왜선 4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박유년과 별차 한천석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문위역관 변이표(卞爾標) 등이 탄 배이고, 제2척은 동역관 호행차왜(護行差倭)의 배이고, 제3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差倭)의 배이고, 제4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관수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귀국의 정품(精品) 말안장 삼거리(三巨里)를 갖춘 것으로 2부, 자필(咨筆) 200자루, 『동의보감(東醫寶鑑)』 5질, 대구어(大口魚) 3,000마리, 호두 30섬, 잣 5섬, 녹두

91) 이유(李濡, 1645-1721): 전주 이씨로 자는 자우(子雨), 호는 녹천(鹿川)이다. 현종 9년(1668)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영의정에 이르렀다.

가루[菘末] 300근, 특별히 만든 대진묵(大眞墨) 20동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는데, 위 항목의 물종을 진작 무역 허락하되, 근래에 먹의 품질이 지극히 정하지 못하니 반드시 좋은 품질의 대한풍월(大翰風月) 극상품으로 가려서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물건 종류가 너무 번거롭고 수량 또한 많아서 결코 이렇게 진달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말을 만들어 십분 타일렀는데, '사신(使信)⁹²⁾이 올 때 사용할 것이라서 평상시와는 크게 같지 않다'고 하면서, 단지 대구어 1,000마리, 잣 5섬만 줄이고, 그 밖의 각종은 정녕 수량대로 맞추어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으며 다시는 줄일 뜻이 없느냐, 매우 통절하게 미운 일인지라 다시 조용히 타이를 계획임.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 종류를 참작하여 무역을 허락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니, 통신사(通信使)가 갈 때 에도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품의 말안장 삼거리를 갖춘 것으로 2부, 자필 200자루, 한림풍월 대절진묵 20동, 『동의보감』 5질, 마른 대구어 2,000마리, 호두 30섬, 잣 10섬, 녹두가루 300근의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무역 요구한 수량이 비록 과다하지만 이미 통신사(通信使)가 갈 때 사용할 것이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라서 이전대로 막는 것은 불가한 듯하니, 그 말대로 수량에 맞추어 부응하도록 허락하되, 말 안장과 자필, 한림풍월 대절진묵, 동의보감 등은 해조에 명하여 갖추게 하고, 대구어와 호두, 잣, 녹두가루 등은 본도에 명하여 갖추어 지급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0년(1681) 12월 19일 우승지 신 유헌(兪憲)⁹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임술(1682) 정월 15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운운. 거제 경내로 표류

92) 사신(使信): 신사(信使)의 오기. 통신사(通信使)를 가리킴.

93) 유헌(兪憲, 1617-1692). 기계(杞溪) 유씨로 자는 회백(晦伯), 호는 송정(松汀)이다. 현종 6년(1665)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벼슬이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하여 정박한 왜선 2척 및 다대포까지 나갔던 금도왜(禁徒倭)의 작은 배 2척을 아울러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과 별차한천석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선격(船格)은 별차가 사정을 물은 것과 별로 다른 점은 없고, 관수왜가 사람을 시켜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私書)를 보니, 전일에 요구한 각종은 이미 그대로 허락하여 감격을 견디지 못하거니와, 통신사(通信使)가 올 때 사용할 곳이 허다하여, 이제 또 구하는 것이 있다’하면서 또한 그 발기(件記)를 보여주었는데, 표범가죽(豹皮) 30령, 생모시베(生苧布) 70필, 흰모시베(白苧布) 10필, 꼬리를 갖춘 향초피(鄉貂皮) 100령, 양가죽(羊皮) 150령, 대추 3섬, 죽은 범 전체 1마리 등을 무역 요구한다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전에 요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한 데는 의도가 우연이 아닌데, 이제 또 다시 요구하는 물종이 번다하여 지루한 일일 뿐 아니라, 범이라는 짐승은 잡기도 매우 어렵거니와, 비록 혹시 사냥하여 얻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서북 지방에서 몸 전체를 운반하는 것은 할 수 없는 형편이라 더욱이 무역 요청을 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관수왜가 재삼 간청하여 말하기를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성가신 줄 모르지 않지만, 오직 이 한 조목으로도 또한 도중(島中)에서도 허비가 적지 아니한 줄 알 수 있거늘, 이런 것은 살피지 아니하고 값을 맞추어 바꾸어 사는 물건을 오히려 아까워하니 일이 너무 답답하다. 바라건대 막지 말고 속히 고하여 그대로 허락하되, 범의 몸 전체는 소금을 쳐서 주되, 만약 끝내 얻기 어려우면 혹 한 마리의 뼈를 전량 찾아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음.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무역 요구한 물종에 대하여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신사가 갈 때 사용할 것이라고 표범가죽 30령, 생모시베 70필, 흰모시베 10필, 꼬리를 갖춘 향초피 100령, 양가죽 150령, 대추 3섬, 범의 몸 전체 1마리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였다고 하는바,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비록 그 청을 굽혀서 따라주는 것이 불가하지만, 이미 사행 때 사용할 것이라 칭하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와 강원도에 아울러 분부하되, 그 중에 표범가죽 30명은 과다한 듯하니 10명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정월 15일 동부승지 신 안후(安垸)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술(1682) 2월 초7일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 내용. 부산첨사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인의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최억(崔億)⁹⁵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1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전일에 무역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며, 통신사가 올 때 차역(差役) 때문에 관에 있는 두왜들을 들여보내는 일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과연 두왜의 말한 바와 같기로,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전후로 무역 요구한 잡물은, 본도에 분정한 것은 이제 바야흐로 도신에게 보고하여 재촉하였으며, 서울에서 내려보낼 물건은 또한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 보낼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남익훈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 요구한 잡물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달라고 하였거니와, 전후로 무역 요구한 물건을 거의 다 준비하였는데, 그 중 대절진목 20동은 호조에서 황해도로 분정하였는데, 아직 만들어 오지 않았다고 하니, 급속히 만들어 보내라는 일로 호조에 명하여 재촉하게 하여, 잡물을 일시에 내려 보내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1년(1682) 초7일 우부승지 신 안후(安垸)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94) 안후(安垸, 1636-?): 순흥안씨로 자는 자후(子厚)이다. 현종 10년(1669) 정시에 급제하여 승지를 역임하였다.

95) 최억(崔億, 1648-?): 경주최씨로 자는 무경(茂卿)이다. 숙종 1년(1775)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계해(1683) 2월 초8일

동래부사 남익훈이 2월 초1일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민기(閔錡)가 치통한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변이표(卞爾標)와 별차 최억(崔億)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및 응사왜(鷹師倭) 1인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주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운운하였고, 또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보니, 도주에 에도에서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과 호두 각 10섬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급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또한 동래 영감 전에 고해 달라’고 간절히 말하여 마지아니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도주가 무역을 요구한 호두 등의 물건에 대하여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과 호두 각 10섬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전례를 살펴보니 정사년(1677)과 무오년(1678) 연간에 잇달아 이런 물건들을 무역 요구한 일이 있고 섬 수가 파다하여 그대로 허락하지 아니하고 각기 10섬으로 한정하여 무역을 허락하고, 공무목(公貿木)으로 계감(計減)⁹⁶하였거니와, 이제 이번에 요구한 것은 단지 10섬이고 또한 전례가 있으니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여 부응한다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2년(1683) 2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이언강(李彦綱)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96) 계감(計減): 썬을 따져서 회계에서 덜어 냄.

97) 이언강(李彦綱, 1648-1716): 진주 이씨로 자는 계심(季心)이다. 숙종 4년(1678)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682년 통신 부사로서 일본에 다녀왔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계해(1683) 윤6월 23일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98)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왜선 6척이 나오다가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4척은 가덕도로 표류하여 가고, 2척은 거제도도 표류해갔다고 운운하여, 동 왜선 등에 사정을 묻기 위하여 별차 한천석을 차출하여 보냈더니, 수본 내용에 “가덕포(加德浦)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4척에 사정을 물었더니, 제1척은 계해조 겸대 세견 제5선, 격왜 30명 및 교대하기 위해 새로 온 대관왜(代官倭) 2인, 종왜(從倭) 10명 등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제2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6선으로 격왜 30명 및 신 대관왜 4인, 종왜 16명 등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제3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8선으로 격왜 30명 및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1인과 도금도왜(都禁徒倭) 5인, 종왜 6명 등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제4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9선으로 격왜 30명 및 도금도왜 8인, 종왜 8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음. 거제도 옥포(玉浦) 앞바다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에 사정을 물었더니, 제1척은 계해조 겸대 세견 제7선인데 격왜 30명 및 신 대관왜 4인, 종왜 14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은 동년조 도서(圖書)를 받은 평의진(平義眞) 송사선(送使船)인데 정관 굴진지(橘陳之)와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등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가지고 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였다.”고 수본하였기로, 즉시 훈도 변이표에게 명하여 다시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별차가 사정을 물은 것과 별로 다름이 없는데, 관수 및 대관왜 등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도주가 시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각색의 미선(尾扇) 150자루를 무역 요구하여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던 바, 동 미선을 수량대로 급속히 무역 허락해 달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음. 노인 5통을 가져다 바침”이라 운운하였다는

98) 소두산(蘇斗山, 1627-1693): 진주(晉州) 소씨로 자는 망여(望如), 호는 월주(月洲)이다. 현종1년(1660) 식년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제주목사, 강릉부사, 의주부윤을 거쳐 계해(1683) 4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갑자(1684) 4월까지 재임하고, 그 뒤 공홍도관찰사(公洪道觀察使) 등의 지방관을 두루 역임하였다.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각 배의 노인은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도중에서 무역 요구한 각색 미선은 이전에도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으니,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사용할 각색 미선 150자루를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미선의 구청은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원래 그냥 주는 물건도 아니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장계대로 전라도에 수량대로 마련하여 곧바로 동래부로 보내라는 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2년(1683) 윤6월 23일 동부승지 신 심수량(沈壽亮)⁹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계해(1683) 9월 초5일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8월 27일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변이표(卞爾標)와 별차 박재창(朴再昌)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나온 사서를 보니, 예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마른 대구어 3,000마리, 잣 20섬, 호두 40섬, 마성(馬省) 100개, 대사(大紗) 10필, 대단(大段) 10필, 담비가죽 50령, 녹두가루[菘末] 600근, 홍전(紅氈) 100립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히 말하였다’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물건 종류가 허다하고 또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서 결코 고하기가 어렵다’고 여러 가지로 타일러서, 혹은 전량 줄이고 혹은 장사꾼들에게 편의대로 사들이라는 일로 논란하여 확정하였는데, 그 중 대구어, 잣, 호두, 담비가죽 등의 물건은 원래

99) 심수량(沈壽亮, 1644-?): 청송 심씨로 자는 용경(龍卿)이다. 현종 13년(1672)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참의에 이르렀다.

개시(開市)에서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기에 반드시 잘 고하여 10월 내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였다.”고 하였음.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에도에서 사용할 무역 요구 잡물 가운데 마성과 대사, 대단, 녹두, 홍전 등의 물건은 역관 등이 이미 타일러 혹은 전량 줄이고 혹은 장사꾼에게 사사로이 사들인다는 뜻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대구어 3,000마리, 잣 20섬, 호두 40섬, 담비가죽 50령 등의 물건을 무역 허락할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소두산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에도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마른 대구어 3,000마리, 잣 20섬, 호두 40섬, 담비가죽 50령 등의 물건을 무역 허락해 달라고 하였는데, 무역 요구한 잡물이 비록 전례가 있지만 그 수량이 과다하여 그대로 부응할 수 없으니, 잣 20섬에서 5섬을 줄이고, 담비가죽 50령에서 20령을 줄이고, 대구어 3,000마리에서 2,000마리를 줄이고, 호두 40섬에서 20섬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2년(1683) 9월 초7일 우부승지 신 정면(鄭勳)¹⁰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계해(1683) 10월 29일

예조에서 상고할 일. 도주가 무역 요구한 도화지(桃花紙) 5권, 황국지(黃菊紙) 5권, 설화지(雪花紙) 5권, 운암지(雲暗紙) 5권, 옅은 색 청화지(靑花紙) 5권 및 잣 300매 등의 물건을 급속히 준비하여 동래부로 보내는데, 도착한 날짜와 시각을 이문할 것. 경상 감영으로. [상감께서 편치 않아 입계(入啓)하지 못하고 대신(大臣)에게 품의하여 곧바로 이문(移文)함.]

계해(1683) 12월 17일

동래부사 소두산이 12월 초9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인의 작은

100) 정면(鄭勳, 1614-?): 해주 정씨로 자는 여강(汝強), 호는 여우(如愚). 인조 27년(1649)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승지에 이르렀다.

배 한 척을 데려다 관소에 부쳤다는 일에 근거하여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재창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9명 및 직급이 높은 두왜 1인, 종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재판차왜 및 관수왜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비직(卑職) 등을 만나자고 요청하여 말하기를, ‘방금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도주가 내년 정월에 예도로 들어갈 계획인데, 저쪽에 도착하여 사용할 녹두가루[菘末] 400근, 마른 대구어 2,000마리, 잣 10섬 등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도주가 예도로 들어갈 때 사용할 잡물을 무역 요구하는 데는 본디 전례가 있으니, 위 항목의 무역 요구하는 녹말 등 3종의 전례대로 무역 허락하여 이 달 그믐날 안으로 들여달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해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노인 1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전일에 비선이 나왔을 때 대구어 3,000마리, 잣 20섬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였는데, 해조에서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였기로, 이제 또 진청(陳請)하였는 바, 비록 그냥 주는 것이 아니지만, 지루한 일인 듯하거니와,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게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소두산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내년 정월에 예도에 들어가서 저쪽에 도착하여 사용할 녹말 400근, 마른 대구어 2,000마리, 잣 10섬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원하였는데,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지만 지루한 일인 듯하여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고 하였는 바, 이전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을 허락하지 않은 적이 없어서 왜인들이 응당 시행되는 사례인 것처럼 보고 있으니 막을 말이 없거니와, 다만 그 무역을 원하는 수량이 너무 과다하니, 원래 수량에서 반으로 줄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2년(1683) 12월 17일 우승지 신 정면(鄭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동래부사 소두산이 10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선 3척이

나와서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일로 온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변이표와 별차 박재흥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계해조 겸대세견 제10선으로 격왜 30명, 제2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11선으로 격왜 20명, 제3척은 동년조 겸대 세견 제12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격왜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비직등을 만나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방금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도주가 간절하게 급히 쓸 곳이 있어서 도화지(桃花紙) 5권, 황국지(黃菊紙) 5권, 운암지(雲暗紙) 5권, 설화지(雪花紙) 5권, 옅은 색 청화지(靑花紙) 5권 및 방백자(房柏子) 300매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급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을 간곡하게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노인 3통을 가져다 들인다.”고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상항의 나온 왜선의 노인 3통은 받아들여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무역을 요구한 각색 종이의 무역을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지난 10월 29일 상감께서 편치 앓으시어 입계하지 못하였으므로, 승정원의 분부에 따라 부응함을 허락한다는 일로 곧바로 본도에 이문을 거행하였음.]

갑자(1684) 정월 12일

예조의 계사(啓辭). 지난 10월 그믐 사이에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왜인이 청한 각색 종이와 방백자(房柏子) 등의 물건 무역에 대한 일로 치계하여, 이제 본조에 계하하였는데, 이런 일은 반드시 복계하여 윤행가 내린 뒤에 분부하여 거행하는 것이 본디 규례이나, 그 때 조용히 조섭하는 도중에 감히 번거롭게 할 수 없어서 대신에게 품의하여 본도에 명하여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라 하였으니, 이제 일이 이미 지나 회계하지 않는다는 뜻을 감히 입계하나이다 하였더니, 전교에 ‘알았다’고 하였음.

갑자(1684) 정월 16일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의 장계 내용에 운운. 왜선 2척이 나와서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변이표(卞爾標)와 별차 박재창(朴再昌)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계해조 겸대 세건 제15선으로 격왜 20명, 제2선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6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가기 위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주(島主)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격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비직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고는 ‘방금 도중의 봉행 등이 보내온 사서를 보니, 에도에서 방금 약으로 쓸 데가 있어서 호설(虎舌) 10근을 도주가 들어올 때 무역 요구하여 가져와 달라 하였다고 동 호설 10근을 도주가 발행하기 전 이번 달 그믐날 이내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 바, 무역 요구가 빈번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므로,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진달하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이번 달 그믐날 이내로 들여달라는 뜻으로 상세히 고하여 달라’고 여러 가지로 간절히 이야기하였음. 노인 2통을 가져다 바친다.”고 운운하였음.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무역 요구하는 청이 전후로 이어져서 매양 굵혀서 따라주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이제 이번 호설 10근은 그 수량이 자못 많아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왜를 타이르게 하였더니, “동 왜인은 ‘번거로운 청이 미안한 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번 호설은 곧 에도에서 절실하게 약으로 쓸 데가 있어서 도주가 십분 간절히 구하는 것이므로, 진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10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 하더라도 12개는 기어코 이번 달 그믐 이전에 찾아 달라’고 간청하였다.”고 수본하였는 바, 무역 허락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이 동래부사 소두산의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가 호설 10근의 무역을 요구한다 하였거늘, 동래부에서 역관에게 명하여 타일러 12개로 정하여 무역을 허락할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종종 무역 요구가 실로 번거로운데, 이는 평상시에 교역하는 일인지라 막을 필요가 없으니 본도에 명하여 얻을 수

있는 대로 찾아 주라 하되, 만약 12개의 수량에 맞추지 못하거든 다시 역관 들을 시켜서 사실대로 언급함이 마땅하니, 감사에게 아울러 이렇게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3년(1684) 정월 16일 우승지 신 김진구(金鎭龜)¹⁰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자(1684) 8월 초6일

동래부사 소두산(蘇斗山)이 7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5척이 나왔기에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한진흥(韓振興)¹⁰²⁾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돌아와 하는 말이 “제1척은 계해조 특송사 1호선이고, 제2척은 동 특송 제2호선이고, 제3척은 이정암(以酏庵) 송사선이고, 제4척은 창원(昌原)에서 바람에 표류한 3명을 영솔하여 온 차왜 정관 대강태행(大江泰幸)과 봉진압물 1인, 반종 6명, 격왜 40명이 함께 타고 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제5척은 창원에서 바람에 표류한 3명이 탔던 배인데, 통사왜(通事倭) 1인, 지로사공(指路沙工) 1명, 격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있었음. 비직(卑職) 등이 관수왜에게 가서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일대관왜(一代官倭)와 평성광(平成廣)이 일시에 와서 봉행 등의 서간을 내어 보이며서 말하기를, ‘에도에서 집정 한 사람은 조선 나귀말[驢馬] 암수 각 1필씩 얻기를 청하는 일로 간청하여 마지 않았고, 한 사람은 각색 종이 35권 및 녹두가루[菘末] 500근을 얻기를 청하는 일로 도주에게 직접 청하면서 매우 은근하였다고 하는바, 이른바 나귀말은 흑 청색이거나 흑 회색이거나 가운데 주름살 흔적(楸皮痕)이 없는 것이며, 이른바 각색 종이는 도화지(桃花紙), 황화지(黃花紙), 홍염지(紅染紙), 천황지(淺黃紙), 심록지(深綠紙), 청염지(靑染紙), 설화지(雪花紙) 각 5권인데 극도로 가려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간곡하게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반드시 9월 보름 이전에 미칠 수 있도록 해

101) 김진구(金鎭龜, 1651-1704): 광산 김씨로 자는 수보(守甫), 호는 만구와(晩求窩)로 광성부 원군 만기(萬基)의 아들이자 인경왕후(仁敬王后)의 오빠이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참찬,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102) 한진흥(韓振興, 1662-?): 청주 한씨로 자는 기지(起之)이다. 숙종 8년(1682)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각색 종이는 이전부터 비록 무역을 허락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적은 없었으며, 녹두가루는 2·3월 사이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금은 이미 철이 지나 갑자기 장만하기 어렵고, 이른바 나귀말은 우리나라의 소산이 아니라서 거의 없어서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일제히 떠들며 말하기를 '백사단필(白絲段匹)은 일찍이 귀국 소산이 아니지만 평상시 매매하는데, 나귀말에 있어서는 유독 소산이 아니라고 하면 또한 잘못된 게 아니냐? 궁각(弓角)과 호초(胡椒)는 원래 왜국 소산이 아니지만 해마다 바치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데, 조정에서 만약 도주(島主)의 형편을 통측한다면, 2필의 나귀를 어찌 무역 허락하지 않겠는가? 값의 고하는 따져 논할 것 없으니, 침지 등은 쓸데없이 저지하지 말고 전달하여 주시고, 녹두가루는 만약 그렇게 곤란하고 불편하거든, 저희들이 서울 상인에게서 직접 사들여도 또한 족히 사용할 수 있겠거니와, 색지(色紙)는 달리 사들일 곳이 없으니 모름지기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자세히 고하여, 도주의 간절한 바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세 왜인이 입을 번갈아 가며 힘써 다투었다."고 운운한 일로 수본(手本)한다 하였음. 무역을 요구한 나귀말은 일찍이 전에도 또한 무역을 청한 때가 있었는데,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므로 막아서 허락하지 아니했으니, 이제 무역을 허락하기 어렵다고 아울러 이치에 근거하여 타일러 기어코 막은 뒤에 수본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전령하여 신칙하였더니, 훈도 안신희와 별차 한진홍 등의 수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시 전령 내의 사연의 뜻으로 동차왜에게 운운하였고, 또 일대관(一代官)과 재판차왜(裁判差倭) 등을 보고는 '무역을 요구한 물건 중에 나귀말은 대마도의 간청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보살피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치에 근거하여 막았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지난 번 40년 전후와 임오(1642) 계미(1643) 갑신(1644) 을유(1645) 병술(1646) 연간에 각자 귀국에서 한 필의 나귀를 허락한 적이 있었고, 저희 등이 또한 목도한 바이거니와, 전에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고를 따지지 말고, 이른바 나귀말은 이미 관계가 중대한 물건이 아니고, 또한 나라에서 금하는 물건도 아니니, 굳이 한결같이 굳게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며, 나귀보다 크면

서 가격이 무거운 것으로는 잘 달리고 잘 걷는 말만한 것이 없는데도 항상 무역을 허락하여 구하는 바람에 부응하다가도, 유독 이 나귀말의 요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물리치려고 하는 것은 실로 그 뜻의 소재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나귀말은 일을 시키는데는 소에 미치지 못하고, 짐을 싣는 데는 말에 미치지 못하지만, 큰 집안 아이들이 희롱하는 물건으로 삼기 때문에, 집정이 청하는 것도 대개 여기서 나온 것인데, 이제 우리 도주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고하는 것도, 나귀 두 마리로 집정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함이 아니다. 저쪽에서 직접 와서 청하였는데 굳이 거스릴 수 없기로, 그 다소를 계산하여 값을 보내면 이미 그냥 취할 것도 아니며, 이 뒤로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전례로 삼지도 않을 것이니, 전항의 뜻을 일일이 고하여 도주로 하여금 낙망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해 주면 실로 매우 다행이겠다'고 하며 중언부언 간절히 간청하여 마지 않았기로, 연유를 운운한 일로 수분하고 치통한다" 하였음. 나귀말 및 각색 종이의 무역을 요구하였는데, 저들의 간청하는 바가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소두산의 장계를 보니, 집정 등이 구하는 나귀말 암수 각 1필, 각색 종이 35권의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나귀말은 본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경솔히 무역을 원하는 청을 허락하는 것은 후일에 폐단에 관계되는 듯하여 매우 어려우나, 이전에 병술(1645) 연간에 나귀말 무역을 허락한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간청하는 바가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고, 2필의 나귀 또한 수량이 많지 아니하니, 아마도 끝내 막을 필요는 없을 듯한데, 변통하는 일과 관계되니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며, 각색 종이는 그 수량이 비록 많으나 이는 토산이고 또한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니 그들이 구하는 대로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3년(1684) 8월 초7일 우부승지 신 조성보(趙聖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 일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첨부한 계목 내용**. 운운. 나귀말은 비록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나, 일찍이 또한 나귀의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으니 특별히 부응하도록 허락하여도 무방하겠으니, 이렇게 해조에 아울러 분

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3년(1684) 8월 초10일 우부승지 신 조성보(趙聖輔)¹⁰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자(1684) 9월 초4일

예조 단자(單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인이 요구한 나귀말(驢馬) 암수 각 1필을 해조에서 이미 사들여서 사복시(司僕寺)에 명하여 별도로 이마(理馬)를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하심이 어떠할지. 입계하였더니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심.

갑자(1684) 9월 23일

동래부사 박치도(朴致道)¹⁰⁴⁾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인의 작은 배 4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手本) 내용에 “동 작은 배 4척은 모두 비선인데, 각기 두왜 1인과 격왜 12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은화를 실어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음.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도중(島中)의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목방기(木防己)¹⁰⁵⁾ 3근, 마른 대구어 500마리 등의 물건을 도주가 예도에 있으면서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운운하여 왔으니, 마른 대구어를 장사꾼 등에게 비록 혹 사들여도 모두 몸이 적어 예도에서 사용하기에 맞지 않으니, 몸이 크고 새로 산출된 것을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도주가 광채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음. 노인 4통을 받아 보냄.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4

103) 조성보(趙聖輔, 1634-?): 풍양 조씨로 자는 사준(士俊)이다. 현종1년(1660)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관찰사에 이르렀다.

104) 박치도(朴致道, 1642-1697): 순천 박씨로 자는 학계(學季), 호는 검암(黔巖)이다. 현종 9년(1668)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북평사(北評事)를 거쳐 갑자(1684) 8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을축(1685) 9월까지 재직하고, 승지를 역임하였다.

105) 목방기(木防己): 땀샘이 텅굴의 뿌리. 거풍지통(祛風止痛), 이뇨소종(利尿消腫)의 약제로 사용된다.

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도주가 무역 요구한 목방기와 대구어 등의 물건을 전례에 따라 무역을 허락함이 무방할 듯한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박치도의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가 요구하는 목방기 3근, 마른 대구어 500마리 등의 물건을 전례에 따라 무역을 허락함이 무방할 듯한데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요구하는 대로 본도에 명하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찌할지. 강희 23년(1684) 9월 24일 동부승지 신 김재현(金載顯)¹⁰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갑자(1684) 10월 초2일

동래부사 박치도(朴致道)가 9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인의 작은 배 4척이 나왔기에 훈도 안신희와 별차 한진흥(韓振興)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手本) 내용에, “동 왜인의 작은 배 4척은 모두 비선으로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관수 및 일대관왜(一代官倭) 등에게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이제 이번 비선 1척은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에도에서 요구하는 나귀말[驢馬]과 색지(色紙) 등의 물건을 재촉하는 일로 전담 받아 나왔는데, 상항의 두 가지 물건이 거의 다 도착하였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거니와, 미수(未收)의 색지는 재촉하여 들여 달라’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3척은 각기 두왜 1인과 격왜 8명 등이 대관왜에게 은화를 실어 왔다고 하였음. 노인 4통을 받아 올려보내며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을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무역 요구한 색지 중 미처 보내오지 않은 것을 도신(道臣)에게 보고하여 재촉하여 들여줄 계획이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

106) 김재현(金載顯, 1627-1700): 경주 김씨로 자는 회백(晦伯)이다. 현종 3년(1662) 증광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도승지, 경기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을축(1685) 정월 초5일

동래부사 박치도가 지난 12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2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안신휘와 별차 한진흥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제1척은 갑자조 세건 제12선으로 격왜 20명, 제2척은 동년조 겸대 세건 제14선으로 격왜 20명 중, 대관왜가 거처하고 있는 가옥 담장을 수축하기 위해 온 공장(工匠) 역부왜(役夫倭) 등 5명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며, 일대관왜(一代官倭)의 말이 ‘도중의 봉행 등이 보내온 사서에, 잣과 호두는 섬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로 해마다 무역을 요구하는데, 올해에는 1섬의 잣을 무역하여 보내지 아니하니 그 연고를 모르겠다고 저희들을 준절하게 책망하여 왔으니, 잣 20섬을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근년 이래로 과실이 부실한 가운데 잣은 더욱 심하기로 무릇 매매하는 사이에도 시장에 파는 사람이 없어서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20섬의 잣을 어디서 사들일 수 있겠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이 ‘작년에 20여 섬을 겨우 이미 무역 허락 받았는데, 근년에 없다는 설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 20섬을 갑자기 수합하기 어려우면 10섬을 반드시 정월 20일 사이에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간청하여 마지 아니하였음. 노인 2통을 받아 올려 보냄”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2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잣의 무역 요구는 이전에도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정월 20일 사이에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는 뜻으로 간절히 청하였다 하는 바, 20섬에서 이미 10섬을 줄였으니, 10섬은 진작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줌이 어떠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박치도의 장계를 보니 도중에서 무역 요구한 잣 10섬의 무역을 허락하라 하였는 바, 잣의 무역 요청은 일찍이 전례가 있어서 이제 막기가 어려우니,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정월 초4일 우부승지 신 송규렴(宋奎濂)¹⁰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을축(1685) 7월 27일

동래부사 박치도(朴致道)가 이 달 17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훈도 이준한(李俊漢)¹⁰⁸과 별차 한후원(韓後瑗)¹⁰⁹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手本) 내용에, “비선 1척에 격왜 20명 중 예도의 집정 및 봉행 등이 요구하는 다완(茶碗)을 전례대로 구워만들기 위한 감역왜(監役倭) 3인, 공장왜(工匠倭) 2인, 차지(次知) 금도왜(禁徒倭) 3인 등이 함께 타고,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저희들이 거처하는 임시 가옥을 전례대로 먼저 만들어 주고, 들어갈 백토(白土)와 약토(藥土), 토목(土木)과 귀국의 공장(工匠) 역시 신유년(1681) 전례대로 분정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음. 동 두왜가 가져온 서계를 가져다 들임.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사기를 구워만드는 것은 이미 전례가 되었기에 이제 막기가 어려우니, 구워만드는 차지왜(次知倭)가 나오기를 기다려, 들어갈 백토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를 전에 이미 치계(馳啓)하였는데, 차지왜 등이 지금 이제 나왔으니, 청컨대 신유년(1681) 사례에 의거하여 백토와 약토 등의 물건을 찾아 주어야 하겠기로, 신유년(1681) 등록을 살펴보니, 백토와 약토 아울러 15말을 1섬으로 하여 도합 190섬 내에 백토 166섬¹¹⁰ 10말, 약토 23섬 5말로 분정하여 찾아주었으며, 장인 2명 역시 정하여 주었는 바, 지금 역시 이 수량에 의거하여 지급할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하여 분부하시기를. 동 사기 조성을 청하는 서계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박치도의 장계를 보니, 왜인이 청하는 각색 흙 및 사기장을 정하여 주는 일로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장인을 정하여 주어 사기를 구워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

107) 송규렴(宋奎濂, 1630-1709): 은진 송씨로 자는 도원(道源), 호는 제월당(霽月堂)이다. 효종 5년(1654)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도승지, 대사헌, 우참찬에 이르렀다.

108) 이준한(李俊漢, 1630-?): 연곡 이씨로 자는 수보(秀甫)이다. 현종 7년(1666) 식년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109) 한후원(韓後瑗, 1659-?): 청주 한씨로 자는 백옥(伯玉)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종사하였다.

110) 원본에 ‘百’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으니 장계대로 시행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7월 27일 우부승지 신 박태손(朴泰遜)¹¹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 대마주(對馬州) 태수(太守)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令公) 합하(閣下). 이에 도기를 만들기 위하여 도공(陶工) 몇을 차출하여 보내오니, 바라건대 전례에 따라 귀국의 도공과 흙과 장작 및 임시 가옥과 여러 도구 등의 물자를 소용되는 대로 왜관(倭館)에 들여주시면 매우 다행이옵기에 간절히 바라오며, 양찰해 주시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정형(貞亨) 2년 을축(1685) 5월 일. 대마주 태수 습유 평의진 서계(書契).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전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로 나온 왜인이 동래 부산 두 곳으로 보낸 서계의 회답 초고를 전례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내려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7월 27일 우부승지 신 박태손(朴泰遜)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사 박치도의 장계 내용.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훈도 이준한과 별차 한후원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갑자조 겸대 2 특송 2호선인데 격왜 30명 등이 대관왜(代官倭)의 짐을 실어가고자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 10섬, 방백자(房栢子) 50매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이 매우 간절하였으니, 전례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운운.” 동 잣을 무역 요구한 일은 전에 빈번하게 있었으니, 계해년(1683) 8월분 왜인이 요청한 것이 20섬이거늘 해조에서 5섬을 줄여 15섬을 무역 허락하였으며, 동년 12월분에 또 10섬을 청하여 해조에서 5섬을 줄여 5섬만

111) 박태손(朴泰遜, 1641-1692); 만남 박씨로 자는 여길(汝吉), 호는 천휴(天休)이다. 현종 14년(167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 경상도 관찰사,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허락하였는 바, 이번에 청하는 10섬 및 방백자 50매 등도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박치도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 10섬과 방백자(房栢子) 50매 등을 간절히 구하여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하였는바, 이제 지금 잣을 무역하여 보내는 데는 이미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수량이 많지 아니하니, 이 장계대로 무역을 허락하는 뜻으로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7월 27일 우부승지 신 박태손(朴泰遜)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동래부사 유지발(柳之發)112)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이준한(李俊漢)과 별차 한후원(韓後瑗)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운운. 관수왜가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방금 봉행 등이 보내온 사서를 보니, 도중에서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마른 대구어 300마리, 날밤[生栗] 3섬 등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바,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간절히 이야기하였음. 운운” 상항의 무역 요구 등의 일은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었고, 그 소청한 대구어와 생률 등의 물건을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를 보니, 도중에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마른 대구어 300마리, 날밤 3섬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한다고 하였는 바, 대구어와 날밤[生栗] 등의 물건은 전에도 무역을 허락하여 이미 규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량도 많지 않아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9월 25일 우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12) 유지발(柳之發, 1633-?): 진주 유씨로 자는 기지(起之), 현종 3년(1662)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고, 을축(1685) 9월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병인(1686) 4월까지 재직하고, 관직이 참판에 이르렀다.

을축(1685) 10월 초6일

동래부사 유지발(柳之發)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에 운운. 왜선 4척이 나왔다는 일에 의거하여 훈도 이준한(李俊漢)과 별차 한후원(韓後瑗)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왜선 4척은 모두 비선인데, 각기 두왜 1인과 격왜 5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왔거늘, 그 나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은화를 실어가지고 왔으며, 관수에게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도중에서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이 사서를 보니 에도에서 집정 등이 요구하는 체구가 큰 점박이 숫말〔斑雄馬〕 2필 내에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얼룩말〔月羅馬〕 1필과 붉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얼룩말〔月羅馬〕 1필, 나이 너댓살이 되는 것과 도중에서 사용할 잣 20섬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하였는데, 아울러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고하게 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 하였음. 동 왜선의 노인 4통은 감 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말과 잣의 무역 요구는 비록 전례가 있지만 잣에 있어서는 10섬을 겨우 이미 무역 허락하였으며, 이 색마(色馬) 2필도 혹 얻기가 어려울 듯한데, 그들의 소청을 매양 급히 따라줄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바, 체구가 큰 점박이 숫말 2필 및 도중에서 사용할 잣 20섬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달라고 하였는 바, 무역 요구한 물건이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잣 10섬은 겨우 이미 무역 허락하였는데, 이제 20섬을 구하니 반으로 줄여 무역을 허락하며, 말 무역의 요구는 이미 전례가 있어서 이제 막기가 불가하니, 붉은 색과 검은 색 바탕의 두 가지 색의 얼룩말 2필을 소원대로 무역 허락하되, 예비가 없어서는 불가하니, 두 가지 색의 예차마(預差馬) 각 1필을 전례대로 내려 보내어 가려잡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10월 초8일 우승지 신 임홍망(任弘望)¹¹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을축(1685) 10월 23일

예조의 단자(單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인이 구하는 얼룩말[月羅馬]의 실차마(實差馬)와 예차마(預差馬) 모두 4필을 이미 사들여서 전례대로 사복시(司僕寺)에 명하여 별도로 양마(養馬)와 이마(理馬) 각 1인을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4년(1685) 10월 23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하라 하셨음.

병인(1686) 정월 15일

동래부사 유지발(柳之發)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元振洙)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4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이준한(李俊漢)과 별차 한후원(韓後瑗)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관수왜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보니 도주가 다음 달 20일 사이에 예도로 들어가는데, 저쪽에 도착하여 사용할 담비가죽 50령, 마른 대구어(大口魚) 1,000마리, 잣 10섬 등의 물건을 전례대로 무역 요구하여, 기어코 2월 보름 사이에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운운. 동 노인 4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담비가죽과 대구어, 잣 등의 물종은 비록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나, 대구어와 잣 등의 물건에 있어서는 겨우 이미 무역을 허락했는데 이제 또 무역을 요청하니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지만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거니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유지발(柳之發)의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담비가죽 50령, 대구어 1,000마리, 잣 10섬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한다 하였는 바, 근래 무역 요구가 지루한 듯 하거니와, 동 무역 요구한 담비가죽 등 3종은 그 수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원래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수량 대

113) 임홍망(任弘望, 1635-1715): 풍천 임씨로 자는 덕장(德章), 호는 죽실거사(竹室居士)이다. 현종 7년(166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의, 황해도관찰사, 도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정월 15일 좌승지 신 송창(宋昌)¹¹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병인(1686) 2월 초4일

예조에서 입계하기를, “지난해 10월에 동래부사의 장계로 말미암아 왜인이 구하는 색마(色馬) 실차마(實差馬)와 예차마(預差馬)를 아울러 4필을 내려보냈더니, 그 중 1필은 가려서 잡고 3필은 되돌려 올려 보내어, 본부에서 본도에 첩보하여 찾아내는 일로 치보하였으므로, 본조에서도 또한 널리 각 고을에 구하여 기어코 물건을 피집(被執)¹¹⁵하라는 뜻으로 본도에 이문(移文)하였는데, 방금 접한 경상감사의 이문에는, 왜인이 구하던 색마를 각 고을에 분부하여 여러 가지로 찾았으나 끝내 찾아내지 못하여 속히 변통 운운 하였으니, 색마의 실차마와 예차마 각 1필을 해당 관서에 명하여 다시 더 구하여 별도로 이마(理馬)를 정하여 말을 주어 내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하였더니, 전교에 윤택한다 하였음.

병인(1686) 2월 초8일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이 나왔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이준한과 별차 한후원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비선에는 대관왜 1인과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대관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 안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보니, 도주가 다음 달 그믐 사이에 예도로 들어가는데, 여러 집정

114) 송창(宋昌, 1633-1706): 진천 송씨로 자는 한경(漢卿)이다. 효종 8년(1657)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대사간, 도승지, 공조판서를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다.

115) 피집(被執): 왜관무역에서 널리 통용되었던 일종의 선매(先賣) 제도. 대금을 먼저 주고 뒤에 물품을 수령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

등이 요구할 일이 많을 것이기에, 범가죽(虎皮) 네 발과 발톱이 모두 있고 체구가 큰 것으로 5령, 자필(咨筆) 30자루, 특별히 만든 황모필(黃毛筆) 100자루를 반드시 다음 달 20일 사이에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며, 전일에 무역 요구한 잡물도 도주가 출발하기 전에 속히 재촉하여 들여보내달라 하였는데,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하거늘, 소인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하는 청이 어찌 그리 빈번한지 운운'하며 이치에 근거하여 책망하고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발끈 화를 내며 안색을 바꾸어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로 들어갈 때 잡물의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본디 전례가 있다고 운운'하였음.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서 여러 집정 등에게 요구에 응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범가죽 5령, 자필 30자루, 황필 100자루를 또 무역 요청하였는 바, 무역 요구가 빈번한 것은 근래에 와서 더욱 심하여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디기 어려우나,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할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범가죽 5령, 자필 30자루, 황모필 100자루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 하였다고 하는 바, 근래에 무역 요구가 지루한 듯하나,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막을 필요는 없고, 구하는 범가죽과 붓자루 등은 원하는 대로 허락하여 부응함이 마땅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급속히 마련하여 내려 보내라 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2월 초8일 동부승지 신 성호징(成虎徵)¹¹⁶⁾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병인(1686) 2월 23일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 부산첨사 원진수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훈도 이준한과 별차 한후원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비선에는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116) 성호징(成虎徵, 1625-1694): 창녕 성씨로 자는 병여(炳如)이다. 현종 7년(1666)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좌승지, 형조참의, 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나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격왜 등이 하는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방금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보니, 에도의 여러 집정 등이 구하는 청서피(靑黍皮) 5령, 표범가죽[豹皮] 5령, 반죽(斑竹) 자루 황필(黃筆) 50자루, 당죽(糖竹) 자루 50자루, 청홍황(靑紅黃) 삼색지(三色紙) 200장, 방백자(房栢子) 30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다 운운”하였음.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상항의 무역 요구한 각종 물건은 비록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지만 이렇게 빈번하니 계속하여 급히 그들의 소원을 따라주는 것은 불가하거니와,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치하기에 달려 있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유지발의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청서피 5령, 표범가죽 5령, 반죽 자루 황필 50자루, 당죽 자루 황필 50자루, 청홍황 삼색지 200장, 방백자 30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달라고 하였다고 하는바, 근래 무역 요구가 빈번한 듯하지만 원래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고 이미 토산이라 막을 필요가 없으니, 해사 및 본도에 명하여 마련해 주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2월 25일 동부승지 신 신엽(申晷)¹¹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병인(1686) 6월 27일

동래부사 이항(李沆)¹¹⁸⁾의 장계. 부산첨사 최호진(崔好鎭)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1척이 나왔기에 즉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윤세흥(尹世興)¹¹⁹⁾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을축조 1특송

117) 신엽(申晷, 1646-?): 평산 신씨로 자는 계희(季晦)이다. 숙종 5년(1679)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감사에 이르렀다.

118) 이항(李沆, 1636-?): 여흥 이씨로 자는 태초(太初), 호는 백봉(白峰)이다. 현종 11년(1670)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병인(1686) 4월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무진(1688) 정월까지 재직하였으며, 관직이 대사헌에 이르렀다.

119) 윤세흥(尹世興, 1661-?): 파평 윤씨로 자는 기지(起之)이다. 숙종 9년(1683)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에 종사하였다.

2호선에 격왜 30명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려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방금 봉행 등의 사서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 들어간 뒤로 간절하게 사용한다고 반죽필(斑竹筆) 50자루, 자필(柶筆) 50자루, 공산오옥(公山烏玉) 대절묵(大節墨) 10홀(笏), 자석영(紫石英) 2냥, 각색 미선(尾扇) 150자루, 방백자(房栢子) 50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누누이 이야기하거늘, ‘이른바 자석영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방백자는 이제 이미 철이 지났고 9월이나 10월 사이에 사들여야 하며, 미선에 있어서는 호남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수량은 갑자기 사들일 수가 없다’고 여러 방도로 거절하여 막았는데, 필묵에 있어서는 막기가 어려운 형편이며, 동 왜인이 간청하는 바가 매우 간절하다고 운운” 하였음. 이제 이번 무역 요구한 필묵과 자석영, 미선, 방백자는 굳이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지만 그 수량이 또한 많아서 비록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할 수는 없더라도, 필묵은 막기 어려운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서 사용할 반죽필 50자루, 자필 50자루, 공산오옥 대절묵 10홀, 자석영 2냥, 각색 미선 150자루, 방백자 50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제 이번에 구하는 것이 이미 토산이고 또한 그냥 주는 것이 아니어서 막을 필요가 없으니, 수량대로 허락하여 부응하고, 붓자루 등은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고, 자석영과 방백자는 본도에 명하여 마련하며, 공산도옥 대절묵은 공홍도(公洪道)에 명하여 마련하게 하고, 각색 미선은 전라도에 명하여 마련하여 동래부에 곧바로 보내게 하여 일시에 들여주는 일로 해조 및 해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6월 27일 동부승지 신 김두명(金斗明)¹²⁰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120) 김두명(金斗明, 1644-1706): 청풍 김씨로 자는 자양(子昂), 호는 만향(晩香)이다. 현종 12년(1671)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와 병조참의를 역임하였다.

병인(1686) 11월 초8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장계. 부산첨사 최호진(崔好鎭)의 치통 내용에 운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배 1척이 등을 달고 나온다는 보고에 의거하여 훈도 안신휘와 별차 윤세홍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동 왜선 1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대관왜 등에게 봉행 등이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대관왜(代官倭)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방금 도중에서 봉행 등이 보내온 사서를 보니, 잣 20섬, 호두 20섬, 마른 대구어 500마리를 절박하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였다고 운운” 하였음. 상항의 잣과 호두, 대구어 등의 물건은 곧 전에 무역을 허락하던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도중의 봉행 등이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 잣 20섬, 호두 20섬, 마른 대구어 500마리를 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하는 바, 동 무역 요구한 물건은 본디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요구하는 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11월 초8일 우승지 신 박원도(朴元度)¹²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병인(1686) 12월 24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장계. 부산첨사 최호진(崔好鎭)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3척이 나왔기에 훈도 안신휘와 별차 윤세홍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관수왜에게 가서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도중에

121) 박원도(朴元度, 1626-1690): 반남 박씨로 자는 중헌(仲憲), 호는 죽창(竹窓)이다. 현종 4년(1663)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우부승지, 병조참판,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는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운운 하였으며,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도중에서 온 사서에는 에도의 집정이 조선 말 안장 1벌[具]을 구하는 것이 있는데 앞 뒤 시렁[架子]을 백어가죽[白魚皮]으로 감싸고, 턱 아래 주락(朱絡)은 진상모(眞細毛)를 치밀하게 단당하고, 추피(楸皮) 등의 물건은 모두 은사(銀絲)를 넣고, 안갑(鞍匣)의 가장자리 장식을 사슴가죽으로 하고, 청니장(靑泥障)은 반드시 가죽이 부드럽고 색깔이 윤택한 것으로 하고, 등자(鎧子)는 순은으로 입사(入絲)하여 만든 것을 무역 허락하여,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기 이전에 미치도록 하면 실로 광채가 되겠다'고 간청하여 마지 아니하였다고 운운" 하였음. 동 말 안장의 무역 허락은 일찍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말 안장 한 벌을 무역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았다고 하였는바, 동 말 안장의 무역 허락은 일찍이 전례가 있었으니, 구하는 대로 해조에 명하여 마련하여 내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5년(1686) 12월 24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정묘(1687) 정월 초6일

동래부사 이항이 12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왜선 3척이 나왔기에 훈도 안신휘와 별차 윤세홍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문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어제 저물무렵 관소로 돌아와 정박한 왜선 3척에 탄 인물은 앞서 별차가 사정을 물은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기로, 노인 3통을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관수 및 일대관왜가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본도의 봉행이 도주와 함께 에도로 갔다가 확정할 일이 있어서 봉행이 먼저 본도로 돌아왔는데, 봉행이 에도에 있을 때 귀국에서 인삼 매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기를 듣고는 도주가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매매하는 길이 막히며 진봉하는 것이 염려되니 속히 나가서 극상품의 관삼(官蔘) 50근을 급급히 무역 요구하여 와 달라고 하였기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였는데, 이 뜻을 급하게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

여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인삼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보통 물건을 금하는 것에 견줄 것은 아니고, 나라 안에서도 오히려 캐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기로 마야흐로 나라에서 사용하는 것도 부족할까 걱정하는데, 어찌 무역을 허락할 리가 있겠는가?'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손가락을 통기며 안색을 바꾸고 말하기를 '매매를 금하는 것은 혹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도주가 무역을 요구하며 값의 대소를 따지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이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해마다 진봉(進封)하는 것을 결코 빠뜨릴 수 없기로, 이전에도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근년 이래로는 사무역(私貿易)이 파다하였으므로, 그 중에서 가려 취하여 진봉을 빠트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매매를 허락하지 않고 또 무역 요구도 허락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진봉하겠는가?' 하였으며, 이 밖에 누누이 하는 말은 수작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비직 등이 '이제 이번 인삼의 일은 오늘 갑자기 논란할 것이 아니다'하고 그대로 파하고 나왔기로 연유를 우선 수분한다."고 운운하였음. 상항의 노인 3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신은 즉시 훈도 안신휘 등에게 명하여 왜관에 있는 여러 왜인들에게 말하기를 "국가의 금령이 지극히 엄중하여 인삼의 채집을 허락하지 않아서, 공사(公私)의 약물에 인삼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너희들 역시 필시 들어 알터인데, 도중에서 무역 요구가 비록 간절하다고는 하나, 조정에서는 결코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우니, 본부에서는 이에 전하여 알리지 아니한다"고 하였거니와, 이전에도 인삼 상품이 통행될 때 무역 요구가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조정에서는 또한 모두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더구나 이제 인삼을 구할 길이 영구히 끊어졌으니 도중에서 절박한 것을 알 만하니, 간략하게 무역을 허락하여 먼 곳 사람들의 바람을 잃지 않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을는지,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침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비록 무역을 허락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인삼 채집을 금하는 때를 당하여 본도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정월 초7일 동부승지 신 엄집(嚴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에서 침부한 계목**. 대마도의 왜인이 무역을 요구하

는 인삼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이제 와서 금령을 거듭 엄중하게 한 뒤에 인삼을 구할 길이 영구히 끊어져서 국내의 수요 또한 계속 잇기 어려워 걱정인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채집을 금하고 다른 나라에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을 뿐 아니라, 50근의 관삼은 또한 거두어 부응할 길이 없으니, 역관 등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막음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정월 18일 동부승지 신 엄집(嚴緝)¹²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묘(1687) 2월 21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이 이 달 15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전에 도착한 본부의 서장(書狀)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복계(覆啓)함으로 인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回啓)한 관문 내용 요약. 대마도의 왜인이 무역 요구한 인삼은 비록 전례가 있지만 이제 와서 금령(禁令)을 거듭 엄중하게 한 뒤로는 인삼을 구할 길이 영구히 끊어져 국내의 수요에도 이어 가기 어려운 것이 걱정인데, 우리나라 경내에 채집을 금하고서 다른 나라에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사리에 부당할 뿐 아니라, 50근의 관삼(官蔘)은 또한 수합하여 부응할 길이 없으니, 역관들에게 명하여 말을 만들어 막음이 마땅하니, 이렇게 분부함이 어떠할지,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받았는데, 교지(教旨) 내의 뜻을 받들어 살펴 시행할 일이라고 관문하였기로, 삼가 관문 내의 뜻으로 역관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을 만들어 막게 하였더니, 방금 바친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윤세흥(尹世興) 등의 수본(手本) 내용에, “무역을 요구한 인삼을 무역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한결같이 전령(傳令) 내의 말에 의거하여 관수(館守)와 대관왜(代官倭)에게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무릇 무역 요구와 관계되는 물건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도주가 예도에 들어가 죄를 적에 혹 스스로 선물로 사용할 물건을 스스로 준비하거나, 또는 짐정 등이 구하는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매매하여 통용되는 물건이면 감히 번거롭게 청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스스로 환무(換貿)하였거니와, 호시(互市)

122) 엄집(嚴緝, 1635-1710): 영월 엄씨로 자는 경지(敬止), 호는 만회(晩悔)이다. 현종 14년(1673)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도승지, 공조판서, 예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에서 얻기 어려운 물건에 있어서는 억지로 떠들며 청하였던 것은 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었는데, 이제 이번 인삼은 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요구한 것에 비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도주가 예도에 진봉하는 물건이므로, 매년 100근 1,000근을 무역하여 50근을 가려 상납(上納)하였는데, 작년부터 시작하여 인삼 매매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는 바, 도주가 이 때문에 놀라서 예도에서 봉행을 내보내면서 오로지 무역을 요구하는데 뜻을 쓰게 한 것은 참으로 한가로운 간청에 비할 것이 아니거늘, 조정에서 이렇게 물리쳐 굽혀 부응해 주지 않는다면, 도주는 끝내 진봉을 빠뜨려 장차 필시 예도에 죄를 받게 될 것인데, 보살필 게 못된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이에 할 말이 없으나, 연례(年例) 송사(送使)에게 주는 해조(該曹)의 별폭(別幅) 가운데 지급하는 인삼과 그리고 정관(正官)들이 구청하는 인삼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오히려 채집을 금하였다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 유독 도주가 진봉을 위하여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은 아껴서 허락하지 않고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인가? 이렇게 하여서는 돌아가 도중에 보고하기가 어려우니, 첨지(僉知) 등은 모름지기 많은 말을 하지 말고 자세한 곡절을 동래 영감 전에 진술하여 실망하게 하지 않도록 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다고 운운" 하였음. 이제 채집을 금하는 때를 당하여 결코 무역을 허락할 리가 없는데, 도중에서는 비록 매우 간청하지만 너희들은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또 역관에게 명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동 왜인 등이 이미 예도에 진봉하는 것을 빠뜨려 도주가 죄를 얻는다고 간청하는 말을 하였고, 또 해조의 별폭 및 정관이 구청하는 인삼은 채집을 금한다고 해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유독 도주가 예도에 진봉하는 물건은 무역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로 한결같이 떠들썩하게 지껄여 마지아니하였는바, 해조의 별폭과 정관의 구청은 모두 전례대로 하고, 도주가 무역 요구가 역시 전례인데도 단지 이 한 가지 일은 끝내 허락해주지 않으면, 여러 왜인들이 이 때문에 말꼬리를 잡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마도 도중의 형편도 과연 절박한 것 같아서, 뒷날 억지로 떠드는 일이 장차 반드시 끝임 없을 것이니, 변방 정세로 보아, 사유를 갖추어 치계하지 않을 수 없거니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한 계목**.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도주가 구청하는 관삼 50근을 무역 허락하지 않는 일로 여러 왜인 등이 해조의 별폭 및 정관 구청의 인삼 등은 채집을 금한다고 해서 불허하지 않으면서 유독 도주가 예조에 진봉하는 물건은 구청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떠들어 마지아니하여 도중의 형편이 과연 절급한 것 같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데, 당초에 묘당에서 막은 것은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채집을 금하면서 다른 나라에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부당한 듯하고, 또한 50근의 관삼을 또한 수합하여 부응할 길이 없어서 어렵게 여긴 바 있었는데, 저쪽에서 고집하는 말이 이미 이러하고 또한 전례가 있어서 전연 부응하지 않으면 억지로 떠들며 굳이 청하여 장차 마지아니할 것이니, 수량을 줄여 무역을 허락하는 것도 혹 무방할 것 같은데, 일이 변통과 관계되니 신의 예조에서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다시 묘당(廟堂)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심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2월 22일 우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첩부한 계목**. 인삼 무역의 허락은 전후로 한 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니 지금 와서 막을 필요가 없는데 인삼 금령을 거듭 엄중하게 한 뒤로 일의 형편이 전과는 크게 달라서, 사리의 당부를 막론하고 실제로 부응할 길이 없으며, 해조의 예단(禮單) 인삼은 1년에 사용되는 수량을 합하여 헤아리더라도 30근에 지나지 아니하고, 또한 모두 낱날이 수합하여 그 수량에 충당하니 50근의 관삼을 일시에 무역 허락하는 것과 견주는 것은 불가할 뿐 아니라, 국내에 옛날에 저장한 인삼이 점차 끊어질 지경이라, 앞으로는 예단에 사용하는 것도 또한 계속할 길이 없는 형편이라 장차 변통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무역 요구한 인삼은 저쪽에서 비록 굳이 청하지만 결코 들어주기 어려우니,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막으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2월 26일 우부승지 신 엄집(嚴緝)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묘(1687) 3월 11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장계 내용. 이 달 3월 초3일 나온 왜선에게 사정

을 물었는데, 이른바 봉행 등이 보낸 사서에는 아직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기에, 역관 등의 수본이 오기를 기다려 추가로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는데, 초4일에 바친 역관 등의 수본 내용에 “어제 나온 왜선이 가져 온 도중의 봉행 등이 보낸 서찰의 사연을 다시 탐문하니, 관수왜 등이 서찰 가운데 ‘작년 12월에 우경(右京)이 이미 관례를 하고 혼례에 사용할 순색(純色)의 대사(大紗) 10필을 급하게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 하였는 바, 순색이라 한 것은 남색(藍色)이면 고르게 남색인 것으로, 홍색이나 녹색이거나 10필이 고루 같은 색이고 무늬 또한 같은 것이다’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대사(大紗)는 북경에서 나오는데 각색 섞인 무늬를 수합하더라도 쉽지 않은 형편인데 색깔과 무늬가 한가지인 사(紗)를 10필에 이르도록 많게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우선 막았다는 일로 수본 운운”하였다는 연유임.

정묘(1687) 5월 초5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이 5월 21일에 성첩한 장계.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2척이 나왔기에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김도남(金圖南)¹²³⁾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手本) 내용에 “제1척은 병인조 세건 제1선, 격왜 40명, 제2척은 동년도 동 송사(送使) 수목선(水木船), 격왜 15명 중에 도금도왜(都禁徒倭) 1인과 종왜(從倭) 2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도주(島主)¹²⁴⁾가 지난 달 16일에 대마도로 돌아왔다’고 하며, 관수 및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봉행 등의 사서를 내어 보이면서 말하기를, ‘인삼의 무역 요구는 작년 겨울 철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소식이 없는 바, 이 인삼 때문에 도주가 비록 예도에 죄를 얻더라도 조선에서 알 바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 사이에 입을 놀리지는 않겠지만, 화목을 돈독하게 하는 사이에 괘시해서는 부당할 듯하기로, 우선 이렇게 차사(差使) 편으로 여러 차례 부탁하였거니와, 이제 도주가

123) 김도남(金圖南, 1659-?): 우봉김씨로 자는 중우(仲羽)이다. 숙종 4년(1678) 증광시의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倭學)으로 중사하였다.

124) 원본의 島中은 島主의 오자로 보인다 .

대마도로 돌아온 지 여러 날이 되어 바야흐로 에도로 차사를 보내야 하는데, 만약 인삼이 없으면 진봉(進封)할 방법이 없겠기로, 도도금도(都都禁徒)의 임기가 차지 않았음에도 차사를 먼저 보내니, 동 인삼을 급하게 무역 허락하여 일이 뒤집혀져 기일을 지나치는 우려를 면하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하였으며, '에도의 집정이 구청하는 황죽(黃竹) 1마디가 3자에 차는 것을 2·3십 개, 잣 20섬, 호두 30섬, 홍당죽필(紅糖竹筆) 50자루, 반죽필(斑竹筆) 100자루, 한림풍월(翰林風月) 먹 3동, 녹용(鹿茸) 10냥, 쌍골(雙骨) 대적죽(大笛竹) 2개 등의 물건을 역시 급하게 무역 허락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으며, '다완(茶碗)을 구워 만드는 두왜(頭倭)가 불일간에 내보내니 땀감을 급하게 미리 베어 왜관 중에 들여놓아서 임시로 궁색한 염려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운운하여 왔는바, 구워 만드는 두왜가 거처할 임시 가옥은 온전하게 남아 있으나, 울타리는 사방으로 철거하였으니, 울타리 및 땀감을 우선 갖추어 들여달라'고 운운하기에, 비직(卑職) 등이 '인삼과 관계된 일은 조정에서 결코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전에 이미 언급하였으니 이제 거론할 수 없고, 이른바 한 마디가 3자인 대나무는 우리나라에는 있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물건이다' 하였더니, 동왜인 등이 '일찍이 의성(義成)이 있을 때 귀국에서 무역을 허락한 바 있었으므로 이제 또 간청하는데, 만약 일찍이 없었던 물건이라면 어찌 감히 이렇게 번거롭게 청하겠는가? 이른바 3자[尺]는 곧 귀국의 포백척(布帛尺)으로 1자 7치이다. 반드시 널리 구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대나무는 1자에 불과하니 비록 널리 구하려고 하여도 또한 어떻게 얻겠는가? 그 밖에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도 수량이 많아서 수량대로는 기약하기 어려운 형편이다'라고 하였다"고 수본 운운하였음. 인삼 무역을 요구한 일은 조정에서 들어줄 수 없고, 한 마디에 3자되는 대나무는 우리나라에 원래 산출되지 않는 것이니, 이런 사연으로 다시 사리에 근거하여 막으라는 뜻으로 역관들에게 분부하였거니와, 그 나머지 7종은 모두 일찍이 이전에 무역을 허락하였던 물건이니, 비록 수량에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또한 막을 수는 없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할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첨부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예도 집정 등이 구하는 잣 20섬, 호두 30섬, 홍당죽필 50자루, 반죽필 100자루, 한림풍월 먹 3동, 녹용 10냥, 쌍골 대적죽 2개 등의 물건을 무역 허락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운운 하였던 바, 이제 지금 요구는 이전부터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이제 막을 필요는 없으니, 무역을 요구한 7종 중에 잣과 호두는 그 수량이 과다하니 반으로 줄여서 무역을 허락하며, 그 나머지 5종은 요구하는 대로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수량에 맞추어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6월 초5일 우부승지 신 민진장(閔鎭長)¹²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정묘(1687) 6월 초7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이 지난 5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운운. 부산 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나오기에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별차 김도남(金圖南)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제1척은 정묘조 1특송사 1호선에 정관(正官) 등중뢰(藤重賴)와 도선주 등구차(藤久次), 봉진압물(封進押物) 1인, 시봉(侍奉) 1인, 반종(伴從) 4명,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동 송사 2호선인데 선주 등중승(藤重勝), 사복압물(私卜押物) 반종 3명, 격왜 30명 등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동년조 겸대 2특송, 3특송의 서계를 전례대로 부쳐서 가지고 왔거늘, 관수왜 및 대관왜 등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일대관왜(一代官倭)의 말이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인데 각색 미선(尾扇) 100자루, 점이 있는 적마노석[赤珊瑚石]¹²⁶⁾ 1근을 반드시 7월 이내로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달라’고 운운하거늘, 비직 등이 ‘적마노[赤珊瑚]는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서 사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또 말하기를 ‘이른바 적마노는 수마노[水珊瑚]¹²⁷⁾ 중에서 색깔이 붉은 것으로, 경상도 내의 곳곳에 있는데 귀국 소산이 아니라

125) 민진장(閔鎭長, 1649-1700): 여흥 민씨로 자는 치구(稚久)이다. 숙종 12년(1686)에 별시문과에 급제한 뒤 곧장 승정원승지가 되고, 여러 관직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126) 적마노석[赤珊瑚石]: 붉은 빛의 광택이 있는 마노석(瑪瑙石).

127) 수마노[水珊瑚]: 흰 빛의 광택이 있는 마노석(瑪瑙石)

고 하는 것은 무슨 도리냐? 무릇 무역 요구에 관계되는 것은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는 것이 교제의 한 도리인데, 매양 거절을 일삼으니 가만히 취하지 못할 바가 있다'고 하였음. 가져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바친다고 운운"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른바 적마노는 원래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니 다시 이치에 근거하여 막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거니와, 미선은 곧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 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첩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각색 미선 100자루를 무역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였는 바, 미선의 무역 허락은 이미 전례가 있으니 각색 미선 100자루를 수량 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되 전라도에서 준비하여 지급하도록 명한다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6월 초7일 우승지신 민진장(閔鎭長)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묘(1687) 7월 초2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이 지난 6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에 운운.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나온다고 운운. 22일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왜선 3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고 훈도 안신휘(安愼徽)와 가별차(假別差) 박세량(朴世亮)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제1척은 정묘조 평의진(平義眞) 송사 정관 평행신(平幸信), 봉진압물 1인, 반중 5명, 격왜 40명이고, 제2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 정관 굴원중(橘元重),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등이 각기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가져온 서계 등은 다례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음. 제3척은 정묘조 1특송사 수목선인데 격왜 20명 중 사기(沙器)를 구워 만드는 두왜(頭倭) 2인과 공장왜(工匠倭) 2명 등이 함께 타고,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을 가지고 왔으며, 교대하기 위한 도금도

왜(都禁徒倭) 10인과 종왜(從倭) 10명 등이 또한 함께 타고 나왔음. 번조(燔造) 두왜 및 관수왜의 말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올 때 에도의 여러 짐정과 봉행 등이 구하는 다완(茶碗)과 기명(器皿) 등의 물건이 이전보다 배로 많기로, 부득이 기일에 앞서 내어 보내거니와, 이전에도 들여 준 흙이 받은 모래 돌과 섞여 구워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과 같이 하지 말고 비록 수량에 차지 않더라도 반드시 정한 흙을 들여주며, 송토목(松土木)도 전례대로 30점[法]을 때맞추어 들여주고, 임시 가옥을 수리할 재목 및 울타리도 아울러 속히 들여 주며, 양산의 사기장(沙器匠) 1명과 기장의 사기장 1명을 우선 수일 내로 왜관(倭館)으로 들여보내어 상의하여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의 백토(白土) 45섬, 진주의 백토 45섬, 곤양의 백토 45섬, 하동의 백토 45섬, 김해의 적감토(赤紺土) 90섬, 울산의 약토(藥土) 90섬도 전례대로 마련 분정하여, 지연되어 급박한 폐단이 없게 해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하였으며, 대관왜 등의 말이 '극상품의 자필(咨筆) 50자루, 한림풍월(翰林風月) 먹 30홀(笏)이 또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이전에 무역 요구한 이외에 별도로 무역을 허락하여 속히 들여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음. 평의진 송사가 가져온 서계는 전례대로 다례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 하였으며, 사기를 구워만드는 두왜가 가져온 서계 1통 등을 우선 받아 올리는 일로 수분한다"고 운운 하여 치통한다 하였음. 평의진 송사왜가 가져온 서계는 전례대로 다례를 행하고 추가로 받아 올릴 계획이며, 사기를 구워 만드는 두왜가 가져온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 등은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냄. 운운. 사기를 구워 만드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어서 비록 막을 수 없지만 각색 흙이 많아서 360섬이나 되거늘 전의 등록(謄錄)을 살펴보았더니, 을축년(1685)에 사기를 구워 만들 때 백토와 약토 아울러 섬[石]마다 15말에 맞추어 함께 190섬으로 정하여 들여주었는데, 이제 이번 소청을 만약 을축년(1685)의 사례대로 15말을 1섬으로 하면 그 수량이 참으로 과다하기로, 섬[石]마다 말 수가 얼마인지 역관들에게 다시 탐문하였더니, 역관 등이 바친 수분 내용 요약. "전령에 의거하여 구워 만드는 두왜에게 탐문하였더니, '요구하는 각색 흙 360섬이라고 한 것은 때 섬마다 5말을 1섬으로 한 것이고, 을축년(1685)에 들여준 각색 흙은 그 수량이 비록 많으나

모래와 돌이 섞여서 태반을 쓰지 못했기로, 이번에는 줄여서 마련하였으니, 반드시 정한 흙을 수량대로 지급하여 오가며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였다는 일로 수분한다"하였음. 5말이 1섬이라면 15말을 1섬으로 계산하면 120섬이 되어야 마땅한바, 을축년(1685)에 들여준 수량보다 감소된 것이 70섬이거니와, 각색 흙 및 장인 2명을 전례대로 지정하여 주며, 무역 요구한 자필과 한림풍월 먹을 아울러 무역 허락할지,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첩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면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 및 사기를 구워 만드는 두왜가 나왔으며, 극상품의 자필 50자루와 한림풍월 먹 30홀 등의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 달라 운운하였다고 하는데, 차왜 등은 전례대로 접대하고, 각색 흙 및 사기장은 전례대로 지정하여 구워 만들도록 허락하며, 무역을 요구한 필묵 역시 전례가 있으니 원하는 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7월 초2일 우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 대마주 태수 습유(拾遺) 평의진(平義眞) 계서(啓書).

조선국 동래 부산 양 영공 합하. 이번에 도공(陶工) 수 명을 차출하여 보내어 도기를 만들려고 하오니 바라건대 전례에 따라 귀국의 도장(陶匠)과 흙과 장작 및 임시 가옥과 여러 도구 등 사용되는 물건을 화관(和館)으로 보내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사오니, 간절히 바라옵건대 살펴주시기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서계를 올립니다.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첩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전번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로 나온 왜인이 가져온 동래 부산 두 곳으로 보내는 서계의 회답 초고를 전례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내려 보내라고 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7월 초2일 우승지 신 신(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정묘(1687) 7월 21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장계 내용. 이번 달 초8일에 나오다가 우도(右道)로 표류한 왜선 2척은 관소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 사정을 물어 장계로 알리겠다는 연유는 어제 이미 치보하였거니와, 당일 사시(巳時)¹²⁸에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운운. 훈도 안신휘의 수본(手本) 내용에 “이제 이번에 표류한 왜선 2척이 관소에 돌아와 정박하였기에 즉시 관수 왜에게 가서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지난 달 13일에 왜관에서 들여보낸 비선(飛船) 1척이 간 곳이 없다고 운운하여 왔는데, 혹 귀국의 지방에 정박한 곳이 있으면 속히 물어 언급해 달라’고 운운 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이제 도중에서 보낸 사서를 보니, 인삼의 무역 요구가 만부득이 하여 나왔는데 누차 간청하여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바, 반드시 도주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하고야 말 것인가? 혹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여 말씀이 진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나라의 군주에게 바치는 물건인데 무단히 진봉을 빠뜨리면서 능히 그 직책을 보전하는 자는 드문데, 도중 사람들이 보전하고 보전하지 않고는 오직 인삼을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으니, 조정에서 이미 이쪽에 대하여 염려해 주는 데는 경중이 없는 것이냐? 많은 말을 할 것 없이 오직 회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운운하여 왔으니, 간곡하게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자세히 장계로 알려서 섬 사람들의 지극한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었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음. 동 왜선 1척은 정묘조 2특송사 수목선으로 격왜 20명과 교대하기 위해 나온 소금도왜(小禁徒倭) 5명이 함께 타고 나왔는데, 가져온 노인에는 ‘각도(各道) 각관(各官) 방어소(防禦所)’라 써 넣었는 바 전례와 어긋남이 있기로, 동 노인은 말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하였음. 다음의 작은 배 1척은 동 선박에 실었던 협소선(挾小船)인데, 혹 풍파를 만나면 내려서 나누어 타고서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기로, 당일 표류할 때 소금도왜 2명과 격왜 3명 등이 나누어 타고서 앞서 인도 하였으나, 이미 원래 도중에서부터 격왜를 갖추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

128) 사시(巳時):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의 시간.

음. 동 왜선이 우도로 표류할 때 통영(統營) 왜학(倭學) 및 가별차(假別差) 박세량(朴世亮)이 사정을 물은 내용에 모두 1특송사 수목선이라 써 넣었는데, 1특 2특 사이에 1과 2의 음성이 비슷하여 착오가 생기게 되었던 것인지, 실은 2특송사 수목선이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한다.”고 운운하였음. 이른바 지난달 13일 들어갔다가 간 곳이 없다고 하는 비선 1척이 만약 우리나라 경내로 표류하여 정박하였다면, 좌우도 연해의 각 고을 포구에서 찾아 탐지하라는 뜻으로 각 감영에 따져서 첩보하고 연유를 운운 하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이제 이 수목선은 실로 2특송 수목선이거늘 가별차 박세량은 1특송 수목선이라고 잘못 수본을 올렸는 바 그 잘못 살핀 정상이 극히 해괴하니, 동가별차 박세량에게는 경책(警責)하여 후일을 징계해야 마땅하겠기에 연유를 운운 하는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항의 장계를 보니 왜인 등이 인삼의 무역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일로 노하는 뜻을 많이 보이며 다시 자세하게 장계하여 알려주기를 간청하여 마지않았다고 하며, 가별차 박세량이 2특송수목선을 잘못 수본 올린 데는 경책(警責)을 가하여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바, 인삼은 묘당에서 이미 막았기에 역관들로 하여금 다시 더 엄한 말로 준엄하게 배척하게 하며, 박세량도 막중한 변방의 정세를 재차 잘못 보고한 것은 매우 극히 놀라우니 본도에 명하여 중하게 곤장을 쳐서 후일을 징계하도록 하라고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6년(1687) 7월 22일 동부승지 신 유(兪)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정묘(1687) 10월 초3일

동래부사 이항(李沆)이 지난 9월 26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이 달 23일 미시(未時)¹²⁹ 쯤에 황령산(荒嶺山) 봉군(烽軍) 조계복(曹戒福)과 간비오(干飛烏) 봉군 김일봉(金日奉) 등이 진고(進告)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3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음.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3척이 나왔기에 혼도 안

129) 미시(未時):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의 시간.

신희(安愼徽)와 별차 김도남(金圖南)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 내용에 “제1척은 신임 관수왜가 타고 오는 배인데, 관수 굴설승(橘雪勝), 종왜 8명, 격왜 40명 등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거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관수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간절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호두 20섬, 잣 5섬, 대구어 1,500마리를 모두 올 해에 새로 산출된 것으로 오는 11월 내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여 왔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진달하여[이하 결손됨]

왜인구청등록 제6책

무진(1688) 정월 16일

경상감사 이세화(李世華)가 올해 정월 11일에 성첩한 장계 내용.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이항(李沆)의 첩정(牒呈) 내용 요약. 이번 달 초7일 신시(申時)¹³⁰ 즈음에 황령산 봉군 이창군(李昌軍)과 간비오 봉군 김득성(金得成)이 고한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고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 내용에 운운. 왜선 2척을 관소에 영솔하여 부쳤다고 하기에 혼도 안신회와 별차 김도남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手本) 내용에 “제1척은 정묘조 겸대세견(兼帶歲遣) 제5선으로 격왜 30명, 제2척은 동년조 겸대세견 제6선으로 격왜 30명 가운데 왜관을 수리하는 일꾼 왜인 3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중의 봉행 등이 보내온 사서에 말하기를, 도주가 3월 사이에 에도로 들어가는데 여러 집정에게 사용할 물종이 파다하기 때문에 일찍이 이미 무역 요구하였거니와, 극상품 황모필(黃毛筆) 15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50자루, 한림풍월(翰林風月) 떡 5동, 녹두가루[菘末] 500근, 도화지(桃花紙) 3권, 황국지(黃菊紙) 3권, 청화지(靑花紙) 3권, 상화지(霜花紙) 3권 등 및 대단(大段)과 대사(大紗) 각 20필, 담비가죽과 양가죽[羊皮] 각 50령, 생모시베(生苧布)와 흰모시베[白苧布] 각 30필도 반드시 기일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거늘, 소인 등은 무역을 요구하는 잡물의 수량이 많을 뿐 아니라 대단과 대사, 담비가죽과 양가죽 등의 물건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고 또한 시장에 항상 있는 물건도 아니며, 저포는 이제 이미 철이 지나서 3월 이전에 사들이기에는 그 형편이 쉽지 않아서, 대단 이하 잡물은 모두 막았으며, 노인 2통을 받아 올린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 2통을 받아 해조로 감봉하여 올려보내거니와, 이제 이번 무역 요구한 물종 중에 대단과

130) 신시(申時):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

대사, 담비가죽과 양가죽, 저포 등의 물건은 역관 등이 이미 타일러 막았는데, 그 나머지 필묵과 녹두가루, 각색 종이 등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라고 운운한 일로 첩정한다 하였음. 무역 요구한 잡물 가운데 대단, 대사, 담비가죽, 양가죽, 저포 등의 물건은 비록 막았으나 그 밖의 지필묵과 녹두가루 역시 폐단이 있어서 참으로 조처하기 어려운 일임과 동래부사 이항이 올린 동 장계를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무역 요구한 각종 물건은 본부에서 이미 막았거니와, 예도에서 사용할 극상품의 황모필 150자루, 홍당죽필 50자루, 한림풍월 5동, 녹두가루 500근, 도화지 3권, 황국지 3권, 청화지 3권, 상화지 3권 등의 물건을 무역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여 마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잡물은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일 뿐 아니라,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막기 어려우니, 수량 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7년(1688) 정월 16일 우승지신 이사영(李思永)¹³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무진(1688) 2월 11일

동래부사 이덕성(李德成)¹³²⁾이 2월 초4일에 성첩한 장계. 신은 지난 달 25일에 전 부사 신 이항(李沆)과 교대하였는데, 이 달 초2일 유시(酉時)¹³³⁾ 가량에 황령산 봉군 박용립(朴龍立)과 간비오 봉군 허두선(許斗先) 등의 진고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에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석성(石城) 봉군의 진고에 근거하여 초탐장

131) 이사영(李思永, 1634-?): 자는 신보(愼甫), 본관은 전주이다. 숙종 을묘(1675) 증광시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참판에 이르렀다.

132) 이덕성(李德成, 1655-1704): 자는 득보(得甫), 호는 반곡(盤谷), 본관은 전주이다. 숙종 8년(1682)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무진(1688) 정월에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기사(1689) 4월에 병으로 교체되었고, 형조참의를 충청감사에 이르렀다.

133) 유시(酉時):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의 시간.

(哨探將)으로 개운포(開雲浦) 만호 홍구주(洪九疇)를 보냈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초3일 사시(巳時)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 내용. 어제 나온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홍구주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안신휘와 별차 김도남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인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봉행 등이 보낸 사서 가운데, 이번에 도주가 에도로 들어가서 확정할 일이 있기로 장차 3월 초에 배가 출발할 계획인데, 전후로 무역 요구한 잡물을 이번 달 보름 전에 들여보내야 기일에 맞추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누누이 말하여 왔으니, 동 무역 요구한 물종을 반드시 초열흘 이전에 들여 주어야만 도중의 기일에 맞출 수 있겠으며, 이 무역 요구한 물건 때문에 비선을 보내온 것이니, 이 사연을 동래 영감 전에 꼭진하게 전하여 기일에 못 맞추어 궁색한 폐단이 없게 하여 달라’고 운운 하였음. 노인 1통을 받아 올림”이라 수본하였기로, 동 노인 1통을 받아서 보내며, 연유를 치통한다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동 노인 1통을 해조로 감봉하여 올려 보냄. 왜인이 무역 요구한 잡물은 분정하여 이제 바쳐 오는 대로 즉시 들여줄 계획이며, 연유를 아울러 치계하는 일임.

무진 7월 15일

경상감사 이세화(李世華)가 이 달 11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이덕성(李德成)의 첩정(牒呈) 요약. 이 달 초5일 미시(未時) 가량에 황령산 봉군 박창군(朴昌軍)과 간비오 봉군 김득성(金得成)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좌도(左道)로 표류하여 간다고 진고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로 나오다가 바람이 순조롭지 않아서 좌도로 표류해간다고 하였는데 방금 접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김시량(金時樑) 등이 사정을 물은 수본에는 “제1척은 구 재판(裁判) 평성진(平成辰)이 타고 나온 배로, 격왜

40명 중 도금도왜(都禁徒倭) 등이 빌어 타고, 정묘(1687) 8월 초5일 월전주(越前州)의 표류한 왜선을 영솔하여 가기 위하여 동 격왜 등이 노인을 가지고 되돌아왔으며, 제2척은 전일에 죽은 관수(館守) 굴설승(楡雪勝)이 타고 왔던 배인데 격왜 40명 등이 정묘년(1687) 12월 26일 공작미(公作米)를 실어갔다가 동 격왜 등이 관수의 종왜(從倭) 등을 실어가기 위해 노인을 가지고 되돌아 나왔으며, 제3척은 무진조 겸대 3특송 2호선으로 격왜 30명, 제4척은 동 특송 수목선(水木船)으로 격왜 20명 등이 공작미를 실어가기 위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 수목선의 노인은 서면(書面)에 '각도(各道) 각관(各官) 방어소(防禦所) 침족하(僉足下) 운운'하였는 바, 규례에 어긋나기로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말로 책망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다른 배의 노인 3통만 받아 보내거니와,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비직(卑職) 등을 만나볼 것을 요구하거늘, 그대로 가서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방금 봉행(奉行) 등이 보내온 사서(私書)를 보니 도중(島中)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새 관수(館守)가 막 확정되어 이 달 안으로 나올 듯하다'고 하면서 봉행 등이 보낸 별록(別錄)을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 있으면서 집정 등이 구하는 녹두가루[菘末] 600근, 마른 대구어(大口魚) 1300마리, 호두 30섬, 잣 10섬, 방백자(房栢子) 100개, 대절진묵(大節眞墨) 100홀, 황모시필(黃毛試筆) 50자루, 자필(咨筆) 50자루, 각색 미선(尾扇) 30자루, 각색 궁초(宮綃) 50필, 대사(大紗) 15필, 대단(大段) 30필 등의 물건을 급속히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 하였는데, 모름지기 이 뜻을 자세히 갖추어 고하여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보내도록 해 달라'고 운운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한 물종 가운데 궁초, 대단, 대사 등의 물건은 원래 우리나라 소산(所産)이 아니고, 녹두가루와 호두와 잣과 대구어 등의 물건 또한 제 철이 아니어서 결코 이를 고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여 막았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이전부터 무역 요구가 한두번에 그치지 않았으나 비록 제 철이 아니더라도 품질된 적이 없었기로 무역을 허락한 일이 매양 있었을 뿐 아니라,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수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니,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이전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잘 고하여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여 마지 않기로, 연유를 수본한다"고 운

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하였음. 동 노인 3통을 받아올려 올려보냄. 이제 이번
에 무역 요구한 물종 중에서 각색 궁초 및 대단, 대사 등의 물건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어서 이전부터 막아서 무역을 허락하지 않았기로 이제 또한 이전
대로 막으라는 뜻으로 훈도 등에게 분부하였으며, 그 나머지 물종 가운데 녹
두가루는 막 이미 무역 허락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제철이 아니며, 그 밖에
생선과 과일 등의 물건은 지금 현재 모두 제철 물건이 아니기로 수량대로 무
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으로 우선 훈도 등에게 명하여 다시 이
야기하게 하였는데, 다만 녹두가루와 대구어는 비록 제 철이 아니라고 하지
만 본디 드물거나 특이한 물건이 아니고, 호두나 잣과 같은 것은 성숙된 지
오래지 않을 뿐만 아니니, 이런 물종은 모두 전례에 따라 무역을 허락하는 물
품이며, 또한 이는 값을 쳐서 서로 교환하는 일인지라 그 난처하고 용이한 사
정에 따라 참작하여 허락하여 부응하는 것이 무방할 듯한데, 해조에 명하여
재량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장계 등본과 노인, 전해온 원 장계를 아울러 곧
바로 관찰사에게 올려보냄. 현재 왜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이 740명이라고 칙
정하였다는 장계 및 이번 달 초8일에 성첩한 동래부사 이덕성의 장계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녹두가루 600근, 마른 대구어 1,300마리, 호두 30
섬, 잣 10섬, 방백자 100개, 대절진묵 100홀, 황모시필 50자루, 자필 50자
루, 각색 미선 30자루를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여 마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초사(縞紗)와 대단은 이미 막았고, 이 밖에 여러 물종은 수
량이 간혹 너무 많거나 철이 혹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품이고, 또 값을 쳐서 교역하는 일에 관계되어 이제 막기 어려우니, 수량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해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7년(1688) 7월 17일 우승지 신 임홍망(任弘望)¹³⁴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허함.

134) 임홍망(任弘望, 1635-1715): 자는 덕장(德章), 호는 죽실(竹室), 본관은 풍천이다. 현종 7년
(166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황해도 관찰사, 형조참의, 도승지 등을 역임
하였다.

무진(1688) 11월 초8일

경상감사 이세화(李世華)가 이 달 초3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이덕성(李德成)의 첩정 내용 요약. 이 달 27일 술시(戌時)에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金重三)의 치통에, 방금 석성(石城) 봉군 이식(李植)이 진고(進告)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온다는 진고에 의거하여 초탐장 개운포 만호 홍구주(洪九疇)를 정하여 보냈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28일 신시(申時)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어제 나온 왜인의 작은 배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홍구주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김시량(金時樑)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飛船) 2척에는 격왜 각 20명과 금도왜 각 1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기로, 사정을 묻지 못하였다가 오늘 아침에야 도중의 사정과 나와서 볼 일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은화(銀貨)를 실어왔다’고 하였음.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비직(卑職)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이제 봉행 등이 보내 온 사서를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집정 등의 청으로 인하여 반죽필(斑竹筆) 15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100자루, 화룡필(畫龍筆) 150자루, 용편필(龍鞭筆) 150자루, 극상품의 양가죽[羊皮] 100령, 극상품의 홍모전(紅毛氈) 30립, 대절진묵(大節眞墨) 150홀 등의 물건을 귀국에 무역 요구하여 급속히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그 중에 반죽필은 반죽의 무늬가 뱀의 몸처럼 얼룩덜룩하며, 화룡필은 절반은 용을 그리고 절반은 구름을 그리며, 진묵도 길이와 너비가 매우 크게 각별히 정밀하게 만들되, 위 일곱 가지 물종은 모두 긴요한 요구에 응하는 물건이니 수량을 줄이지 말고 모두 다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누누이 간청하여 왔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간곡하게 동래 영감 전에 고하며, 또한 사기를 구워 만드는 백토(白土)는 전에 비록 예도에 이미 들여주었으나, 또 요구하는 것이 내도하였기에 수량을 더하여 추가로 만들지 않을 수 없으니, 경주의 백토 30섬, 김해의 백토 30섬, 곤양의 백토 30섬을 전일에 들여준 흙 품질대로 들여주며, 동 사기를 구워만들 때 사용되는 송토목(松土木) 또한 마련하여 기일에 맞추어 들여 달라는 일로 잘 고하여 주면 천만 다

행이겠다'고 운운하였음. 노인 2통을 받아서 올려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노인 2통은 받아서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이제 이번에 무역 요청한 것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하였던 물건이고, 백토에 있어서는 주의하여 찾아주었는데,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거니와, 오직 해조에서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기에 달려 있다고 운운한 일로 첩정한다 하였다는 연유를 등본으로 써서 치계하는 일 및 동래부사 이덕성이 10월 29일에 성첩한 장계에 위와 같은 연유라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대마도 도주가 예도의 집정 등이 요구하는 일로 인하여 반죽필 150자루, 홍당죽필 100자루, 화룡필 150자루, 용편필 150자루, 극상품의 양가죽 100령, 극상품의 홍모전 30립, 대절진묵 150홀의 무역을 요구하였으며, 사기를 구워만들기 위한 백토도 전에 이미 들여 주었는데, 예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내도하였기에 수량을 더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경주 등의 세 고을에서 백토 각 30섬, 송토목을 아울러 마련하여 들여 달라고 간청하였다고 하는 바, 무역 요구한 물종 가운데 필묵과 양가죽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아울러 수량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되, 홍전은 일찍이 전례가 없어서 처음을 길을 열기 어려움이 있으며, 백토도 겨우 이미 찾아주었거늘 이렇게 계속하여 청하는 것을 연속하여 허락하여 부응하는 것은 불가하니 막으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7년(1688) 11월 초9일 우승지 신 민(閔)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기사(1689) 3월 초5일

경상감사 이세화가 지난 2월 28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이덕성의 첩정에, 이 달 24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종삼의 치통에 운운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4척이 나오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장 서상검(徐尙儉)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시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제1척은 기사조 세

견 제1선으로 정관 굴원규(橘元規)와 도선주 등중칙(藤重則), 봉진압물 1인, 반종 3명, 격왜 40명, 제2척은 동 송사의 수목선으로 격왜 15명, 제3척은 동년조 세견 제2선으로 정관 굴정지(橘貞之), 반종 1명, 격왜 40명, 제4척은 동년조 세견제3선으로 정관 등광중(藤廣仲), 반종 1인, 격왜 40명 및 교대하기 위해 나온 서승왜(書僧倭) 1인, 중왜 3명 등이 함께 타고, 각기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가져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치겠다’고 운운하였으며, 관수 및 일대관왜 등의 말이, ‘방금 봉행 등이 보내 온 사서(私書)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사기(沙器)가 자못 많아서, 연례(年例)로 구워 만드는 사기로는 부족하여 요구에 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참으로 염려되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동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백토(白土)를 기어코 무역 요구하여 속히 구워 만들어 보내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바, 에도에서의 용도가 이렇게 긴급하여 극히 절박하니 이러한 사연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백토 30섬과 땀감을 아울러 전례대로 마련하여 무역을 허락하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잣 12섬을 또한 무역 요구하여 들여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근래에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결코 고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는 도중에서 사사로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모두 에도에서 청하는 것이므로 봉행 등이 이렇게 까지 간청하였으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말을 만들어 고하여 기어코 무역을 허락하도록 해 달라고 중언부언하기로, 연유를 아울러 수분한다’고 하였음. 동 송사왜 등이 가지고 온 서계는 추가로 다례를 베풀 때 받아서 올려 보낼 계획이거니와,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두 가지 종류는 모두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으로 유의하고 있음에도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로되, 이미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이라 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실 일 및 동래부사 이덕성의 장계 내용 위와 같다고 운운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잣 12섬 및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백토 30섬과 땀감을 아울러 전례대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 달라고 누누이 간청하였다

고 하였는 바, 이제 이 두 가지 물건의 무역 요구는 이미 전례가 있으니, 이제 막을 필요가 없으니, 바라는 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8년(1689) 3월 초5일 우승지 신 신후재(申厚載)¹³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사(1689) 6월 25일

동래부사 박신(朴紳)¹³⁶과 경상감사 이현석(李玄錫)¹³⁷이 이 달 11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초9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進告)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김중삼의 치통 내용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2척이 나왔다는 초탐장 홍구주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홍과 별차 박세량(朴世亮)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어제 나온 왜선 2척이 밤이 깊은 뒤에 관소에 와서 정박하였기로, 오늘에야 사정을 물었더니, 제1척은 도주가 대마도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차왜의 배로서, 그 가운데 정관 평성원(平成元), 봉진압물 1인, 반종 5명, 격왜 40명 등이 전례대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으며, 제2척 비선(飛船)에는 교대하기 위해 나온 도도금도왜(都都禁徒倭) 1인, 도금도왜(都禁徒倭) 12인, 종왜 15은, 격군 11명 등이 함께 타고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정관왜(正官倭)가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인삼 무역을 허락하는 일로 예조 및 동래와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書契)를 부쳐 가지고 왔거니와, 가져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바치겠다’고 운운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만나보고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이번에 돌아온 것을 알리는 차왜가 나오면서 인삼 무역을 허락하

135) 신후재(申厚載, 1636-1699): 자는 덕부(德夫), 호는 규정(葵亭), 본관은 평산이다. 현종 1년(1660)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강원도 관찰사, 도승지, 한성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136) 박신(朴紳, 1638-?): 자는 화경(華卿), 본관은 밀양이다. 현종 7년(166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기사(1689) 4월에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경오(1690) 7월에 교체되고, 충청감사를 역임하였다.

137) 이현석(李玄錫, 1647-1703): 자는 하서(夏瑞), 호는 유재(游齋), 본관은 전주이다. 숙종 1년(1675) 문과에 급제하여 1689년에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며, 한성부판윤, 형조판서에 이르렀다.

는 일로 서계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비직(卑職) 등이 답하기를 '인삼 무역을 허락하는 일은 조정에서 일찍이 단연코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엄중하게 신칙하였으니, 굳이 동래 영감 전에 고하기는 하겠지만, 어찌 서계를 바친다는 뜻을 조정에 고할 수 있겠는가'하고 이치에 근거하여 준엄하게 물리쳤더니, 동 왜인이 답하기를 '이웃나라와 사귀는 사이에 단지 서계로만 사정을 통하는데, 동지(同知) 등이 중간에서 막는 것은 사리가 부당하니, 많은 말을 할 것 없이 곧장 동래 영감 전에 고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음. 위의 차왜가 가지고 온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가운데 평안(平安) 두 글자를 줄의 맨 위에 써야 하는데 줄 가운데 써 넣었거늘, 비직 등이 그것이 격식에 어긋났으니 고쳐 써 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을 준절하게 책망하여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서승왜(書僧倭)를 불러와 그 곡절을 물은 다음에 말하기를 '이는 섬에 있는 장로왜(長老倭)가 망각한 실수에 불가하니, 즉시 돌려보내어 고쳐 오겠다'고 하기로, 동 서계를 우선 등본으로 하고, 노인 1통을 아울러 올려 보냄'이라고 수분하였기에, 동 서계 등본 및 노인 1통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고 하였음. 동 왜인이 가져온 서계 등본 1통 및 비선의 노인 1통 등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낸다고 운운. 동 인삼의 무역 요구는 등록(騰錄)을 살펴보니 한 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나, 전에는 모두 허락하다가 인삼을 금한 뒤로는 막아서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요구한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사꾼에게 전례대로 교역하기를 청하였는 바,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지는 삼가 묘당(廟堂)의 처분을 기다리겠으나, 인삼을 금한 뒤로는 결코 판매를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훈도 등에게 명하여 특별히 엄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쳐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없도록 하였거니와, 서계에 있어서는 비록 따라주기 어려운 일이고, 이전에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은 때가 있었으나, 대개 이웃나라와 사귀며 교통하는 사이에 일의 난처함은 따지지 않더라도 서계를 받지 않는 것은 아주 예의 본뜻이 아니기로, 모두 받아 올려 보내오며, 이번에도 차왜가 반드시 신에게 면전에서 말하겠다고 하였으나, 변방 신하가 사사로이 보는 예가 없고 훈도와 별차가 또한 명을 전달하는 소임인지라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여 전한다는 뜻으로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였으며, 인삼을 매매하겠다는 서계는 훈도와

별차 등이 전례대로 베껴 왔거늘 또한 해조에 전하는 서찰에 올려 보내오니, 묘당에 명하여 속히 지휘할 일.

이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박신 및 경상감사 이현석의 장계를 보니, 훈도 박재홍의 수본에 운운하였는데, 인삼의 무역을 요구하는 일은 인삼을 금한 이후로 막아서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요구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장사꾼과 전례대로 교역할 것을 청하였는데 허락할지 허락하지 않을지는 삼가 묘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하였으며, 인삼을 매매하겠다는 서계 또한 전하는 서찰에 해조로 올려보내겠으니 아울러 묘당에 명하여 속히 지휘하여주시라고 하였는 바, 인삼을 교역하는 일은 조정에서 서북도(西北道)에 채집을 금한 이후로 이미 그 무역 요구를 막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곧바로 교역을 청한 것은 무역을 요구하는 일에 비하여 극히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안(韓國安) 등이 왜관 왜인과 인삼을 몰래 매매하다가 적발된 이후로 한국안 등을 이미 법대로 목을 베어서 매달아 보였는데, 왜인은 도주(島主)의 분부로 매매하였다고 칭하면서 끝내 한결같이 처단하지 않았기로, 그것이 도주의 분부인지 진위를 탐지하기 위해 바다 건너 역관을 들여보내면서, 동래부사에게 명하여 별도로 서계를 만들어 탐문하게 한 사실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이제 장차 역관을 들여 보내려면 인삼 상품을 매매하는 일은 더욱 발설하게 하여서는 불가하니, 엄한 말로 준엄하게 물리치고 다시 번거롭게 청하지 말라는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8년(1689) 6월 13일 좌부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기사(1689) 10월 20일

경상감사 이현석(李玄錫)과 **동래부사 박신(朴紳)**의 장계에 근거하여 **비변사(備邊司)**에서 회계한 내용. 이 경상감사 이현석과 동래부사 박신의 장계를 보니, 관수왜가 인삼 무역의 허락에 대한 일로 발송한 서계 가운데, '변방 백성이 국경을 범하여 일을 만들어낸다는 등의 말은 마치 귀국의 변방 백성과 일본의 변방 백성이 서로 경계를 침범하여 일을 만들어내는 듯하여, 한 조

목은 고쳐 들여보내지 않으면 안되겠으며, 서계 가운데 연월(年月) 또한 당년(當年) 8월로 써 넣어주면 좋겠다'고 하였던 바, 변방 백성이 국경을 범한다는 등의 말은 문장 형세나 말의 기맥이 절로 귀착되는 곳이 있어서 원래 의심을 일으킬 사단이 아닌데 저쪽에서 이미 지나치게 의심을 하여 대마도에서 고쳐주기를 청하였고,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또한 이 한 조목을 억지로 고집할 필요가 없으니, 대략 깎아서 고치며, 귀국(貴國) 두 글자 및 처단(處斷) 한 조목은 박신이 장계로 올린 사연의 뜻이 과연 의견이 있으니, 아울러 고쳐 보냄이 또한 적합할 듯하니, 해당 승문원(承文院)에 명하여 곧장 고쳐 지어 내려 보내라는 뜻으로 해조(該曹)와 함께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8년(1689) 10월 20일 좌부승지 신 오시만(吳始萬)¹³⁸⁾ 차지로 입계하여 그 대로 윤택함.

기사(1689) 7월 22일

예조 단자(單子). 동래의 장계에 의하여 인삼 상품 유통을 금하는 일을 묘당에서 이미 확정하고, 대마도 도주에게 보내는 별폭(別幅) 회례(回禮) 및 동래 부산 두 곳의 별폭 회례 등의 물건을 참작하여 마련하였으니, 해조 및 본도에서 급히 마련하여 별도로 금군을 정하여 가지고 내려보내라는 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

별폭 회례 : 표범가죽[豹皮] 1장, 인삼 2근, 흰 명주[白綿紬] 5필, 흰모시베[白苧布] 5필, 검은 삼베[黑麻布] 5필, 흰 무명베[白木綿] 20필, 황모필(黃毛筆) 3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眞墨] 30홀, 4장을 붙인 유둔(油筴) 2부, 화석(花席) 5장.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함.

동래 부산 두 곳의 회례 : 각기 흰 명주 5필, 흰모시베 5필, 흰 무명베 5필, 황모필 20자루. 이상은 해조에서 마련함. 참먹 20홀, 4장을 붙인 유둔 1부, 화석 3자. 이상은 본도에서 지급. 강희 28년(1689) 7월 22일 입계하여, 입계한 대로 시행함.

138) 오시만(吳始萬, 1647-?): 자는 영석(永錫), 호는 춘헌(春軒), 본관은 동복(同福)이다.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승지와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경오(1690) 정월 초2일

경상감사 오시대(吳始大)¹³⁹가 지난 12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박신(朴紳)의 첩정에, 이 달 21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운운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등불을 달고 나오기에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훈도 박재홍과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어제 비선 1척이 나왔는데 밤이 깊어 사정을 묻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사정을 물었더니 비선에는 두왜 1인, 격왜 15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 및 바다를 건너간 역관의 안부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는데, 금년도의 미수(未收) 간품(看品)¹⁴⁰ 흑각(黑角)을 왜관에서 성화같이 재촉하였기로, 나가사키[長崎]에서 사 오도록 기다리다가 다음 달 20일 사이에 곧 배에 실어 바람을 기다렸는데 잇달아 바람이 나빠서 이제 비로소 나왔으며, 바다를 건너간 역관 일행은 또한 잘 있다’고 하였음. 대관왜 등이 비직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도중에서 보내온 사서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명년 2·3월에 도주가 에도로 가야하겠기로,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생모시베[生苧布] 20필, 흰모시베[白苧布] 20필, 시필(詩筆) 100자루, 자필(咨筆) 100자루, 잣 30섬, 담비가죽 100령, 양가죽[羊皮] 100령, 청서피(靑黍皮) 10장, 홍진(紅氈) 100립, 색대단(色大段) 30필, 색대사(色大紗) 20필, 대절진묵(大節眞墨) 300홀, 화룡필(畫龍筆) 100자루, 반죽필(斑竹筆) 100자루, 용편필(龍鞭筆) 5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50자루, 도화지(桃花紙) 10권, 황국지(黃菊紙) 10권, 청화지(靑花紙) 10권, 설화지(雪花紙) 5권 등의 물건을 품질이 좋은 것으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전례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정월 20일 사이에 기어코 들여 주어서 즉시 들여보내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무역 요구하는 청이 해마다 빈번한 것은 매우 부당할 뿐만아니라, 동 무역 요구한 물종 가운데 담비가

139) 오시대(吳始大, 1634-?): 자는 대이(大而), 본관은 동북이다. 숙종 2년(1676)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40) 간품(看品): 품질을 보여주기 위한 견본.

죽과 홍전, 잣 등의 물건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줄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여러 가지로 다투어 담비가죽 100령에서 50령을 줄이고, 홍전 100립에서 50립을 줄이고, 잣 30섬에서 10섬을 줄였으며, 색대단 및 색대사는 전례에 없다는 뜻으로 언급하여 막았음.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낸다.”고 운운한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 한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신이 도입한 이후로 왜인들이 일찍이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있으면 비록 그냥 주는 것은 아니라도 원근의 각 지방에서 마련하여 오가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으므로, 매양 역관 등에게 명하여 엄한 말로 준절하게 막도록 하였는데,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전례를 살펴보니 도주에 예도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물건이라 매양 무역을 허락하여 들어주었기로, 금변에도 필단 등의 물건은 역관 등에게 명하여 전례에 근거하여 막았거니와, 그 밖의 각종 물건은 전례가 이러하니 모두 막아 실망하게 하여서는 안되겠으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및 동래부사 박신의 장계에 운운한 같은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할 생모시베 20필, 흰모시베 20필, 시필 10자루, 자필 10자루, 잣 20섬, 담비가죽 50령, 양가죽 100령, 청서피 10장, 홍전 50립, 대절진묵 300홀, 화룡필 100자루, 반죽필 100자루, 용편필 50자루, 홍당죽필 50자루, 도화지 10권, 황화지 10권, 청화지 1권, 설화지 5권 등의 물건을 품질이 좋은 것으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 않았다고 하였는 바, 이전에 요청한 데도 일찍이 전례가 있을 뿐 아니라 원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 장계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9년(1690) 정월 초2일 좌부승지신 김성구(金聲久)¹⁴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141) 김성구(金聲久, 1641-1707). 자는 덕휴(德休), 호는 팔오헌(八吾軒), 본관은 의성이다. 현종 10년(1669)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성, 좌승지, 강원도 관찰사, 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경오(1690) 2월 초8일

경상감사 오시대가 2월 초2일에 올린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박신의 첩정에 운운하기를, 이 달 29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나오기에 훈도 박재홍과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 1척에는 격왜 6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중에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대관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일대관왜에게 가서 그 사서 중의 사연을 물었더니, 대관왜의 말이 ‘전일에 무역을 요구하였던 에도에서 사용할 잡물을 도중에서 대단히 재촉하는데 다음 달 보름 앞에 맞추어 들여달라는 뜻을 동래영감 전에 고해 달라’고 하였음. 노인을 받아 올리며 운운”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기에,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위의 무역을 요구한 각종 잡물을 해조에 명하여 재촉하여 내려보내시라는 장계 등본과 노인을 전해온 서찰과 원 장계를 아울러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린다고 운운 하였다는 연유를 장계한 일 및 동래부사 박신이 지난 정월 30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한 위와 동일한 사연.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전일에 무역 요구한 에도에서 사용할 잡물을 해조에서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 바, 동 무역 요구한 물건 등은 지난 정월 24일에 붕과하여 금군(禁軍) 최정주(崔正胄)에게 맞춰 주어 내려 보냈기에, 아마도 이미 저쪽에 도착하였을 것이니, 이런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29년(1690) 2월 초8일 동부승지 신 김방걸(金邦杰)¹⁴²⁾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운허함.

142) 김방걸(金邦杰, 1623-1695): 자는 사흥(士興), 호는 지촌(芝村), 본관은 의성이다. 현종 1년(1660)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대사간과 대사성을 역임하였다.

경오(1690) 5월 26일

경상감사 오시대가 5월 20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박신의 첩정에 운운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한 척이 물마루에 나오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재홍과 별차 박세량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물어보게 하였더니, 수본에 “당년조(當年條) 1특송사 수목선에 격왜 2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비직 등을 보기를 요청하여 말하기를 ‘일전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왜인이 가져왔던 동래 부산으로 봉행 등이 바친 서계에 잘못 쓴 곳이 있었기로, 그 때 도중에 들여보냈는데, 이제 이번 배 편에 고쳐 써서 내어 보냈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거늘, 이제 또 다시 청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지난해부터 구워 만든 사기는 모두 에도에서 구하는 것으로 흙 색깔이 좋지 않고 그릇이 매우 이지러졌기로, 도주가 절박하게 걱정하여 당초에 구워 만들던 왜인을 불러들이고 다른 왜인으로 바꾸었는데, 실은 만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봉행왜(奉行倭) 등이 어찌 감히 동래 영감 전에 서찰을 바치겠는가? 하물며 도주가 에도에 가 있으니, 에도에서 요청하는 것을 또한 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동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하여 곤양의 백토(白土) 22섬, 하동의 백토 13섬, 진주의 백토 22섬, 김해의 옹기흙〔甕土〕 15섬, 감색 흙〔柿色土〕 62섬, 경주의 백토 44섬, 울산의 약백토(藥白土) 55섬을 들여주되, 10말을 15섬으로 하여 속히 수송해달라’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으며, 동 사기를 구워만들 때 사용되는 빨감 역시 마련하여 들여달라고 하였음. 또한 대관왜 등의 말이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것이라고 고리눈얼룩말(月羅環眼馬) 1필, 순색의 고리눈 말(環眼馬) 1필을 반드시 나이가 너댓 살 되는 준마로 하여 전례대로 무역 요구하여 속히 들여보내라고 하였는데, 다음달 20일 사이에 맞추어 기어코 들여 주어 에도로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증언부언하였음. 동 서계를 받아 올려 보내거니와, 위의 노인은 물에 젖어 정하지 못하므로 고쳐 써

서 바치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했다고 운운” 하였음. 동 서계를 받아 열어 보니 고쳐 써서 바친 것이 아니라 전일에 물리쳤던 서계를 칼로 끊어내어 바친 것이므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했으며, 연유를 치통한다 운운하였음. 동 노인은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이미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일에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흙 등을 요청한 서계는 전례에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흙을 번거롭게 청하여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기로 물리쳐서 받지 아니하였는데, 동 서계를 고쳐 쓰지 아니하고 이전의 글을 칼로 끊어 와서 바쳤으니, 서계 가운데 칼로 끊은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어서 반드시 또 되돌려 물리칠 필요는 없지만, 교활한 왜인의 정상이 본디 천박하고 모질어서, 이제는 이전의 서계를 새 서계라고 하여 모른 채 와서 바친 것을 가려서 깨뜨리지 않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렇게 농사일이 번거로운 가운데 요청한 사기 굽는 흙이 200여 섬이나 되어 민폐가 극히 우려되므로, 동 서계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물리쳤으며, 요구한 백토(白土)는 이렇게 수량이 많아서 그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편으로 엄하게 역관들을 신칙하여 이치에 근거하여 막으라고 하였거니와, 무역 요구한 마필(馬匹)은 앞에 무역을 허락한 전례가 있고 또한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어서 일일이 막는 것은 불가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시라는 일의 장계 등본과 원 장계를 아울러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리며, 당시 왜관에 머무르고 있는 왜인은 471명이라고 첩정한다 하였기에,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동래부사 박신이 5월 17일에 성첩한 장계는 위와 같은 사연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이번 경오조 이정암(以醇庵) 송사선 및 동년도 세건 제4선의 회답 서계를 다시 재촉하여 내려 보내며,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각색의 토물 및 에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고리눈얼룩말 1필과, 순색의 고리눈 말 1필을 너댓살 된 준마로 무역 요구하여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는바, 이정암 배와 제4선의 회답 서계는 막 이미 봉과(封裹)하여 역관 김시량(金是樑)에게 주어서 내려 보냈으니 오래지 않아 저쪽에 도착할 것이며, 사기를 구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색토(色土)에 관한 일은 다시 치계하기를 기다렸다가 품의 조처하되, 마필을 무역 허락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주는 물건

도 아니니, 두 가지 말 각 1필을 장계대로 해조에 명하여 사서주도록 하되, 저쪽에서 혹 탈을 잡는 일이 있으니 미리 두 가지 색의 예비 말을 미리 차출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비로 차출하는 말 각 1필을 전례대로 내려 보내되 해당 사복시(司僕寺)에 명하여 별도로 양마와 이마 각 1인을 정하여 말을 주어 데려 보내라는 뜻으로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9년(1690) 5월 26일 동부승지 신 이윤수(李允修)¹⁴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오(1690) 7월 초5일

경상감사 오시대(吳始大)가 7월 초1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 부사 박신(朴紳)의 첩정(牒呈) 내용 요약. 방금 도착한 예조 관문에 “이번 왜인이 구하는 두 가지 색의 환목마(環目馬; 고리눈의 말)의 실차마(實差馬: 실제로 팔기 위한 말)와 예차마(預差馬: 예비용 말) 모두 4필을 이마(理馬) 민계현(閔繼賢)과 양마(養馬) 이백형(李白亨) 등에게 주어 내려 보냈으니, 2필을 가려 잡힌 후에 첩보하라”는 관문이였기로, 동 말 4필 내에서 2필을 가려 주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여 내려 보냈더니, 방금 바친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 “전령에 의거하여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고리눈얼룩말[環日月羅馬] 2필과 순백의 고리눈 말[環目純白馬] 2필을 영솔하여 온 이마 등과 함께 왜관에 가서 2필을 가려 잡으라는 뜻으로 왜인에게 언급하였더니, 관수와 대관 왜 등이 모두 한 곳에 모여 말하기를, ‘이번 이 마필(馬匹)은 곧 예도에서 구하는 것이므로 바야흐로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 무더운 길을 신속히 내려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며 용립(龍立)의 오류월라(烏騮月羅) 1필과 명업(命業)의 순백마(純白馬) 1필을 즉시 가려잡고서 이마(理馬) 등에게 묻기를 ‘이 말 두 필은 모두 선모(旋毛: 가마)가 없는가?’ 하였는데, 이마가 ‘없다’고 하자, 동 왜인 등이 더욱 좋아하면서 모두 왜관 문을 나와 말의 재능을 살펴볼 즈음에 이른바 이마왜(理馬倭)가 홀연 두 말의 목덜미 아래를 가리키

143) 이윤수(李允修, 1654-?): 자는 먼숙(勉叔),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숙종 7년(1681)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황해감사에 이르렀다.

며 말하기를 ‘이게 가마가 아니냐?’ 하였고, 이마가 말하기를 ‘모든 말에 모두 이런 털이 있다’고 하니, 이마왜가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에 놀라 말하기를 ‘이는 진짜 가마이다. 목덜미 아래 명문(命門)의 가마는 마의방(馬醫方)에서 가장 꺼리므로 일본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하여 타지 않는다. 귀국 사람들도 그렇지 아니한가?’하였다. 이마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귀 뒤쪽 양편 뺨 위의 가마 밖에 기타는 해가 없다’고 하였고, 동 왜인은 말하기를 ‘옛 사람의 서적은 천하에 동일한데, 어찌 유독 마의방(馬醫方)만 피차간에 다를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도로 물리고는 끝내 가려 잡지 아니하거늘, 비직 등이 관수왜 등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 요구는 에도에서 사용할 데가 있다고 하여 사정이 매우 간절하기로 해조에서 그 청을 모처럼 들어주어 이렇게 더운 길에 기일에 맞추어 내려 보냈으면 즉시 물건을 잡아 보내는 것이 마땅하거늘, 관계 없는 가마를 흠으로 여겨 끝내 물건을 잡으려 들지 않는 것은 극히 부당하거니와, 고리눈얼룩말과 순색의 고리눈 말은 말 중에 희귀한 물건으로 결코 다시 찾기 어렵다’고 여러 가지도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제 이번 무역 요구를 기일에 맞추어 준 것은 참으로 감사하지만, 이것이 흉마(凶馬)라면 들여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때에 어찌 흠이 안되는 것을 흠이라고 하여 일부러 점퇴(點退)하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 낭패가 막심하니, 이런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바꾸어 들여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양마에게 묻기를 ‘가마의 길흉이 과연 이러한가?’ 하였더니, 양마가 말하기를 ‘왜인이 불길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사실이다. 그러나 고리눈[環目]이 이미 흉마인데 어찌 유독 가마를 불길하다고 일컫는가?’ 운운하였는바, 이마의 말이 이치가 있는 듯하나, 저쪽 사람이 불길하다고 말하며 끝내 취하여 잡지 아니하고, 모쪼록 속히 바꾸어 다시 가려 달라고 간청하여 이야기하기로, 부득이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하였거늘, 신이 마필(馬匹)을 끌어와서 직접 살펴보니, 과연 목덜미 아래에 가마가 있기에 내려온 양마(養馬) 민계현에게 물었더니, 목 아래 가마는 과연 꺼려진다고 하였으며, 내려 온 마필을 되돌려 올려 보내는 것은 극히 폐단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역 요구한 물건을 물리는 일은 뒷날의 폐단과 관계가 있으나, 이미 흉마라고 탈을 잡으니 비

록 온갖 사단으로 타일러도 또한 되돌려 들을 리가 없기로, 부득이 되돌려 올려 보내거니와, 두 가지 색의 고리는 말이 이미 희귀한 물건인데다 천리 먼 길에 갈아내고 다시 장만하여 왕래하여도 다시 점퇴할 우려가 없기도 어려운 형편이니, 예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한편으로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여 각 읍에 분부하여 말을 가진 자로 하여금 사 와서 무역에 응하게 하라 하였으며, 한편으로 경내 및 인근 네 곳에다 알려져 모양과 색깔이 합당한 말이 있거든 가져 오게 하여 가려 지급할 계획이며, 연유를 치계하는 일로 장계 등본과 원장계를 아울러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리거니와, 도내에 만약 모양과 색깔이 합당할 만한 마필이 있거든 와서 팔고 값을 받아가게 하라는 뜻으로 각 읍에 성화같이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시기를 첩정한다 하였기에, 동래부사 박신이 첩보에 의거하여 도내 각 읍에 털 색깔을 열거하여 급히 찾으라는 뜻으로 관문을 성화같이 발송하여 알렸는데, 이런 모양과 색깔은 본디 제주도 소산이고 도내에는 결코 얻을 길이 없으니 일이 매우 우려된다는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경오(1690) 9월 27일

동래부사 이형상(李衡祥)¹⁴⁴이 9월 19일에 성첩한 장계. 이 달 13일에 왜선 5척이 나온다고 하였다가 우도(右道)로 표류하여 갔다고 하기로, 관소(館所)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 추가로 사정을 물어 장계로 알릴 계획이라는 연유는 이미 치계하였거니와, 이 달 15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운운하기를, “우도로 표류하였던 왜선 5척 내에 3척은 지세포(知世浦)¹⁴⁵에 정박했고 1척은 조라포(助羅浦)¹⁴⁶에 정박했으며, 1척은 옥포(玉浦)¹⁴⁷에 정박했다고 운운하였는데, 동 표류한 왜선 등을 속히 영솔하여 관소에 부치라는 뜻으로 우도의 수호장(守護將) 등에게 차례 차례 전통하여

144) 이형상(李衡祥, 1653-1733):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瓶窩), 본관은 전주이다. 숙종 6년(1680)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호조좌랑과 성주목사를 거쳐 경오(1690) 9월에 동래부사로 도입하여 신미(1691) 7월에 교체되었고, 경주부윤과 제주목사를 역임하였다.

145) 지세포(知世浦): 현재 거제시 일운면(一運面) 지세포리(知世浦里).

146) 조라포(助羅浦): 현재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舊助羅里).

147) 옥포(玉浦): 현재 거제시 옥포동(玉浦洞).

신칙하고, 다대포 첨사에게 다시 각별히 신칙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16일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접한 훈도 박유년(朴有年)의 수본에 “관소에 먼저 도착한 왜선 1척에 우선 사정을 물었더니, 새 관수왜 평일정(平一政)의 선박 1척으로 종왜 8명, 격왜 40명 등이 예조(禮曹)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1통, 동래 부산으로 보내는 서계 1통과 별폭 2통을 전례대로 가지고 나왔으며, 전일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로 봉행 등이 바친 서계가 격식에 어긋난 곳이 있다 하여 되돌려 들여 보냈는데 동 서계를 고쳐 써서 이번에 겸하여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島中)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왜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에도에서 여러 집정 등이 요청하는 것이 있기로 도주가 보낸 발기〔件記〕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는바, 호두 60섬, 잣 40섬, 흰말꼬리〔白馬尾〕 5근, 사서집주(四書集註) 2부, 사서대전(四書大全) 2부, 대절한림풍월(大節翰林風月) 상품 참먹〔眞墨〕 20동, 자필(咨筆) 100자루, 당초피(唐貂皮) 10령, 중사(中紗) 5필, 대월린향(大越隣香) 400주(炷)라고 기록하였거늘, 무역 요구가 빈번하여 일이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사와 향과 담비가죽 따위는 당물(唐物)과 연관되어 무역 허락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며, 호두와 잣과 말갈기〔馬鬃〕 등도 그 수량이 매우 많아서 또한 그대로 허락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로 타일러, 호두는 60섬 가운데 30섬을 줄이고, 잣은 40섬 가운데 15섬을 줄이고, 흰말꼬리는 5근 내에 2근을 줄였으며, 향(香)과 사(紗)와 담비가죽은 장사꾼 등에게서 편한 대로 무역하여 가라는 뜻으로 조정하였거니와, 그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의 서계를 보니, 월일을 3월로 써 넣어 일이 매우 오래된지라, 그 곡절을 물었더니, 한결같이 당초의 월일대로 고쳐 썼다 하였으며, 각양으로 들어가는 흙 및 송토목(松土木)은 전 훈도 때 이미 품의하였으니 그 수량대로 속히 운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였음. 동 봉행 등이 보낸 서계는 동래부로 곧바로 바칠 계획이거니와, 관수왜가 가져온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대로 바친다고 운운”하였다고 치통하였음. 동일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운운하기를 “표류한 왜선 1척을 끌어다 이 포구에 영솔하여 정박하였다는 전통에 근거하여 치보한다” 하였음. 동시에 도착한 사정을 묻기 위해 보낸 별차 김응윤(金應潤)¹⁴⁸⁾의 수본에

148) 김응윤(金應潤, 1656-?): 자는 복여(福汝), 본관은 경주이다. 숙종 7년(1681) 식년 역과에

는 “표류한 왜선 등이 정박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사정을 물었는데, 지세포에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3척 내에 1척은 금년조 겸대세건 제9선에 격왜 30명, 제2척은 동년조 겸대세건 제12선으로 격왜 20명 중 교대하러 나온 대관왜 1인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제3척은 동년조 겸대세건 제13선으로 격왜 20명 및 도금도왜 1인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구조라포(舊助羅浦)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1척은 동년조 겸대세건 제10선인데 격왜 30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다고 운운”하였음. 동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새 관수가 가져온 서계는 전례대로 다례를 베풀고 추가로 받아 올려 보낼 계획임. 도중의 봉행 등이 금년 3월에 사기 조성을 청하는 일로 동래 부산으로 보낸 서계를 바쳤다가 격식에 어긋난 곳이 있기로 그 때 물리쳐 받지 아니했는데, 동 서계를 이제 또 고쳐 써서 가져다 바치거늘, 전례를 상고해보니, 첫 면에는 동래부산 양영공 대인합하(東萊釜山兩令公大人閣下)라고 쓰는 것이 전례인데, 이제 이번 서계에는 영공(令公) 두 자를 써 넣지 않았는바, 이 또한 격식에 어긋나기로 되돌려 물리쳤으며, 무역 요구한 각종 물건 중에 담비가죽과 중사(中紗)와 월린향(越隣香) 등은 이미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사꾼들에게 편의대로 무역해가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이미 타일러 조정하였거니와, 그 밖에 7종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고, 빈번하게 청하여 오는 것이 지루함을 견딜 수 없지만 이미 예도에서 구하는 물건이라 하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운운하였기에 연우를 치계하는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이형상의 장계를 보니, 새 관수왜 평일정이 가져온 서계는 다례 후에 받아 올려 보내고,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의 서계는 또한 격식에 어긋남이 있어서 물리쳐 받지 아니했다고 하며, 예도에서 집정 등이 구하는 사서집주 2부, 사서대전 2부, 대절한림풍월 상품 참떡 20동, 자필 100자루, 호두 30섬, 잣 25섬, 흰말꼬리 3근, 당초피 10령, 중사 5필, 대월린향 400주 등의 물건을 무역하여 달라고 기록하였거늘, 무역을 요구하는 물건이 빈번할 뿐 아니라, 사와 향과 담비가죽 등은 당물과 연관되어 무역을 허락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금제하여 왜학에 종사하였다.

장사꾼에게서 편의대로 무역하여 가라는 뜻으로 조정했다 하고, 그 나머지 7종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고 하였던 바, 새 관수왜가 가져온 서계의 회답은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거행함이 마땅하며, 예도의 집정 등이 구하는 물종 가운데 사와 향과 담비 가죽은 장사꾼에게서 편의대로 무역해가라는 일로 이미 조정했다 하거니와, 그 밖의 7종은 본디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전례가 있으니, 장계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9년(1690) 9월 28일 동부승지 신 이수징(李壽徵)¹⁴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경오(1690) 10월 초9일

동래부사 이형상(李衡祥)이 10월 초3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하기를, 부산첨사의 치통에, 당일 나온 왜선 1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유년(朴有年)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전일에 무역 요구한 말을 채촉하기 위해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였음. 관수왜가 비직(卑職) 등을 만나 보기를 요구하여 말하기를 ‘이제 도중에서 온 사서를 보니, 얼룩말[月羅馬] 2필을 속히 무역 요청하여 들여 보내라는 뜻으로 말을 하여 보낸 지가 이제 장차 반년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흔적이 없어서 일이 매우 민망하고 절박하니, 모름지기 즉시 무역 요청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던 바, 극히 걱정스러우니 이 뜻을 잘 고하여 모쪼록 속히 무역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근래에 연속하여 들여 준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매양 물리쳐서 한 필만 가려간 일은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품질이 좋다면야 어찌 감히 점퇴(點退)하겠는가? 오직 체구가 작고 노둔한 말로 책임을 매우기에. 이

149) 이수징(李壽徵, 1632-?): 자는 인로(仁老), 본관은 연안이다. 숙종 4년(1678)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참판에 이르렀다.

큰바 가려서 잡은 것도 또한 용렬한 가운데 조금 나은 것이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체구가 크고 값이 무거운 것으로 무역을 허락하여 한꺼번에 들여보낼 수 있도록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음.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운운"하였음. 위의 노인 1통을 받아 보내거니와, 기장(機張)으로 표류하여 정박한 왜선 2척이 정박한 곳을 속히 상세히 탐지하여 치보하라는 뜻으로 동 현에 또한 신칙하여 달라는 연유를 아울러 치통하는 일이라고 치통하였음. 동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오며, 무역 요구한 마필(馬匹)은 당초 본부의 장계에 의거하여 본도에서 찾아 주는 일로 순영(巡營)에서 각 고을에 분부하였는데, 소문을 듣고 말을 끌고 오는 자가 많지 않는 것이 아니었으나 매양 점퇴당하여 1필만 들여 주었고, 1필은 아직까지 들여 주지 못하였는데, 도주에서 사서가 이러하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하기로, 이 사연을 도신에게 낱낱이 첩보하여 다시 찾아 줄 계획이라 운운한 연유로 치계하는 일임.

경오(1690) 11월 16일

동래부사 이형상이 11월 초5일에 성첩한 첩정에, 방금 도착한 예조의 관문 내용 요약. 왜인이 무역 요구한 맹자집주(孟子集註)와 『중용(中庸)』 『대학집주(大學集註)』는 원래 판본이 없어서 인출하지 못하였으니, 역관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막게 하라는 일로 관문을 보내었음. 관문의 사연을 역관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막게 하라 분부하였는데, 훈도와 별차가 바친 수본 내용에 '전령에 근거하여 왜인이 무역 요구한 사서대전(四書大全) 2부와 논어집주(論語集註) 2부는 이제 바야흐로 장정을 하고 있거니와, 『중용(中庸)』 『대학(大學)』과 『맹자(孟子)』의 집주(集註)는 원래 판본이 없어 인출해 낼 수 없다'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관수왜에게 타일렀더니, 동 왜인이 '귀국에 사서집주(四書集註)의 판본이 없다는 이야기는 매우 실상이 아니로되, 첩지가 하는 말이 이러하니 우선 이런 뜻으로 예도에 통보하겠다'고 하였기로, 연유를 치계하는 일임.

경오(1690) 12월 초4일

경상감사 이담명(李聃命)¹⁵⁰이 11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이형상(李衡祥)의 첩정 내용을 요약하면, 이 달 22일에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1척이 물마루로 나온다고 운운하여,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 내용에,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초탐장 서상검(徐尙儉)의 치보에 근거하여 즉시 사정을 물어보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였는데, 방금 도착한 훈도 박유년(朴有年)과 별차 김응윤(金應潤) 등의 수본에 “동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관소에 정박하였는데, 밤이 깊어 관(館)을 닫아 사정을 물을 수 없다가 오늘 아침에야 사정을 물었더니, 비선에는 두왜 1인과 격왜 7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그 나온 연유 및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두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이 말하기를 ‘에도의 집정이 구하는 것으로 웅담(熊膽) 10부, 호설(虎舌) 10부 및 『관백(關白)』의 내의소(內醫所)에서 구하는 『동의보감(東醫寶鑑)』 3부, 『찬도(纂圖)』 3부 등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이 뜻을 간곡하게 고하여 기어코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되, 웅담과 호설이 진짜가 아니거나, 보감과 찬도의 판본이 이지러졌으면 일이 매우 염려스러우니, 반드시 품질이 진짜이고 정한 것으로 사들여 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였음. 노인 1통을 받아 올려 보낸다고 운운”하였기에 동 노인 1통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으나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는데, 위에 요구한 4종은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했던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치하시라고 운운한 일 및 동래부사 이형상이 11월 24일에 성첩한 장계는 위와 같은 사연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에도의 집정이 요구하는 웅담 10부, 호설 10부 및 관백의 내의소에서 구

150) 이담명(李聃命, 1646-1701): 자는 이로(耳老), 호는 정재(靜齋), 본관은 광주이다.

현종 11년(1670)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서 우승지, 진라도 관찰사, 부제학, 이조참판, 경상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하는 동의보감 3부, 찬도 3부 등의 물건을 무역 요청하여 들여 보내 달라고 운운하였다고 하는바, 왜인의 전후 무역 요구가 이렇게 지루하여 계속 들어 주는 것은 불가하겠으나, 이는 얻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고 또한 전례가 있으니, 웅담과 호설 등의 물건은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동의보감』과 『찬도』 등의 책자도 또한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서 보내도록 함이 마땅하니, 이런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29년(1690) 12월 초6일 우승지 신 이(李)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신미(1691) 3월 초8일

동래부사 이형상(李衡祥)이 2월 29일에 성첩한 장계에 운운하기를,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왜선 4척이 나왔는데 3척은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고, 1척은 절영도(絶影島) 안쪽 바다의 암초〔隱嶼〕에 걸렸는데 비바람이 크게 일어 아직 관소에 영솔하여 부치지 못했다” 운운하였고, 동일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응윤 등이 바친 수본에, “어제 나온 왜선 4척 내에 3척은 관소에 정박하였는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중간에 선창으로 흘러갔기에 관왜(館倭)가 조사하여 상륙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사정을 묻지 못하였고, 절영도 안쪽 바다에서 암초에 걸린 왜선 1척이 관소에 일제히 도착한 뒤에 한꺼번에 사정을 물어 수본할 계획이라고 운운”하였음. 동시에 도착한 초탐장 임성업의 치보에는 “절영도 안쪽 바다에서 암초에 걸린 왜선 1척을 겨우 끌어내려 바다에 띄웠는데 비바람이 잇달아 일어나 관소로 영솔하여 부치기는 만무한 형편이기로, 바람이 자기를 기다렸다가 끌어 올 계획이라 운운”하였음. 동 왜선 1척을 급히 영솔하여 끌어와 관소에 부치고서 한꺼번에 사정을 물어보라는 뜻으로 다시 초탐장에게 더 신칙하였다는 연유로 운운하였음. 28일 사시(巳時)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방금 도착한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응윤 등의 수본에 “왜관의 선창에 떠 있는 왜선 3척은 가서 그 나온 연유를 물어보았더니, 제1척은 경오조 겸대 3특송 1호선으로 격왜 40명, 제2선은 동 특송 제2호선으로 격왜 30명, 제3척은 동 특송선의 수목선으로 격왜 2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교대하기 위하여 대관왜 1인과 종왜 5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기에, 도중의 사정을 물었더니 대관왜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지난 겨울 초에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냈던 얼룩말[月羅馬] 1필이 바다를 건널 때 무거운 배멀미를 중하게 앓더니 육지로 가면서 열이 나 중도에 죽었기로, 그것을 대신할 얼룩말 1필의 무역을 청한다는 뜻 및 에도의 집정이 구하는 『주역(周易)』과 『춘추(春秋)』, 『모시(毛詩)』, 『상서(尙書)』, 『예기(禮記)』, 『효경(孝經)』, 『논어(論語)』, 『맹자(孟子)』, 『주례(周禮)』, 『의례(儀禮)』, 『공양전(公羊傳)』, 『곡량전(穀梁傳)』, 『이아(爾雅)』 등 도합 13책을 각기 1부씩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일로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왔다’ 하였는 바, 관수에게 가서 만나보았더니, 동 왜인이 사서를 내어보이며 무역 허락을 간청하였는 바, 그 청한 바 무역 물종이 대관왜가 한 말과 같거늘, 비직 등이 ‘근래에 무역 요구한 서책이 매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얼룩말은 이전의 요구를 겨우 마쳤는데 이제 또 다시 청하는 것은 또한 지루하여 결코 번거롭게 진달하기 어렵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의 말이 ‘당초에 무역 요구한 말을 서울의 준마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고 오직 시골의 노둔하고 여윈 말로 충당하여 무역을 허락함으로써 중도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손해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가 지나도록 지체하여 이미 책망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만약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일이 매우 절박하니, 바라건대 번거롭다고 허물하지 말고, 간절하게 진달하여 반드시 품질이 좋은 서울 말로 무역을 허락하여 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주시며, 서책도 종종 무역 요청이 번거로운 줄 모르지 않으나, 에도의 집정의 아들로서 유도(儒道)를 숭상하는 자가 귀국의 경서를 얻기 원하므로,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하여 도주에게 간청하였으니 도주가 어떻게 그 청을 사절하겠는가? 이 또한 그 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중간에서 막지 말고 일일이 고하되, 그 중에서 혹 판본이 없는 것이면 비록 당책(唐冊: 중국책)이라도 모쪼록 무역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거늘, 비직 등이 답하기를 ‘경서(經書) 외에 다른 전기(傳記)의 판본 유무는 상세히 알 수 없으며, 얼룩말도 설령 무역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가마[旋毛] 등 꺼리는 것이 또한 너무 많아서 서울 말을 청하는 것은 극히 난처하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이 또한 그 폐단을 염려하여 말하기를 ‘용도가 한창

급하니 비록 도내의 말이라도 즉시 택하여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증언부언 하였음. 동 3척 배의 노인 중에 수목선의 노인에 각도 각관 방어소 침족하(各道各官防禦所僉足下)라고 써 넣었는 바, 이는 규정 밖이기로 동 배의 노인을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했으며, 2척의 노인만 받아서 올려 보낸다고 운운"하였음. 동일 도착한 동 첩사의 치통에, 방금 초 탐장 임성업(林成業)의 치보에 절영도 안쪽 바다에서 암초에 걸려 머물고 있던 왜선 1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고 치보하였음. 추가로 도착한 훈도 박재흥과 별차 김응운 등의 수본에 "절영도 안쪽 바다에 떠서 머물던 왜선이 관소에 정박했다고 하거늘 사정을 물었더니 경오조 세건 제1선 1척인데 격왜 40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으며, 교대하기 위해 도금도왜 3인과 소금도왜 7명, 사기를 구워만드는 왜인 3명, 공장왜(工匠倭) 5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는데, 동 송사선은 지난해에 나왔다가 돌아간 뒤에 이제 또 나왔으니 이는 규정 외에 관계되기로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말로 책망하고 노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운운"하였음. 동 경오년(1690) 겸대 3특송 1호선과 2호선의 노인 2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수목선의 노인은 각도방어소침족하(各道防禦所僉足下)라 써 넣었다고 역관 등이 이미 물리쳐 받지 아니했으며, 제1선 1척도 이미 지난 해에 나왔다가 들어간 배이거늘 이제 또 나온 것은 규정 밖이기로, 위의 수목선 노인을 고쳐 써서 바치는 일 및 규정 밖의 배를 속히 들여보내라는 뜻을 아울러 역관들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음. 서책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하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미 그냥 주는 물건이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무역 요구한 얼룩말은 우리 쪽에서 이미 수량 대로 찾아 준 뒤에 1필이 길 가던 도중에 죽게되었다고 또 이렇게 무역을 청하였는 바, 다시 무역을 허락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로되, 먼 곳 사람이 와서 청함이 위와 같이 간절하니, 본도에서 찾아 무역에 응함이 어떨랄는지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첩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이형상의 장계를 보니 대관왜의 말이 지난 겨울에 무역을 요구하여 들여보낸 마필이 바다를 건널 때 배멀미를 중하게 앓다가 육지로 가면서 열이 나서 길

가는 도중에 죽고, 그 대신으로 얼룩말 1필의 무역을 요청한 일 및 에도의 집정이 구하는 주역 등 13책 각 1부를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 달라고 하였는 바, 왜인이 전후로 무역 요구한 서책이 이렇듯 지루한데 또 계속하여 청하니 막음이 마땅할 듯하나, 이미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얻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니, 그 소원대로 무역을 허락하며, 얼룩말 1필 또한 장계대로 본도에서 널리 구하여 부응하도록 허락하며, 『주역』, 『춘추』, 『모시』, 『상서』, 『예기』, 『효경』, 『논어』, 『맹자』, 『주례』, 『의례』 등의 책자 각 1부는 해조에 명하여 값을 주어 사 보내게 하되, 『공양전』과 『곡량전』, 『이아』 등의 책자는 원래 판본이 없어서 부응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는 일로 훈도와 별차 등에게 명하여 타일러 막으라는 뜻으로 본부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1691) 30년 3월 초8일 좌승지 민창도(閔昌道)¹⁵¹⁾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미(1691) 7월 초1일

경상감사 이담명(李聃命)이 6월 23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 부사 이형상(李衡祥)의 첩정(牒呈)에 운운하기를, 19일에 도착한 부산첨사의 치통에, 어제 나온 왜인의 작은 배 2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데 근거하여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응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 2척에는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9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과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 및 대관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왜에게 가서 그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동 왜인과 대관왜 등이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사서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이번에 도주가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올 때 여러 집정이 구하는 물건이 극히 긴절한데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7월 그믐 전에 맞추어 내려오도록 해 달라’고 하였으며, 무역 요구하는 물종은, 각종 금선(金線) 20필, 각색 대단(大段) 30필, 각색 대사(大紗) 50필, 각색 궁초(宮綃)

151) 민창도(閔昌道, 1654-?): 자는 사회(士會), 호는 화은(化隱), 본관은 여흥이다. 숙종 4년(1678) 증광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 경상도관찰사, 부제학, 이조참의,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20필, 홍전(紅氈) 100립(立), 서피(鼠皮) 200령, 양가죽[羊皮] 100령, 당사향(唐麝香) 30부, 부용향(芙蓉香) 100주, 호두 40섬, 잣 30섬, 『사서대전(四書大全)』 2부, 『오경대전(五經大全)』 1부, 『성리대전(性理大全)』 1부, 『이정전서(二程全書)』 1부, 『주장전서(周張全書)』 1부, 『주자대전(朱子大全)』 1부, 『주자어류(朱子語類)』 1부이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근래에 무역을 요구하는 청이 빈번할 뿐 아니라 각종 서책은 겨우 무역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또 곧장 청하는 것은 사리와 체면에 있어서 매우 부당하여 결코 동래 영감 전에 고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언급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일제히 말하기를 ‘에도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후로 무역 요구한 것이 한 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나, 귀국에 있는 물건을 귀국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구하겠는가? 도주가 에도에 왕래할 때 각처에 쓰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도주가 사용하는 것은 수용하는데 지나지 않고, 귀국에서 주는 것도 원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 도주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도주가 귀국에 구청하려고 들겠는가? 동지(同知) 등이 이런 곡절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매양 막는 것을 일삼으니, 성신(誠信)으로 사귀는 도리에 있어서 일이 매우 불가하다’고 누누이 간청하거늘, 비직 등이 ‘무역 요구한 물종 중에 당물이 많고, 그 밖의 물건도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편으로는 타이르고 한편으로 다투어서, 각색 금선과 각색 대단과 각색 대사와 당사향은 전체 수량을 줄였고, 홍전은 비록 당물(唐物)이지만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이 있기로 100립 내에서 50립을 줄이고, 서피 200령 내에서 150령을 줄이고, 양가죽 100령 내에서 50령을 줄이고, 부용향 100주 내에서 50주를 줄이고, 호두 40섬 내에서 25섬을 줄이고, 잣 30섬 내에서 20섬을 줄였으며, 서책은 동 왜인들이 시종 간청하면서, 이전에 무역 요구하여 내려온 사서대전은 책의 장정(裝幀) 길이와 너비가 조금 컸으나 이번의 사서대전 장정의 길이와 너비는 앞의 책에 비해 포백척으로 각기 5푼씩 줄이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운운”하였음. 위의 비선 노인 2통을 받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냄.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 각색 비단과 당사향 등은 본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물건이 아니라고 역관 등이 이미 타일러 전량을 줄였거니와, 그 나머지 13종은 빈번하게 요청하여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미

에도에서 구하는 물건이라 하니, 허락할 지 여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운운하여 치계하는 일 및 동래부사 이형상이 6월 20일에 성첩한 장계도 위와 같은 사연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도주가 에도에서 대마도로 돌아올 때 여러 집정이 구하는 각색의 금선, 대단, 대사, 궁초, 홍전, 서피, 양가죽, 당사향, 부용향, 호두, 잣 및 『사서대전』, 『오경대전』, 『성리대전』, 『이정전서』, 『주장전서』, 『주자대전』, 『주자어류』 등의 물건을 무역 허락할 지 여부를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 바,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잡물 중에 비단 등의 물건에 있어서는 이미 본부에서 전량을 줄였으니 이제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밖에 홍전 등 13종은 그 수량이 너무 많아서 막아야 마땅할 듯하나, 이미 에도에서 구하는 것이고 본디 그냥 주는 것도 아니니, 사서대전 2부, 『오경대전』 1부, 『성리대전』 1부, 『이정전서』 1부, 『주장전서』 1부, 『주자대전』 1부, 『주자어류』 1부, 홍전 50립, 서피 50령, 양가죽 50령, 부용향 50주, 호두 15섬 등의 물건은 이미 일찌기 전에도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을 뿐 아니라 동래부사가 이미 수량을 줄여 장계하였으니, 장계대로 허락하여 무역하여 줄이 마땅할 듯하니, 이 뜻을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0년(1691) 7월 초 1일 동부승지 신 이운징(李雲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신미(1691) 윤7월 27일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¹⁵²의 첩정(牒呈)에, 방금 도착한 교서관(校書館)의 첩정 내용에 근거한 예조의 관문에는, 왜인이 구청한 『사서대전』의 장책을 이전의 책에 비해 포백척으로 각기 5푼씩 줄이라는 일로 본조에서 온 감결(甘結)¹⁵³을 받았는데, 판자(板子)에 본디 두 가지 판본이 없으니 이전대로 장정할지 하나로 지시하여 시행할 일로 첩정한다 하였기에, 첩보한 것

152) 김홍복(金洪福, 1649-1698): 자는 자회(子懷), 호는 동원(東園), 본관은 김해이다. 숙종 8년(1682) 문과에 급제하여 신미(1691) 7월에 동래부사로 도임하여 임신(1692) 10월에 교체되었고, 황해도 관찰사, 승지, 예조참의, 여주목사, 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153) 감결(甘結):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는 공문.

이 참으로 그러하니 동래부사에게 분부하여 타이르게 하라는 일로 보낸 관문이었음. 동시에 도착한 호조의 관문에 근거한 예조의 관문에는 왜인이 무역 요구한 서책 중에서 주장전서(周張全書)는 우리나라에 없는 책으로 무역을 허락할 수 없다는 뜻으로 훈도 등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타일러 막게 하라는 일로 보낸 관문이었음. 전후의 관문 내용을 전령으로 역관 등에게 분부하여 그들로 하여금 막게 하였는데, 방금 바쳐온 훈도 별차 등의 수본에는 “예조의 관문에 근거한 전령에, 왜인이 무역 요구한 『사서대전』의 장정이 조금 크기에 이번에는 장정의 길이와 너비를 이전의 책에 비해 포백척으로 각기 5푼씩 줄여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하였는데, 동 『사서대전』의 판자는 본디 두 가지 판본이 없이 모두 같으니 책자의 길이 치수는 혹 재단하는 데 차이를 둘 수 있으나 너비 치수는 줄일 길이 없으니, 길이는 줄이고 너비는 이전 장정대로 하겠다는 일로 대관왜에게 타일러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기로, 한결같이 전령의 내용대로 왜인에게 타일렀더니 왜인의 말이 판본이 이러하면 끊어내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동 책자의 길이와 너비를 모두 줄이지 말고 한결같이 이전이 무역 요구한 『사서대전』의 장정대로 하여 주시면 무방하겠다고 운운하였기에, 동 책자는 이전의 장정대로 하여 내려보내라는 일로 예조에 회보하며, 당초 왜인이 무역 요구한 서책 가운데 『주장전서(周張全書)』는 우리나라에 없는 책이므로 무역할 수 없다는 뜻을 왜인에게 타일러 막았는데, 이 뜻을 해조에 회보하기 위하여 수본하였기로 연유를 첩보하는 일임.

신미(1691) 10월 13일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의 장계.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경오조 2특송사 2호선 격왜 30명 중 교대하기 위해 나온 대관왜 4인과 종왜 8명 등이 함께 타고 나왔다고 하거늘,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김관(金瑄)¹⁵⁴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일대관왜(一代官倭)가 비직 등을 만나보기를 요청하여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내년 봄에 도주가 예도로 가야하는데 사용될 마른 대구어 1500마리, 각

154) 김관(金瑄, 1644-?): 자는 순옥(純玉), 본관은 송도이다. 숙종 4년(1678) 역과에 급제하여 왜학으로 종사하였다.

색 대단(大段) 26필, 각색 궁초(宮綃) 25필, 각색 대사(大紗) 15필, 희고 고운 모시베〔白細苧布〕 20필, 고운생모시베〔生細苧布〕 20필, 시필(詩筆) 150자루, 화룡필(畫龍筆) 100자루, 용편필(龍鞭筆) 50자루, 반죽필(斑竹筆) 100자루, 홍당죽필(紅唐竹筆) 50자루, 청서피(靑黍皮) 10장, 흑마포(黑麻布) 15필, 꼬리 있는 담비가죽 10령, 대절진묵(大節眞墨) 12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일로 누누이 청하였는데, 동래영감 전에 잘 고하여 다음 달 그믐 이전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여 들여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해마다 무역 요구가 매우 빈번한 것은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또한 당화(唐貨)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이 없으니 결코 고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말하기를 '이전에도 도주가 에도에 들어갈 때는 무역 요청의 허락을 받아 해마다 없는 적이 없었으며, 또한 그냥 주는 물건도 아니거늘 매양 무역을 요청할 때마다 막기를 일삼으니 성신(誠信)의 도리에 참으로 흠이 되며, 귀국에서 산출되는 물건을 귀국에서 구하지 않으면 어디서 구하겠는가? 그 중 대단과 궁초, 대사 등의 물건은 일찍이 무역을 허락한 일이 없었으면 우리로서는 억지로 청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나머지 물건은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상세히 본부에 고하여 주면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여 마지않았으므로, 연유를 수본으로 함"이라고 수본하였는데, 동 왜인 등이 무역 요구한 물종 가운데 각색 당화는 이미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역관 등이 막았거니와, 그 밖의 물종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는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하던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기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홍복의 장계를 보니, 내년 봄에 도주가 에도로 가야 하기에 사용할 물건을 무역 요청하였는데, 각종 물건 중에서 대단과 궁초, 대사 등의 물건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라고 역관 등이 막았고, 그 밖의 물건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는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각색 당화는 왜인들도 또한 그것을 억지로 청해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으

니 이제 거론한 필요는 없고, 그 밖의 물건은 전에도 이미 무역을 허락한 때가 있었고 그냥 주는 물건도 아니니 막을 필요가 없으니, 마른 대구어 1500마리, 흰모시베 20필, 생모시베 20필, 시필 150자루, 화룡필 100자루, 용편필 50자루, 반죽필 100자루, 홍당죽필 50자루, 청서피 10장, 검은 삼베 15필, 꼬리 있는 담비가죽 10령, 대절진묵 120홀 등의 물건을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함이 합당할 듯하니, 이런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0년(1691) 10월 15일 좌승지 오시만(吳始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미(1691) 10월 22일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의 장계. 부산첨사 윤항미(尹恒美)의 치통에, 왜인의 작은 배 1척이 나왔기에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거늘, 훈도 박재흥(朴再興)과 별차 김관(金琯)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 1척에는 두왜 1명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주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두왜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관수에게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관수에게 가서 사서의 사연을 물었더니, 관수왜와 일대관왜 등이 한 곳에 같이 있으면서 봉행 등이 보낸 사서를 내어 보이며 말하기를, ‘이전에 일찍이 얼룩말[月羅馬] 2필을 귀국에 무역 요청하여 에도로 들여보냈는데, 거의 에도의 경계에 도착하여 2필의 말이 혹은 병들고 혹은 죽어서 에도의 청에 부응하지 못하였기로, 집정 등이 도주에게 책망을 하여 매우 급하게 재촉할 뿐 아니라, 우산지(雨傘紙) 300장을 또 구청하였기로, 도주가 극히 민망하여 비선을 내어보냈는데, 무역 요구한 말이 또 이렇게 죽어서 피차간에 폐단이 매우 우려되지만, 도주의 책임이 두 나라에 있어서 그 사이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로, 부득이 또 번거롭게 청하니, 두세 살 된 어린 말을 털 색깔은 따지지 않고 15필만 무역을 허락하면, 도중에서 길러 우리나라 풍토에 익숙하게 한 뒤에 그 중에서 좋은 말을 골라 에도로 들여 보내어, 병이 들어 죽더라도 다시 요구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허락하도록 하며, 우산지도 또한 에도에

서 청하기에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는 것은 그만 둘 수 없으니 아울러 잘 고해 달라'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당초 무역 요구한 말이 도중에서 죽었다고 또 구청하기에 또 그것을 대신한 말을 허락하였는데, 이제 또 죽었다고 10필의 말을 감히 번거롭게 청하니 비록 어린 말이라고 하나 일이 매우 부당하여 말할 수가 없거니와, 근래에 각종의 무역을 요청하는 청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으니, 그대들의 도리로는 어찌 마음에 불안하지도 않느냐? 또한 우산지만 하더라도 이미 연례(年例)로 들여 주는 물건인데 별도로 무역을 요구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여, 비록 도주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동래 영감 전에 돌아가 고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책망하여 타일렀더니, 동왜인들이 말하기를, '도주가 만약 두 나라의 책임이 아니라면 에도에서 무슨 일로 도주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겠으며, 도주 또한 어찌하여 귀국에 무역을 요구하겠는가? 일찍이 전에도 무역을 요구한 말 2필에 대하여 은자(銀子) 200냥의 값을 주었으니, 1필 말의 가격은 막중한 값이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렇게 지루하게 하겠는가? 마필(馬匹)의 수가 너무 많거든 참작하여 5필을 줄여 도주의 지극한 바람에 부응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으며, 300장의 우산지는 기어코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사리를 갖추어 고하여 때에 맞추어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않았음. 동 노인 1통을 받아 올려보내는 일로 수분한다" 하였기로, 노인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비선 노인을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거니와, 이제 이번에 무역 요구한 마필은 비록 무역을 허락한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그 마리 수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바야흐로 역관을 시켜서 다시 책망하여 타일러 수량을 줄이며, 우산지도 일찍이 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치하실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동래부사 김홍복의 장계를 보니, 일찍이 전에 무역 요구하였던 얼룩말 2필이 에도에 거의 도착하여서 혹은 병들고 혹은 죽어 에도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집정 등이 도주에게 책망을 하여 비선을 내보내어 우산지 300장과 두세 살의 어린 말 15필을 또 무역 요구하기로, 역관 등이 여러 가지로 책망하고 타일러서 말 5필만 우선 참작하여 줄이고, 또 역관에게 타일러 수량을 줄이라

는 뜻으로 분부하였거니와, 모두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라 하였는바, 근래에 왜인들의 무역 요구가 계속 이어져서 일이 매우 지루하니 아울러 막아서 허락하지 아니함이 사리에 당연하지만, 이전부터 이런 무역 요구 물건을 또한 들어 준 때가 많았으니 막는 것이 불가할 뿐 아니라, 종이 300장은 15권에 불과하니 그 수량이 많지 않거니와, 마필에 있어서는 비록 5필을 줄였으나 10필은 그래도 또한 과다하니, 다시 역관 들에게 명하여 십분 타일러 그 수를 줄여 되도록 간략하게 무역을 허락하면 혹 일이 편하고 마땅하며, 우산지는 그 원하는 대로 본도에서 수량에 맞추어 무역을 허락하며, 마필도 그 수량을 줄여 조정하기를 기다려 또한 본도에 명하여 합당할 만한 것을 찾아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동래부사 및 본도 감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0년(1691) 10월 22일 우승지 신 박신(朴紳)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신미(1691) 12월 초3일

경상감사 민창도(閔昌道)의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의 첩정에, 방금 도착한 본부의 서장(書狀)으로 인한 예조의 복계(覆啓) 관문 내용에, “왜인이 무역 요구한 어린 말은 비록 5필을 줄였으나 10필은 아직도 또한 과다하니 다시 역관들에게 명하여 타일러 그 수량을 줄여서 참작 확정하기를 기다려 또한 본도에 명하여 적합한 것을 찾아서 무역을 허락하라는 뜻으로 분부함이 어떠할지라고 입계하여 윤험 받은 일로 계하하였으니 사연을 받들어 시행하라는 일로 관문을 보낸다”고 하였는데, 즉시 관문의 사연을 훈도와 별차 등에게 전령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관왜에게 가서 타일러 수량을 줄이도록 하였더니,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관 등이 바친 수본에, “전령에 근거하여 비직 등이 여러 가지로 대관왜 등을 타일렀는데, 동 왜인 등은 ‘이전에 무역 요구한 마필이 연속하여 죽었기로 부득이 도중에서 어린 말을 무역 요구하여 들여보내라는 일로 누누이 간청하였는데, 당초 15필의 수량을 동지 등이 막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5필을 줄인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또 수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부당하지만, 해조(該曹)에서 회계

(回啓)가 이렇게 내려왔으니 감히 억지로 청할 수 없는 형편이라, 10필에서 3필을 줄여 무역을 허락해 주면 다행이겠다'고 누누이 말하여 마지아니하기로 연유를 수본으로 하는 일"이라고 수본한다 하였음. 누차 수량을 줄이도록 타일러 줄인 수량이 단지 3필이로되, 전에 무역 요구한 15필의 수량을 통틀어 보면 이제 이번에 수량을 줄인 것이 거의 그 반을 넘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니, 해조에 명하여 속히 품의 조처하여 무역을 허락하도록 할 일이라는 장계 및 동래부사 김홍복의 장계에 운운한 일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무역을 요구한 어린 말의 수량은 본조에서 내려 보낸 회계로 말미암아 이미 절반으로 줄였는데, 한결같이 줄이기는 불가하니 짐짓 이에 의거하여 무역을 허락하는 것도 무방할 듯하니, 해조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라 하였는 바, 당초 왜인이 무역 요구한 수량이 15필이나 되었는데, 두 차례 타일러서 반이 넘도록 수량을 줄였으니, 무역을 허락하는 말도 그 수량이 많지 않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니, 이 장계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본도 감사 및 동래부사에게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0년(1691) 12월 초3일 우부승지 신 오시만(吳始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험함.

임신(1692) 정월 초3일

경상감사 민창도(閔昌道)가 12월 25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김홍복의 첩정에 운운하기를,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최위(崔瑋)의 치통에 왜인의 작은 배 한 척이 나왔다고 운운한 일에 근거하여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관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 1척에는 두 왜 1인과 격왜 9명 등이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 및 나온 연유를 탐문하였더니, '별로 다른 일은 없고, 도주가 예도에서 사용하려고 무역을 요구한 잡물 가운데 마른 대구어와 희고 고운 모시베〔白細苧布〕, 고운 생모시베〔生細苧布〕, 시필(詩筆), 화룡필(畫龍筆), 용편필(龍鞭筆), 반죽필(斑竹筆), 홍당죽필(紅唐竹筆), 청서피(靑黍皮), 검은 삼베〔黑麻布〕, 꼬리가 있는

담비가죽, 대절진묵(大節眞墨), 우산지(雨傘紙) 등의 물건은 이미 허락을 받았으나, 에도에서의 용도가 매우 긴급하기로 도중에서 비선을 보내어 대관 등에게 재촉하여 속히 실어오라고 하였기로, 대관 등에게 도중에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거늘, 동 사서의 사연을 대관왜에게 가서 물었더니, 동 왜인들의 말이 '전일이 무역 요구한 잡물을 아직 들여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촉하기 위해 비선이 나왔는데 일이 매우 염려스러우니, 동 무역 요구한 잡물을 속히 내려 보내라고 동래 영감 전에 고하여 해조(該曹)에 전보(轉報) 하도록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였음. 동 비선의 노인은 나올 즈음에 풍랑에 젖어서 매우 깨끗하지 못하기로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관수왜에게 말로 책망하여 받지 아니했다고 운운" 하였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동 비선의 노인은 고쳐 바치라는 뜻으로 역관 등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여 타이르게 하였으며, 이제 이번 왜인이 재촉하는 무역 요구 잡물은 모두 일찍이 이미 장계로 알려 허락받은 물건이기로 본도에 분정(分定)한 마른 대구어와 우산지는 분정된 각 고을에 관문을 발송하여 재촉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도신(道臣)에게 첩보하였거니와, 그 밖의 희고 고운 모시베 등 11종은 해조에 명하여 속히 내려보내 주시기를 장계한다고 운운한 연유를 등본으로 치계한 일 및 동래부사 김홍복이 12월 22일에 성첩한 장계는 위와 같은 사연인 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첩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왜인이 별도로 청한 희고 고운 모시베 등 11종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라고 하였는바, 이전에 구청한 물건은 지난 12월 23일에 금군 임춘형(林春馨)에게 주어 내려 보냈는데, 이 뜻으로 회이함이 어떠할지. 강희 31년(1692) 정월 초3일 우승지 신 이수징(李壽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신(1692) 3월 초4일

경상감사 민창도(閔昌道)가 2월 27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의 첩정에, 이번 달 21일에 도착한 부산첨사 최위(崔瑋)의 치통에 운운하기를, 어제 나온 왜선 9척을 영술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박재홍과 별차 김관 등에게 명하여 사정을 묻게 하였다

니 수본에, “제1척은 금년조 세건 제1선으로 정관 등상창(藤常昌), 도선주 굴중창(橋重昌), 봉진압물 1인, 반중 3명, 격왜 40명, 제2척은 동년도 세건 제2선으로 정관 굴상중(橋常重), 반중 1명, 격왜 40명, 제3척은 동년도 세건 제3선으로 정관 등유친(藤有親), 반중 1명, 격왜 40명 등이 각기 서계를 가졌으며, 제4척은 동 송사 수목선으로 격왜 15명, 제5척은 신미조 세건 제8선으로 격왜 30명 중 교대하기 위해 나온 삼대관왜(三代官倭) 1인, 종왜 3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제6척은 신미조 세건 제9선으로 격왜 30명, 제7척은 신미조 세건 제10선으로 격왜 30명, 제9척은 비선인데 두왜 1인, 격왜 9명 등이 각기 노인을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의 말이 ‘도중에는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위의 비선에는 대관왜 등에게로 보내는 사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늘, 대관왜 등에게 가서 만나 사서의 사연을 탐문하였더니, 동 왜인 등이 도중에서 온 사서를 내어보이며 말하기를 ‘도주가 에도에서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자필(咨筆) 100자루, 호두골(虎頭骨) 1부, 호경골(虎脛骨) 2부, 호담(虎膽) 5부, 호설(虎舌) 3부, 호육(虎肉) 20근, 호조(虎爪) 10개, 호두 20섬, 잣 20섬, 꼬리가 있는 담비가죽 중에 색깔이 좋고 털이 두터운 것으로 20령, 양가죽(羊皮) 100령, 『동의보감(東醫寶鑑)』 2부, 한림풍월(翰林風月) 100개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는 일로 비선을 보내었는데, 전후로 무역 요구가 극히 빈번하여 일이 매우 불안하지만, 에도에서의 요청에 부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을 동래 영감 전에 잘 고하여, 3월 보름 사이에 맞추어 수량대로 무역을 허락하여 도중에 들여 보내도록 해 주면 천만 다행이겠다’고 하거늘, 비직 등이 말하기를 ‘저번에 도주의 청으로 말미암아 무역을 허락한 물종이 극히 과다하였거늘,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서 또 번거롭게 청하니 이번에는 결코 고할 수 없다’고 여러 가지로 막았더니, 동 왜인들이 말하기를 ‘만약 에도에서 요청하지 않았으면 도주의 번거로운 요청이 어찌 이렇게 까지 왔겠는가? 도주가 에도로 가는 시기가 3월 초로 당도하였으니, 이 때까지 만약 허락을 받지 못하면 일이 매우 낭패되니, 중간에서 저지하지 말고 잘 고하여 지극한 바람에 부응해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고 간청하여 마지아니하였음. 위의 송사왜(送使倭) 등이 소지한 서계는 다례(茶禮)하는 날 전례에 따라 바치겠다고 하였음. 노인 6통은 받아

올려 보냄"이라고 수본하였기에, 동 노인 6통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왜선 노인 6통을 보내는데, 그 중 제1선의 송사왜 수목선 노인은 서면에 각도 각관 방어소(各道各官防禦所)라 써 넣었는 바 전례에 어긋나기로 고쳐 써서 바치라는 뜻으로 역관에게 명하여 관수왜에게 책망하고 타이르게 하였고, 5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 보내며, 송사왜 등이 가져온 서계는 추가로 다례를 베풀고 받아 올릴 계획이거니와, 무역 요구를 들어주었는데 이제 또 계속하여 청하니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겠으나, 이는 모두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오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 품의하여 조치하시라는 장계 등본과 노인을 전하는 서찰, 원 장계를 아울러 급히 관찰사에게 올리며, 현재 왜관에 머무는 왜인은 737명이라고 첩정하였기에, 연유를 등본으로 써서 치계하는 일. 및 동래부사 김홍복이 2월 23일에 성첩한 장계는 위와 사연이 동일함.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금년 세건 제1, 제2, 제3선이 각기 서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도주에 예도에서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자필 100자루, 호두골 1부, 호경골 2부, 호담 5부, 호설 3부, 호육 20근, 호조 20개, 호두 20섬, 잣 20섬, 꼬리가 있는 담비가죽 20령, 양가죽 100령, 『동의보감』 2부, 한림풍월 100홀 등의 물건을 무역 요구하는 일로 비선을 보냈으니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치하라고 하였는바, 당년조 세건선에는 원 서계가 올라온 뒤에 회례(回禮) 등의 물건을 마련하여 거행하며, 도주가 전후로 무역 요구하는 청이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는 일은 막아야 마땅하나, 이미 예도에서의 요청이라 하여 도주가 변통할 수 있는 바가 아닌 듯하니, 장계대로 허락하여 부응하라는 뜻으로 해조 및 본도에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1년(1692) 3월 초4일 우승지 신 오시만(吳始萬)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임신(1692) 10월 초7일

경상감사 민창도(閔昌道)가 9월 29일에 성첩한 장계. 방금 도착한 동래부사 김홍복(金洪福)의 첩정에, 이 달 22일 술시(戌時) 가랑에 황령산 봉군

박창군(朴昌軍)과 간비오 봉군 김득성(金得成) 등이 진고하기를, 조선 배인지 왜선인지 분간되지 않는 배 7척이 등불을 달고 물마루로 나온다고 진고하였고, 추가로 도착한 부산첨사 최위(崔瑋)의 치통에, 왜인의 작은 배 7척이 등불을 달고 나온다는 석성(石城) 봉군의 진고에 근거하여 초탐장 두모포 만호 임성업(林成業)을 정하여 보냈다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으며, 23일 축시(丑時)에 도착한 동 첨사의 치통에는, 어제 나온 왜인의 작은 배 7척을 영솔하여 관소에 부쳤다는 초탐당 임성업의 치보에 근거하여 훈도 변이표(卞爾標)와 별차 한중억(韓重億) 등에게 사정을 묻게 하였더니, 수본에 “비선 7척에는 두왜 각 1인과 격왜 각 9명 및 대관왜 1인이 또한 영솔하여 함께 타고, 은화와 잡물을 싣고 왔는데 각기 노인을 가졌으며, 동래 부산으로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한 흙을 구청하는 봉행 등의 서계를 또한 가지고 나왔거늘, 도중의 사정을 탐문하였더니, 관수왜 및 두왜 등의 말이 ‘별로 다른 일은 없고, 사기를 구워 만드는 흙을 구청하는 목록 가운데 경주에서 산출되는 백토 100섬, 울산의 약토 100섬, 김해의 적감색(赤紺色) 흙 120섬, 하동의 백토 40섬, 진주의 백토 40섬, 김해의 옹기흙 30섬, 곤양의 백토 40섬을 매 섬에 5말씩 들어가도록 하여 속히 들여 달라는 뜻으로 고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으며, 또한 말하기를 ‘이제 이번 도주가 바뀔 때 무역을 요구할 일이 많은데, 이번에 온 배는 오로지 이를 위하여 나왔다’고 하면서 받기〔件記〕를 내어 보이거늘, 그 중에 대단 홍방주(紅方紬), 흑화단(黑禾段) 등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기로 타일러 막게 하였고, 그 나머지 미선 100자루, 잣 15섬, 호두 15섬, 대구어 700마리, 호담(虎膽) 10부, 자필(咨筆) 100자루, 『동의보감(東醫寶鑑)』 2질, 방백자(房栢子) 100알〔顆〕, 화석(花席) 50립은 각기 길이 포백척(布帛尺)으로 4자 1치, 너비를 2자로 한 것 등의 물건을 긴요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수량대로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운운하였음. 동 봉행 등의 서계 1통 및 노인 7통을 받아 올려 보냄”이라고 수본하였는데, 위의 서계와 노인 등을 받아 보내는 일로 치통한다 하였음. 위의 비선의 노인 7통은 감봉하여 해조로 올려보내거니와, 사기를 구워 만드는 흙의 구청은 이미 전례가 있어서 비록 막을 수 없으나, 각색 흙이 470섬이나 되는 바, 매 섬을 15말로써 1섬으로 하면 그 수량이 참으로 과다하오나, 매 섬에 5말씩

으로 들어간다 하였는 바, 시험삼아 15말을 1점으로 계산한다면 160점 10말이 되는데, 정묘년(1687)에도 5말을 1점으로 하여 120점을 이미 무역 허락한 사례가 있으며, 9종의 무역 요구한 물건도 역시 이전에 무역을 허락한 물건이니, 아울러 해조에 명하여 참작하여 품의 조처하시라는 장계 등본과 서계와 노인을 전하는 서찰과 원 장계를 아울러 곧바로 관찰사에게 올리며, 현재 왜관에 머물고 있는 왜인은 579명이라고 첩정하였기에, 연유를 베껴 써서 치계하는 일 및 동래부사 김홍복이 9월 24일에 성첩한 장계는 위와 동일한 사연임.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첩부하니 계하하시기를. 이 장계를 보니 두왜 등이 사기를 구워 만들기 위해 각색 흙을 구청하는 일로 봉행 등의 서계를 가지고 나왔고, 또 이번에 도주가 바뀌어 무역 요구하는 일이 많다고 미션 100자루, 잣 15섬, 호두 15섬, 대구어 700마리, 호담 10부, 자필 100자루, 『동의보감』 2질, 방백자 100과, 화석 50립 등의 물건을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무역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였다고 하는 바, 이전에 무역을 요구한 물건은 그 수량이 비록 많더라도 무역을 허락하여 이미 전례가 있고 또한 그냥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막을 수 없으니, 요구하는 대로 각색 흙 및 미션 등 9종을 해조 및 본도에 명하여 수량대로 허락하여 부응하게 하되, 미션은 또한 전라도에 명하여 급히 마련하여 동래로 곧바로 보내라는 뜻으로 아울러 분부함이 어떠할지. 강희 31년(1692) 10월 초7일 우승지 신 이린징(李麟徵)¹⁵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택함.

일본국(日本國) 대마주(對馬州) 가신(家臣) 등은 조선국(朝鮮國) 동래(東萊) 부산(釜山) 양 영공(令公) 대인(大人) 합하(閣下)께 서찰을 받들어 올리며 정회(情懷)를 펴냅니다. 아득히 생각하건대 귀국이 태평하여 위안되는 마음 참으로 깊습니다. 본방(本邦) 또한 그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수(太守)가 지난해부터 간절하게 구하였으나 또한 얻지 못하였는바, 도기를 만들기 위하여 기술자 몇 명을 차출하여 관소(館所)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좋은

155) 이린징(李麟徵, 1643-?): 자는 옥서(玉瑞), 본관은 연안이다. 숙종 5년(1679)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흙이 적고 계속하여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도기(陶器)는 아직까지 만들지 못하고 기술자들은 빈손으로 관사에 머물러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엎드려 바라는 바는 흙과 땀감을 장애 없이 왜관으로 들여보내도록 지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위에 철에 맞추어 보증하시기 바라오며, 숙박하고 다 펼치지 못합니다. 원록 5년 임신(1692) 4월 일 대마주 가신(家臣) 평진행(平眞幸) 평성정(平成政) 평진현(平眞賢) 등. 도서(圖書).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계목을 첨부하였으니 계하하시기를. 이전에 사기를 구워 만드는 일로 도주와 봉행 등이 동래 부산으로 보낸 서계의 회답 초고를 전례대로 승문원에 명하여 말을 만들어 지어 내어 내려 보내게 함이 어떠할지. 강희 31년(1692) 10월 초7일 우승지 신 이린징(李麟徵) 차지로 입계하여 그대로 윤희함.

● **집필위원**

자료해제 : 김동철 (부산대 교수)
자료국역 : 정경주 (경성대 교수)
국역감수 : 이원균 (부경대 명예교수)

● **편집위원**

위원장 : 강창석 (동의대학교 총장)
위 원 : 강대민 (경성대학교 교수)
" : 백승충 (부산대학교 교수)
" : 홍연진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 : 김이갑 (부산광역시 문화재담당)

釜山史料叢書 14
國譯 倭人求請 謄錄(IV)

2007년 6월 20일 인쇄
2007년 6월 30일 발행

발행처 : 부산광역시
편 집 :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실
인 쇄 : 대원애드콤(051-852-5200)

<非賣品>

【연락처】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부산광역시청 시사편찬실
TEL. 051)888-3468, FAX. 051)888-3469